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744호
2021.12.30.(목)



목 차

자치법규

[조 례]

제8209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
제8210호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
제8211호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제8212호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11
제8213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제8214호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
제8215호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제8216호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25
제8217호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26
제8218호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28
제8219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0
제8220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31
제8221호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34
제8222호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	45
제8223호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6
제8224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7
제8225호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8
제8226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9
제8227호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0
제8228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2
제8229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	53
제8230호	서울특별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54
제8231호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	56
제8232호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57
제8233호	서울특별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61
제8234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4
제8235호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	65
제8236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3
제8237호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4
제8238호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5
제8239호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76

제8240호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79
제8241호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0
제8242호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2
제8243호	서울특별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4
제8244호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5
제8245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6
제8246호	서울특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87
제8247호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9
제8248호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92
제8249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94
제8250호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96
제8251호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9
제8252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101
제8253호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3
제8254호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4
제8255호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6
제8256호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	107
제8257호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08
제8258호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11
제8259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3
제8260호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4
제8261호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115
제8262호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17
제8263호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8
제8264호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9
제8265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22
제8266호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5
제8267호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조례	127
제8268호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30
제8269호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3
제8270호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135
제8271호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37
제8272호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39
제8273호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42
제8274호	서울특별시 청원경찰의 직무·운영 및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144
제8275호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1
제8276호	서울특별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53
제8277호	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4

제8278호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5
제8279호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56
제8280호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1
제8281호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163
제8282호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65
제8283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166
제8284호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68
제8285호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9
제8286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71
제8287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73
제8288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75
제8289호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179
제8290호	서울특별시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183
제8291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88
제8292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192
제8293호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194
제8294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196
제8295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198
제8296호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0
제8297호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3
제8298호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05
제8299호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6
제8300호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7
제8301호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	216
제8302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	220
제8303호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22
제8304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224

[규 칙]

제38호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226
제39호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228

[입법예고]

제2021-3199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37

고 시

제2021-720호	204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 고시	238

제2021-721호	강남구 도곡동 954-17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240
제2021-722호	서울특별시 암사동 생태·경관보전지역 확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52
제2021-723호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258
제2021-72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철도)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276
제2021-725호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0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77
제2021-726호	버스전용차로 변경(신설) 고시	289
제2021-727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한양대학교)	295
제2021-728호	문정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303
제2021-72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	306
제2021-730호	도시관리계획(금호동4가 1458번지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307
제2021-731호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317
제2021-732호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및 등록 고시	318
제2021-733호	도시관리계획(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361
제2021-734호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378

공 고

제2021-3154호	환경건설팅회사 신규 등록 공고	397
제2021-3157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398
제2021-3165호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2공구) 공사완료 공고	400
제2021-3170호	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404
제2021-3176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405
제2021-3191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407
제2021-3193호	2021년도 제16차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	408
제2021-3197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공고	413
제2021-3200호	서울특별시 지정(등록)문화재 지정(등록) 계획 공고	414
제2021-3204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안내	455
제2021-3205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472
제2021-3206호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475

구 고 시

제2021-26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변경) (종로구)	476
제2021-231호	도시계획시설사업(응봉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성동구)	479
제2021-261호	도시계획시설(철도: 정거장)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동대문구)	483
제2021-246호	도시관리계획[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민간부분 시행지침)] 결정(변경) 고시(은평구)	486
제2021-24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은평구)	487
제2021-250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은평구)	492
제2021-251호	도시계획시설사업(향림근린공원)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은평구)	494
제2021-252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은평구)	500
제2021-232호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양천구)	504
제2021-278호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구로구)	506
제2021-316호	동작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 고시(동작구)	507
제2021-318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동작구)	513
제2021-189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관악구)	514
제2021-190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관악구)	516
제2021-191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관악구)	518
제2021-192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관악구)	520
제2021-193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관악구)	522
제2021-194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관악구)	524
제2021-195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관악구)	526
제2021-197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관악구)	530
제2021-198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관악구)	532
제2021-278호	도시계획시설사업(우면산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서초구)	535
제2021-279호	도시계획시설사업(말죽거리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고시 (서초구)	537
제2021-280호	도시계획시설사업(방배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서초구)	540
제2021-281호	도시계획시설사업(서리풀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서초구)	542
제2021-230호	도시계획시설(철도: 도곡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강남구)	544
제2021-261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송파구)	548

구 공 고

제2021-1462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수립 공고(종로구)	550
제2021-1646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 열람공고(중랑구)	565
제2021-1836호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도봉구)	568

제2021-1847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공고(도봉구)	570
제2021-187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을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도봉구)	572
제2021-2375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구로구)	574
제2021-213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동작구)	580
제2021-2163호	상도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안) 열람공고(동작구)	581
제2021-2268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관악구)	606
제2021-2296호	도시계획시설(방배동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서초구)	607
제2021-2297호	도시계획시설(도구머리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위한 열람공고 (서초구)	609
제2021-2298호	도시계획시설(능안어린이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위한 열람공고 (서초구)	612
제2021-2299호	도시계획시설(원지어린이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위한 열람공고 (서초구)	614
제2021-2732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을 위한 열람공고 (강남구)	616
제2021-2617호	도시계획시설(둔촌 제1,2호 근린공원, 제1호 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 (최초)을 위한 열람공고(강동구)	617

사업소고시

제2021-32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629
제2021-32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630

기 타

제2021-532호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631
제2021-533호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632
제2021-534호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633
제2021-535호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634
제2021-538호	하천점용(변경) 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635
제2021-539호	하천점용(변경) 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636

정 정

제2021-226호	도시계획시설(하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강남구)	637

자치법규

[조 례]

서울특별시조례 제8209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서울여담재 : 별표 9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9]

서울여담재 이용료 부과 기준(제18조제1항제5호 관련)

구 분	단위	기준금액	비고
역사문화교육	1명 1개월	15,000원~50,000원	
교육소통공간 (서울여담재 2층)	1시간	5,000원~ 20,000원	*시간당 단가이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토, 일, 공휴일은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서울여담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여담재의 이용료 및 이용료 감면사항을 규정함 (제18조제1항제5호 및 별표 9).

서울특별시조례 제8210호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2021년 12월 31일” 을 “2026년 12월 31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사회투자기금 투융자 지원을 통해 일반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 성장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이 가능하며,
- 나. 코로나 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경영이 어려운 피해기업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취약노동자들의 위기극복에 기여하고 있는 바,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제11조).

서울특별시조례 제8211호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중 “2021년 12월 31일” 을 “2023년 12월 31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일자리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관리, 민·관 협력 체계구축을 통한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 마련,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의 자문 역할을 수행 중인 일자리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일자리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제9조의2).

서울특별시조례 제8212호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3.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5년마다,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7조에 따라 보행인구, 보행 여건 변화 등에 대한 실태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분야별·지역별 보행교통 개선지표를 수립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자의 이동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신호 체계, 보도시설 확보, 보행속도, 보행밀도 등
2. 보행환경의 안전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안전시설 확보, 가로등 조명수준, 차량속도 등
3. 보행환경의 쾌적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시설물 유지보수, 보행공간 소음 및 매연, 대중교통 정보제공 등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이외에 보행교통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7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제6조제3항에 의한 보행교통 개선지표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역사적 전통, 문화 등 지역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한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사유로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실행계획에 따른 예산편성 시 제6조제3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차별 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보행안전문화 확산) 시장은 보행자의 의식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안전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자 의식개선 및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보행환경 조성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 보행환경을 개선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설정하고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간선도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통학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이면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관광 및 상가 밀집 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역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보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횡단보도의 설치·정비에 관한 사항
7.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차 없는 거리의 조성에 관한 사항
9. 넓은 교차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보도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8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위촉직 위원: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중에서 보행교통 및 보행정책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당연직 위원: 보행친화정책 업무 소관 실·국장, 소관 과장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행업무 관련 담당사무관이 된다.
- ⑥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과 전문가에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를 할 때에는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친환경성에 관한 사항
 2. 공동체의 교류 증가, 보행활력 증진 등의 사회적 편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평가를 진행하며,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불법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법 제23조 및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공시설물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에게 위험이 예상되거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등을 통합·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도시교통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도로구간을 관리하는 도로 관리청에 소속된 공무원
2. 해당 도로구간을 관할하는 시·도경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
3. 해당 도로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물등의 관리기관의 직원
4. 해당 도로구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5. 그 밖에 보행, 교통 및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협의회에서 도로 구간별로 해당 안전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제19조(협의회 운영)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장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21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드는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행환경개선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의 관리
2. 법 제1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
3. 법 제30조에 따른 지정된 보행자전용길로 진입한 차마(車馬)의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결정·절차 및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제2조제1호”를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제2조제2호”를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제2조제1호”를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제2조제2호”를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을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으로 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개정(’ 21. 6. 23. 시행)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서울특별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신설 등)의 반영을 통해,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과의 원활한 조정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의 내실을 기하고,
- 나. 모법 없이 제정·시행되어 온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령에 의한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 보행사업의 법적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법 제8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 나.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 정하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법에 맞추어 보완함(제1조, 제2조).
- 다. 그 밖에 법에서 서울시장 및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6조부터 20조까지).

서울특별시조례 제8213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특별교부금” 을 “특별조정교부금” 으로 한다.

별표 1 제6호 ⑧ 기초생활비의 측정단위란 중 “기초생활수급자수” 를 “저소득취약계층” 으로 하고, 같은 호 ⑨ 보육사업비의 측정단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유아수
공공보육시설정원

별표 2 제4호의 수치산정기준란 중 “초·중·고등학교 학생수” 를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수” 로 한다.

별표 2 제8호의 측정단위란 중 “기초생활수급자수” 를 “저소득취약계층” 으로 하고, 같은 호 수치산정기준란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를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으로 한다.

별표 2 제10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21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공공보육시설정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 및 운영되는 자치구의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자치구의 행정환경 및 재정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일반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과 측정 단위를 조정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사용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함(제11조).

나. 기준재정수요액 측정단위 관련 사항을 조정함(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8214호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를 “서울특별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도로명주소법」 제2조에 규정된 도로명,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국가지점번호, 사물주소 등의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제3조 및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를 제3조로 하며, 제3조(중전의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① 시장은 주소정보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 지원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표기하는 위치표시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생활화 촉진사업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 제목 “(도로명주소의 홍보)” 를 “(주소정보의 홍보·교육)”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한다.
-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를 제5조로 하고, 제5조(중전의 제7조)의 제목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을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① 법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주소정보부서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6조(중전의 제8조)제2항 중 “연임”을 “2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중전의 제9조)의 제1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5호 중 “도로명주소”를 “주소정보”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10조)제1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를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11조)제2항 중 “호선에 의해 선임된 위원이”를 “연장자순으로”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12조)의 제목 “(간사 등)”을 “(간사)”로 하고, 제1항 중 “간사와 서기를”을 “간사 1인을”으로 하며, “도로명주소담당 부서의 장, 서기는 담당사무관으로 한다.”를 “주소정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로 하고, 제2항은 삭제한다.

제11조(중전의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의 간사는”을 “시장은”으로, “회의록으로 작성·비치”를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위원회가”를 “시장”으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4조) 중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의 전면 개정('21. 6. 9.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 체계를 재정비하여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기존의 도로명주소 외에 버스·택시정류장 등 시설물에도 주소정보를 부여할 수 있도록 주소정보의 사용범위를 확대함(제2조).

다.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주소정보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장을 행정1부시장에서 주소정보부서 담당국장으로 변경함(제5조).

라.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연임 등 임기, 회의 소집, 직무대행, 간사, 회의록 작성·관리,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제5조부터 제12조까지).

서울특별시조례 제8215호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공개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5조의 제목 “(행정정보의 공표)”를 “(정보의 사전적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공개대상기관의 발주계획, 입찰공고의 내용, 개찰의 결과, 계약 체결의 현황,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대가의 지급현황 등 계약(수의계약을 포함한다) 관련 정보

제7조제1항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의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하고 “이중 과반수”를 “이 중 3분의 2”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2.22.)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21.6.23.)에 따른 정보공개 교육의 실시, 사전공개 정보의 구체화,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변경 등의 개정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보공개 제도 운영 관련 교육의 의무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4조제6항).
- 나.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의 제목을 “행정정보의 공표”에서 “정보의 사전적 공개”로 변경하고, 공개대상기관의 계약 관련 정보의 사전공개 내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제5조제1항제9호).
- 다.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3분의 2로 확대함(제7조제2항).

서울특별시조례 제8216호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여 추정세액(특별시분 재산세 및 함께 고지되는 세목은 제외한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세무조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우리시 세수일실을 방지하고자 자치구로 위임한 시세 중 우리시 세무조사를 통하여 발생한 시세에 대해서는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구로 위임한 시세 중 우리시 세무조사를 통하여 발생한 시세에 대하여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제3조제5항).

나. 시 세무조사를 통해 발생한 시세에 대한 적용례 규정을 신설함(부칙 제2조).

서울특별시조례 제8217호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 을 “2024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 을 “2024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1년 12월 31일” 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 을 “2024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 을 “2024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 을 “2024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 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 을 “2024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14조 중 “2021년 12월 31일” 을 “2024년 12월 31일”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조례 내 감면조항의 적용시한이 ' 21.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세 감면 조항의 적용기한을 ' 24. 12. 31.까지 3년 연장함(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서울특별시조례 제8218호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납부방법)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에 제3호의2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별표 제2호다목 중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금액란의 “30,000원”, “20,000원”을 각각 “수수료 없음”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수리 여부 통지를 받게 된 자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및 유가족을 수수료 감면대상에 추가하고,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등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수수료 납부 시 수입증지 납부 우선 규정을 변경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제4조).
- 나. 수수료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및 유가족을 추가함(제6조).
-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에 따라 우리시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수수료 금액을 ‘수수료 없음’ 으로 변경함(별표 제2호다목).

서울특별시조례 제8219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중전의 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중전의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제4조제1항).

서울특별시조례 제8220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회계 등에 의하여 경비 보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유예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누수 등의 사유로 수도요금에 감면된 경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누수량에 대하여 면제(양변기 누수의 경우 면제 제외)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21.12.31. 당시 별표 2에 의하여 공공용 요율의 적용을 받던 수용가에 대하여는, 별표 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12.31.까지는 종전의 별표 2의 가. 공공용 요율표를 적용한다.

제2조(누수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누수량부터 적용한다. 다만, 적용일 전날까지의 누수량에 대해서는 날 수대로 계산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2>

하수도사용료 요율 및 업종구분(제23조 관련)

가. 하수도사용료 요율표(1개월 기준)

구 분 업 종	2022년부터	
	사용구분(㎡)	단가(원/㎡)
가정용	30이하	400
	30초과~50이하	930
	50초과	1,420
욕탕용	500이하	440
	500초과~2,000이하	550
	2,000초과	630
일반용	30이하	500
	30초과~50이하	1,000
	50초과~100이하	1,520
	100초과~200이하	1,830
	200초과~1,000이하	1,920
	1,000초과	2,030
유출지하수	㎡당	400

※ 유출지하수에 대해서는 업종 구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율을 적용한다.

나.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

업 종	구 분 내 용
가정용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별표 1에 따른 가정용 업종
욕탕용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별표 1에 따른 욕탕용 업종
일반용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별표 1에 따른 일반용 업종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2021년 5월, 수도요금 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확정·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별표 2 중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를 상수도과 동일하게 개편하고자 함.

나. 기존 하수도사용료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고 내용과 기준을 상수도와 일치시킴으로써,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2년 1월 1일부터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중 ‘공공용’을 폐지하고 ‘일반용’으로 통합하여 상수도와 업종구분을 일치시키되, ‘공공용’ 수용가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요금체계를 따르도록 함(별표 2 나목).

나. 기존 하수도사용료 감면규정을 명확히 함(제34조제1항제3호).

다. 하수도사업과 무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감면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등의 비용부담을 명확히 규정함(제34조제1항).

서울특별시조례 제8221호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25,000명 이상으로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 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 취지 및 이유
3. 연서 주민 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 기간 및 장소
5. 이의 신청 방법

② 의장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자치구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서울특별시보, 의회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 절차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 열람 관련 사무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이의신청 및 수리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명
2. 입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2명
3. 입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5명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간사로 하여금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 2. 법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 3. 그 밖에 주민조례청구 심의 등을 위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15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매체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시민권익담당관이 된다.

제19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제17조에 따라 참석한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심의안건 검토비용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22조)을 삭제한다.

■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인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청구대상 조례 및 청구취지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신청 []필요없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첨부서류	조례안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청구명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직인

청구명란의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명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채류지)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채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채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유의사항

청구명란의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명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수임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직인					

청구명란의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명부의 표지)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청구인명부

청 구 사 유 :

서 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 주민 수 : 명

○○시·도 ○○시·군·자치구

○○시·군·자치구 ○○읍·면·동(○책 중 ○권)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의 수임자 (서명 또는 날인)

작성방법

- "괄호()" 안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 "청구사유"란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요약하여 적습니다.
- 서명 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책과 권으로 나누어 철합니다.
- "대표자의 수임자"란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적으며,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적습니다.

210mm×297mm [백상지 80g/㎡]

청구인명부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체류지)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	비고

작성방법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이의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대상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 취지	

신청 사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전부개정 「지방자치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조).
- 나.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25,000명 이상으로 정함(제3조).
- 다.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위임신고증,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서 등 서식을 정함(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0조).
- 라.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를 정함(제8조).
- 마.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서울특별시장의 협조 사항을 정함(제12조).
- 바. 주민조례청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서울특별시조례 제8222호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및 여비)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심사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로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2022년 1월 13일부터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의 임용권자가 의회 의장으로 변경되는바, 「지방공무원법」(2022. 1. 13.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따로 정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자율성과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운영의 목적을 밝힘(제1조).

나. 의회 인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과 여비에 대하여 정함(제2조).

서울특별시조례 제8223호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민원상담 내용의 녹음) 민원상담 내용은 녹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에게 상담내용 녹음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민원 응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폭언 및 인격 모독에 상시 노출되어 있고,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민원인과의 통화 이전에 사전 녹음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고, 녹음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민원상담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민원인을 응대하는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한편 민원 응대 서비스의 질을 높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민원상담 내용의 녹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제5조의2).

서울특별시조례 제8224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를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로 한다.

별표 2 월정수당의 지급액란 “4,008,550원” 을 “4,044,620원”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2018년 ‘서울특별시의회정비심의위원회’ 에서 결정한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 의정비 지급기준’ 에 맞춰 2022년도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22. 1. 13. 시행)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나.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의 월정수당 지급액을 “4,008,550원” 에서 “4,044,620원” 으로 변경함(별표 2).

서울특별시조례 제8225호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전부개정 「지방자치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법 제·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현행화 함(제7조).

서울특별시조례 제8226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을 “「지방자치법」 제19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전부개정 「지방자치법」('22.1.13.시행)에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법적 근거(제193조)가 신설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목적 조항에 이를 명시함으로써 제도 운영상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에 대한 상위법 근거를 명시함(제1조).

서울특별시조례 제8227호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를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 를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3조” 로 한다.

제7조제7항 중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8조” 를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0조” 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41조제4항 및 영 제43조제1항” 을 “법 제49조제4항 및 영 제46조제1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41조제4항” 을 “법 제49조제4항”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41조제5항 및 영 제43조제5항” 을 “법 제49조제5항 및 영 제46조제6항부터 제7항”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현행화 함(제1조 등).

서울특별시조례 제8228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의원이었던 자의”를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었던 사람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현행화 함(제1조 및 제2조).

서울특별시조례 제8229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8조” 를 “「지방자치법」 제46조” 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을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의장은 의원의 검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의회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의원의 검직신고 공개 방법 등에 관한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현행화 함(제1조).

나. 의원의 검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의회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제10조의2).

서울특별시조례 제8230호

서울특별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 ②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가진다.

제2조제3항(중전의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 을 “제2항과 제3항” 으로, “의장” 을 “서울특별시의회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본문 중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를 “제3항제2호의 직인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로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회의장
2. 서울특별시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 및 서울특별시의회특별위원회위원장
3.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
4. 서울특별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제4조 중 “의장·특별위원장, 사무처장” 을 “청인 및 의장·서울특별시의회특별위원회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 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으로, “상임위원장” 을 “서울특별시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 으로, “각각 비치하고” 를 “비치하고” 로 한다.

제7조 중 “기관장” 을 “기관명” 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의하며” 를 “따라” 로 한다.

별표에 직인의 기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서울특별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인

2.7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2022년 1월 13일부터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의 임용권자가 의회 의장으로 변경되는바, 의회 청인과 인사위원회 위원장 직인에 관한 사항을 조례상에 명시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자율성과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 등은 청인을 두도록 하고, 인사위원회 위원장 직인을 추가함(제2조 및 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8231호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폐지이유와 주요내용 >

1. 폐지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22.1.13.시행)으로 의장이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에 대한 전속적인 인사권한을 가지게 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

서울특별시조례 제8232호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인구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특별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규모와 구조에 대한 분석으로 인구변동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정 전 분야에 걸쳐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변동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의 적극 발굴 및 추진,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과 여건 조성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파급영향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인구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치구·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인구정책의 시행) 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정 전 분야에 걸쳐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저출생·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구조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2. 인구교육 및 홍보에 관한 정책
 3. 전문가 및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 행사
 4.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조사·연구
 5. 그 밖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 ② 시장은 인구정책이 인구에 미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인구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인구변화대응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인구변화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인구정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인구정책 관련 소관 실·본부·국장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인구정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하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총괄부서의 담당 서기관

이 된다.

- ④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전문가에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위원이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안의 심의에서 제척·기피·회피하여야 한다.
- ⑦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인구정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인구감소가 전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에서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근접하고 있어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인구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수립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서울시 차원의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인구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인구변화대응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인구변화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인구정책”에 대해 정의함(제2조).

나. 5년마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제5조).

다. 인구변화대응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의견청취 등을 규정함(제7조에서 제10조까지).

라. 인구정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11조).

서울특별시조례 제8233호

서울특별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책 수립 단계부터 인구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영향평가”란 정책, 계획, 사업 등의 수립과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인구 구조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일상적 삶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인구정책”이란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인구 구조에 미칠 영향과 효과를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구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구영향평가의 지표를 개발하며, 이에 필요한 실시방법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인구영향평가가 적절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인구영향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정책에 대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시행계획
 2.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3.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시행계획
 4. 그 밖에 인구영향평가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정책
- ② 시장은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정책에 대하여 연간계획을 세우고 공표할 수 있다.
 ③ 인구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구 및 사회·경제 현황 등 정책 환경
2. 인구정책이 인구의 증감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④ 시장은 인구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나 대학, 연구소, 단체 등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범적용) 시장은 인구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시범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인구영향평가의 절차) ① 인구정책을 실시하는 부서의 장(이하 “사업부서장”이라 한다)은 인구정책을 계획하거나 실시하기 전에 인구영향자체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인구영향평가 담당 부서의 장(이하 “평가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② 평가부서장은 평가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그 사업부서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평가부서장은 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인구정책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구영향평가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부서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평가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와 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을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사업부서장은 제3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인구정책의 개선 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인구영향평가 결과보고서의 작성 등) 시장은 인구영향평가의 추진 실적과 인구정책의 개선 실적을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인구영향평가 결과의 공개) 시장은 인구영향평가 결과를 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다른 법령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로 되어 있는 사항
2. 공개로 인하여 특정인이나 특정기관 또는 단체에 예측하지 못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은 사항
3.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제9조(인구영향평가 교육) 시장은 인구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관련 기관 종사자에게 인구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에서 제도·정책 등을 수립하거나 시행함에 있어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구영향평가 시행과 관련한 시장의 책무와 실시내용에 대해 규정함(제3조 및 제4조).

나. 인구영향평가의 절차에 대해 규정함(제6조).

다. 인구영향평가 결과보고서의 작성과 결과 공개에 대해 규정함(제7조 및 제8조).

서울특별시조례 제8234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의 본문 중 “경우에는” 을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으로 한다.

제4조의3제2항의 본문 중 “재위탁 또는 재계약” 을 “재계약”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를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위탁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위탁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는 내용을 삭제함(제4조의3).

서울특별시조례 제8235호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제1조(「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2조제2항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3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와 제3항제2호 중 “부의하는”을 각각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부의한”을 “회의에 부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의안건”을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위원회에 부의하여야”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의를 받은”을 “회의에 부칠 안건을 받은”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6호 중 “제1호에 불구하고”를 “제1호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규정에 불구하고”를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6항 중 “제4항까지에 불구하고”를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28조제5항, 제82조제2항 중 “제1항에 불구하고”를 각각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33조제4항 중 “제3항까지에 불구하고”를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원도급, 하도급, 위탁 그 밖에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를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제1항에 불구하고”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공휴일 기타공사”를 “공휴일 그리고 그 밖의 공사”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호 중 “제2호에 불구하고”를 “제2호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단서에 불구하고”를 “단서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5조제3항, 제13조제3항 중 “제2항에 불구하고”를 각각 “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의2호 중 “본문규정에 불구하고”를 “본문규정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39조제5항과 제7항, 제54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제7항, 제8항과 제55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 제15항, 제18항 중 “규정에 불구하고” 를 각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로 한다.

제55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본문에 불구하고” 를 각각 “본문에도 불구하고” 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제3호까지에 불구하고” 를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1항에 불구하고” 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제2항에 불구하고” 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부의하는” 을 “회의에 부치는” 으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기타수입” 를 “그 밖의 수입” 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제1항에 불구하고” 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8조제2항제2호 중 “부의하는” 을 각각 “회의에 부치는” 으로 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부의하는” 을 “회의에 부치는” 으로 한다.

제26조(「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한다.

제27조(「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0호 중 “부의하는” 을 “회의에 부치는” 으로 한다.

제28조(「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3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29조(「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규정에 불구하고” 를 “규정에도 불구하고” 로 한다.

제30조(「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부의하는” 을 “회의에 부치는” 으로 한다.

제31조(「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제2호에 불구하고” 를 “제2호에도 불구하고” 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규정에 불구하고” 를 “규정에도 불구하고” 로 한다.

제4조제1항제9호마목 중 “나목에 불구하고” 를 “나목에도 불구하고” 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6호에 불구하고” 를 “제6호에도 불구하고” 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를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로 한다.

제32조(「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부의하는” 을 “회의에 부치는” 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부의 안전을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전 등을” 을 “회의일시, 장소, 회의에 부칠 안전 등을 각 위원에게” 로 한다.

제33조(「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가목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라목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34조(「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호 중 “부의하는” 을 “회의에 부치는” 으로 하고, 제11조제3항 중 “부의사항” 을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으로 한다.

제35조(「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제24조 본문 중 “규정에 불구하고” 를 각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로 한다.

제36조(「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37조(「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중 “부의하는” 을 “회의에 부치는” 으로 한다.

제38조(「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본문에 불구하고” 를 “본문에도 불구하고” 로 한다.

제39조(「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부의하는” 을 “회의에 부치는” 으로 한다.

제40조(「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15조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41조(「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 중 “신청순위에 불구하고”를 “신청순위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42조(「서울특별시 청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제3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43조(「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4조(「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45조(「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27조제2항 중 “규정에 불구하고”를 각각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35조제4항 중 “제3항에 불구하고”를 “제3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46조(「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및 제12조제3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제3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7조(「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6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48조(「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9조(「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에 불구하고”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50조(「서울특별시민상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제3항 중 “규정에 불구하고” 를 “규정에도 불구하고” 로 한다.

제51조(「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항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52조(「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4호 중 “부의하는” 을 “회의에 부치는” 으로 한다.

제53조(「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0호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한다.

제54조(「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부의하는” 을 “회의에 부치는” 으로 한다.

제55조(「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기타수입” 을 “그 밖의 수입” 으로 한다.

제56조(「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부의안건” 을 “회의에 부칠 안건”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760개의 서울특별시 조례와 168개의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를 대상으로 2021년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참고하여 마련한 일본식 용어 95개의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53개 조례에서 100건의 일본식 용어 사용이 발견되어 일괄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에 쓰이는 대표적 일본식 한자어와 표현인 “기타” (其他), “당해” (當該), “부의(附議)하다” 를 각각 “그 밖에” 또는 “그 밖의” 와 “해당”, “회의에 부치다” 로 순화함.

서울특별시조례 제8236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사용” 을 “사용하여야 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한자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사용”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자치법규 입안 시 일본식 용어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자치법규 입안 작성 원칙에 관한 것으로 대통령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자치법규에 관한 문서는 공문서 중 법규문서에 해당하여 같은 영 제7조의 ‘문서 작성의 일반원칙’에 따라 문서작성을 하여야 하나, 같은 조항에서는 일본식 표현·어투 등의 용어 사용 제한에 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자치법규 입안 작성 원칙에 관한 사항은 조례·규칙 제·개정에 관한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점(「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나목)을 고려해,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법규 입안시 일본식 표현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명문화 하고 입안 시 우리말 사용을 한층 장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자치법규 입법 시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한자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사용하도록 명문화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8237호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제8조로, 제11조를 제9조로, 제12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문화·여가 공간 등 제공) 시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험관의 재난체험시설 등 주요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여유허간을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들의 문화·여가 공간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를 제12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시민안전체험관의 잔여 공간에 문화·여가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여 소통하는 장소로 만들 고자 함.

2. 주요내용

시민안전체험관 내에 시민들에게 제공 가능한 시설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제12조의 2).

서울특별시조례 제8238호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자치구 긴급구조지휘대장 : 관할 소방서 현장대응단장(또는 담당팀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자치구 긴급구조지휘대장’은 관할 소방서의 ‘현장지휘팀장(소방경)’이 지휘토록 하고 있으나 현장지휘는 풍부한 현장경험과 그에 걸 맞는 직급체계를 갖추어야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통해 최적의 지휘능력이 발휘된다고 볼 때 지금의 지휘팀장체계에서 직급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에 서울시로 하여금 시범적으로 자치구 긴급구조지휘대장을 관할 소방서 ‘현장대응단장(소방령) 또는 담당팀장(소방경)’의 복수직급 지휘체계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자치구 긴급구조지휘대장을 관할 소방서 ‘현장대응단장’ 또는 ‘담당팀장’이 하도록 함 (제2조제1항제2호라목).

서울특별시조례 제8239호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인권 증진 및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 내의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사용된 용어 정의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에 포함되어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지원사업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4.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
5.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는 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인권 증진 및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서울시 보육의 질 향상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나.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다.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라.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함(제8조).

마.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서울특별시조례 제8240호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상황에서 보육 등에 필요한 물품구입비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을 맞아 돌봄 및 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영유아의 언어발달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구입비용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육물품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제22조제1항제12호).

서울특별시조례 제8241호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 ① 시장은 법 제29조의3제4항에 따라 아동 관련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시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법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시장으로 하여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와 해당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반복되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아동 관련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시장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 의무에 대해 규정함(제6조의2제1항).
- 나.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 및 아동관련기관 취업에 대한 시장의 연 1회 이상 점검·확인 의무에 대해 규정함(제6조의2제2항).
- 다.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한 아동학대관련범죄 해당 인원에 대한 시장의 해임 요구에 대해 규정함(제6조의2제3항).
- 라. 관련법령을 위반한 아동관련기관 시설 운영에 대한 시장의 폐쇄 요구에 대해 규정함(제6조의2제4항).

서울특별시조례 제8242호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와 제2조로 한다.

제2조(중전의 제3조)의 제목 “기능”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중전의 제2조)의 제목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3조(중전의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와”를 “사람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4호까지”를 “제7호까지”로, “한 명”을 “1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를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로, “아동분야에”를 “아동 분야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중전의 제3호) 중 “아동분야”를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로, “하였던”을 “담당했던”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 나. 서울특별시교육청 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

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제8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며,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의 규정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아동청소년담당관” 을 “가족담당관”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아동학대로 인한 보호아동에 대한 원가족복귀 조치로 재학대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보호조치·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여 보호조치 결정을 전문적·적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임.

2. 주요내용

시장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제3조의2).

서울특별시조례 제8243호

서울특별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하고, 실종아동의 날부터 1주일을 실종아동주간으로 지정하고 있음. 이에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실종아동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8조).

서울특별시조례 제8244호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를 “(공무원을 포함한다)” 로 한다.

제15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업무에 방해가 되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반복하여 제기하는 행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현행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대상에 서울특별시 공무원을 포함하는 내용 및 민원을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넣는 경우 등으로 고통 받는 담당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비하여 해당 조례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정노동 종사자 대상에 공무원을 포함함(제2조제4호).

나.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업무에 방해가 되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반복하여 제기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함(제15조제4호).

서울특별시조례 제8245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전자상거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예방 및 구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최근 다양한 업체 정보와 사용자 리뷰 검색 및 주문·결제의 편리성 등으로 배달앱 플랫폼 이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지금까지는 배달앱 플랫폼 이용자에 대한 구제가 소비자의 피해나 배달앱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사항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최근에는 사업자간 경쟁에 따른 다른 사업자나 일부 이용자가 악의적 리뷰·별점을 부여하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영세 중소기업자의 특성상 체계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소상공인이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에서 악성리뷰 등으로 피해를 입는 상황을 고려하여, 시장이 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자상거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규정함.(제8조제7호의2)

서울특별시조례 제8246호

서울특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금융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
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법인·단체에게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유관 기관,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8조(표창)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범죄수법이 고도화되면서 금융이해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 취약계층 대상 신종 금융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장과 금융회사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규정함(제3조부터 제5조까지).
- 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제6조).
-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제7조).
- 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함(제8조).

서울특별시조례 제8247호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공정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정경제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지원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고,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시 공정경제 관련 업무 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공정경제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 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공정경제 및 민생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연구원을 말한다)에서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산업·경제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산업·경제에 관한 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4. 공정경제 및 민생 관련 분야의 시민단체에서 1년 이상 공정경제·민생정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재정·경제 분야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으로 활동하였거나 활동하고 있는 자로서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
6. 위원회의 자문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제1호, 제2호, 제4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반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긴급한 사항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회의는 회의록 등을 통해 충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하거나 정책집행 과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공정경제 관련 업무의 담당관 또는 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결격사유) 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를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⑤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설치 근거를 둔 공정경제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회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공정경제위원회를 개별 운영하기 위해 경제민주화위원회에서 공정경제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는 규정을 삭제함(제11조제1항).
- 나.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신설함(제11조의2).
- 다.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12조).
- 라.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13조).
- 마.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14조).
- 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15조).
- 사. 간사를 두는 규정을 신설함(제16조).
- 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해제·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17조).
- 자. 위원회 운영세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18조).

서울특별시조례 제8248호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북 이산가족 지원 및 인도적 교류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산의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 이산가족”이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남북 이산가족 중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 지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및 시민의 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이해와 관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남북 이산가족 지원 기본계획) ① 시장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해결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남북 이산가족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북 이산가족 지원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남북 이산가족 지원 및 인도적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남북 이산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진행경과를 매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남북 이산가족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해결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남북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
2. 남북 이산가족 소통 및 위로 사업
3. 남북 이산가족 역사문화 보존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업
4. 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한 사업
5. 남북 이산가족 문제해결 관련 국제사회와의 협력강화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남북 이산가족 교류 관련 민간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한적십자사 등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남북 이산가족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이산가족 문제는 이산가족 당사자와 그 가족 뿐 아니라 민족 공동의 아픔이자 숙원임.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남북한 사회 통합의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정당성과 당위성이 있음. 또한 서울은 세계 시민이 모이는 다양한 국제 네트워크와 풍부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추진은 타지자체와 비교불가한 파급력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이에 서울이 시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산가족 문제 관련 국내외 공감대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수행할 때 평화와 인권을 중시하는 세계적 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남북 이산가족 지원 및 인도적 교류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남북화합에 이바지하도록 함.

나. “이산가족”에 대한 지역적 범위를 적용하고, 이산가족 교류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서울특별시조례 제8249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을 “(청년인재정보의 수집·관리)”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데이터베이스 담당”을 “청년인재정보 수집·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청년인재정보의 수집·관리 및 수집된 정보의 보호 등”으로 한다.

① 시장은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지원하고,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에 청년을 위원으로 추천하기 위하여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2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청년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청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서울특별시 청년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이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를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을 청년인재정보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함(제10조의2).

나. 시장은 청년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이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2).

서울특별시조례 제8250호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가는 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사회적 고립청년”(이하 “고립청년”이라 한다)이란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사회 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1년 이상의 장기 미취업 등으로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 고립되어 있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립청년의 복지향상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고립청년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고립상태의 재발 여부 및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고립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4.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5. 그 밖에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립청년과 그 가족, 관련 전문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고립청년 발굴) ① 고립청년 발굴의 주체는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 소속 공무원, 청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한다.

② 시장은 고립청년 발굴을 위하여 복지·고용·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립청년과 그 가족의 경제상태 및 생활양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고립청년 관련 통계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립청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립청년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사업
3. 고립청년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고립청년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5. 고립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6. 그 밖에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고립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청년 지원 관련 기관 등을 고립청년 지원시설 등으로 지정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립청년 지원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고립청년 지원시설 등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고립청년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심리·사회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상당히 복합적으로 나타나기에 예방과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체계구축이 시급함. 이를 통해 이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제2조).
-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다. 고립청년 발굴 방법에 대해 규정함(제6조).
- 라.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제8조).
- 마. 민간 전문가 활용 근거를 마련함(제9조).
- 바.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제10조).
- 사.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제11조).

서울특별시조례 제8251호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디지털 전환”이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산업·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혁신과 효율화를 가져오는 과정을 말한다.

제4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 중 “산업에”를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디지털 전환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로 인한 급격한 기술과 시장 변화에 서울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디지털 전환’ 용어 정의(제2조제4호).

나.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관한 사항’ 을 기본계획에 추가함(제4조제7호 신설).

다. 실태조사 대상에 디지털 전환을 포함함(제5조).

라. 중소기업 등에 ‘디지털 전환’ 을 지원 근거를 규정함(제7조제3호).

서울특별시조례 제8252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협의회와 자치구 사회복지협의회 간 제1호 관련 협력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수탁을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를 통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향후 구사회복지협의회 설립 확대, 서울형 복지모델 개발 및 역할 수행을 위한 사회복지협의회 예산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제2조).

나.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다. 시장은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제5조).

서울특별시조례 제8253호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단서 및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6.25,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지원 대상에서 상이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대상자 제외 기준을 삭제하고,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보훈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을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보훈급여금(상이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대상자까지 확대함(제3조).

서울특별시조례 제8254호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4호 중 “보훈명예수당”을 “보훈명예수당 및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으로, 같은 호 중 “생활보조수당에서 각 수당의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를 “생활보조수당과 중복지급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유족 및 가족 제외)가 65세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훈예우수당 월 1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자치구 조례를 포함한다”를 “자치구 조례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의 공적에 비해 이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해당 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가.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및 생활보조수당을 중복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제7조제3항제4호).
- 나.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기준에서 상이자 대상자 제외 기준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10만원을 지급하도록 함(제7조제4항).
- 다. 보훈예우수당 대상자가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 받는 경우 자치구에서도 중복지급이 가능하도록 함(제7조제4항제3호).

서울특별시조례 제8255호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20만원” 을 “100만원”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시 생존 애국지사는 총 3명이며, 평균연령 95세 고령으로 이들에 공적에 대해 예우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함. 하지만 현재 지급되고 있는 보훈명예수당은 20만원으로 저소득층 수당과 동일한 수준으로 차별화가 없으며, 타 시도에 비해 낮은 수준임. 이에 생존 애국지사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100만원으로 인상하여 고령의 생존 애국지사에게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보훈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생존애국지사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인상함 (제3조제1항제1호).

서울특별시조례 제8256호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 을 “제3항” 으로 한다.

③ 시장은 공영장례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 시 종교 등을 고려한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장은 공영장례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 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3항).

서울특별시조례 제8257호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공동생활가정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일반 주택에서 사회통합과 자립을 목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소규모 거주시설이다.
2. 그 밖에 용어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 사업의 지원

제4조(사업운영의 주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및 개인 등 그룹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는 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그룹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그룹홈의 기능) 그룹홈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2. 장애인의 사회 적응 및 여가생활 지원
3.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지원
4. 장애인과 지역사회의 유대강화지원
5. 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이용대상자) 그룹홈 이용대상자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것이 자립에 더 효과적인 사람

2.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공동생활이 가능한 사람
3. 그룹홈 거주욕구가 있는 사람

제7조(그룹홈 설치 및 운영지원) ① 시장은 법 제81조에 따라 그룹홈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그룹홈 설치를 위한 주택은 운영주체가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관계 규정에 따라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매입임대주택의 일부를 그룹홈 사업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임대할 수 있다.

제3장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지원센터

제8조(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이용자 및 그룹홈의 장기적인 발전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그룹홈 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2.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3. 대체인력지원에 관한 사업
4. 그룹홈 이용상담 및 이용대상자 선정 지원
5. 지역사회 소규모 거주시설로의 서비스이용 전환 지원
6. 그룹홈에 필요한 자원연계
7. 그룹홈의 설치 및 운영 자문
8. 그 밖에 시장이 정한 사항

제9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과 그룹홈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종사자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요원 자격 기준의 “관장” 또는 “사무국장” 이상의 자격기준인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센터는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활성화 등 그룹홈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그룹홈 사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다.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장애인 그룹홈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서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장을 임명하고 그 밖의 인력은 센터장이 임명한 후 시장에게 보고한다.

③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센터에 대한 지원) 시장은 센터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조사)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장에게 센터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지역사회 내 일반주택을 이용하여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기능(제5조)
- 나.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설치 및 운영지원(제7조)
- 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제8조)

서울특별시조례 제8258호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취업지원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4차 산업혁명(「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장애인 일자리 정책 대응에 관한 사항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고,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한 장애인 욕구 및 수요 조사
2. 산업구조 변화, 장애특성 등에 따른 관련 직무 개발
3. 민·관 협력을 통한 고용 모델 개발
4.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시 투자·출연기관”을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투자·출연기관”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관련 직종 발굴·교육 지원 및 시범사업

제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하여 민간부문 일자리 연계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현재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정책은 뉴딜일자리 등 자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그에 관한 기반은 미진한 실정임.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한 장애인의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한시적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아닌 장애인들이 미래 4차 산업을 대비하고, 취업연계 교육 등 장기적인 장애인 일자리 정책 방향을 갖추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취업지원 전달체계를 확립하도록 함.
- 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장애인 일자리 정책 대응에 관한 사항 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 상황 변화에 대응하고,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8259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
3.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및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제10조의2제3항제2호).
- 나.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제10조의2제3항제3호).

서울특별시조례 제8260호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을 “거주시설·돌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 및 제9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

9의2.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장비 및 장비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내용에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방과 후 활동지원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제7조제1항).

나.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장비 지원과 사용비용 지원을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으로 추가함(제7조제1항제9호의2).

서울특별시조례 제8261호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라 함은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에 따라 제2조제6호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①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인 돌봄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대부분이 열악한 근로 조건에 놓여 있음. 이로 인한 돌봄의 질 저하가 우려되지만 관계법령에 구체적인 개선책은 미비하여,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 나.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제6조)
- 다.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서울특별시조례 제8262호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택시 승객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는 재정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택시운송사업의 생존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재정지원 사업 신설 등(제10조제1항)

서울특별시조례 제8263호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현행 조례는 택시요금 1만원 이하를 교통카드로 결제할 경우 그 카드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효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 2022년 1월 1일부터는 소액 택시요금 카드수수료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임. 택시요금에 대한 카드결제가 일상화 되어 있어 택시 카드결제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소액 택시요금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택시요금 카드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택시업계의 부담을 일부 경감시킴과 동시에 택시이용 시민의 카드결제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동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코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의 유효기간을 기존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변경함(부칙 제2조)

서울특별시조례 제8264호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정비요원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1]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제4조 관련)

구 분	기 준
가. 전시시설 연면적	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3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나. 전시시설의 구조(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한정한다)	전시시설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되, 주거 및 도시미관과 조화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벽을 전시용 유리창(show window)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무실	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시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건물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1) 사무실과 전시시설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지 않을 것 2) 적법하게 매매업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당 구청장이 인정한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일 것
라. <삭 제>	<삭 제>
마. 출구 및 입구	전시시설이 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주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을 말하고, 사무실을 제외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공용통로,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 등 자동차를 직접 전시하는 시설 이외의 시설을 제외하고 계산하되, 두 곳 이상의 장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장소의 면적을 합산할 수 있다.

- 1) 서로 다른 필지인 경우 매매자동차를 도로를 거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 2) 서로 다른 건물에 위치한 경우로서 공중보행통로 등을 이용하여 다른 건물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3. 나목의 등록기준은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전시시설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마목의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된 기준을 적용 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자동차매매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을 완화 하는 한편 자동차종합정비업의 경우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의 자격증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및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의 자격조건에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함(제5조제1항제2호).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일부개정 사항 반영(별표1).

서울특별시조례 제8265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학교의 부설주차장 설치 한도)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설치한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 가운데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최고한도는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로 따로 정한다.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의3(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으로 한다.

②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은 별도 제4호 서식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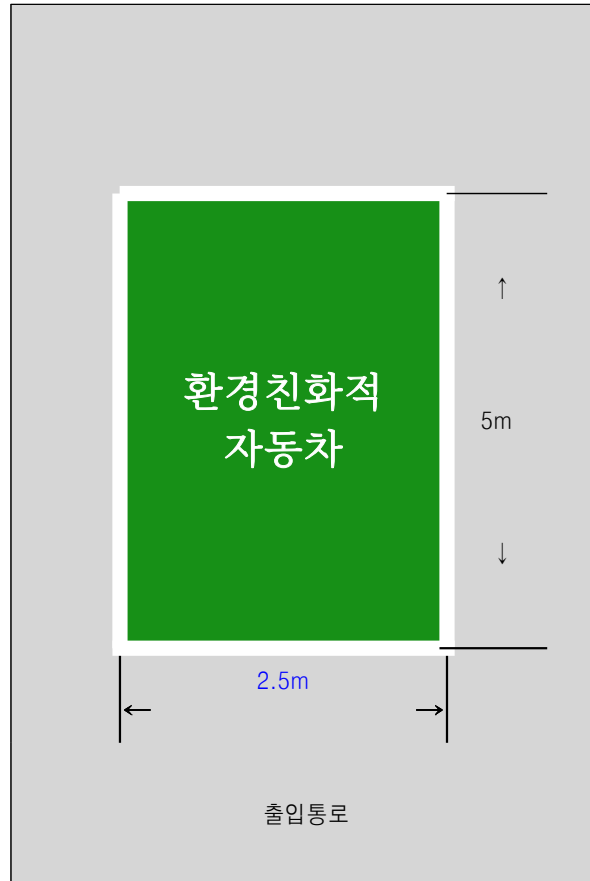
별도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도 제4호 서식>

환경친화적자동차전용주차장 주차구획(제25조의3제2항 관련)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m이상×세로 5m이상)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녹색 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 사용
2. 주차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498호, 2018.3.21.>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최대 설치면수 제한 규정 삭제 및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을 상향하고 전용 주차구획을 확보해야 하는 자동차의 대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하는 한편 학교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교 부설주차장 설치한도에 관한 사항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제21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최고한도는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규정함(제21조의2)
- 나. 공영주차장 및 서울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비율을 증가시키고, 최대 설치면수를 10면으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함(제25조의3).

서울특별시조례 제8266호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교통소통대책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점검자가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 필요할 경우 제9조에 따른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의 위원을 대동할 수 있고 참석위원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7명 이상 15명”을 “15명 이상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2회의”를 “2회 이상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과반수의 출석으로”를 “5명 이상의 출석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자문회의는 총 공사비 100억 이상 또는 도로점용 1년 이상 공사에 대해 모니터링 또는 현장 이행여부를 공사시행자 및 발주부서 등에 요청 할 수 있다.

제13조의 제목 “(원상회복)”을 “(원상회복 및 복구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총 공사비 100억 이상 또는 도로점용 1년이상 공사를 시행한 자는 공사완료 6개월 전 교통 운영 계획을 포함한 도로의 복구계획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제출된 복구계획 보고서는 자문회의에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도로에서 발생하는 점유 공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공사 편의성 위주가 아닌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과 통행권 확보를 위해 도로점유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교통소통대책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시행자는 변경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함(제6조제4호)
- 나. 점검자가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시 필요할 경우 자문회의 위원을 대동할 수 있음(제8조제3항)
- 다. 자문회의는 총 공사비 100억이상 또는 도로점용 1년 이상 공사에 대해 모니터링 또는 현장이행여부를 공사시행자 및 발주부서에 요청할 수 있음(제9조제8항).
- 라. 총 공사비 100억 이상 또는 도로점용 1년이상 공사를 시행한 자는 공사완료 6개월 전 교통운영 계획을 포함한 도로의 복구계획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제출된 복구계획 보고서는 자문회의에서 의결함(제13조제1항).

서울특별시조례 제8267호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도시 및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3.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흡수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4. “국제협력”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적·기술적·재정적 지원 또는 외국도시 및 국제기구 등과 참여하는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공동조사·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은 기후위기가 인류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개발도상국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탄소중립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적·기술적·재정적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탄소중립과 관련한 국제협상 등의 동향과 주요 국가 및 도시들의 관련 정책을 수집·분석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제협력 증진) ① 시는 외국도시 및 국제기구 등과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개발도상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등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는 국내·외 기관·단체 및 대학 등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국제협력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국제규범 대응) ① 시는 국제기구 등에서 재정하거나 도입하려는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제도·정책에 관한 동향과 정보를 수집·조사·분석하여 관련 제도·정책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제1항의 동향·정보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는 정부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파리협정」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 지원) 시는 개발도상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 지원, 인프라 구축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 등 국제협력 사업

②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기술지원, 투자 및 구매 등의 사업

③ 탄소흡수원의 조성·확충사업 및 온실가스 흡수능력 개선사업 등의 지원

제8조(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국제규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협력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2. 국제협력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훈련과정의 개발·운영

3. 그 밖에 전문인력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국제협력 체계 구축) 시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기관·단체·대학 또는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폭을 줄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도시 및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기본원칙을 규정함(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제4조).

다. 국제협력 증진, 국제규범 대응, 탄소중립 지방도시 실천연대 참여, 개도국 지원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노력,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규정함(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서울특별시조례 제8268호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용” 을 “사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보전·관리” 를 “보전 및 관리” 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지구전체” 를 “지구 전체” 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조를” 을 “조성을” 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의회” 를 “서울특별시의회”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을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환경훼손의” 를 “환경훼손에 관한”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환경보전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 중 “절약과 재활용 및” 을 “절약 및 재활용과” 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환경시책” 을 “환경보전시책” 으로, “시에서” 를 “시가” 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시에” 를 “시” 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을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을 “사업 시행에 드는” 으로, “방법” 을 “방안”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배치되지” 를 “어긋나지” 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이의 유지” 를 “이를 유지하기” 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에 의한” 을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을 “(공공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강구” 를 “마련” 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강구” 를 “마련”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공시설” 을 “공공환경시설” 로, “사업의 실시에 있어” 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로, “강구” 를 “마련” 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소요되는” 을 “드는” 으로, “강구” 를 “마련”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요되는” 을 “드는” 으로, “범위 안” 을 “범위”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행하는” 을 “수행하는” 으로, “필요한” 을 “대해 필요한” 으로, “범위 안에서 포상 할” 을 “범위에서 포상할” 로 한다.

제23조 중 “강구” 를 “마련” 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시책에 대하여” 를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 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으로 한다.

제24조의2제2항제5호 중 “정하는” 을 “인정하는” 으로 한다.

제24조의3 중 “자치구로부터” 를 “자치구에서” 로, “협약” 을 “시 또는 자치구와 협약” 으로, “책임” 을 “대하여 그 책임” 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을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해”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루어 질” 을 “이루어질” 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강구” 를 “마련” 으로 한다.

제26조의2제2항제3호 중 “법령” 을 “그 밖에 법령” 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환경교육·홍보활동에” 를 “환경교육·홍보활동의” 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감시·측정” 을 “감시·측정”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를 “제1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을 “제1항에 따른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추진현황” 을 “추진에 관한 사항”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상위법령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 어문 규정 미준수 사항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조례 이해도를 높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근거를 명확히 함(제15조제1항).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함.

서울특별시조례 제8269호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이륜차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구매 지원을 해야 한다.

1.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사후 수리체계 구비 여부
2.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사후관리 확약 보험증서나 보험증권 및 공제증권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여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전기이륜차 구매자가 전기이륜차의 결함, 고장에 대해 제조·수입사로부터 적절한 사후관리를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리체계를 구비한 제조·수입사의 전기이륜차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해 전기이륜차 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시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사후 수리체계 구비 여부 및 사후관리 협약 보험증서 또는 보험증권 및 공제증권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확인 후 지원

서울특별시조례 제8270호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를 “수급권자”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에너지의”를 “인하여 에너지의”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에너지공동체”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마을단위 주민주도의 에너지 절약·효율향상을 통해 에너지 소비는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는 마을공동체를 말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홍보의”를 “교육·홍보”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에너지계획”을 “서울특별시 에너지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을 “집단에너지공급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추진사항”을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에너지이용”을 “그 밖에 에너지이용”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위원회의”를 “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지속 가능한”을 “지속가능한”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위해”를 “위하여”로, “대하여는”을 “대해”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제반”을 “모든”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속 가능한”을 “지속가능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개보수시”를 “개보수 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를 “제2항에 따른”으로, “제품을,”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보다”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보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만드는”을 “만든”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의 변동으로”를 “사용량의 변동으로 인하여”로, “기하기”를 “도모하기”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20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을 “각 호의 사항을”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자에 대하여”를 “자를”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에너지 백서”를 각각 “에너지백서”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제시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 어문 규정 미준수 사항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조례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뜻을 명확히 제시함(제3조제9호).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함.

서울특별시조례 제8271호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관리법」”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기물관리법」으로,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을 “따라”로, “에 대하여”를 “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후생복지 증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한, 이에 응하여야”를 “한 이를 따라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위해”를 “위하여”로, “설치해야 할”을 “설치할”로 한다.

제3조의 제목 “(폐기물의 광역관리)”를 “(폐기물의 광역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폐기물관리법 시행」 제5조”를 “법 제5조”로, “위탁”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위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로, “따른”을 “따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를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를 “서울특별시가 법 제6조”로, “시가 반입수수료를”을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소요되는”을 각각 “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이 조례 제6조제2항제2호”를 “제6조제2항제2호”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의2 중 “위해”를 “위하여”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를 “영 제2조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관하여”를 “있어”로, “등,”을 “등에 관하여”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를 “시장은 법 제39조”로, “시장은 관계공무원”을

“관계공무원”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 을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로 하고, 같은 조 제 2항 중 “제1항의” 를 “제1항에 따른” 으로, “신고에 의하여” 를 “신고로” 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이루어 지도록” 을 “이루어지도록” 으로 한다.

제13조 중 “과태료의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을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상위법 근거를 바로 잡으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 어문 규정 미준수 사항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조례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근거를 정정함(제3조).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함.

서울특별시조례 제8272호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절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원순환사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말한다.
3.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燄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4.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5. “순환이용”이란 폐기물의 수집·분리·선별·파쇄·압축·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연료·열·전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을 말한다.
6. “자원순환산업”이란 폐기물을 최대한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제도를 연구·개발하는 산업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의 산업을 말한다.
7. “자원순환시설”이란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거나 폐기물을 활용하여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물질 또는 물건을 생산·가공·조립·정비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장비·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호 중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발생된”을 “제1호에도 불구하고 발생된”으로, “곤란한”을 “어려운”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사용억제 등에” 를 “사용 억제 등에 대해” 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를 “제1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항의” 를 “제1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아니하도록 하여야” 를 “않아야” 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 를 “그렇지 않다”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자” 를 “사람”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을 “의원”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임명하고” 를 “임명되고” 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에 대하여” 를 “사항을”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10조의” 를 “제10조에 따른”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15조제1항의” 를 “제16조제1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를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사용억제, 자원의” 를 “사용 억제, 자원” 으로, “위해” 를 “위하여”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위해” 를 “위하여”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억제” 를 “사용 억제”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하여 제시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 조항을 바로 잡으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 어문 규정 미준수 사항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조례 이해도를 높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함(제2조).

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 조항을 정정함(제12조제2호).

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함.

서울특별시조례 제8273호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으로, “정함” 을 “규정함” 으로, “실천하도록 하는” 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원할 책무를 진다” 를 “지원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계획” 을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이 제1항의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을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수립 시” 로, “환경교육 관련 분과위원회” 를 “환경교육분과위원회”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를 “제1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요청 할” 을 “요청할” 로, “요청을 받은 경우” 를 “이 경우” 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따른” 을 “따라” 로, “의뢰 할” 을 “의뢰할” 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 사항에 대해서는” 을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환경교육실시” 를 “환경교육에 대한”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피고용자에 대한” 을 “고용된 사람에게” 로, “제공한다” 를 “제공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등)” 을 “(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운영을” 을 “지역환경교육센터를”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제1항의” 를 각각 “제1항에 따른” 으로, 같은 항 중 “제5항의 세부지정요건” 을 “제5항에 따른 세부 지정요건”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위하여 제9조제1항의” 를 “위하여” 로, “지역환경교육센터에게” 를 “지역

환경교육센터에” 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예산의 전부” 를 “경비의 전부”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분과위원회 명칭을 명확히 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 어문 규정 미준수 사항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조례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과위원회 명칭을 명확히 함(제3조제3항).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함.

서울특별시조례 제8274호

서울특별시 청원경찰의 직무운영 및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청원경찰의 운영 및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원경찰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에 임용되어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하여 배치된 경찰을 말한다.
2. “정원관리부서”란 청원경찰의 정원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청원경찰이 배치되는 부서로서 청원경찰의 직무를 지휘하고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조례는 서울시 본청, 시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단체협약이나 「청원경찰법」,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에 관한 법」 및 「경찰공무원복무규정」 등에서 달리 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하고 안정된 노동환경을 조성하여 청원경찰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고 권익이 보호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시 본청, 시의회사무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청원경찰을 사용하는 관리부서는 청원경찰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의 현장 대응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적 요소에 대한 사항
2. 청원경찰의 야간순찰근무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적 요소에 대한 사항
3. 청원경찰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원경찰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하여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범위)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인 안내 및 출입자 단속
2. 도난, 화재, 재난 등 위험발생 예방을 위한 경비 및 선·후 조치
3. 기관 내 근무 직원의 안전 및 시설물 등 이상 유·무 순찰 확인
4. 기관 내 차량의 주차질서확립 및 교통 방해 요소 제거
5. 기관 내 공공의 안전과 관련한 기초질서 유지
6. 내·외부 주요 인사 경호
7. 점거농성 또는 민원인의 부서 무단 진입 시 민원인 휴대물품 육안 검사 등 보안 조치
8.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경비업무의 수행

제8조(정원책정요구와 승인) ① 관리부서의 장은 인력수요분석 및 직무분석 등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경찰 정원책정요구서를 작성하여 정물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물관리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장으로부터 청원경찰 정원책정요구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채용목적·인원·기간 등의 적정여부와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청원경찰 정원을 책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예산담당관 및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예산담당관은 청원경찰 정원책정승인서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정물관리부서의 장과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등) ① 청원경찰의 교육훈련은 인력개발과장이 총괄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소속 청원경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의 직무와 관련된 지식·기술 및 능력 배양을 위하여 필요한 직무교육
2.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교육
 - 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 나. 배치 시의 교육
 - 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 라. 유해위험 작업 시 특별안전교육
3. 연 1회 이상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
- ③ 청원경찰은 제2항에 따른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④ 교육여비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에 따른다.
- 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치 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⑥ 그 외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아래 사항 중 청원경찰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청원경찰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2인생 설계와 준비를 위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참여
 2. 국내 대학·대학원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직무와 관련한 자격증 시험 및 교육 관련 여비와 관련된 사항
4. 서울시가 시행하는 「효행공무원」 선정과 관련된 사항

제10조(보수 및 수당 등) 청원경찰의 보수 및 수당 등 경비는 청원경찰법령과 매년 경찰청에서 고시하는 청원경찰 경비 기준액에 따른다.

제11조(휴가)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다.

② 정년퇴직 예정자는 사회적응에 필요한 퇴직 준비를 위하여 퇴직하기 직전 1개월의 범위에서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복무상 의무) 청원경찰의 복무상 의무는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과 동법 제5조의2 제1항에 규정된 것에 한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원경찰 정원책정요구서					
채용목적 (구체적 기재)					
요구인원					
관련업무담당 일반직 및 기능직 수	일반직 직급별 정원		기능직 직급별 정원		
업 무 량	업무명	업무처리량 (일/월)	건(회)당 평균시간	총시간 (일/월)	비 고
채용기간					
소요예산	구 분	예산과목	소 요 액 (천 원)	산출기초	
	급 여				
	운영비				
재 원			예산부서 협의	예산담당관(인)	
향후대책					
「서울특별시 청원경찰의 직무·운영 및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원경찰 정원책정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관리부서의 장 : (인)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청 원 경 찰 정 원 책 정 승 인 서				
채용목적				
인원	요 구 인 원			
	승 인 인 원			
채용일자		채용기간		
소요예산	구 분	예산과목	소 요 액 (천 원)	산 출 기 초
	급 여			
	운영비			
승인조건				
기타사항				
「서울특별시 청원경찰의 직무·운영 및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원경찰 정원책정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인) 귀 하				

[별지 제3호서식]

청원경찰 정원 불승인 통보서

○○과에서 제출한 청원경찰 정원책정 요구 건은 다음 사유로 불승인 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청원경찰의 직무·운영 및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통보합니다.

- 다 음 -

요구일자	건 명	내 용	사 유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인)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조부터 제5조까지).
- 나. 청원경찰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청원경찰의 직무범위, 정원책정요구와 승인, 교육에 관하여 규정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 다. 청원경찰의 보수 및 수당, 휴가, 복무상 의무,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서울특별시조례 제8275호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1조부터 제8조까지 각각의 조문내용 중 “특정기술” 을 “특정제품” 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업체명·모델명·규격·사양·공법·신기술·특허” 를 “업체명·모델명·규격·사양” 으로 하고, “제품이나 공법” 을 “제품” 으로, “특정제품·특정공법 등” 을 “제품” 으로 한다.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재료원가 및 구매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특정기술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특정제품 중 동일 특정제품의 재료원가 합계가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품 제조·구매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 중 동일 특정제품의 제조·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3조제2항 및 같은 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관련 특정제품들 간에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방식의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특정제품
2. 천재지변,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선정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계약심사를 요청하기 전 해당”을 “해당”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선정심사 의뢰) 발주부서의 장은 해당 사업에 적용 가능한 특정제품들을 조사하여 심사 대상 특정제품 후보군(최소 3개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3개 미만인 경우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한다)을 마련하고 이들 중 해당 사업에 가장 적합한 특정제품의 최종 선정을 규칙이 정하는 신청양식에 따라 위원회에 의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행안안전부(이하 ‘행안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으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이 예규 내에 마련됨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 대상 및 범위, 용어 등의 수정을 통해 특정제품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행안부 예규 개정에 의해 특정기술에 해당하는 특정제품과 특정공법 중 특정제품에 대한 선정기능만을 갖게 되어 제명 중 ‘특정기술’을 ‘특정제품’으로 변경함.
- 나. 행안부 예규 개정에 맞추어 ‘특정기술’을 ‘특정제품’으로 변경함(제1조부터 제8조까지).
- 다. 특정제품 심사대상 중 해석상의 혼돈을 해소하고자 재료원가 및 제조·구매금액을 통해 심사대상을 한정함(제3조제1항).
- 라. 특정제품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대상에 현실여건을 반영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긴급 상황에 대한 신속성을 높이하고자 함(제3조제2항).
- 마. 특정심사 대상에 대한 혼돈을 방지하고자 함(제5조제1항).

서울특별시조례 제8276호

서울특별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인종”을 “국적·인종”으로 하고, “받지 아니한다.”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청소년 정책의 성격 및 예산의 목적 등에 따라 구체적 복지 지원 사업의 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로 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청소년 관련 조례는 “청소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 국적 청소년에 대한 차별을 배제하기 위해 ‘국적’을 추가하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청소년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조항에 ‘국적’을 추가하되, 국적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차별을 효과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정책의 성격, 예산의 목적 등에 따라 사업대상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4조제2항).

서울특별시조례 제8277호

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5년” 을 “3년”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에서 명시하고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운영에 필요한 배치인력의 실무기준이 완화된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심폐소생술 교육운영에 필요한 배치인력의 실무기준을 완화하고자 함(제7조제2항제2호).

서울특별시조례 제8278호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2호 중 “저출산·고령화”를 “저출생·고령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저출산(低出產)’의 사전적 의미는 ‘아이를 적게 낳음’을 뜻하고, ‘저출생(低出生)’은 일정한 기간에 태어난 사람의 수가 적음’을 의미함. 따라서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인구감소의 원인과 해결책 마련에 있어서 여성을 객체로 평가하는 등 저출산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저출산’을 출생인구 감소 현상을 의미하는 중립적인 언어인 ‘저출생’으로 변경함으로써 저출산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함(제3조제1항제12호).

서울특별시조례 제8279호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을 “이 조례는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을 “「환경보건법」,”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시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을 “지역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종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을 세워야 한다.

③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환경보건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에 관한 현황
3.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4.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의 주민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5.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6. 지역계획에 반영된 시책의 시행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7. 그 밖에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법 제6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역계획의 사업 시행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⑤ 시장은 지역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제6항(중전의 제2항) 및 제7항(중전의 제3항) 전단 중 “계획”을 각각 “지역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4항) 및 제9항(중전의 제5항) 중 “관리계획”을 각각 “지역계획”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관리계획”을 “지역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하여야 하며, 해당 구청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해당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시장은 제1항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 제14조제4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시장은 제1항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⑦ 시장이 실시하는 제1항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지원 요청할 수 있다.
- ⑧ 환경유해인자 관련사업자(제1항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사의 원인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시장이 제1항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 ⑨ 누구든지(환경유해인자 관련사업자는 제외한다) 시장이 제1항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건강영향조사의 청원) ① 시민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다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관할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청원을 처리한다.

1.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경우
 3.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의 허가 등을 받아 설치·운영되는 사업장이 조사 대상인 경우
 4. 시장의 청원 처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청원을 심의할 때 해당 청원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심의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뚜렷이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청원법」에 따른다.

제13조(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이하 “건강영향조사반”이라 한다)의 반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환경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2. 환경보건, 인체독성, 환경매체 및 역학조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장은 건강영향조사반의 반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되어 활동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건강영향조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반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각각 정한다.

제14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시장은 법 제14조, 법 제15조제1항·제2항 및 법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련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이행에 필요한 경우 해당 환경부장관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 관리대책의 수립·이행) ① 시장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1. 환경매체별 환경오염관리 방안
2. 환경유해인자의 배출 관련 모니터링 방안
3. 수용체의 건강상태 평가 및 건강피해 저감 방안
4. 대책의 추진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대책을 수립한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7조를 제21조로 하며, 제18조를 제22조로 한다.

제19조를 제23조로 하고, 제20조를 제24조로 하며, 제21조를 제25조로 한다.

제22조를 제26조로 하고, 제23조를 제27조로 하며, 제24조를 제28조로 한다.

제25조를 제29조로 하고, 제26조를 제30조로 하고, 제27조를 제31조로 하고, 제15조를 제19조로 한다.

제19조(중전의 제15조)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중전의 제3호) 중 “제13조”를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중전의 제4호) 중 “제26조”를 “제30조”로 한다.

3. 제12조 청원에 관한 사항
4. 제13조 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제14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6. 제15조 관리대책 수립·이행에 관한 사항

제20조(중전의 제16조) 제3항제2호의 “대기기획관”을 “환경에너지기획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정성을 고려하여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의 청원, 건강영향조사반 구성·운영,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환경보건법」 개정사항을 반영·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종전 조례에서 정한 “관리계획”을 「환경보건법」에서 정의한 “지역계획”으로 용어를 정비(제7조 등).
- 나.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던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을 시장도 할 수 있도록 한 「환경보건법」 개정사항을 반영함(제12조).
- 다. 건강영향조사 청원이 있는 경우 건강영향조사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제11조 및 제13조).
- 라. 청원 조사결과에 따른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 마련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함(제14조).
- 마.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변경, 지역 환경보건의 증진을 위한 시책,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 등을 심의 사항을 반영함(제19조).

서울특별시조례 제8280호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 를 “(정의)”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민간화장실” 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제4조제2항 중 “별표1” 을 “별표” 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의 이용 편의 향상” 을 “이용편의 향상과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여성화장실의 변기 및 편의시설 확충 지원
- 3의3.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원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별표(중전의 별표 1)의 제목 중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조건표” 를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조건표(제4조제2항 관련)”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서울시 공중화장실 관련 여성용시설 확충,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항 규정(여성화장실 대변기 수 확충 사업,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등)과 자구수정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장은 개방화장실과 민간화장실의 위생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조례 제8281호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난임부부의 난임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부부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지원사업
2.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사업
3.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중단) 시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자치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난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제2조).
- 나. 난임극복 지원대상을 규정함(제5조).
- 다.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을 규정함(제7조).
- 라. 지원사업 종사자에 대한 비밀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규정함(제10조).

서울특별시조례 제8282호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 추천
8.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사무의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기능이 구체화되어 후견인 후보자 추천 및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등의 내용이 신설된바, 해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광역치매센터의 업무에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 추천 업무를 추가함(제3조의7).
- 나. 광역치매센터의 업무에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사무의 지원 업무를 추가함(제3조의8).

서울특별시조례 제8283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2 중 “중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을 “내버려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 “맹견” 이란” 을 “ “맹견” 이란 사람의” 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따라 등록된” 을 “따른” 으로, “또는 인식표” 를 “를” 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동물보험료 또는 동물의료비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 자치구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21조에 따라 처리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제24조의 제목 “(동물보호업무의 지원)” 을 “(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조·보호·분양 및 동물 복지와 동물등록 등” 을 “구조·보호와 입양, 동물학대 방지, 동물등록, 반려동물의 교육·홍보 등 동물보호·복지 시책” 으로, “영업자” 를 “영업자,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위해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제2항(중전의 제3항) 중 “시장” 을 “시장 또는 구청장” 으로, “법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를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 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시장” 을 “시장 또는 구청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취약계층에 대하여 반려동물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적절한 보호 및 취약계층의 심신안정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나, 향후 사업의 활성화를 고려해 취약계층의 정의를 삭제하고, 지원대상을 단체·기관으로 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시행 중인 유기동물의 입양사업의 내용을 반영해 관련 문구를 수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이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와 치료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24조제4항).
- 나. 조례 문구를 정비하고, 현재 기시행중인 유기동물의 입양사업에 대한 관련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 (제2조제1호의2, 제6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24조 및 제26조).

서울특별시조례 제8284호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마을자원”이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에 투입한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 등을 말한다.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주민참여도 등 마을자원에 대한 인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시가 주민자원 활용을 촉진시키고 마을공동체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증조사를 바탕으로 한 적정한 주민자원 인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을자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제2조제4호).

나. 시장이 주민참여도 등 마을자원에 대한 인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4조제2항).

서울특별시조례 제8285호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과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 중 “ ‘법’이라 한다.”를 “ “법”이라 한다”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를 “(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 ‘기부증서’라 한다.”를 “ “기부증서”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 ‘시’라 한다.”를 “ “시”라 한다”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기부문화 활성화) 시장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2. 기부관련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
3. 그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제1항 중 “법제5조제2항”을 “법 제5조제2항”으로, “기부심사위원회”를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부자”를 “위원회는 기부자”로, “사항을 ‘기부심사위원회’가 심의한다”를 “사항을 심의한다”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위원회의 구성·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그밖”을 “그 밖”으로 한다.

제12조 중 “세부 시행”을 “시행”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에는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조문에는 기부문화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없고 수동적인 기부자 예우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문화 활성화 부분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은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제1조의2).
- 나. 시장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홍보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함(제5조의2).
-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개정 함(제4조제1항, 제5조제2호, 제6조제1항, 제7조, 제12조).

서울특별시조례 제8286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3제2항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를 “법 제52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위원”을 “위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영 제25조제2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용도지역의 변경(영 제30조 각 호의 세분 또는 변경 및 제30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을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간의 용도지역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42조의3제2항제12호 후단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을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한 토지가액 차이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대규모 유희부지 등의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시 협상조직 중 외부전문가에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을 포함하여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역 전략거점 육성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상조정협의회 외부전문가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포함하도록 함(제6조제2항 제3호).

나.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사항 반영(제2조제1항제4호, 제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0조제3항).

서울특별시조례 제8287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산업자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지역생산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하기 7일 전까지 일시와 사유, 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조사 대상 지역건설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한 뒤 그 결과를 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공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자의 하도급 비율을 100분의 6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지역건설산업종사자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종사자의 안전·보건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 의식을 복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및 무재해운동 추진
2.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발생원인 등의 기록·보존
3.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 및 교육 강화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사회 인프라시설 확충으로 인한 건설 시장의 축소와 수익성 저하로 위축되어가는 산업 환경에서 서울시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원하여 서울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공사의 경우 지역건설사업자의 하도급 비율을 100분의 60 이상으로 함(제5조제3항).
- 나. ‘지역건설노동자’ 를 ‘지역건설산업종사자’ 로 용어를 정비하고, 시장이 지역건설산업종사자의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제9조의2).
- 다. 시장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 1회 이상의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조문번호를 제4조의2로 변경함(제9조의3).

서울특별시조례 제8288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도로(차도·보도) 및 도로시설물”을 “도로”로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로서, 차도와 보도(도로시설물 내 차도와 보도 포함), 도로시설물을 말한다.
2. “도로시설물”이란 교량·터널·고가차도·입체교차 및 지하차도 등을 말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도로(차도·보도) 및 도로시설물, 공동구, 하천복개구조물, 하천(하천구역 및 하천시설), 하수도”를 “도로, 공동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로(차도·보도)”를 “차도·보도”로 한다.

제2장 제목 “도로(차도·보도) 및 도로시설물”을 “도로”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도로(차도·보도) 및 도로시설물”을 “도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로(차도·보도) 및 도로시설물”을 “도로”로, “도로시설물”을 “도로”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도로·도로시설물”을 “도로”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주요시설물 관리기관(제5조 관련)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도로	서울특별시도	○ 도로시설물 중 한강교량,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안전총괄실장
		○ 차도관리(버스전용차로,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전용차로 포함)	도로사업소장
		○ 도로시설물(한강교량,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제외)	
	자동차전용도로	○ 보도관리(측구,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겸용 도로 포함)	자치구청장
		○ 차도 및 보도의 청소(낙하물을 포함하되 터널·지하차도 내 기계화청소가 불가능한 낙하물은 제외)	
도로부속물	자동차전용도로	○ 차도 및 보도 관리(청소 포함)	안전총괄실장
		○ 녹지 및 가로수	
		○ 도로시설물	안전총괄실장
	공동구	○ 공동구	안전총괄실장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	○ 서울특별시도(자동차전용도로 포함)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생태통로 포함)	자치구청장
	가로등·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 자동차전용도로의 가로등·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안전총괄실장
		○ 서울특별시의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도로사업소장
		○ 서울특별시의도의 가로등	
	나머지 도로부속물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과속방지시설·미끄럼방지시설·충격흡수시설·낙석방지망·절개지·도로옹벽·방음벽·맨홀 등)	○ 서울특별시의도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에 대한 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자치구청장
		○ 자동차전용도로(차도 및 보도)의 나머지 도로부속물	안전총괄실장
		○ 서울특별시도(차도)의 나머지 도로부속물(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차로 포함)	도로사업소장
		○ 서울특별시의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나머지 도로부속물	
교통관리시설	지능형교통체계	○ 교통정보의 수집, 제어, 가공, 제공시스템 및 관련 설비와 긴급연락시설	도시교통실장
	버스전용 차로 단속 시스템	○ 버스전용차로(중앙 및 가로변) 유·무인 단속시스템	도시교통실장
	도로표지	○ 문안검토	도시교통실장
		○ 자동차전용도로의 도로표지	안전총괄실장
		○ 서울특별시의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도로표지	도로사업소장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표지	자치구청장
교통 안전 시설	신호기 · 안전표지	○ 지침운용,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총괄	도시교통실장
		○ 자동차전용도로의 안전표지 ○ 서울특별시도의 노면표시	안전총괄실장
		○ 서울특별시도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 ○ 신호기 공사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 관할 도로의 안전표지 설치	도로사업소장
		○ 구 관할 도로의 안전표지 설치 및 관리	자치구청장
교통 안전 관련 도로 부속물	시선유도표지 · 시 선유도봉 · 갈매기 표지 · 도로반사경 · 차량진입금지시 설 및 무단횡단금지 시설, 교통섬 등	○ 지침운용,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총괄	도시교통실장
		○ 자동차전용도로의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안전총괄실장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 서울특별시도의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보도의 차량진입금지 시설 · 교통섬 제외, 중앙 및 환승정류소 보도관리 포함)	도로사업소장
		○ 서울특별시도(보도)의 차량진입금지시설, 교통섬	자치구청장
하 천 시 설	한강	○ 한강의 제방, 호안, 수제, 보, 관측시설 등 ○ (육)갑문의 구조물, 조명시설 및 진입로 시설물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밀점검, 정밀안전진 단 등	한강사업본부장
		○ (육)갑문의 문짝, 권양기 시설물, 통로청소, 수문개폐	자치구청장
	국가 및 지방 하천(한강 제외) · 국가 및 지방 하천 이외 하천	○ 제방, 호안, 수제, 보, 관측시설 등 ○ 빗물펌프장(유수지 포함)의 구조물, 배수펌프 및 부대시설물 ○ 호안블록, 옹벽, 도수로, 우수토실시설 및 부대시설물 등 ○ 수문의 구조물 · 문짝 · 권양기 등 관련 시설 ○ 갑문의 구조물 · 문짝 · 권양기 · 통로청소 · 수문개폐 등 ○ 갑문의 조명시설 및 진입 · 진출로 시설 ○ 그 밖의 하천시설	자치구청장
하 수 도	공공하수 처리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물재생센터소장 (위탁업체대표)
	차집관거	○ 차집관거 및 부대시설	물재생센터소장 (위탁업체대표)
	하수관거	○ 하수관거 및 부대시설	자치구청장
복개 구조물	하천복개구조물	○ 도로기능 하천복개구조물	도로사업소장 또는 자치구청장
		○ 도로기능 외 하천복개구조물	주 기능별 설치사용자
비 고 : 위 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시설물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청계천 제외지(堤外地)와 청계천 복개구간의 개구부(開口部) 수문 : 물순환안전국 나. 청계천로(태평로에서 고산자로 사이에 위치한 도로 부분을 말한다) 천변 측에 설치된 방호울타리 :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안전총괄실장 다. 하천과 공원 내 자전거도로는 하천과 공원 관리자를 자전거도로 관리자로 함 라. <삭 제> 참고1) “차도”란 보·차도 경계측구를 제외한 포장층을 말함. 참고2) 도로부속물의 “절개지”란 도로 개설로 인하여 절토된 부분의 비탈면을 말함.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도는 도로(차도·보도)와 도로시설물로 구분하여 관리기관과 청소업무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나 도로시설물 내 차도·보도의 청소업무에 대한 담당기관이 명확히 지정되어 있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바, 도로의 차도·보도에 도로시설물 내 차도·보도를 포함토록 하여 서울특별시도의 도로 청소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터널·지하차도의 기계화청소가 불가능한 낙하물 처리는 지하도로의 낮은 시인성으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어 터널·지하차도를 관리 및 상시 모니터링하는 도로사업소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로의 정의에 차도와 보도(도로시설물 내 차도와 보도 포함), 도로시설물을 포함토록 함(제3조제1호).
- 나. 낙하물 처리를 포함한 차도·보도의 청소는 자치구청장이 하되 터널·지하차도의 기계화청소가 불가능한 낙하물 처리는 제외토록 함(별표 1).

서울특별시조례 제8289호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한 운행과 승강기 이용 시민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강기”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승강기 유지관리”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가 그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 각 목의 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 가. 주기적인 점검
 - 나.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수리
 - 다. 승강기부품의 교체
 - 라. 그 밖에 시장이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관리 활동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승강기의 안전관리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승강기 안전관리 사업) ① 시장은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승강기 안전관리 기반시설 확충 사업
 2. 승강기 관련 기술개발 지원 사업
 3.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 구성·운영
 4. 산업체,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 사업
 5. 승강기 안전관리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 훈련 사업
 6. 서울특별시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승강기 관련 중대시민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7.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 및 그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승강기 안전관리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승강기 안전관리를 영위하는 자,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기술개발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승강기 안전관리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는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승강기 안전관리 부실의 사전예방과 이용자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이하 “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점검단의 규모는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점검은 2인1조를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승강기안전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점검단의 전문위원은 승강기 제조·유지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승강기의 관리와 관련된 공공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전문위원 후보를 추천받을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퇴직공무원으로서 건축·안전관리·기계·전기 등 분야에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수석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인 사람

3. 승강기 관련분야(제조·유지관리 등) 5년 이상 재직인 사람

⑤ 점검단의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만료 시 위촉이 자동해제 된다. 다만 시장은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실태점검의 대상·범위 및 운영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점검활동을 한 전문가에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승강기안전관리 지원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안전한 승강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 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승강기의 안전관리 방향 및 목표

2. 제4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승강기 안전관리 사업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승강기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승강기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 업체 대표자 및 임원
 3. 승강기 안전관리공단 및 승강기 관련 협회 임직원
 4.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수석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승강기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회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승강기안전관리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 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내 승강기 뿐 아니라 서울특별시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서울특별시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승강기 관리에 용이하고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승강기 및 승강기 유지관리에 대한 정의를 명시함(제2조).
- 나.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관련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제4조부터 제5조까지).
- 다. 서울형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정의 및 인증을 규정함(제7조).
- 라. 승강기 안전관리 부실의 사전예방 및 이용자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 운영사항을 규정함(제8조)
- 마. 승강기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기능·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제9조부터 10조까지).
- 바. 승강기 안전관리 자문위원회의 자문범위를 수정하고, 자문위원으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교수 또는 연구원으로 재직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제9조 및 제10조).

서울특별시조례 제8290호

서울특별시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주택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건축물 및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건축물 인허가 정보, 건축물 에너지정보, 공간 및 지역 정보 등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등에 규정된 건축·주택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주택 정보”란 건축물 및 주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 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인허가에 관련된 정보
 - 나.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 건축물생애이력에 관련된 정보
 - 다.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거래 가격과 관련된 정보
 -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과 각종 인허가 정보
 - 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의한 공간 정보와 관련된 정보
 - 바. 그 밖에 건축물 및 주택과 관련된 정보
2.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이란 건축·주택 정보와 별표에 규정된 각종 시스템상의 정보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주택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주택 정보를 수립·처리·관리하기 위하여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건축·주택 정보의 관리·활용을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 및 생애주기 관리, 서민주거 안정 및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축·주택 정보의 수집, 처리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건축·주택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스템의 발전과 개선을 위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스템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건축·주택 정보의 활용 및 정책 연계 방안
3. 시스템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스템의 보급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항
5. 시스템의 공간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
6. 시스템 사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건축·주택 정보화 기본계획의 실현을 위해 시스템의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제2장 서울특별시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제7조(시스템 운영의 전담 조직 설치) ① 시장은 건축·주택 정보의 수집·분석과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담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건축·주택 정보 수집 및 분석
2. 건축물 및 주택의 공급·멸실량 분석
3. 공공주택의 건설·공급량 분석
4. 주택·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및 동향 분석
5.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가 분석
6. 시스템 운영관리, 유지보수 사업관리
7. 그 밖에 건축·주택 정보 관리·분석과 관련된 업무

제8조(시스템 구축·운영에의 협조) 제7조제1항의 전담 조직은 제3조의 시스템 구축·운영과 제7조제2항의 건축·주택 정보 관리·분석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별표에 해당하거나 이와 관련된 시스템을 운영하는 행정기관에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전문기관과 협력사업 추진) 시장은 시스템의 전문적 운영 및 건축·주택 정책과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건축·주택 정보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연구기관·교육기관·관련협회) 등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택 빅데이터 기반 시스템 전략수립 및 분석, 교육 등
2. 데이터 과학 및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공지능, 기계학습 기법 등을 활용한 주택시장 모니터링 및 관리
3. 그 밖에 건축·주택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10조(건축·주택 정보의 활용)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스템을 활용하여 생성되는 자료를 서울시 건축·주택 및 부동산 정책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 시민에게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건축·주택

정보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가 포함된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를 분리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사항을 분리·제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 ③ 건축·주택 정보의 시민제공을 위한 방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8조를 준용한다.

제11조(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① 시장은 공무원의 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하여 건축·주택 정보 등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주택정보의 교육과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건축·주택정보의 교육과 전문 인력 양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구기관·교육기관·관련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건축·주택 정보와 관련된 시스템(제2조제2호 관련)

연번	근거 법률	시스템의 명칭
1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2조제1호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2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2조제3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3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2조1호	한국감정원 K-apr정보시스템
4	「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 제2조제1항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제1호	기존무허가관리시스템
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빈집정보시스템
7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조제10호	서울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서울 부동산정보광장
9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9조제1항	클린업시스템
10	「도시계획정보체계(UPIS)구축 및 운영 규정」 제3조제1호	도시계획정보시스템
11	「공공주택 특별법」 제51조제3항	서울주거포털
12	「주택법」 제88조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HIS)
1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14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6조	항공사진서비스와 3차원 공간 정보시스템, 서울 통합공간정보시스템(SDW)
15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4조제1항	서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NSDI)
16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항공사진서비스
17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3차원 공간 정보시스템
18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운영규정」 제2조제1호	공간정보오픈 플랫폼(브이월드)
19	「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3조제1호	국토정보플랫폼
20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65조	네트워크RTK 시스템

연번	근거 법률	시스템의 명칭
21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	서울 공공성지도 시스템
22	「건축물관리법」 제7조제1항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2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	시설물정보종합 관리시스템(FMS)
24	「전기사업법」 제19조	한전 i-smart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정보는 개별 법령상(건축법, 주택법 등)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어 통합적인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특히, 서울시의 경우 전국적인 건축·주택정책의 모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택정보의 종합적, 세부적인 취합과 관리가 되지 않아 정책수립이 제한되고 있으며, 급격하게 변화하는 주택시장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서울시만의 고유한 건축·주택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건축·주택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건축·주택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제6조)
- 나.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담 조직의 업무(제7조)
- 다. 정보시스템 관리 위탁 근거를 삭제하는 대신, 시스템의 전문적 운영과 활용을 위하여 전문기관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9조).
- 라.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되는 정보시스템(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8291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영 제3조에”를 “영 제3조, 이 조례 제3조에”로 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을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노후·불량건축물)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조례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 내에서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로 보는 경과연수 기준은 20년으로 한다.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에 따라 관리지역 내 노후·불량건축물의 수는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57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같은 조 제6항과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3조제1항제4호가목 단서에 따라 시·도조례로 증감하는 역세권의 범위는 250미터로 한다.

⑦ 규칙 제2조제2항 대괄호 안에서 “시·도조례로 달리 정하는 기준”은 8미터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의 예정구역 지정 등) ① 영 제15조의4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30조에 따른 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거쳐야 한다.

1. 법 제49조의2제1항 및 영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는 경우

② 규칙 제7조의2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는 제1항에 따른 제

30조의 위원회 자문 관련자료를 말한다.

제25조제1항 중 “제3항” 을 “제6항” 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도시재생위원회의(이하 "시 도시재생위원회"라 한다)” 를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시 도시재생위원회"라 한다)의” 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시 도시재생위원회로 한다.

제38조 제1항 및 제2항 중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을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으로 한다.

제44조의2(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비율)를 제44조의4(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비율)로 하고, 제 44조의2와 제4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38조의3제6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계획 명칭의 변경
2. 제30조에 따른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3.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제44조의3(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 영 제38조의4제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3호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건축자산 및 한옥 등 역사·문화자산의 보존 및 활용계획(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3.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9조제2항제1호의 “사업시행구역 면적(정비기반시설 설치면적을 포함한다)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해당 지역 용적률을 곱하여 대지면적(정비기반시설 설치면적을 제외한다)으로 나눈 용적률로 하되” 를 “ $(1+1.3\alpha) \times$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에 따른 용적률, 여기서 α 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을 말하며, 이 경우 관리지역 외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서는 각각” 으로 하고, 제2호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해당지역” 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에 따른” 으로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통합 시행) 영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 거점사업의 통합 시행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을 “용적률(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용적률)” 로 한다.

제50조의2 본문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영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제30조에 따른 통합심의 위원회 자문 또는 심의에서 구역의 정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② 영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서, 제30조에 따른 통합심의 위원회 자문 또는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③ 제1항·제2항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할 때는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 체계를 고려하되 정주환경·경관·자연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곳은 대상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3(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등) 영 제4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그 밖의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공공임대산업시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업 관련시설 또는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권장업종과 관련된 시설로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산업 지원 또는 창업 지원, 영세상인 지원을 위해 임대로 공급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물 및 이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
2. 공공임대상가(「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3조제2호에 의한 상가로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영세상인 지원을 위해 임대로 공급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물 및 이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역세권 범위 적용례) 제3조제6항의 역세권의 범위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적용하며,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역세권의 범위는 350미터로 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추가하며,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입지요건, 영세상인 지원을 위해 임대로 공급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물 및 공공임대상가 등의 건설이 가능토록 정하는 등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 내에서 다세대 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로 보는 경과연수와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유형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추가함(제2조제1항제4호).
- 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로 보는 경과연수를 20년으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을 57%로 완화함(제2조의2, 제3조제2항).
- 다.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입지요건을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로 하되, 3년 한시적으로 350m로 하고, 사업시행구역의 접도요건을 정함(제3조제6항·제7항, 부칙 제1조·제2조).
- 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예정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1조의2).
- 마. 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심의토록 함(제30조제3항).
- 바.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 공급기준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추가함(제38조제1항 및 제2항)
- 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제44조의2), 관리계획 내용에 포함할 사항을 정함(제44조의3).
- 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산정방법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에서 정한 산정식과 같게 정함(제49조제2항제1호).
- 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거점사업의 통합시행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해 시장이 정하도록 함(제49조의2).
- 차. 공공임대주택을 10퍼센트 이상 건설하고,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완화 용적률과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완화 용적률을 더하여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함(제50조제1항제2호).
- 카.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도지역 변경 가능 범위와 고려사항, 대상지 제외사항 등을 정함(제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 타.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주택 외에도 시장 또는 구청장이 산업 지원 또는 창업 지원, 영세상인 지원을 위해 임대로 공급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물 및 공공임대상가 등의 건설이 가능토록 정함(제50조의3).
- 파. 인용조항을 정비함(제25조제1항).

서울특별시조례 제8292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영 제3조의5 및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소 생활 실 면적은 전용공간만 조성하는 경우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전용공간에 개별 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 9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전용공간은 외기에 창문을 설치해야 하고 창문크기는 탈출 가능한 유효 폭 0.5미터 이상, 유효 높이 1.0미터 이상 크기로 설치할 것

제2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43조에서 정하는 공개공지 등으로서 기후 여건 등을 고려해 건축물 내부공간을 활용하여 조성되는 공개공간(이하 “실내형 공개공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일반인의 접근이 편리하고 다수 공중이 이용가능한 공간으로 설치

나. 최소면적 150㎡이상인 경우 : 최소폭 6m이상, 최소높이 : 층수 2개층 이상

다. 최소면적 500㎡이상인 경우 : 최소폭 9m이상, 최소높이 : 층수 3개층 이상

라. 최소면적 1,000㎡이상인 경우 : 최소폭 12m이상, 최소높이 : 층수 4개층 이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기재사항 변경 포함)을 신청(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와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다중생활시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4호거목에서 최소 생활 실 면적 및 창설치 등의 기준을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기준을 신설함.

실외 공개공지의 한계를 개선하고, 실내 활동이 높은 도시민의 생활을 고려하여 시민에게 보행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실내형 공개공간” 도입 필요에 따라 다양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내 보행 활동 확보 공간 및 보행자가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실내 공공공간 마련.

2. 주요내용

가. 최소 생활 실 면적을 규정함(제3조의2제1호).

나.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을 규정함(제3조의2제2호).

다. 실내형 공개공간을 정의하고 최소면적·최소폭·층수 등 설치기준을 마련함(제26조제2항제7호).

라. 다중생활시설 관련한 개정규정은 조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토록 하고, 적용례를 마련함(부칙).

서울특별시조례 제8293호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에 대한 침입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
5.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제8조제3호 중 “범죄취약지역”을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8조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방범시설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시장은 방범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중전의 제10조) 중 “서울지방경찰청”을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강력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범죄 취약지역 및 가구에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방법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여 범죄로부터 위험요소를 줄임으로써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침입범죄와 방법시설에 대한 정의를 명시함(제2조).

나.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사업에 방법시설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신설함(제8조의5).

다. 시장은 범죄에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방법시설 등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제9조).

서울특별시조례 제8294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 중 “정비사업클린업시스템”을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및 제4항 중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추진하기 어렵다고”를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추진하기 어렵다고”로 한다.

제30조제4항 중 “법적상한초과용적률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용적률”을 “법 제101조의6 제1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용적률”로 한다.

제49조제1항제3호 중 “(해당구역의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였거나, 완료된 구역으로 한정한다)”를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으로 하고, 제3호 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해당구역의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였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구역

나. 조정대상구역 중 이주가 완료되지 않은 구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기 시기조정 구역 가운데 이주계획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시기조정 심의를 재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주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가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항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같은 법정동 내에서 정비사업 이주계획이 중복되는 구역의 정의를 ‘관리처분계획인가 승인이 완료된 구역’ 또는 ‘조정대상구역 중 이주가 완료되지 않은 구역’으로 명확히 함(제49조 제1항제3호).

서울특별시조례 제8295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2조의3제2항제12호다목”을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로 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3(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사용 및 납부 등) ① 법 제52조의2제5항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 또는 구청장은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중 법 제52조의2제5항 전단에서 정하는 비용을 장미기집행 시설의 설치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비용 이외의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공공시설등 공급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에 우선 사용할 수 있다.
 - 가. 용도지구 중 고도지구, 경관지구, 취락지구
 - 나. 용도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 다. 가목부터 나목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으로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저층주거지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역
 3.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제1호 및 제2호의 범위에서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사용대상 세부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4.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 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설치 제공 또는 공공시설등 설치를 위한 비용 납부(이하 “공공기여”라 한다)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5. 도시계획국장은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중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②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감정평가를 통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전후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이내에서 결정하며,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산정방법은 제19조의2를 적용한다.
- ③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비용 납부액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을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는 건축허가 등 이전에 현금납부액, 납부방법 및 기한 등을 포함하여 시장 및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중 “평균층수 7층 이하. 다만, 사업계획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평균층수 13층 이하” 를 “평균층수 13층 이하” 로 한다.

제55조제14항제2호 중 “8년” 을 “10년” 으로 한다.

부칙(제7093호, 2019. 3. 28.) 제2조 중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을 “2025년 3월 27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제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의 층수를 완화하고,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사용 및 납부 등의 사항을 규정하며, 부칙 제7093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용적률 등에 관한 한시규정의 유효기간을 3년 더 연장함.

2. 주요내용

- 가. 국토계획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함(제19조제2항).
- 나.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국토계획법령에 따라 장기미집행 시설 설치에 우선 사용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공공시설등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사용하며, 공공시설등 사용기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제19조의3제1항).
- 다.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산정은 제19조의2를 적용하고, 감정평가를 통한 토지가액 차이의 범위 내에서 결정함(제19조의3제2항).
- 라. 설치비용 납부는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하되, 건축허가 등 이전에 비용 납부액 및 납부방법 등을 시장 및 구청장과 협약토록 함(제19조의3제3항).
- 마. 제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 건축 시에는 공공기여없이 평균층수 13층 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제1항).
- 바. 용적률 완화를 위한 민간임대 의무기간을 10년으로 함(제55조제14항).
- 사. 부칙 제7093호에서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용적률 등에 관한 한시규정의 유효기간을 2025년 3월 27일까지로 함(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

서울특별시조례 제8296호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중개보수의 한도(제2조제1항 관련)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000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000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000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 비고

1.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한도액보다 큰 경우에는 한도액으로 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의 전반적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 부담 가중으로 합리적 수준으로의 중개보수 개편 요구가 점차 증가했으며, 현행 중개보수 체계는 일부 구간에서 임대차의 중개보수가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개편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 조례의 중개보수 한도 규정을 정부의 개선안을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써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중개보수의 한도를 수정하고 비고 제2호를 삭제함(별표 1).

서울특별시조례 제8297호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서울시내 저층주거지역의 집수리 관련 통합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해 집수리 지원센터(이하 ‘중앙 집수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구청장이 자치구내 지역 집수리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집수리 지원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중앙 집수리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현재 서울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내에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을 위한 집수리 지원센터(이하 ‘중앙 집수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상 근거는 불비한 상황임. 이에 조례상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중앙 집수리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적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이 설치하거나 집수리 지원사무를 수행하는 지역 집수리 지원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 마련(제11조제2항).

나. 중앙 집수리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근거 마련(제11조제3항).

서울특별시조례 제8298호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11월” 을 “5월”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현행 가로수 점검시기가 매년 11월이나 이 시기에는 수목의 월동시작시기(낙과, 낙엽 등)로서 생육상태에 대한 관찰이 어려우므로 잎과 꽃 등의 생육관찰이 가능한 매년 5월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수목 생육관찰을 하고자 함. 또한 이 시기에는 동절기 염화칼슘의 피해여부도 관찰가능하며, 생육이상 수목점검 결과를 통해 여름철 태풍 대비에도 용이함.

2. 주요내용

가로수 정기점검 시기를 매년 5월로 변경함(제16조제3항).

서울특별시조례 제8299호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도시녹화계획은 녹지와 녹지의 연결성 향상을 통해 녹지들이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녹지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시가 외곽에 위치하는 중대규모의 산림 및 자연녹지들과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생활공원 녹지를 효율적으로 연결해 그린인프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의무를 명시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서울시의 관내 생활공원 녹지를 비롯한 산림 및 자연녹지들의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향 또는 노력 의무에 대해 규정함(제4조제2항).

서울특별시조례 제8300호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숲·생활숲의 산림 및 수목,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2. “생활숲”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3. “가로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
4. “관리청”이란 ‘도시숲·생활숲의 산림 및 수목, 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를 관리하는 각 목의 기관의 장을 말한다.
 - 가. 가로수는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에서 정한 관리청
 -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녹지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1조에서 정한 사무구분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자치구청장
 - 다. 그 밖에 도시숲등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의 도시숲등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은 도시숲등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할 수 있다.

1. 도로변, 주택가, 생활 주변 지역 자투리땅 등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
2. 국·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을 조성·관리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주택, 상가 등), 농지 및 수목에 피해를 주지 않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성해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6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숲등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3.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
 4. 도시숲등의 보전·보호 및 관리
 5.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
 6.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측정·평가 및 활용
 7. 도시숲등의 정보망 구축 및 운영
 8.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의 활성화 및 협력
 9.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소요되는 수목 등의 수급 및 재원 조달
 10.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③ 시장은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① 시장은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숲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청에게 다음 각 호의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구받은 관리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지역별 도시숲등의 면적 및 1인당 도시숲 면적 현황
2.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및 조성·관리 현황
3.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대한 시민참여 현황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도시숲등의 측정·평가 등)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5년마다 관할 도시숲등의 관리지표를 측정·평가하고 제6조에 따른 조성·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시숲등 측정·평가 결과를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9조(국내 및 국제협력) 시장은 도시숲등과 관련된 국내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기술·정보 및 인력의 교류, 홍보 및 조사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3장 도시숲등 조성·관리

제10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① 시장은 도시숲등(가로수는 제외한다)은 법 제2조의 정의에 부합하도록 생태적·경관적·경제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매수하거나 임차할 수 있으며 토지등에 대한 매수 및 임차의 방법, 절차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매수가격 또는 임차료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1조(원상회복 명령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1. 도시숲등과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2. 도시숲등에 무단으로 장애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방치하거나 점유하는 행위
3. 도시숲등 조성·관리 공사 이외의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가 필요한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부담금의 징수) ① 관리청은 법 제11조에 따라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납부해야 할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

② 관리청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사람이 그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장 도시숲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제13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숲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3호에 따른 진입로 및 출입로의 도로점용허가 사항은 제외한다.
3. 도시숲등 조성·관리 사업으로 산림 및 수목에 대해 다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위임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숲등 조성·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다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위

위원회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위원회에는 법 제13조제3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도시숲 업무를 담당하는 실·본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숲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지역의 주민 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안전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정·장소 및 주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0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서기는 회의가 끝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해야 한다.

1. 회의 개최 및 폐회의 일시·장소
2. 출석위원 서명부
3. 심의 사항
4. 회의진행 또는 현지조사 상황
5. 위원 및 출석인 발언 요지
6. 심의 결과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개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시숲 업무를 담당하는 과·담당관의 소속 담당 사무관 중 당연직 위원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3조(현지조사)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 ①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사람이 안전과 관계없는 사항을 발언하거나 소란행위 등으로 회의진행에 지장을 일으킨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당사자를 퇴장시킬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5조(안전의 재상정) 심의 결과 부결·부동의 된 안전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 동일 안전으로 위원회에 재상정을 할 수 없다. 다만, 부결·부동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 대상지 또는 주변 환경의 현격한 변화 등으로 재상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도시숲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도시숲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27조(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에 출석 또는 서면심사에 참여하거나, 현지조사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심의·자문 안전과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② 위원이 아닌 관계인이 심의·자문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했거나, 현지조사에 참여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민간참여 활성화

제29조(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도시숲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도시숲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시숲등 관리지표 측정·평가와 운영
2. 도시숲등의 관리 및 이용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도시숲등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 관련 모니터링
4. 도시녹화운동의 추진 및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관련 민간협력
5. 도시숲등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도시숲등의 효율적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0조(민간참여의 활성화)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거나 관련 단체의 설립·운영을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시장 이외의 사람이 도시숲등을 조성·관리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이 도시숲등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가로수 관리 등에 주민참여는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7조를 따른다.

제31조(도시숲등의 기부채납)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위해 개인 또는 기업·단체 등이 수목과 토지등을 기부하려는 경우에 이를 받을 수 있다.

제6장 보칙 및 벌칙

제32조(준용) 보칙 및 벌칙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 제20조에서 제28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시 「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심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제11조 관련)

부 과 대 상	부과금액 산출	비고
1. 각종 인·허가에 따른 이식·제거목, 교통사고 등에 따른 도시숲등 훼손	원상복구에 필요한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2. 50% 이상 고유 수형 상실 등으로 수목 가치가 없는 경우	원상복구에 필요한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3. 10% 이상~50% 미만 가지치기의 경우	원상복구에 필요한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해당 수목가격의 90 ~50%	

※ 비용의 산출은 건설공사표준품셈 및 시증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수목가격은 연도별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조성·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조문 제정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상위법이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조문 제정

나. 조례의 근거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에 부합하도록 용어 및 관련 조항 신설

다.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 근거 규정

라.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정비 및 개정안 제시

마.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제시

서울특별시조례 제8301호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를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을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중 “자연환경은 법 제3조 각 호 및”을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은 법 제3조 각 호와”로, “제3항까지”를 “제3항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자연환경보전을”을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으로, “자연환경보전에 관한”을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연환경보전”을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자연환경의 보전”을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으로, “자연환경보전”을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시민의 책무)”를 “(시민 협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연환경보전”을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 제4항”을 “시장은 법 제6조제4항”으로, “수립하되, 시민·관계전문가 또는 구청장 등의 의견을 수립”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시민·관계전문가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및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

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이하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③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태계서비스를 말한다)의 현황, 전망 및 유지·증진에 관한 사항
2.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5. 자연보호운동 및 민간부분의 참여·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책 및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④ 시장은 실천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및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실천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2년마다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리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이하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라 한다)” 를 “미리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자연환경정보의 관리 및 활용” 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으로 한다.

제31조 앞에 “제5장 자연자산의 관리” 를 삭제한다.

제35조 앞에 “제6장 시민참여” 를 삭제한다.

제39조 앞에 “제7장 보칙” 을 삭제한다.

제37조를 제41조로 하고, 제34조를 제37조로 하며, 제31조를 제34조로 한다.

제38조를 제42조로 하고, 제35조를 제38조로 하며, 제32조를 제35조로 한다.

제39조를 제43조로 하고, 제36조를 제39조로 하며, 제33조를 제36조로 하고,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로 하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①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부합하는 서울특별시 생물다양성전략(이하 “생물다양성전략”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의 현황·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4.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 방안
5.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유입주의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
6.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기술개발, 교육
7.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시민·관계전문가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27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①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서 정하는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경관(「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을 말한다) 및 자연자산의 유지·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관리사업)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래생물 분포 및 현황 조사
2.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등의 퇴치·방제
3.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

제29조 앞에 “제5장 자연환경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삽입한다.

제34조 앞에 “제6장 자연자산의 관리”를 삽입한다.

제38조 앞에 “제7장 시민참여”를 삽입한다.

제39조(중전의 제36조) 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표창) 시장은 자연환경보전 및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43조 앞에 “제8장 보칙”을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생물다양성의 종합적·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서울시 생물다양성 보전정책 및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수립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연환경보전단체에 대한 지원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자연환경보전 및 촉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을 개정함.
- 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규정함(제4장).
- 다.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수립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제6조).
- 라. 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을 규정함(제26조).
- 마.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규정함(제27조).
- 바.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관리사업을 규정함(제28조).
- 사. 자연환경보전단체 지원 활동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9조).
- 아.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0조).

서울특별시조례 제8302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공공용” 을 “일반용” 으로 한다.

제3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분리고지한 수도요금은 전자적시스템(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고지·수납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0조제3항의 신설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1조제1항제9호의 개정 규정은 2022년 5월 납기요금부터 적용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에 대해 수도요금 감면 시행을 통하여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이사정산 수도요금 납부의 경우도 분리고지 신청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자적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편의를 제고하고 민원 분야 업무부담을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음. 또한, 현행 급수업종 중 ‘공공용’ 은 2022년 1월 1일부터 ‘일반용’ 으로 통합됨에 따라 현재 사설소화용 급수설비에 대한 급수업종인 ‘공공용’ 을 ‘일반용’ 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함(제31조제1항제9호).
- 나. 수도요금을 전자적시스템으로 고지수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제30조제3항).
- 다. 사설소화용 급수로 사용한 수돗물의 사용요금 납부기준을 ‘일반용’ 으로 적용함(제19조제3항).

서울특별시조례 제8303호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를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설치와 청소 등 위생관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설치·관리와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 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병물 아리수”란 일회용 페트병에 담겨져 생산·공급되는 아리수를 말한다.

제4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0조에 따른 병물 아리수의 사용에 관한 사항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병물 아리수의 사용) 시장은 일회용 페트병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병물 아리수를 재난 상황이나 단수 등 필요시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병물 아리수 생산 시 일회용 페트병의 사용과 아리수 음수대를 통한 수돗물의 음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 보전 및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

나. 병물 아리수의 정의를 신설함(제2조제1호의2).

다.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중 제10조에 따른 병물 아리수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4조제2항제3호).

라. 병물 아리수의 사용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제10조).

서울특별시조례 제8304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제1항의” 를 “제1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체에게” 를 “단체에” 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지” 를 “그렇지” 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공무원이나 청원경찰, 그 외에 규칙으로 정한 자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수 있다” 를 “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는” 을 “공무원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공무원이나 청원경찰” 을 “공무원” 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호 중 “실·국장” 을 “실·국장·본부장”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한강 공원시설 이용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이용료 감면 적용 유효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한강공원 내 기초질서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 방역수칙 준수 등을 위한 단속 활동을 공무원과 청원경찰이 합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경찰청 유권해석 결과 청원경찰의 직무 범위는 경비구역 내 경비에 한정되어 본 조례에 단속업무를 규정하더라도 단속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회신함에 따라 본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이용료 감면 적용 유효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제14조제2항제6호 및 제14조제3항).

나. 금지행위 단속규정을 개정함(제19조제1항).

다. 금지행위 단속규정 중 “공무원이나 청원경찰” 을 “공무원” 으로 개정함(제19조제3항).

라. 서울특별시 한강시민위원회 당연직 위원 선임 대상에 ‘실·국장’ 외에 추가적으로 ‘본부장’ 을 명시하도록 함(제22조제4항제1호).

마.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함.

[규 칙]

서울특별시의회규칙 제38호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의회회의장 김 인 호 인

2021년 12월 30일

1. 제안이유

-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현행화 함(안 제1조 및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75조”를 “「지방자치법」 제8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개 정 전	개 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된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와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 ----- ----- -----.
제10조(심사보고)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 보고한다.	제10조(심사보고) 「지방자치법」 제87조---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의회규칙 제39호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 인 호 인

2021년 12월 30일

1. 제안이유

- 전부개정 「지방자치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자율성과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를 규정함(안 제18조제5항 신설).
- 주민조례청구 관련 이의신청 등은 주민조례청구 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 기록표결 원칙에 관해 규정함(안 제43조)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정함(안 제89조부터 제93조까지 신설)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 조문 현행화 및 기타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1조 등)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기 타 : 산·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를 “「지방자치법」 제83조”로 한다.

제11조 전단 중 “의장이 각 대표의원”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법 제63조제1항”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시장·교육감·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제안하거나 발의한다”를 “의

원이 발의하거나 시장·교육감·위원회가 제출·제안한다” 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주민은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의회에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① 의장은 주민조례발안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및 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이하 “주민발안 조례”라 한다)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를 거친 후 의장 명의로 발의된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는 제19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은 주민발안 조례에 따른다.

제40조제1항 중 “선포하여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기립표결 또는 거수표결로 할 수 있으며 기립표결이나 거수표결이 어려운 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표결로 할 수 있다.”를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 및 기타 방법에 의한 기록표결로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제4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5조 중 “선포한다”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로 한다.

제49조제1항 본문 중 “일반”을 “주민”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를 “법 제84조제4항”으로, “게재되지”를 “공개되지”로 한다.

제84조제1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이하 “윤리강령 조례”라 한다)”로, “법 제86조”를 “법 제98조”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를 “윤리특별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제14조제2항”을 “윤리강령 조례 제14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법 제83조”를 “법 제95

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로 한다.

제8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윤리강령 조례”로 한다.

제89조를 제94조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89조) 중 “법 제71조”를 “법 제83조”로 하며, 제89조부터 제9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강령 조례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제9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임기) 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각각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이하 “행동강령 조례”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이 겸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는 행동강령 조례 제2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제91조(윤리심사자문위원의 제척 등)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9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업무 및 운영) 제90조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이 겸할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동강령 조례를 준용한다.

제9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 수렴)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89조 앞에 “제10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94조 앞에 “제10장 보칙”을 삽입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개 정 전	개 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83조----- ----- ----- -----.
제11조(개회) 본회의는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각 대표위원과 협의하여 그 개회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제11조(개회) -----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 -----.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생략) ② 의장은 제11조에 따른 개의 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별 제63조제1항의 정족수에 미달될 경우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 ③·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교육감·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제안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 ④ (생략) <신 설>	제18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 ----- 의원이 발의하거나 시장·교육감·위원회가 제출·제안한다. <단서 삭제>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주민은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의회에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2(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① 의

개 정 전	개 정 후
제40조(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경우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u>선포하여야</u> 한다. ② (생략) 제43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경우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u>기립표결 또는 거수표결로</u> 할 수 있으며 <u>기립표결이나 거수표결이 어려운</u> 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u>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u> 표결로 할 수 있다. ② <u>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무기명 전자투표 또는</u>	장은 <u>주민조례발안법 제11조제3항에 따라</u> <u>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및 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이하 “주민발안 조례”라 한다)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 ② 제1항의 심의를 거친 후 의장 명의로 발의된 <u>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는 제19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u> ③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u>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은 주민발안 조례에 따른다.</u> 제40조(표결의 선포) ① ----- ----- ----- <u>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u>-----.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표결방법) ① ----- ----- ----- ----- ----- ----- ----- <u>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 및 기타 방법에 의한 기록표결로 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개 정 전	개 정 후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 -----.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가결되었음 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경우 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 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 ----- ----- . 이 경우 기 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 여야 한다. 다만,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제1 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기명 투표로 한다.	
제45조(표결결과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45조(표결결과선포) ----- ----- 의장석에서 선포 한다.
제49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전자회의록 형태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 에게 공개한다. 다만,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 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그 소속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게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9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 ----- ----- 주민----- -----. <단서 삭제>
② 의원이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게재되지 아 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正当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 은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 법 제84조제4항 ----- ----- 공개되지 ----- ----- -----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84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서 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	제84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 「서 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

개 정 전	개 정 후
<u>법 조례</u>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원(이하 “윤리심사대상자” 라 한다)또는 <u>법 제86조</u>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 라 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u>윤리특별위원회</u>”를 구성하여 회부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통고를 2회 받은 의원은 징계대상자가 된다. ② (생 략) ③ 의원이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u>법 제83조</u>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찬성위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 ⑥ (생 략)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60조 제1항제7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u>법 조례</u> (이하 “<u>윤리강령 조례</u>” 라 한다) ----- <u>법 제98조</u> ----- ----- <u>윤리특별위원회</u>에 ----- <u>윤리강령 조례 제14조제2항</u>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법 제95조</u> ----- ----- .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 <u>의원이 「서울특별시회의 기본 조례</u> -----

개 정 전	개 정 후
정계할 수 있다. 제84조의2(특정 현안 또는 사안에 대한 조사)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준수 의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 하는 특정한 현안 또는 사안에 대하여 조사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 ----- -----. 제84조의2(특정 현안 또는 사안에 대한 조사) ----- 윤리강 령 조례 ----- ----- ----- ----- ----- -----. 1. ~ 3. (현행과 같음) 제89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윤리특별 위원회는 윤리강령 조례 준수 여부 및 징계 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 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제9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임기) 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 위원장과 위원은 각각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이하 “행동강령 조 례”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이 겸할 수 있 다. 이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는 행동강령 조례 제22조제2항부터 제 6항까지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제91조(윤리심사자문위원의 제척 등) 윤리심 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

개 정 전	개 정 후
<u><신 설></u>	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9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업무 및 운영) 제90조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이 겸할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동강령 조례를 준용한다. 제9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 수렴)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u><삭 제></u> <u>제10장 보칙</u> <u><신 설></u> 제89조(규정등 제정) 의장은 법 제71조에 따라 이 규칙 이외에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회 및 사무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u>제10장 보칙</u> <u><신 설></u> 제89조(규정등 제정) 의장은 법 제71조에 따라 이 규칙 이외에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회 및 사무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u>제94조(규정등 제정) ----- 법 제83조-----</u> ----- ----- -----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3199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 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자치구의 행정환경 및 재정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측정단위를 조정하면서 고정·단위비용을 재산정 후 반영함.

2. 주요내용

- 가. 가산교부금액 배분을 위한 건전재정운영 평가기준을 개선함(안 별표 1).
- 나. 일부 측정단위를 조정하고 고정·단위비용을 재산정하여 반영함(안 별표 2).
- 다. 일부 측정단위를 조정함(안 별지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자치행정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본관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02-2133-5815, 팩스: 02-2133-0776, 이메일: ljh1016@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 - 720호

204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 고시

1. 「204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법」 제4조에 따라 수립,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아 고시합니다.
2. 「204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 ☎ 3146-14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에 비치하고 시민에게 보입니다.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장

가. 204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 주요내용

구 분		당초계획('13.12)				금회계획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18년 (기준년도)	2025년 (1단계)	2030년 (2단계)	2035년 (3단계)	2040년 (4단계)
인구	계획인구(천인)	10,026	10,135	10,214	10,202	10,050	9,352	9,156	8,954	8,731
	급수보급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급수인구(천인)	10,026	10,135	10,214	10,202	10,050	9,352	9,156	8,954	8,731
사용량원단위(Lpcd)		288	289	289	290	293	294	296	297	298
목표유수율(%)		95.0	95.0	95.0	95.0	95.1	96.0	96.0	96.0	96.0
급수량 원단위 (Lpcd)	일평균1)	301	301	301	302	309	303	305	306	307
	첨두부하율	1.15	1.15	1.15	1.15	1.12	1.17	1.17	1.17	1.17
	일최대	346	346	346	347	346	355	357	358	359
일최대 수요량 (천 m ³ /일)	총계	3,724	3,741	3,769	3,775	3,843	3,616	3,640	3,575	3,505
	정수(계)	3,692	3,709	3,737	3,743	3,830	3,583	3,607	3,542	3,472
	생활(정)	3,692	3,709	3,737	3,743	3,830	3,577	3,601	3,536	3,466
	기타(정)	-	-	-	-	-	6	6	6	6
	공업(침)	32	32	32	32	13	33	33	33	33
용수 공급	총계 * ()는 고도	4,800	4,800	4,800	4,800	4,800	4,750	5,000	5,000	5,000

구 분		당초계획(' 13.12)				금회계획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18년 (기준년도)	2025년 (1단계)	2030년 (2단계)	2035년 (3단계)	2040년 (4단계)
계 획 (천 m ³ /일)		(3,800)	(3,800)	(3,800)	(3,800)	(3,570)	(3,800)	(4,600)	(4,600)	(4,600)
	지방 소계	4,800 (3,800)	4,800 (3,800)	4,800 (3,800)	4,800 (3,800)	4,800 (3,570)	4,750 (3,800)	5,000 (4,600)	5,000 (4,600)	5,000 (4,600)
	강북	1,000 (950)	1,000 (950)	1,000 (950)	1,000 (950)	1,000 (720)	1,000 (950)	1,250 (1,200)	1,250 (1,200)	1,250 (1,200)
	구의	500 (450)	500 (450)	500 (450)	500 (450)	500 (450)	500 (450)	500 (450)	500 (450)	500 (450)
	독도	700 (600)	700 (600)	700 (600)	700 (600)	700 (600)	700 (600)	700 (600)	700 (600)	700 (600)
	암사	1,600 (1,100)	1,600 (1,100)	1,600 (1,100)	1,600 (1,100)	1,600 (1,100)	1,600 (1,100)	1,150 (1,100)	1,150 (1,100)	1,150 (1,100)
	영등포	600 (450)	600 (450)	600 (450)	600 (450)	600 (450)	550 (450)	550 (450)	550 (450)	550 (450)
	광암	400 (250)	400 (250)	400 (250)	400 (250)	400 (250)	400 (250)	400 (350)	400 (350)	400 (350)
	순환정비	-	-	-	-	-	-	450 (450)	450 (450)	450 (450)
	총 계	1,076	1,059	1,031	1,025	957	1,166	1,399	1,472	1,550
과부족 (천 m ³ /일)	정수	1,076 (108)	1,059 (91)	1,031 (63)	1,025 (57)	957 (△260)	1,166 (249)	1,399 (1,032)	1,472 (1,105)	1,550 (1,18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 - 721호

강남구 도곡동 954 - 17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33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강남구 도곡동 954-17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강남구 도곡동 954-17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장

I.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강남구 도곡동 954-17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54-17번지 일원
- 면 적 : 1,010.9㎡

2. 촉진지구 지정일 : 2021년 12월 30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및 건설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명 칭 : 코레이트도곡동청년주택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 대표자 성명 : 코레이트자산운용주식회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42-1, 601호(노량진동)
- 법인등록번호 : 110114-0269983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1)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행정동	지번				성명	주소	지분	권리 명세	권리자	주소
		본번		부번	공부면적						
1	강남구 도곡동	954	17	대	825.3	825.3	코레이트도곡동청년주택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 자유한회사	1/1	근저당권	수협은행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신천동) (길동금융센터)
2		954	20	대	185.6	185.6					
합계					1,010.9	1,010.9	-				

2) 물건조서(해당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1,010.9	-	1,010.9	100.0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010.9	감) 1,010.9	-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	증) 1,010.9	1,010.9	100.0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강남구 도곡동 954-17일원	제3종 일반주거 지역	일반 상업지역	1,010.9	·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강남구 도곡동 954-17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남구 도곡동 954-17일원	-	증)1,010.9	1,010.9	

■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구 역 명	면 적(㎡)	결정사유
-	강남구 도곡동 954-17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1,010.9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7.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 주택공급과(20-2133-6296)와 강남구청 제1별관 1층 건축과(02-3423-618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II.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 명 칭 : 강남구 도곡동 954-17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54-17 일원
- 면 적 : 1,010.9㎡
-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
: 양재역 역세권 지역에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을 건설 공급하기 위하여 공급촉진지구 지정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명 칭 : 코레이트도곡동청년주택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 대표자 성명 : 코레이트자산운용주식회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42-1, 601호(노량진동)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 사업기간 : 지구지정일 ~ 2024년
- 재원조달계획 : 자기자본, 금융기관 조달 등

4.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주택건설용지	1,010.9	100.0	임대주택
합 계	1,010.9	100.0	-

5. 인구·주택 수용계획

- 1) 수용인구 : 267인
- 2) 주택건설계획 : 209세대

구 분	세대수(세대)	비 율(%)	수용인구(인)	비 율(%)	비 고
공공 임대주택	22TYPE	39	18.66	39	14.61
	24TYPE	10	4.78	10	3.75
	42TYPE	6	2.87	16	5.99
	47TYPE	2	0.96	5	1.87
	55TYPE	8	3.83	21	7.87
	소 계	65	31.10	91	34.08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22TYPE	89	42.58	89	33.33
	24TYPE	36	17.22	36	13.48
	42TYPE	6	2.87	16	5.99
	47TYPE	9	4.31	24	8.99
	55TYPE	4	1.91	11	4.12
	소 계	144	68.90	176	65.92
합 계	209	100	267	100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대상을 고려하여 가구당 인구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행복주택 공급계획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을 적용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1) 환경보전계획

가) 생태면적 확보 및 녹지네트워크 조성

- 도시공간의 생태적 기능(자연의 순환기능)을 증대시키기 위해 녹지(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조성 및 옥상녹화, 투수포장 등을 실시하여 생태환경 향상 도모
- 대상지 및 주변지역은 녹지공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조경녹지 조성을 통해 오픈스페이스 마련 및 녹지체계 구축

나) 환경오염 저감계획

- 공사 시 공정별 오염물질발생원을 분류하고, 부지내 지형을 고려하여 각종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계획 및 설치하여 각 공사단계별 환경오염 저감대책 이행

2) 탄소저감계획

가) 녹지계획

- 탄소저감을 위해 사업지구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등) 하고, 녹지공간 내 조경식재 시 배기가스에 강하고 환경정화능력이 강한 수종을 식재토록 하여 대기질 정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계획함

나) 저탄소 친환경단지 조성

- 충분한 녹지조성, 투수성 포장재료의 사용 등을 통해 도시 열섬현상을 억제하고, 에너지 효율관리방안을 충분히 검토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치 기준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 계획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 (도면게재생략)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신설)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강남구 도곡동 954-17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남구 도곡동 954-17일원	-	증)1,010.9	1,010.9	

■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구 역 명	면 적(㎡)	결정사유
-	강남구 도곡동 954-17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1,010.9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1,010.9	-	1,010.9	100.0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010.9	감) 1,010.9	-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	증) 1,010.9	1,010.9	100.0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강남구 도곡동 954-17일원	제3종 일반주거 지역	일반 상업지역	1,010.9	·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 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1) 획지 결정조서(신설)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신설	-	강남구 도곡동 954-17일원	1,010.9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	· 획지 신설 - 면적 : 1,010.9㎡	·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획지계획 수립

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건축물의 용도계획(신설)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지정용도	가	· 공동주택(주거복합) ^{주)}	· 강남구 도곡동 954-17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불허용도	A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다중생활시설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 시설 · 발전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장례시설 · 야영장 시설	

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	· 지정용도 및 불허용도 신설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지정용도 및 불허용도 결정(신설)

(2) 건축물의 밀도계획(신설)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건폐율	· 70% 이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제1항 제9호
용적률	· 기본용적률 : 680% 이하 · 상한용적률 : 755.88% 이하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용 · 공공임대주택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법적용적률 이하] - 완화용적률의 50% 범위 공공임대주택 제공
최고높이	· 48m 이하	-

■ 결정사유서

구 분	결정내용	결정사유
건폐율	• 70% 이하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적용
용적률	• 기본용적률 : 680% 이하 • 상한용적률 : 755.88% 이하	
높이	• 48m 이하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통해 결정

■ 용적률 적용기준 (의무사항)

구분	내용		계획사항	완화 내용	비 고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비용	공공 임대 주택	• 기본공공기여율 : 부지면적의 25% 이상 - 1,010.9㎡ X 25% = 252.73㎡ 이상 • 추가공공기여 : 254.70㎡ (대지지분 25.20%) - 53세대 • 추가공공기여 : 38.14% (대지지분 5.05%) -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385.52㎡ (38.14%) [완화용적률 75.88%의 50% : 37.94%] - 12세대	총 209세대 중 공공임대 주택 65세대 공공기여	기본 용적률 680% 상한 용적률 755.88%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 하여야 함
건축물 용도 구분	비주거비용	• 10% 이상 20% 이하(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 주거 : 비주거 = 88.46% : 11.54%(용적률 기준)		
주택 건설 비중	주택규모	• 주택 건설규모 : 전용면적 18㎡ ~ 60㎡ 내외 - 1인 세대 : 전용 18㎡ 이상 - 2인 이상 세대 : 전용 36㎡ 이상	• 1인세대 : 전용 18.02㎡, 18.33㎡ (174세대) • 2인세대 : 전용 36.06㎡, 36.74㎡, 40.38㎡ (35세대)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 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공공시설물 설치,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에 규정한 발코니 설치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 에너지 효율 건축물 • 친환경 건축물		
주민 공동 시설	커뮤니티 시설	• 100호 이상 ~ 300호 미만 : 150㎡ 이상	• 지상14층 239.07㎡ 계획 (209세대)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1 준용

(3)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신설)

구 분	적용대상	건축한계선	비 고
-	대상지 남측 도로변(강남대로42길)	· 대지경계로부터 2m	· 보도형 전면공지
	대상지 서측 도로변(강남대로44길)	· 대지경계로부터 2m	· 차도부속형 전면공지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	· 대상지 남측 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 대상지 서측 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 대상지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가)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신설)

구 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 고
-	대상지 남측 도로변(강남대로42길)	· 보도형 전면공지	
	대상지 서측 도로변(강남대로44길)	· 차도부속형 전면공지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	· 대상지 남측 도로변 : 보도형 전면공지 · 대상지 서측 도로변 : 차도부속형 전면공지	· 강남대로42길 보행연결성 확보를 위해 보도형 전면공지 결정 · 대상지로의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해 차도부속형 전면공지 결정

나) 공공기여 계획(신설)

구분		용적률	공공기여 기준	공공기여 계획	비고
공공임대주택	기본용적률 (부지면적)	680% 이하	부지면적의 25% 이상 (부지면적 252.73㎡ 이상)	• 부지면적 기준 254.70㎡ (대지지분 25.20%) - 공공임대 전용면적 : 1,246.26㎡(53세대)	총 209세대 중 공공임대주택 65세대 계획
	상한용적률 (연면적)	755.88% 이하	완화용적률의 1/2이상 (755.88% - 680%)/2 = 37.94%이상 (연면적 383.54㎡ 이상)	• 공공임대주택 제공 연면적 : 385.52㎡ (12세대, 대지지분 5.05%)	

5)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도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3. 방재계획

- 1) 내수재해 : 서울특별시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을 고려한 우수관로 용량결정, 기존 배수관거 및 유입배수시설 연결
- 2) 토사재해 : 임시침사지 1개소 및 가배수로 설치
- 3) 지반재해 : 현장요건을 고려한 최적의 기초형식 선정
- 4) 지진재해 : 내진설계 대상 구조물 기준적용
- 5) 바람재해 : 내풍설계 대상 구조물 기준적용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

1)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행정동	지번				성명	주소	지분	권리 명세	권리자	주소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1	강남구 도곡동	954	17	대	825.3	825.3	코래이트도곡동청년주택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 자유한회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42-1, 6층(노량진동)	1/1	근저당권	수협은행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신천동) (길동금융센터)
2		954	20	대	185.6	185.6			1/1			
합계					1,010.9	1,010.9	-					

2) 물건조서(해당없음)

3) 토지취득방법 : 사업시행자 100% 확보

4)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 : 사업부지내 건축물 및 공작물 없음

5.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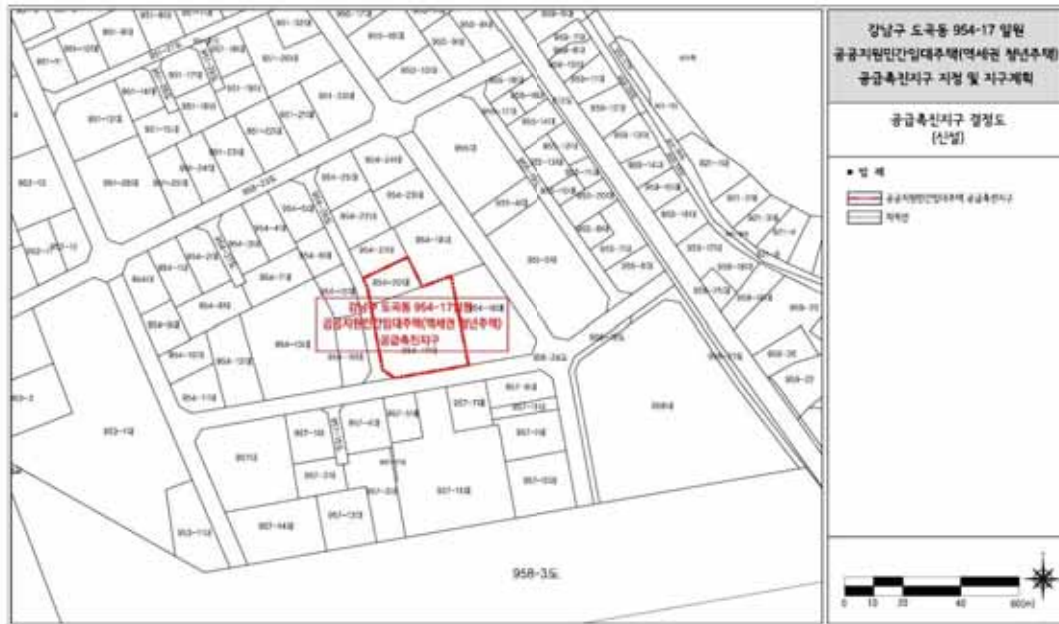
6.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 해당 지자체인 강남구청에서 감리자를 선정하여 감리업무 수행

7.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구 분	위 치		비 고
	면 적(㎡)	구성비(%)	
합계	1,010.9	100.0	-
주택건설용지	1,010.9	100.0	-

관계도면 :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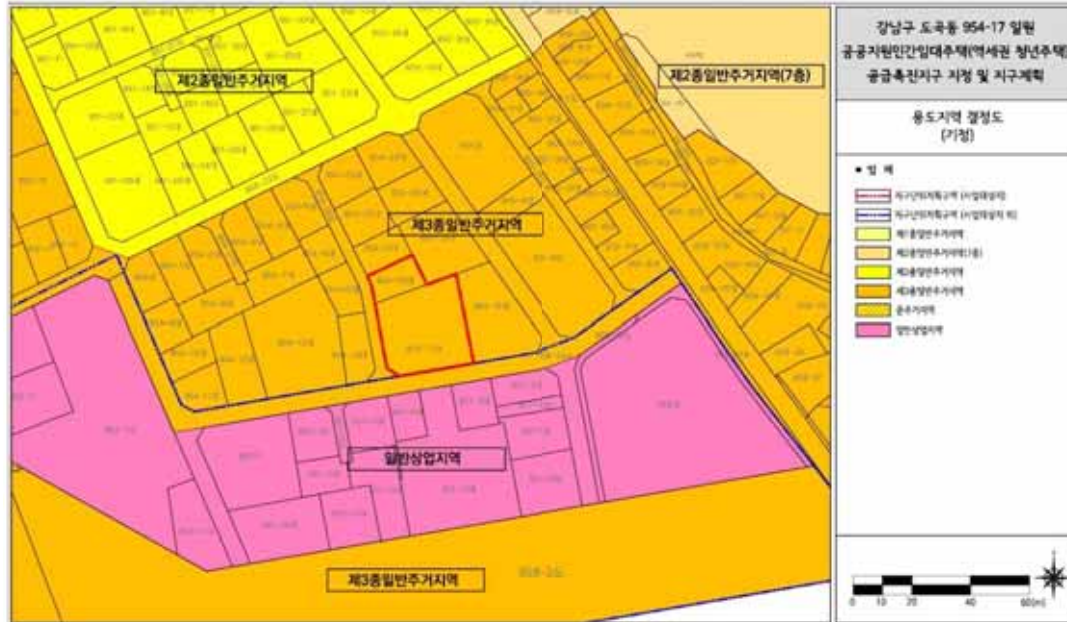
■ 공급촉진지구 구역에 관한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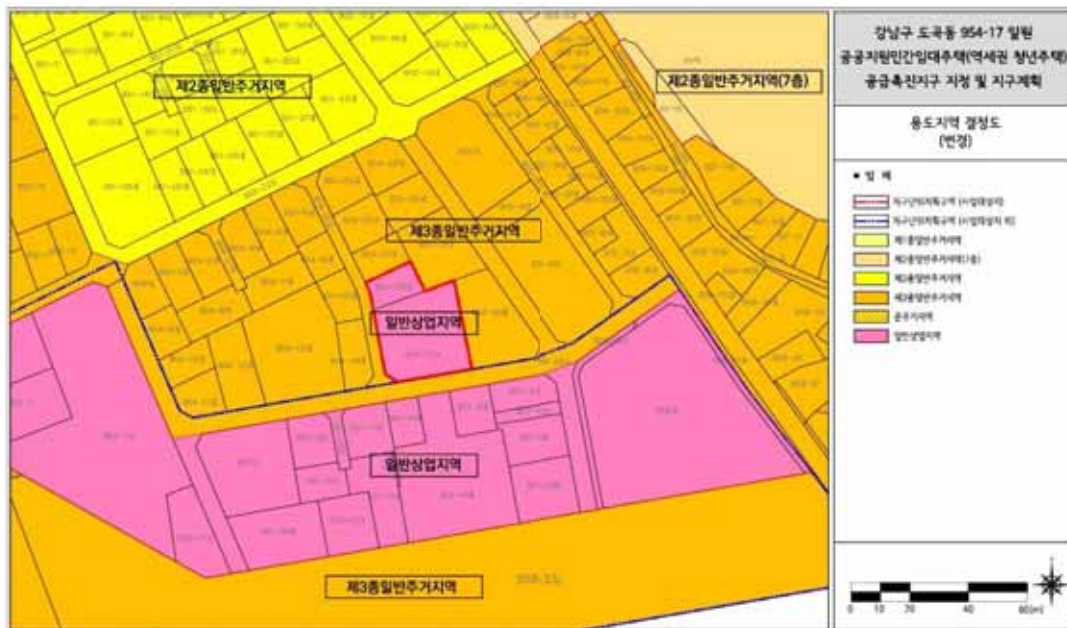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관한 결정도(신설)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기정)도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신설)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722호

서울특별시 암사동 생태·경관보전지역 확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659-1 일대를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7조에 따라 암사동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자연환경보전법」 제24조 및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8조,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장

1. 생태·경관보전지역 확대 지정 현황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659-1일대(암사생태공원)
- 지정면적 : 143,435㎡
- 지정내용

지역명	구 분	면적(㎡)	비 고
암사동 생태·경관보전지역	합 계	270,279	
	핵심보전구역	126,844	기존
	완충보전구역	143,435	확대

○ 토지조서

번호	지 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합 계(완충보전구역)			707,001	143,435
1	강동구 암사동 147-6	하천	13,012	117
2	강동구 암사동 148-9	하천	16,000	2,317
3	강동구 암사동 164-2	하천	28,255	14,379
4	강동구 암사동 613-11	하천	13,256	10,788
5	강동구 암사동 613-13	하천	411	262
6	강동구 암사동 616	하천	149,432	311
7	강동구 암사동 616-1	하천	10,215	10,092
8	강동구 암사동 618-1	하천	1,861	254
9	강동구 암사동 618-2	하천	521	380

번호	지 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10	강동구 암사동 657	하천	19,912	744
11	강동구 암사동 657-1	하천	16,237	4,540
12	강동구 암사동 658	하천	159,883	1,638
13	강동구 암사동 658-1	하천	11,462	11,253
14	강동구 암사동 659	하천	57,157	2,703
15	강동구 암사동 659-1	하천	46,721	46,530
16	강동구 암사동 660	하천	107	89
17	강동구 암사동 660-1	하천	28,670	28,277
18	강동구 암사동 660-3	하천	775	373
19	강동구 암사동 661	하천	126,186	1,460
20	강동구 암사동 661-1	하천	6,928	6,928

2. 지정사유

- 암사생태공원은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호안은 자연형으로 조성하고, 둔치는 치수상의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형을 적절히 조절하여 자연형 생태공간으로 2008년 12월에 조성(개장) 되었으며,
- 핵심구역인 암사동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주변 자연생태공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암사생태공원을 완충구역으로 설정하여 기존 암사동 생태·경관보전지역과의 통합관리를 하고자 함

3.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가. 행위제한(『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10조 제1항)

- 핵심보전구역에서 야생생물을 포획, 채취, 이식, 훼손하거나 고사(枯死)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해 화약류, 덫, 올무, 그물, 함정 등의 설치 및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撒布) 또는 주입하는 행위
- 하천·호소(湖沼)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 토석의 채취
- 수면(水面)의 매립 또는 불을 놓는 행위
- 건축물 및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나. 금지행위(『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10조제3항 및 조례 시행규칙 제7조)

- 「물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
- 인화물질(휘발유·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나 자연발화성 물질, 기체연

- 료)을 소지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훼손 또는 옮기는 행위
 -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 야생생물의 둥지나 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 가축의 방목, 동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야생동물의 복원을 위하여 시장이 직접 방사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과 협의하여 방사하는 경우에는 방사할 수 있다
 -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에서 풀·입목·죽을 채취·벌채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고사시키기 위하여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
 -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안에서 동물을 포획하거나 알을 채취하는 행위 또는 화약류·땃·올무·그물·함정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행위제한 및 금지행위에 대한 예외(『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10조제2항 및 조례 시행규칙 제3조와 제4조)

- 군사목적에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 또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행하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서 관리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산림보호 및 산림유전 자원보호림의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나무를 베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시장이 해당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
- 법률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법률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시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인허가등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시장은 사업 등을 시행하기 전이나 인·허가등을 하기 전에(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하기 전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조사·학술연구 또는 그 수행에 필요한 관측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호하고 출입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 산림병해충의 발생으로 그 확산방지와 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 그 밖의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계획에 포함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4. 행위제한 사항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 39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가. 조치를 위반한 사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가. 관리기관 : 서울특별시(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나. 위임관리기관(『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39조)
: 한강사업본부

6. 지형도면 고시 및 열람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가. 암사동 생태·경관보전지역 확대 지정 지형도면 : 붙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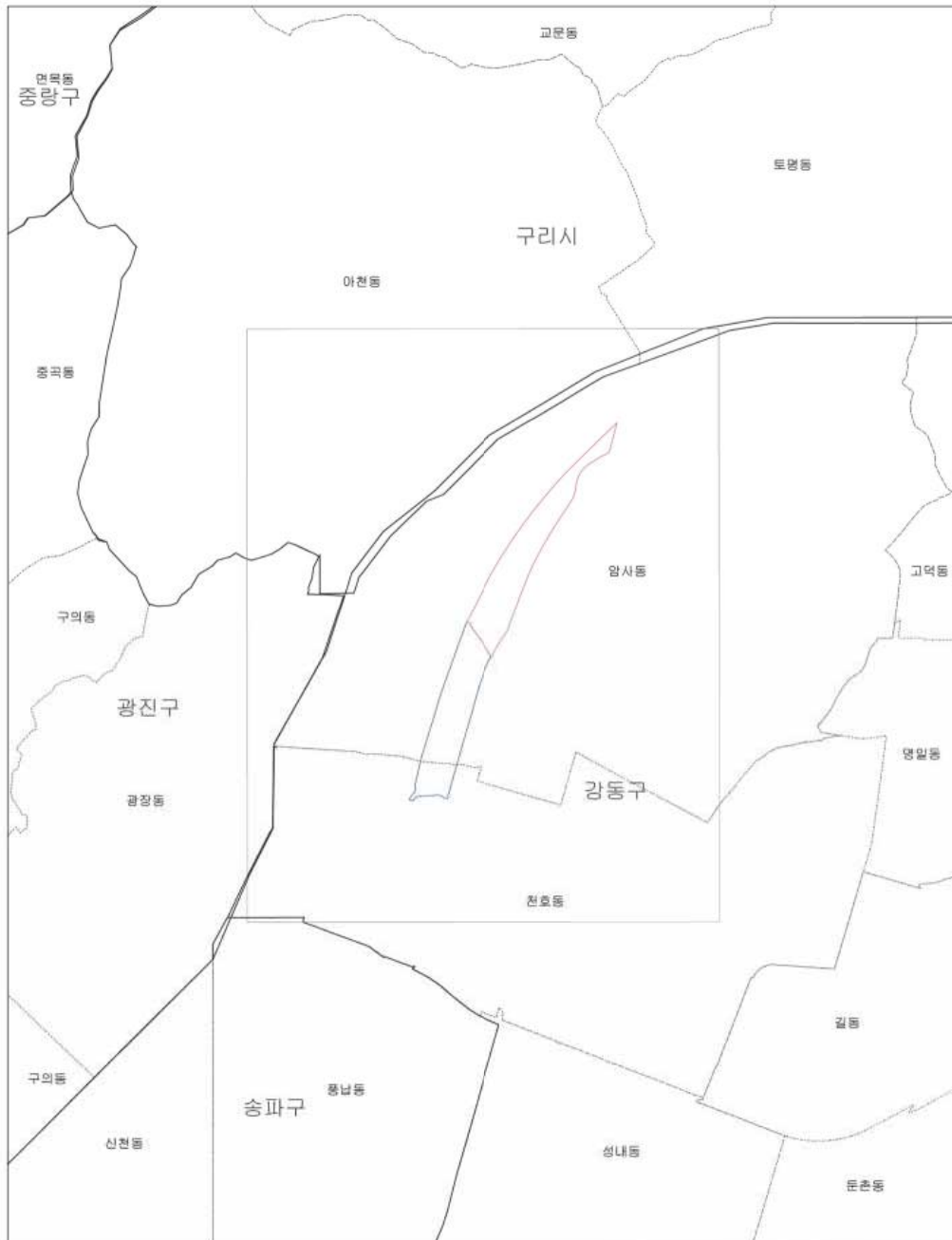
나.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열람장소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관련도서를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2133-2148) 및 관리를 위임 받은 한강사업본부(☎3780-0859)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암사동 생태·경관보전지역 총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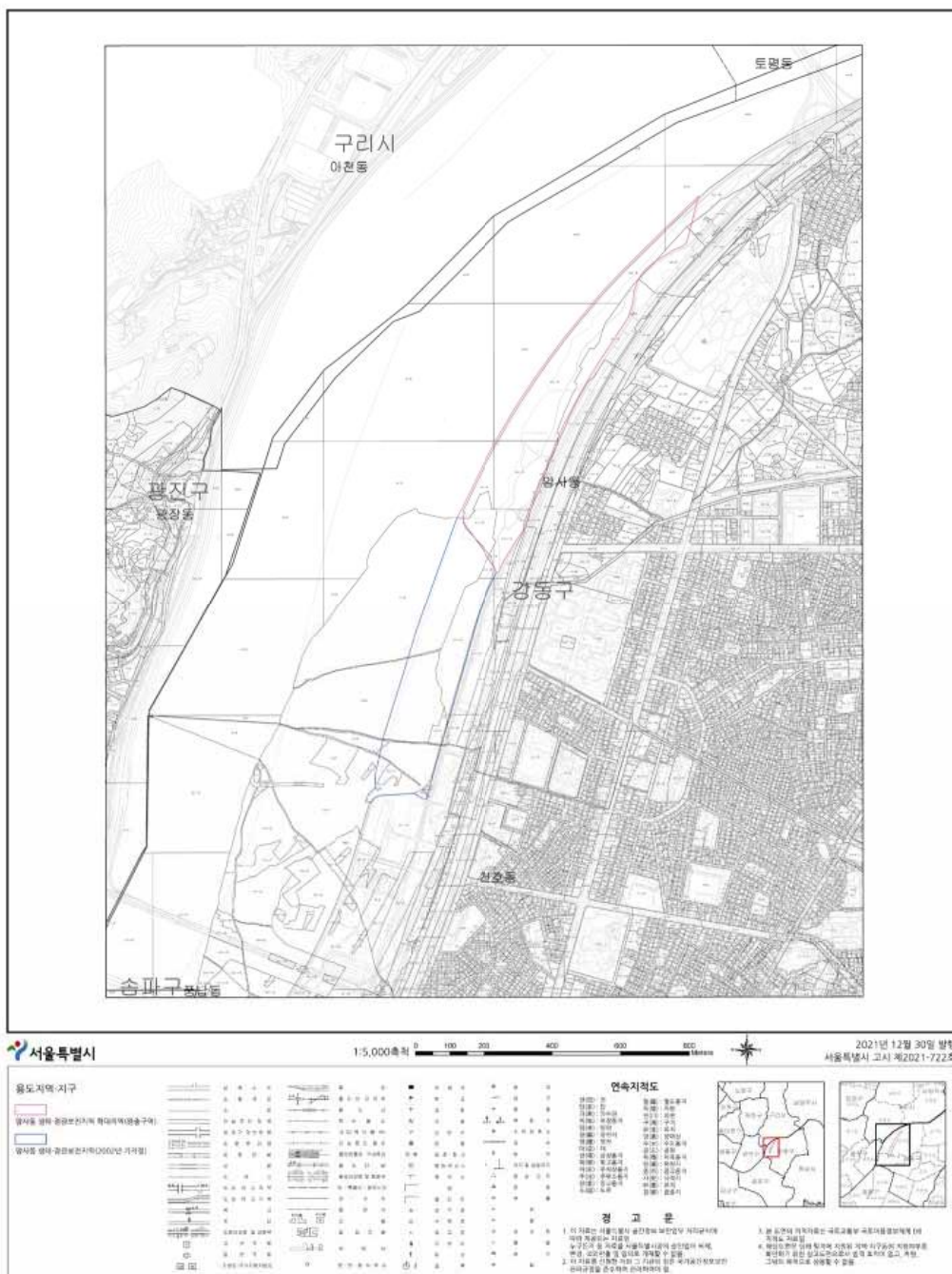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2021년 12월 30일 발행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과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과

생태·경관보전지역

- 서울특별시 암사동 생태·경관보전지역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 - 723호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상부암 석보살입상 등 8건)의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장

1. 대상문화재 :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8개소

(유형문화재 4, 기념물 1, 민속문화재 1, 문화재자료 2)

연번	자치구	문화재유형	문화재명	비고
1	광진구	유형문화재	상부암 석보살입상	허용기준 수립
2		기념물	화양동 느티나무	
3	노원구	유형문화재	삼군부 청현당	허용기준 조정
4		유형문화재	연령군 이회 신도비	
5	은평구	문화재자료	진관사 칠성각	
6		문화재자료	진관사 독성전	
7	마포구	민속문화재	용강동 정구중 가옥	
8	관악구	유형문화재	낙성대 삼층석탑	

2.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9조

3. 기준의 적용

-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7항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9조 제3항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절차에 따라 처리함

-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각 자치구에서 자체 처리하도록 함

4.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세부내용 : 붙임자료 참조
-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서울소식 > 공고 > 서울시보 · 고시공고

5. 기준시행일 : 시보 고시일

6. 연락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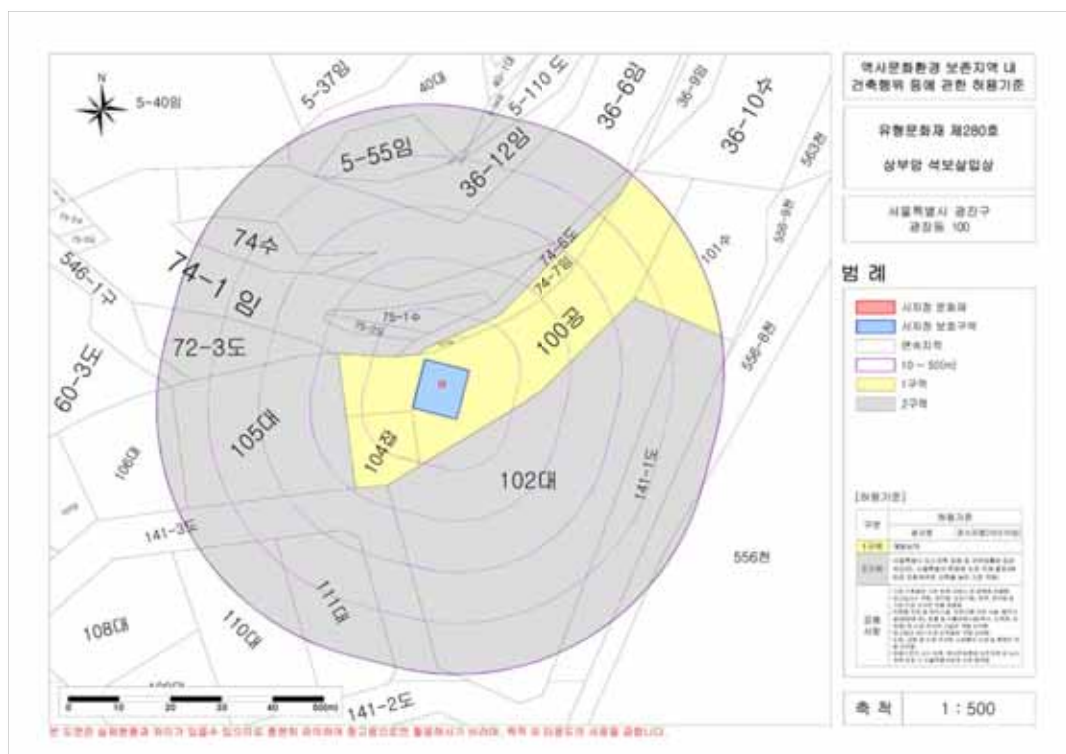
- 서울시 역사문화재과(02-2133-2626)
- 광진구 문화체육과(02-450-7592)
- 노원구 문화체육과(02-2166-3791)
- 은평구 문화관광과(02-351-6525)
- 마포구 문화예술과(02-3153-8372)
- 관악구 문화관광체육과(02-879-5618)

[붙임1] 서울시 유형문화재 '상부암 석보살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범례 표 (신규) 】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단,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별표2에 따른 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 적용)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서울특별시장과 사전 협의함.	

【 도면 (신규) 】



[붙임2] 서울시 기념물 '화양동 느티나무'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범례 표 (당초) 】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심의구역		
공통사항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재축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 원색계열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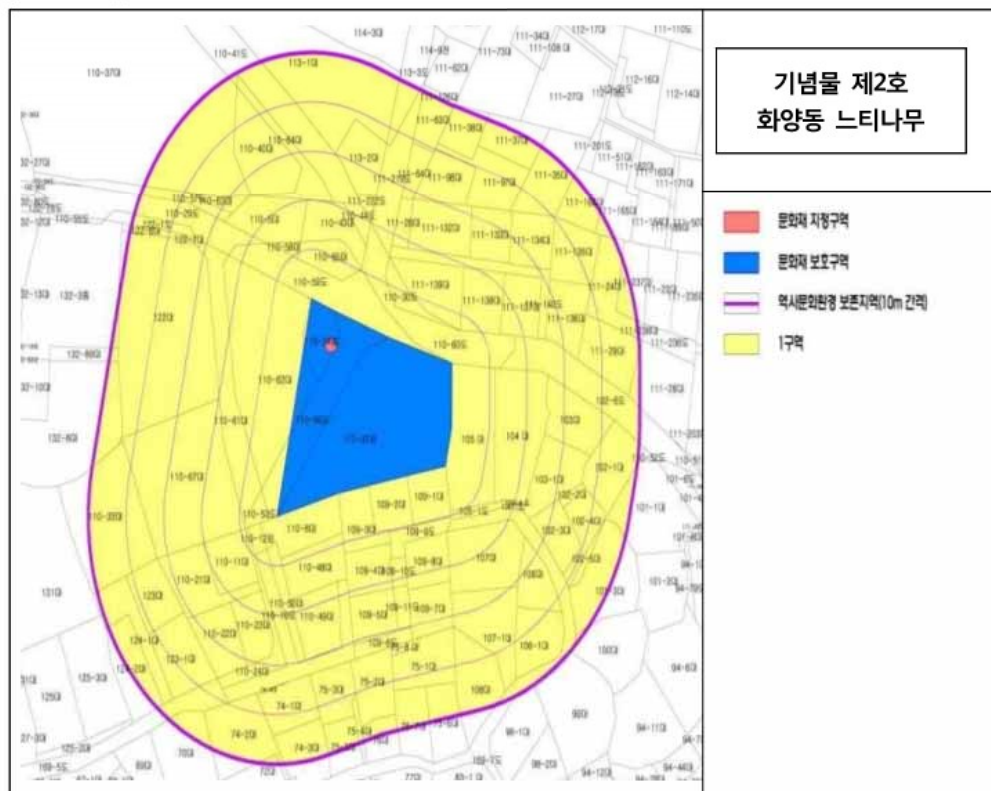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단,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별표2에 따른 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 적용)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 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서울특별시장과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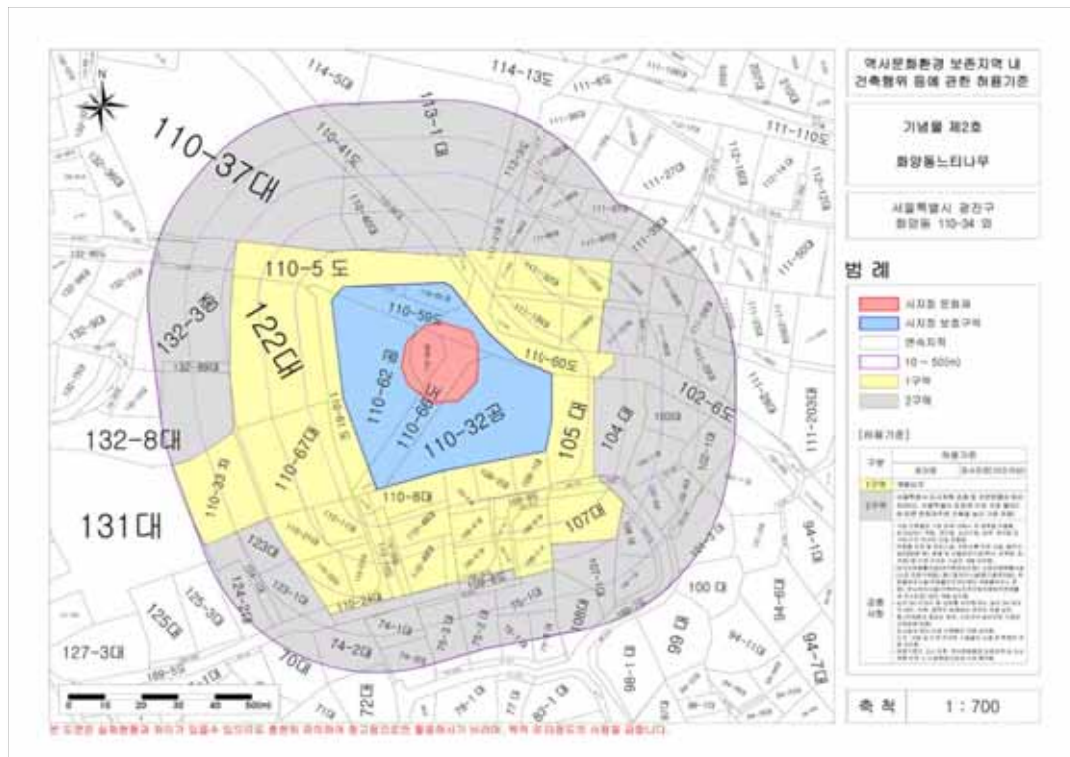
【 도면 (당초) 】

[기념물 제2호 화양동 느티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심의구역		
공통사항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재축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 원색계열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도면 (변경) 】



[붙임3] 서울시 유형문화재 '삼군부 청헌당, 연령군 이환 신도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범례 표 (당초) 】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심의구역		
공동사항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재축 허용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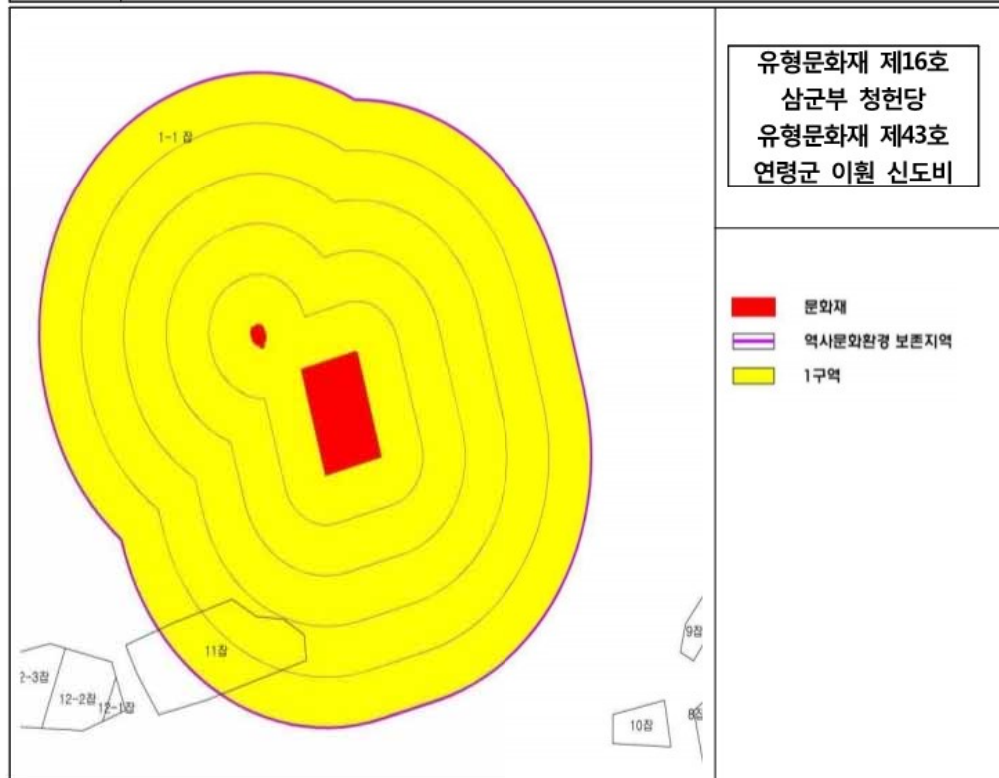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공동사항	○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서울특별시장과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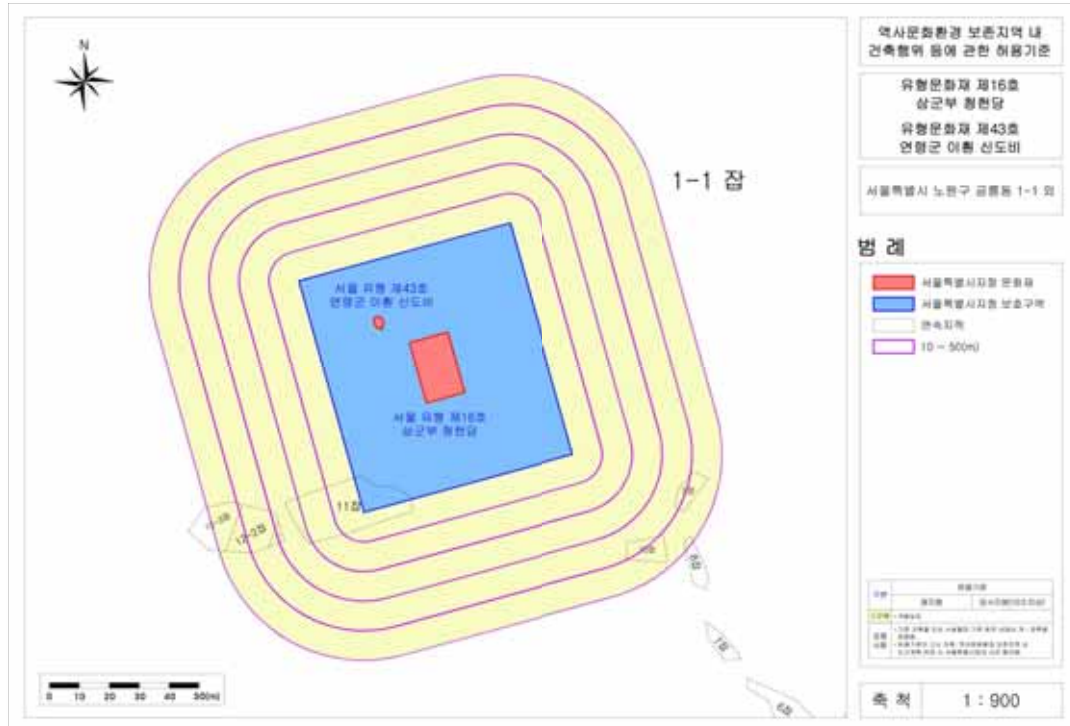
【 도면 (당초) 】

[유형 제16호 삼군부 청헌당, 유형 제43호 연령군 이훤 신도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심의구역		
공통사항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재축 허용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도면 (변경) 】



[붙임4] 서울시 문화재자료 '진관사 칠성각, 진관사 독성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범례 표 (당초) 】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심의구역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공통사항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재축 허용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 원색계열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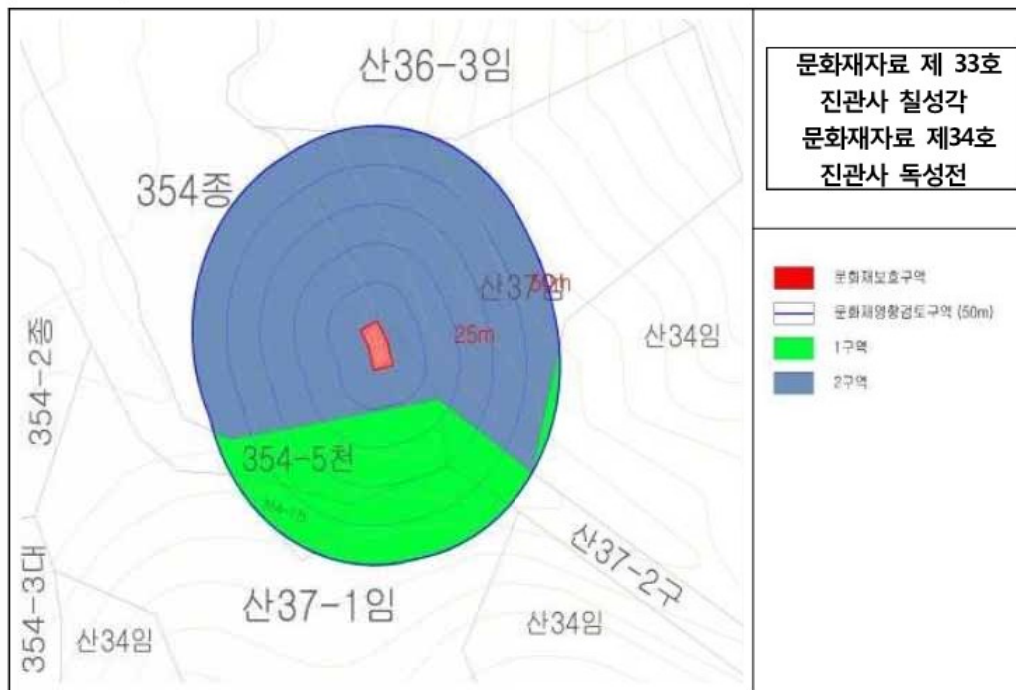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 소음·진동·악취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서울특별시장과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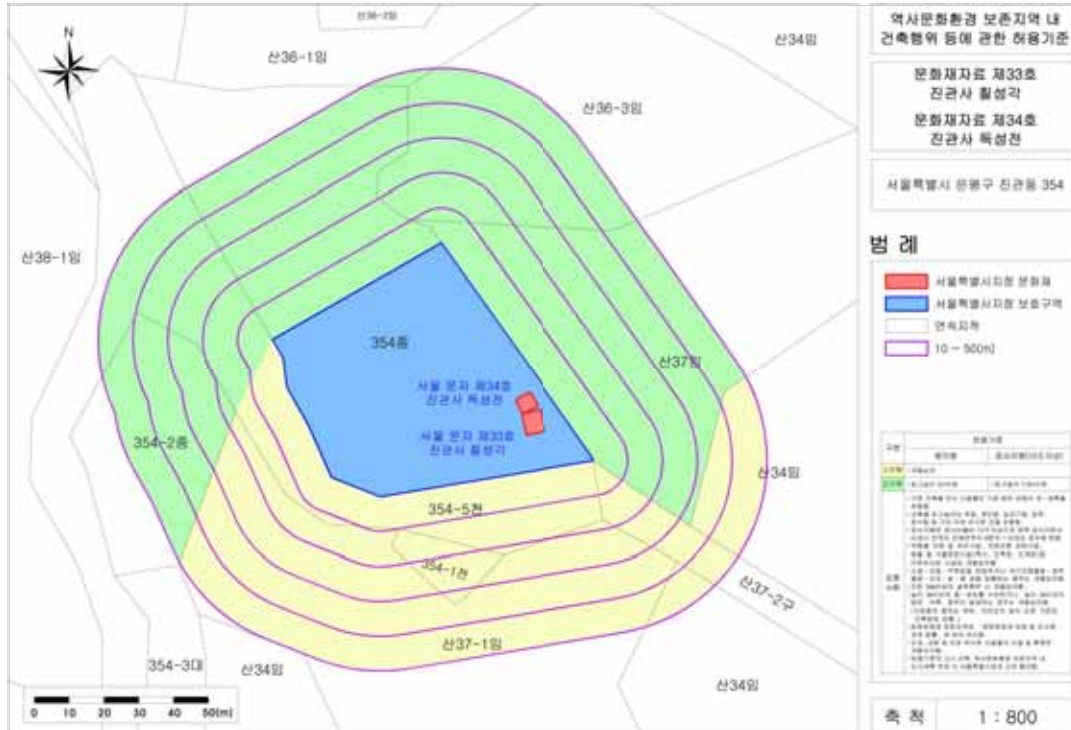
【 도면 (당초) 】

[문화재자료 제33호 진관사 칠성각, 제34호 진관사 독성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최고높이 5m이하	○ 최고높이 7.5m이하	
공통사항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재축 허용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 원색계열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도면 (변경) 】



[붙임5] 서울시 민속문화재 '용강동 정구중 가옥'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범례 표 (당초) 】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심의구역		
3구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단,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별표2에 따른 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기준적용)		
공통사항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재축 허용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 등) ○ 원색계열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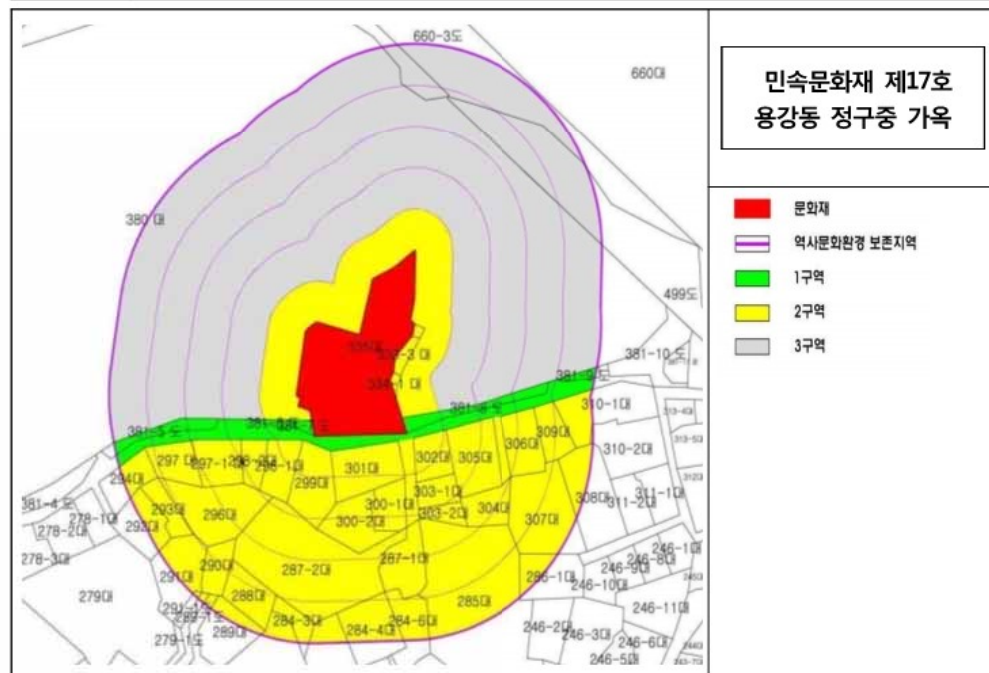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단,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별표2에 따른 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기준 적용)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 단, 2구역은 제외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서울특별시장과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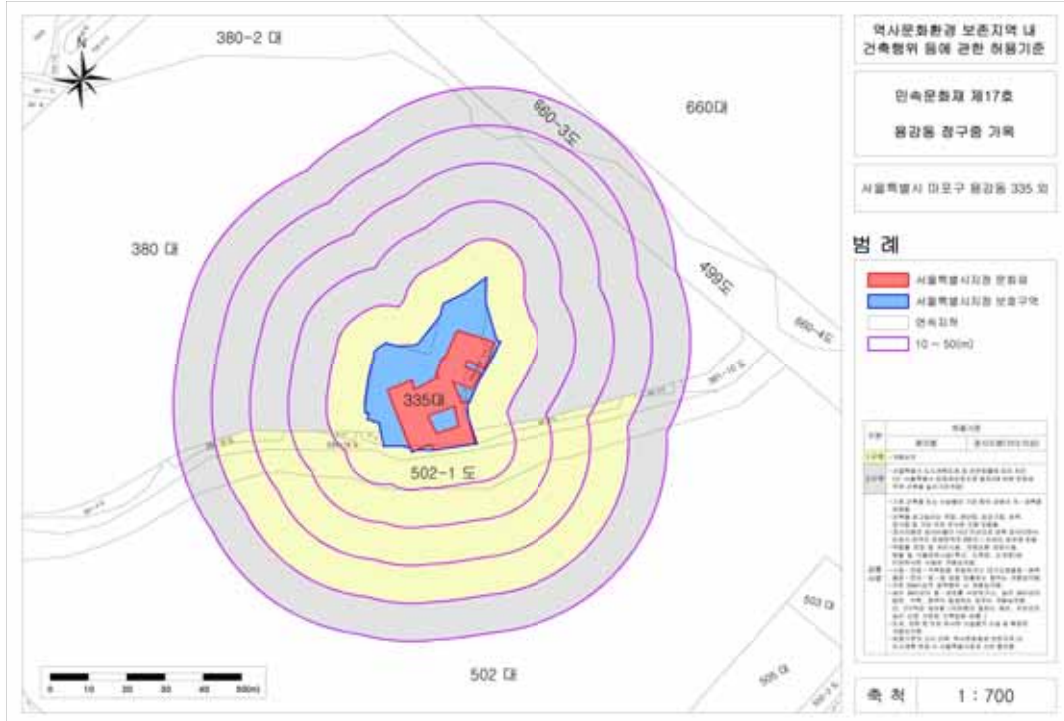
【 도면 (당초) 】

[민속문화재 제17호 용강동 정구중 가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심의구역		
3구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단,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별표2에 따른 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기준적용)		
공통사항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재축 허용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 등) ○ 원색계열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도면 (변경) 】



[붙임6] 서울시 유형문화재 '낙성대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범례 표 (당초) 】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심의구역		
공통사항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재축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 원색계열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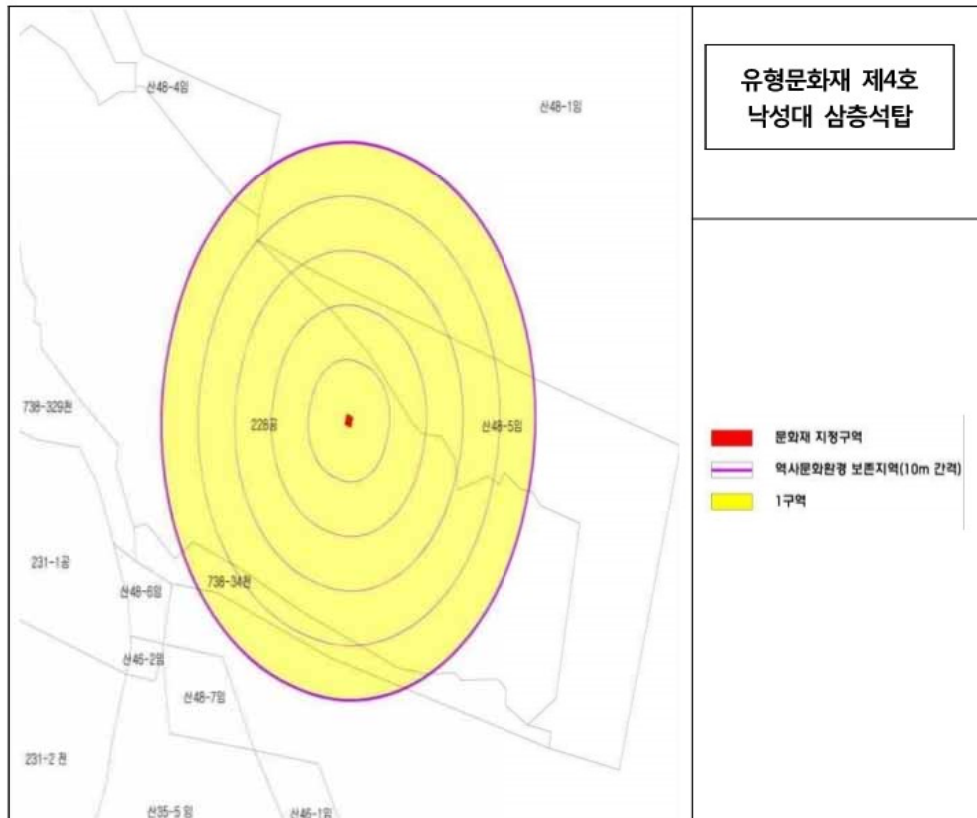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서울특별시장과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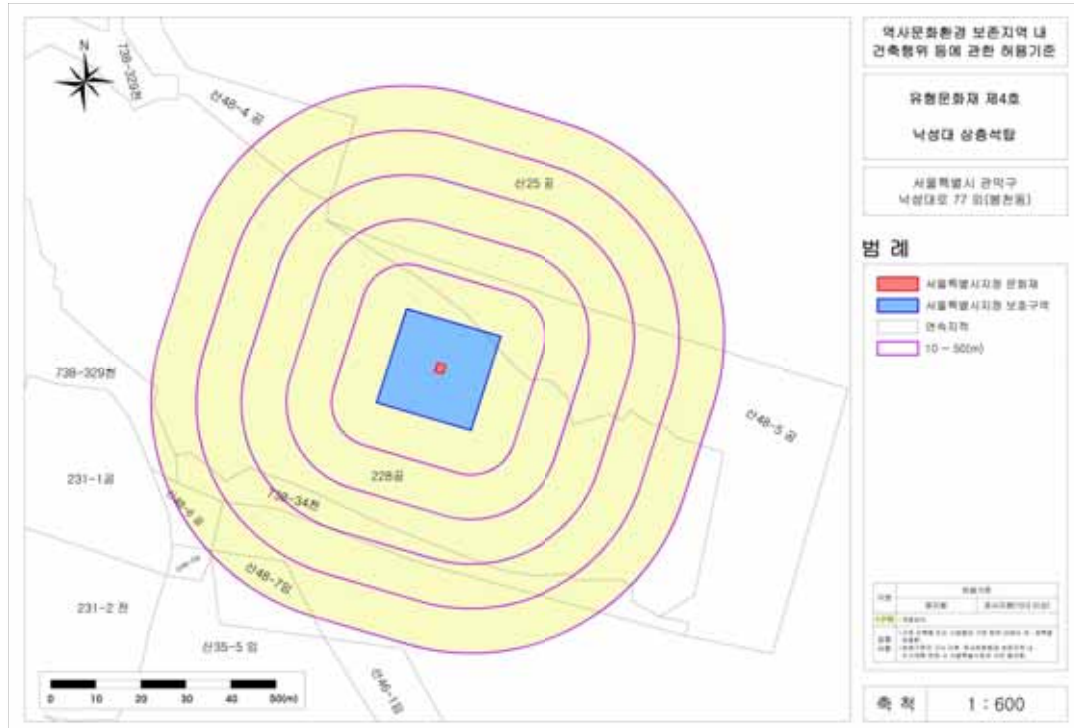
【 도면 (당초) 】

[유형 제4호 낙성대 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심의구역		
공통사항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재축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 원색계열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도면 (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72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철도)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3호(2020.01.23.)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648호(2021.12.02.)호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철도)사업 변경 계획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철도)사업

- 명 칭 : 사당로 (구)범진여객 ~ 솔밭로 입구 도로확장, 지하철7호선 남성역

출입구·환기구 이설 및 승강편의시설 설치

2) 사업시행구간(변경없음)

- 동작구 사당동 219-30 ~ 266-1, 지하철7호선 남성역

3) 사업규모(변경없음)

- 도로 : 도로확장 폭 4차로 → 6차로, 연장 618m

- 철도 : 면적 2,399㎡

▶ 지하철 출입구 이설(2개소), 환기구 이설(1개소), 승강편의시설 신설(1개소)

4) 사업시행자(변경없음):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 사업의 기간(변경있음)

	당 초	변 경	비고
도 로	2017.07.20.~2021.12.31.	2017.07.20.~2022.04.30.	
철 도	2021.12.02.~2021.12.31.	2021.12.02.~2022.04.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02-2133-8080),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02-820-1405)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 - 725호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0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68호(1973.9.6.)로 태평로2가 재개발구역 지정 및 건설부고시 제285호(1978.9.26.)로 서소문제2구역 재개발구역 지정되어, 건설부고시 제428호(1978.12.29.)로 태평로2가구역 및 서소문제2구역 변경(통합) 및 재개발사업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33호(2020.6.4.)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서소문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0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1년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2021.12.1.)의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장

I.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지구 지정 조서(변경)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 경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0지구	서소문동 58-7 일대	2,687.0	증) 843.7	3,530.7	-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에 및 제84조제1항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는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을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 정비지구 변경사유서

구분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10지구	• 사업시행지구 면적 변경 증) 843.7㎡	•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기부채납에 따른 시행면적 증가

2.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687.0	증) 843.7	3,530.7	100.0	-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정비기반 시설 등	소계	-	증) 863.3	863.3	24.4	-
	도로	-	증) 580.2	580.2	16.4	-
	공원	-	증) 283.1	283.1	8.0	-
합계		2,687.0	감) 19.6	2,667.4	75.6	-

3.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530.7	-	3,530.7	100.0	-
일반상업지역	3,530.7	-	3,530.7	100.0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규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4	35~40	주간선 도로	일반 도로	430	태평로2가 340-6	서소문동 58-26	-	건설부고시 제428호 ('78.12.29)	• 미집행 구간의 실효
변경	대로	1	4	35~40	주간선 도로	일반 도로	430 (42)	태평로2가 340-6	서소문동 58-26	-	-	• 미집행구간 일부 개설
기정	소로	3	2	6.5~7	집산 도로	일반 도로	175	서소문동 120-26	서소문동 72-4	-	서울시고시 제380호 ('81.10.21)	-
변경	소로	3	2	6.5~7	집산 도로	일반 도로	132	서소문동 120-26	서소문동 120-18	-	-	• 연장 축소
변경	소로	1	가	10	집산 도로	일반 도로	43 (43)	서소문동 120-20	서소문동 72-4	-	-	• 폭원 확장
폐지	소로	3	3	7	집산 도로	일반 도로	100	서소문동 58-10	서소문동 72-4	-	서울시고시 제2020-233호 ('20.6.4)	-

구 분	규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1	8~10	집산 도로	일반 도로	75	서소문동 90-2	서소문동 111-3	-	건설부고시 제428호 ('78.12.29)	• 미집행 구간의 실효
변경	소로	2	1	8~10	집산 도로	일반 도로	75	서소문동 90-2	서소문동 111-3	-	-	• 미집행구간 일부개설
기정	소로	2	2	10	집산 도로	일반 도로	63	서소문동 120-17	서소문동 60-1	-	서울시고시 제2009-538호 ('09.12.24)	-
변경	소로	2	2	7.5~8.5	집산 도로	일반 도로	63	서소문동 120-17	서소문동 60-1	-	-	• 선형 및 폭원 변경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1-4	대로 1-4	• 일부개설 (L=42m, B=5.5m, A=238.6㎡)	• 중구고시 제2020-81호('20.7.2.)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실효 된 정비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해 급회 사업시행을 통해 조성 되는 부분 재지정
소로 3-2	소로 3-2	• 도로 연장 축소 (L=175m → 132m)	• 도로 노선분리에 따른 연장 축소
	소로 1-가	• 도로 노선 분리 (B=10m, L=43m)	• 인접 소단위관리지구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노선분리 및 도로확폭
소로 3-3	소로 3-3	• 도로 폐지	• 11·12지구 획지통합(예정)에 따라 도로 폐지
소로 2-1	소로 2-1	• 일부개설 (L=17m, B=8.5m, A=123.1㎡)	• 중구고시 제2020-81호('20.7.2.)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실효 된 정비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해 급회 사업시행을 통해 조성 되는 부분 재지정
소로 2-2	소로 2-2	• 도로 선형 및 폭원 변경 (B=10m → 7.5~8.5m)	• 도시계획시설 조서 오기에 따른 착오로 폭원 정정 및 선형 조정

나. 공원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원	소공원 (광장형 도심소공원)	서소문동 116일대	397.5 (283.1)	-	397.5 (283.1)	서울시고시 제2009-538호 (2009.12.24)	-

※ ()는 10지구 내 면적임

5. 정비기반시설 설치(부담) 계획 (변경)

구분	사업 지구	시행 지구면적 (㎡)	획지 면적 (㎡)	신설정비 기반시설 (㎡)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획지내 용도폐지 국공유지 (㎡)	순부담 면적 (㎡)	순부담률 (%)	비고
기정	제10 지구	2,687.0	2,687.0	-	-	-	-	-	평균 순부담률 13.78%
변경		3,530.7	2,667.4	863.3	31.0	406.0	426.3	13.78	

※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와 획지내 용도 폐지되는 국공유지는 무상양도 대상으로 순부담률 산정 시 제외

6.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변경)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이주	
기정	서소문 제10지구	2,687.0	서소문 제10지구	2,687.0	서소문동 58-7일대	2	-	-	2	-	
변경	서소문 제10지구	3,530.7 (증 843.7)	서소문 제10지구	2,667.4 (감 19.6)							

7.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서소문구역 제10지구	2,687.0	-	2,687.0	중구 서소문동 58-7번지 일대	업무	60 이하	600/800/ α	90이하	-
변경	서소문구역 제10지구	3,530.7	-	2,667.4	중구 서소문동 58-7번지 일대	업무	60 이하	966이하	90이하	-
건축물 배치에 관한 계획	기정	• 건축한계선 지정 - 서소문로변 3m, 세종대로11길 · 세종대로9길변 2m • 10지구, 11-1지구 경계부 고층배치금지 구간 설정 - 폭원 10m 지정, 높이 30m 이하 건축 가능								
	변경	• 건축한계선 지정 - 서소문로변 3m, 세종대로11길 · 세종대로9길변 2m • 10지구, 11 · 12지구 경계부 고층배치금지 구간 설정 (도면참조) - 폭원 10m 지정, 높이 30m 이하 건축 가능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대지내공지 - 동측 도로변(세종대로9길) 및 남측 도로변(세종대로11길) : 보도형 전면공지(2m) 조성 - 북측 도로변(서소문로) : 보도형 전면공지(3m) 조성 • 공공보행통로 - 동서간 폭원 4m 이상, 높이 6.5m 이상 계획									

■ 용적률 계획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 (구역면적)	획지	계획 정비기반시설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획지 내 용도폐지 국·공유지(㎡)																															
	3,530.7	2,667.4	863.3	31.0	406.0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 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국·공유지 = 863.3㎡ - 31.0㎡ - 406.0㎡ = 426.3㎡ (13.78%) (※13.78%이상) * 신설 정비기반시설 면적 : 도로(580.2㎡), 공원(283.1㎡)																																			
기준용적률	• 기준용적률 = 600%																																			
허용용적률	• 허용용적률 = 200%																																			
	<table><tr><th colspan="2">목적</th><th>인센티브 완화 요건</th><th>산정방식</th><th>완화량</th></tr><tr><td colspan="2" rowspan="3">친환경개발</td><td>녹색건축물 인증(그린 1등급)</td><td rowspan="3">정량 부여</td><td rowspan="3">100%</td></tr><tr><td>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240kwh/㎡y이하)</td></tr><tr><td>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11%이상)</td></tr><tr><td>역사 보전</td><td>옛길/ 옛물길복원</td><td>역사도심기본계획서 정한 관리지침(Guideline)에 적합하게 조성</td><td>정량 부여</td><td>50%</td></tr><tr><td rowspan="2">보행 가로 활성화</td><td>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td><td>재생관리지침에 따라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시</td><td>정량 부여</td><td>30%</td></tr><tr><td>공공보행통로</td><td>재생관리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조성 시</td><td>정률 부여</td><td>적용 배제</td></tr><tr><td>안전 방재</td><td>방재관련시설</td><td>투수성포장, 저류시설, 지붕저류·지붕녹화 설치기준의 120% 이상 계획 및 노후 하수관거(128.8m) 교체 시</td><td>정량 부여</td><td>30%</td></tr></table>				목적		인센티브 완화 요건	산정방식	완화량	친환경개발		녹색건축물 인증(그린 1등급)	정량 부여	100%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240kwh/㎡y이하)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11%이상)	역사 보전	옛길/ 옛물길복원	역사도심기본계획서 정한 관리지침(Guideline)에 적합하게 조성	정량 부여	50%	보행 가로 활성화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재생관리지침에 따라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시	정량 부여	30%	공공보행통로	재생관리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조성 시	정률 부여	적용 배제	안전 방재	방재관련시설	투수성포장, 저류시설, 지붕저류·지붕녹화 설치기준의 120% 이상 계획 및 노후 하수관거(128.8m) 교체 시	정량 부여	30%	
	목적		인센티브 완화 요건	산정방식	완화량																															
	친환경개발		녹색건축물 인증(그린 1등급)	정량 부여	100%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240kwh/㎡y이하)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11%이상)																																	
	역사 보전	옛길/ 옛물길복원	역사도심기본계획서 정한 관리지침(Guideline)에 적합하게 조성	정량 부여	50%																															
	보행 가로 활성화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재생관리지침에 따라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시	정량 부여	30%																															
공공보행통로		재생관리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조성 시	정률 부여	적용 배제																																
안전 방재	방재관련시설	투수성포장, 저류시설, 지붕저류·지붕녹화 설치기준의 120% 이상 계획 및 노후 하수관거(128.8m) 교체 시	정량 부여	30%																																
상한용적률			α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863.3-437.0) ÷ 2,677.4 = 0.1598 . . .																																	
• 상한용적률 = 966% 이하 • 공공시설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토지) ▶ 대상지 ⇒ 800%×[1+1.3×1.0×(426.3÷2,667.4)] ∴ 상한용적률 = 966.21%																																				

8.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

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도시경관	•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경관에 적합하도록 계획 수립 • 주요 도로변에서의 조망분석으로 주변 건축물 등 조화로운 도시경관 유도	-
환경보전	• 공사 시 사업부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가연성, 불연성 등으로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함을 설치토록 유도 • 폐기물 수거는 중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	-
재난방지	• 안정구배를 유지하고, 벽면의 상·하단에 배수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토사의 유출을 방지 • 구역 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으로 방재계획 수립	-

나.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 반영사항
1. 생태면적율	20% 이상	• 사업대상지는 현재 불투수 포장지역임	• 자연·인공지반녹지, 부분포장, 전면투수포장 적용
2. 녹지네트워크	녹지평가표1	• 사업대상지는 현재 불투수 포장지역임	• 단지 내 조경·녹지계획 반영
3. 지향변동	지형·지질 변동최소화	• 완만한 구릉지로 지형변화 최소화	• 현 지반고를 고려 지형순응형 계획 수립
4. 비오톱	비오톱보전 등급 향상	• 비오톱유형평가 5등급 • 개별비오톱평가 제외	• 조경녹지 및 투수성 포장으로 비오톱 기능 향상
5. 일조	일조침해 최소화	• 건축물 신축시 주변 건축물 영향 예상	•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건축계획
6.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고층 업무시설 밀집지로 바람길 미확보	• 고층배치금지구간 설정을 통해 바람길 확보
7. 에너지	에너지절약계획 수립	• 에너지사용량 증가 예상	• 에너지절약성 설계기법 적용
8. 경관	Skyline 보전	• 스카이라인 변화 예상	•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건물 배치 및 높이 설정
9. 휴식 및 여유평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주변에 휴식·여가공간 부족	• 전면공지 계획하여 보행공간 확충 • 인접지구와 연계하여 공개공지 조성
10. 보행친화공간	보행자도로 계획 수립	• 옛길 등 관습도로 보존 필요	• 원형 가지길 보존하여 공공보행통로 조성
11. 소음 및 진동	공사시 65dB이하	• 인근도로에 의한 영향 발생 지역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 준수
12. 폐기물	폐기물처리	• 기존 건축물 철거시 폐기물 발생	•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9.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 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대상지 북측 일부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입지	- 제10지구 북측 일부가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상대보호구역에 해당되나, 도로(대로1-4)에 의해 이격(폭원 35~40m)되어 건축물 신축에 따른 일조 등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사업시행인가 시 교육영향평가 심의 진행 예정	-

10.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현황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비고
	추진위/조합 설립 ~ 착공 전	착공 ~ 공사 완료	범죄예방설계 적용	
임차세대(4호) 퇴거 예정	- 펜스 설치 및 유지·관리 1일 오전·오후 1회 우범지역 순찰 -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규정 준수 - 안전 시공 -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비 계상	- 방범용 CCTV는 사각지대 설치 -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사이에 전이공간을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공간의 성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 - 수목의 식재로 사각지대나 고립지가 생기지 않도록 수목의 간격을 적당하게 유지하여 계획	-

11. 구역 내 옛길, 옛물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건축자산 및 한옥 등 역사문화자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

- 10지구 대상지 내 원형 옛길에 해당되며, 58-3도, 72-4도, 120-대 일부가 포함되며, 금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해당 구간에 공공보행통로를 조성 할 계획임
- 해당 옛 길의 역사성 보전을 위해 서소문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지구 내 옛길을 공공보행통로로 조성하고 대상지 서측으로 연결되는 옛길과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보행 동선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계획
- 공공보행통로 및 옛길 주변의 보행환경을 고려하여 가로활성화 용도인 판매시설을 인접하여 배치

□ 2021년 제16차('21.12.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구분	심의결과	내용	비고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	수정 가결	• 수정사항 - 용적률 : 기준 600%, 허용 800%, 상한 966% ※ 허용용적률 : 친환경 100%, 역사보전 50%, 가로활성화 30%, 안전방재 30% - 공공기여 : 426.3㎡ (13.78%) ※ 도로, 공원 - 건축선 : 고층배치구간 선형 조정 및 가로활성화용도 서소문로측 벽면길이 1/2이상 확보 - 교통계획 : 차량전출입구 및 남측도로 횡단구성계획 • 조건사항 - 가로활성화 용도로 계단 없이 자연스러운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상1층 내부 레벨차이(약2m)가 있는 부분의 단차를 최소화할 것 - 공공보행통로의 높이는 실제 유효높이가 최소 6.5m 이상 확보되도록 할 것.	-

※ 심의상정 시 결정·고시 이행조건 : 서소문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시에 소로3-3 페이지가 불가할 경우, 이를 반영한 서소문구역 제10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진행할 것

III. 관련도면 : 붙임 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기정/변경)
2.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변경)
4. 정비계획 결정도(기정/변경)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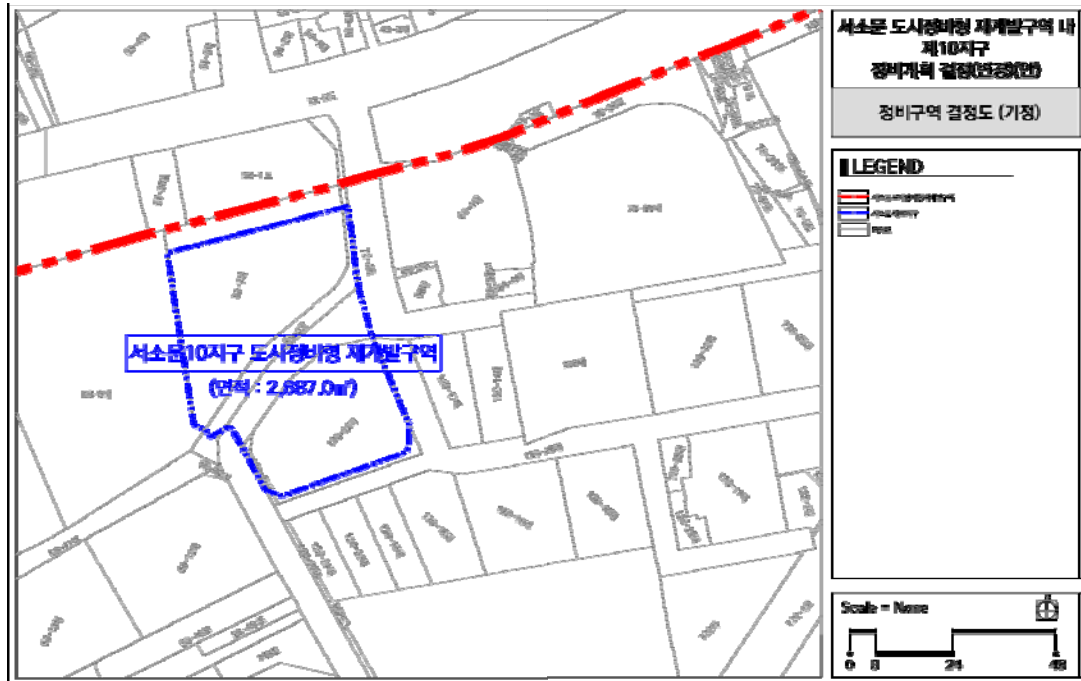
IV.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도서 : 생략

V.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02-2133-4635),
중구 도심재생과(☎02-3396-5775)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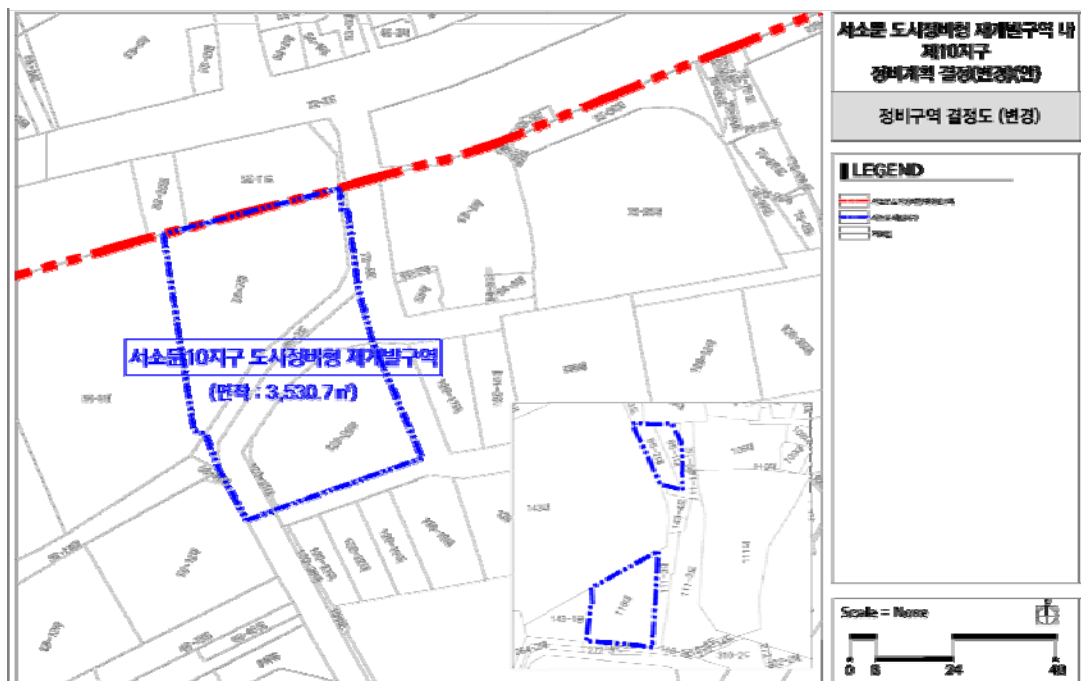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VI. 도시정비형 재개발(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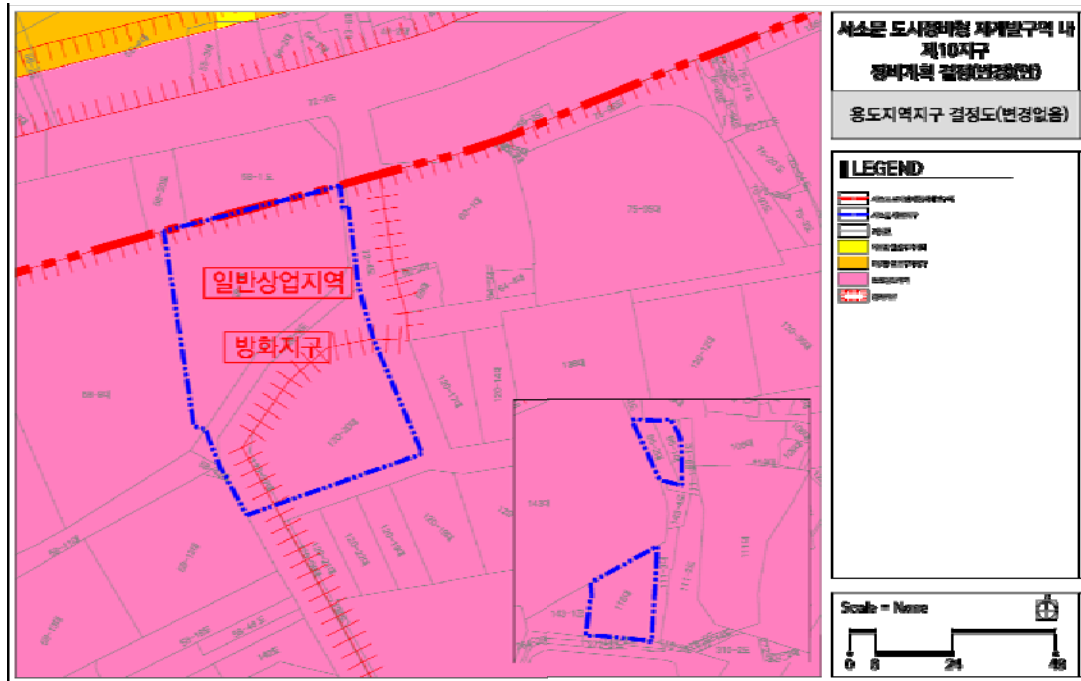
□정비구역 결정도(기정)



□정비구역 결정도(변경)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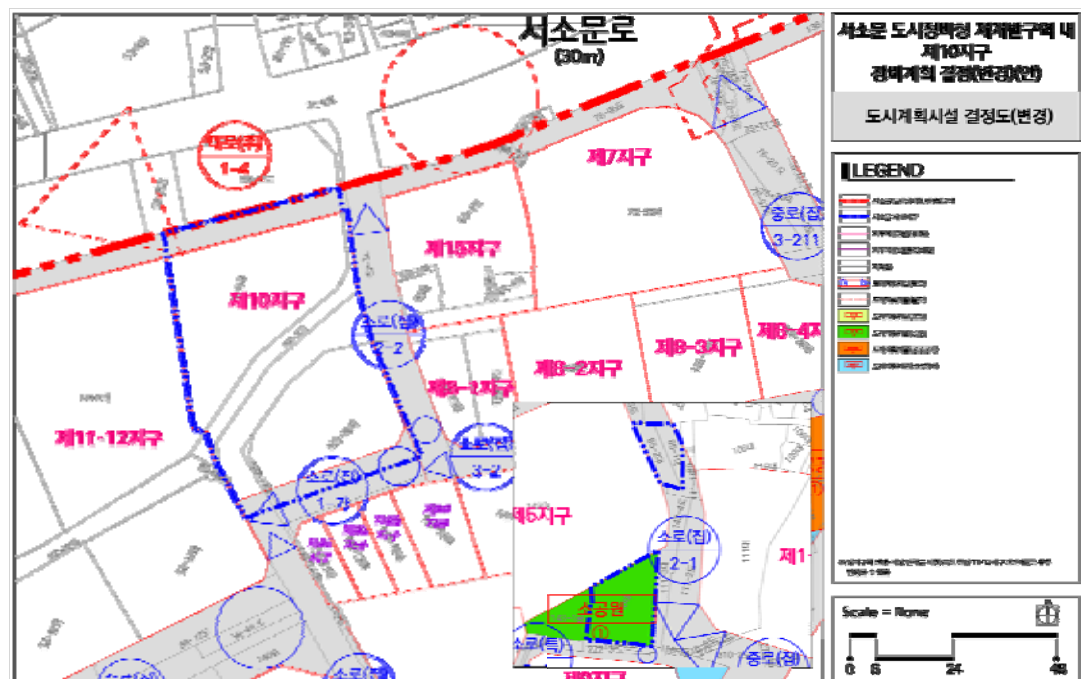


- 이하여백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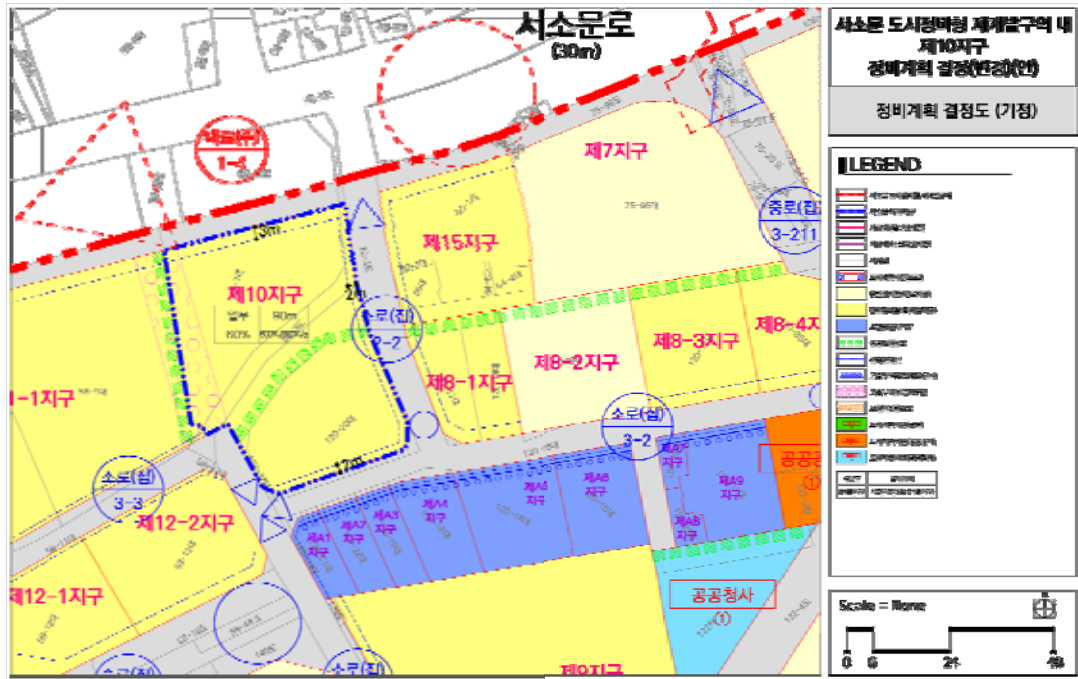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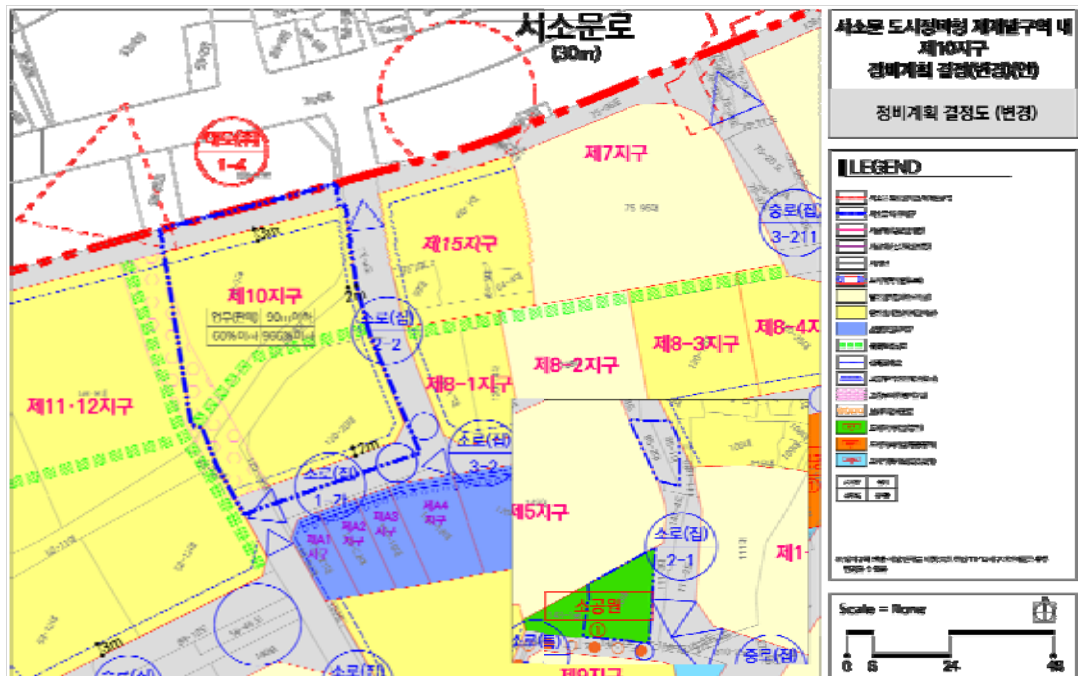


※ 정비구역 변경·지정 절차를 이행 중인 연접 11·12지구 관련사항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정비계획 결정도(기정)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 정비구역 변경·지정 절차를 이행 중인 연접 11·12지구 관련사항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 - 726호

버스전용차로 변경(신설) 고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와 관련하여 버스전용차로 변경(신설)사항을 「도로교통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일반시민에게 사전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장

가. 버스전용차로 신설

도로 구분	구 간	가로명	연장 (km)	전용차로 종 류	시행일
일반 도로	서울시계 → 개화교	김포대로	0.2	시간제 중앙 버스전용차로	' 22. 1.

나. 버스전용차로 설치·운영현황

전일제(가로변 버스전용차로) □ 운영시간 : 07시~21시, 토요일·공휴일 제외			
도 로 명	운영구간	거리(km)	운영개시
과천대로	남대령전원마을 → 시계	0.9	' 93. 2.
현 충 로	국립현충원R → 한강대교남단	1.9	' 93. 8.
노량진로	영등포R ~ 대방역3	1.1	' 94. 8.
퇴 계 로	회현역 ~ 광희동4	3.0	' 94. 5.
한 남 로	한남5 → 한남초교	0.6	' 94. 5.
망 우 로	청량리R → 시조사3	1.1	' 94. 8.
강남대로	영동1교남단 ~ 염곡4	1.0	' 94. 12.
남대문로	광교R ~ 숭례문교차로	1.5	' 95. 4.
사 평 로	강남성모병원3 ~ 반포IC	1.3	' 95. 4.

전일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 운영시간 : 07시~21시, 토요일·공휴일 제외			
도 로 명	운영구간	거리(km)	운영개시
양 평 로	양평동4 ~ 영등포전화국4	1.5	' 95. 4.
압구정로	한양APT4 ~ 한남대교남단	2.5	' 95. 4.
남부순환로	시흥IC ~ 까치고개	7.3	' 95. 4.
올림픽로	삼성4 ~ 잠실역4	3.3	' 95. 5.
	축협풍납 ~ 올림픽회관	1.0	' 99. 12.(' 07. 8. 전일제 변경)
대 학 로	이화R → 해화R	1.5	' 96. 8.
	종로4가 → 이화R	0.6	' 03. 7.
창경궁로	종로4가 → 해화R	0.5	' 03. 7.
관 악 로	봉천4 ~ 송실대3	2.0	' 98. 2.(' 07. 1. 전일제 변경)
영등포로	영등포R ~ 오목교	3.1	' 95. 5.(' 07. 8. 전일제 변경)
영동대로	영동대교남단 ~ 학여울역4	3.5	' 95. 5.(' 07. 8. 전일제 변경)
풍 납 로	천호4 ~ 축협풍납	1.2	' 99. 12.(' 07. 8. 전일제 변경)
소 계	21개 구간	40.4	

시간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 운영시간 : 07시~10시, 17시~21시, 토요일·공휴일 제외			
도 로 명	운영구간	거리(km)	운영개시
왕십리길	성동교북단 → 행당삼부아파트입구	1.0	' 93. 8.(' 18. 5. 편방향 폐지)
	대중약국(하왕십리동860) → 서울중앙시장(퇴계로433)	0.7	' 93. 8.(' 18. 5. 편방향 폐지)
	신당역교차로 → 한양공고앞교차로	0.4	' 93. 8.(' 18. 5. 편방향 폐지)
용 호 로	원효대교남단 ~ 여의교	1.0	' 94. 8.(' 00. 2. 시간제 변경)
현 릉 로	염곡4 ~ 내곡IC	2.9	' 95. 4.(' 00. 2. 시간제 변경)
등 촌 로	등촌3 ~ 목동역	2.9	' 95. 4.(' 00. 2. 시간제 변경)

시간제(가로변 버스전용차로) □ 운영시간 : 07시~10시, 17시~21시, 토요일·공휴일 제외			
도 로 명	운영구간	거리(km)	운영개시
월 계 로	월계초교입구 ~ 을지병원4	2.0	' 95. 4.(' 98. 9. 시간제 변경)
화 곡 로	화곡역4 ~ 양원초교앞	1.5	' 96. 8.(' 03. 2. 시간제 변경)
	강서구청입구4 ~ 화곡역4	1.9	' 95. 5.(' 07. 8. 시간제 변경)
원 효 로	원효대교북단 ~ 남영역	2.7	' 96. 8.(' 00. 2. 시간제 변경)

시간제(가로변 버스전용차로) □ 운영시간 : 07시~10시, 17시~21시, 토요일·공휴일 제외			
도 로 명	운영구간	거리(km)	운영개시
동 일 로	수락파출소 ~ 망우로	10.2	' 96. 8.(' 98. 9. 시간제 변경)
남부순환로	양재역4 ~ 학여울역4	3.7	' 96. 8.(' 00. 2. 시간제 변경)
강 서 로	발산역4 ~ 화곡역4	2.1	' 96. 8.(' 98. 9. 시간제 변경)
도산대로	신사역 4 ~ 안세병원 4	0.9	' 98. 2.(' 07. 1. 구간축소)
종 암 로	종암경찰서 ~ 고대입구3	1.3	' 99. 12.
성 산 로	성산1교 ~ 사천고가	1.5	' 94. 5.(' 07. 8. 시간제 변경)
은 평 로	서부세무서 ~ 녹번역3	0.7	' 95. 5.(' 07. 8. 시간제 변경)
올림픽로	올림픽회관 ~ 잠실4	1.5	' 99. 12.(' 07. 8. 시간제 확장)
화 랑 로	월릉교 4 ~ 삼육대학교	4.4	'14. 11.
소 계	19개 구간	43.3	

24시간 전일제 (중앙버스전용차로) □ 운영시간 : 00시~24시, 토요일·공휴일 포함			
도 로 명	운영구간	거리(km)	운영개시
도 봉 로	의정부시계 ~ 미아4	10.0	' 04. 7.
동소문로	미아4 ~ 혜화R	4.0	' 04. 7.
창경궁로	혜화R → 원남4	1.3	' 04. 7.
망 우 로	망우역4 → 청량리R	4.9	' 05. 7.
	시조사3 → 망우역4	3.3	' 05. 7.
	망우역4 ~ 구리시계	2.2	' 10. 8.
왕 산 로	동대문R ~ 청량리R	3.4	'11. 12.
천호대로	신답R ~ 아차산역4	4.5	' 96. 2.
	신답철교 ~ 신답R	0.7	' 03. 7.
	강동역 ~ 서울시계	5.1	' 11. 3.
	아차산역4 ~ 천호대교 남단	2.6	' 18. 5.
	신설동R ← 신답철교	1.7	' 03. 7.
	용두역(동대문구청역) → 신답철교	0.3	' 05. 9.
	천호대교 남단 ~ 강동역	1.2	' 20. 9.
송파대로	잠실대교 남단 ~ 성남시계	6.3	' 08. 1.

24시간 전일제 (중앙버스전용차로) □ 운영시간 : 00시~24시, 토요일·공휴일 포함			
도 로 명	운영구간	거리(km)	운영개시
삼일대로	퇴계로2가 ~ 종로2가	1.0	' 04. 5.
	남산1호터널 북단 → 퇴계로2가	0.7	' 18. 1.
강남대로	신사역4 ~ 영등1교남단	4.8	' 04. 7.
신반포로	이수교차로 ~ 논현역4	3.5	' 09. 6.
동작대로	이수교차로 ~ 사당역	2.7	' 09.11.
과천대로	사당역 ~ 과천시계	2.1	' 18. 9.

24시간 전일제 (중앙버스전용차로) □ 운영시간 : 00시~24시, 토요일·공휴일 포함			
도 로 명	운영구간	거리(km)	운영개시
시흥대로	대림3 ~ 안양시계	6.5	' 05. 12.
여의대방로	대림아파트 앞(대방동 383) ~ 대림3	2.5	' 05. 12.
한강대로	한강대교노들섬 ~ 서울역남단	4.1	' 06. 12.
	서울역남단 ~ 서울역북단	0.5	' 09. 7.
세종대로	승례문교차로 → 서울역북단	0.5	' 09. 7.
노량진로	대방역3 ~ 한강대교남단	2.8	' 09. 5.
경 인 로	영등포R ~ 오류IC	5.0	' 05. 7.
마포대로	마포대교북단 ~ 아현교차로	3.1	' 06.12.
양 화 로	양화대교 ~ 신촌R	4.0	' 09.12.
신 촌 로	신촌R ~ 아현교회	1.2	' 09.12.
	아현교회 ~ 충정로사거리	1.2	'14. 11.
충 정 로	충정로사거리 ~ 미동초교	0.5	'14. 11.
공 항 로	등촌중학교 ~ 양화교	2.5	' 09. 4.
	발산역4 ~ 등촌중학교	2.3	' 10. 8.
	김포공항입구 ~ 공항전화국	1.0	'12. 12.
	강서구청입구4(북단)	0.1	'15. 4.
	발산역4 ~ 공항전화국	1.8	'15. 8.
수 색 로	고양시계 ~ 사천교	3.9	' 04. 7.
성 산 로	사천교 ~ 이대후문	2.9	' 04. 7.
통일로	고양시계 ~ 박석고개	2.4	' 08. 10.
	박석고개 ~ 녹번역3	3.3	' 10. 12.
	녹번역3 ~ 서소문4	5.4	'11. 12.
새문안로	미동초교 ~ 세종대로4	1.2	' 17. 4.
종 로	세종대로4 ~ 동대문R	2.8	' 18. 1.
소 계	45개 구간	124.2	

기타 구간

- ☐ 경부고속도로(서울·부산 양방향)
 ○ 평일, 토요일·공휴일 07:00부터 ~ 21:00까지
 ○ 설날·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및 연휴 전날
 07:00부터 ~ 다음날 01:00까지

- ☐ 김포대로(서울 방향)
 ○ 평일 07:00~10:00, 17:00~21:00 (토요일·공휴일 제외)

※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따른 공휴일로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은 제외

도로명	운영구간	거리(km)	운영개시
경부고속도로	양재IC ~ 서초IC	2.6	' 04. 7. : 최초 시행 ' 08. 7. : 평일 확대 시행 ' 08. 10. : 운영시간 변경 ' 11. 1. : 운영시간 변경
	서초IC ~ 한남대교 남단	4.2	' 08. 7. : 최초 시행 ' 08. 10. : 운영시간 변경 ' 11. 1. : 운영시간 변경
김 포 대 로	서울시계 → 개화교	0.2	' 22. 1.
소 계	2개 도로	7.0	

다. 전체 구간

구 분	운영구간	거리(km)
전일제 가로변버스전용차로	21	40.4
시간제 가로변버스전용차로	19	43.3
중앙버스전용차로	45	124.2
기타구간 (경부고속도로, 김포대로)	2	7.0
합계	87	214.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교통운영과(2133-247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 - 727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한양대학교)

서울특별시고시 제60호(1975.5.1.)로 도시계획시설(학교)로 최초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2-86호(2002.3.25.)로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96호(2010.11.11.) 및 제2012-30호(2012.2.9.) 및 제2017-471호(2017.12.28.) 및 제2018-302호(2018.9.21.) 및 제2020-563호(2020.12.24.)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일대 한양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변경)·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일대 한양대학교에 대하여 학교 내 교육연구시설의 확충을 위해 건축계획 등을 반영한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세부시설조성계획 (기본계획)결정일]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학 교	대학 (한양대학교)	제1 캠퍼스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일대	411,356	-	411,356	1975.5.1. (서고시 제60호)	2017.12.28. (서고 제471호)
		제2 캠퍼스	성동구 사근동 223번지 일대	108,906	-	108,906		
		합계		520,262	-	520,262		

나.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구역계획 [변경 없음]

구분		구역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캠퍼스	일반관리구역	1	93,909	-	93,909	-
		2	26,784	-	26,784	-
		3	97,387	-	97,387	-
		4	70,610	-	70,610	-
		5	46,708	-	46,708	-
	상징경관구역	6	11,403	-	11,403	-
	외부활동구역	7	5,847	-	5,847	-
		8	20,241	-	20,241	-
		9	4,835	-	4,835	-
	녹지보존구역	10	18,095*	-	18,095*	*비오톱 1등급지 11,588㎡
		11	15,537	-	15,537	-
소계		411,356	-	411,356	-	
2캠퍼스	일반관리구역	12	13,068	-	13,068	-
		13	31,406	-	31,406	-
		14	25,468	-	25,468	-
	외부활동구역	15	9,090	-	9,090	-
	녹지보존구역	16	26,213	-	26,213	-
		17	3,661	-	3,661	-
	소계		108,906	-	108,906	-
합계		520,262	-	520,262	-	

※ ⑩구역 밀도산정기준면적

$$-18,095\text{㎡}(\text{⑩녹지보존구역 전체면적}) - 11,588\text{㎡}(\text{비오톱1등급지}) = 6,507\text{㎡}$$

2) 밀도계획(건폐율)

구분		밀도산정 기준면적 (㎡)	법정 건폐율 (%)	사용 건폐율(%)		관리 건폐율 (%)	비고
				기정	변경		
1캠퍼스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235,059.0	30.00	30.44	30.69	35.00	· 비오톱 1등급지 :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내 11,588㎡ · 자연경관지구 건폐율 : 30%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64,709.0	60.00				
	계	399,768.0	42.36				
2캠퍼스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18,985.0	30.00	13.99	13.99	20.00	· 자연경관지구 건폐율 : 30%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89,921.0	60.00				
	계	108,906.0	54.77				

3) 구역별 밀도계획(용적률 · 높이)

구분	구역 구분	용적률 (%)					높이(m)*	비고
		법정용적률	사용용적률		이전용적률	관리용적률		
			기정	변경				
1 캠퍼스	1	177.49	202.86	202.86	+25.77	203.26	●지표로부터 최대 12m~55m 이하	일반관리구역
	2	165.11	209.76	209.76	+44.65	209.76	●지표로부터 최대 28m~35m 이하	일반관리구역
	3	157.82	182.06	181.67	+24.36	182.18	●지표로부터 최대 12m~28m 이하	일반관리구역
	4	197.43	222.96	223.11	+25.87	223.31	●지표로부터 최대 12m~45m 이하	일반관리구역
	5	155.07	175.82	175.82	+24.48	179.55	●지표로부터 최대 20m~28m 이하	일반관리구역
	6	151.32	116.96	116.96	-34.36	116.96	●지표로부터 최대 20m~28m 이하	상징경관구역
	7	150.00	8.03	8.03	-141.97	8.03	●지표로부터 최대 20m 이하	외부활동구역

구분	구역 구분	용적률 (%)					높이(m)*	비고
		법정용적률	사용용적률		이전용적률	관리용적률		
			기정	변경				
1 캠퍼스	8	163.91	7.01	7.01	-155.92	7.99	●지표로부터 최대 12m 이하	외부활동구역
	9	200.00	4.31	4.31	-195.69	4.31	●지표로부터 최대 12m 이하	외부활동구역
	10	150.00	-	-	-150.00	-	●건축배치불가	녹지보존구역
	11	173.41	1.86	1.86	-171.55	1.86	●건축배치불가*	녹지보존구역
2 캠퍼스	12	195.48	197.54	197.54	+9.52	205.00	●지표로부터 최대 28m~45m 이하	일반관리구역
	13	200.00	74.54	74.54	-	125.00	●지표로부터 최대 28m 이하	일반관리구역
	14	199.32	103.85	103.85	-	115.00	●지표로부터 최대 28m 이하	일반관리구역
	15	200.00	-	-	-	-	●지표로부터 최대 12m 이하	외부활동구역
	16	166.70	0.69	0.69	-4.75	0.69	●건축배치불가*	녹지보존구역
	17	200.00	-	-	-	-	●건축배치불가	녹지보존구역

※ 상징경관구역, 외부활동구역에 부여된 여유 관리용적률은 해당 구역의 특성을 강화하거나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 가능

*현행 건축물에 한해 유지

4) 변경 건축물 조서

- 1캠퍼스

구역 구분	번호	건물명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지상층면적(㎡)				층수 (지하)		비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3	99	제3음향관 → 박화영음악관	399.27	1,042.91	-	48.51	2,765.32	3,420.84	-	191.63	2,397.36	1,879.67	-	133.29	7(1)	3(2)	계획건축물 변경
4	54	온실	-	-	330.00	-	-	-	369.00	-	-	-	330.00	-	1(1)	-	기존건축물금화철거
	59	교육연구시설	-	-	5,439.37	-	-	-	40,708.89	38,761.13	-	-	35,314.74	33,366.98	9(1)	9(1)	계획건축물
	123	의생명융합연구센터	-	-	-	618.32	-	-	-	3,722.85	-	-	-	2,381.41	-	6(2)	금회신축

※ 건축물의 규모, 위치 등 세부시설조성계획(변경) 상세내용은 고시도면(건축물 조서 포함)에 의함.

- 2캠퍼스

구역 구분	번호	건물명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지상층면적(㎡)				층수 (지하)		비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4	A	교사(교사1관)	-	-	1,359.93	1,359.93	-	-	3,207.17	3,207.17	-	-	3,207.17	3,207.17	3	4	건축물대장에 의한 층수 정정

※ 건축물의 규모, 위치 등 세부시설조성계획(변경) 상세내용은 고시도면(건축물 조서 포함)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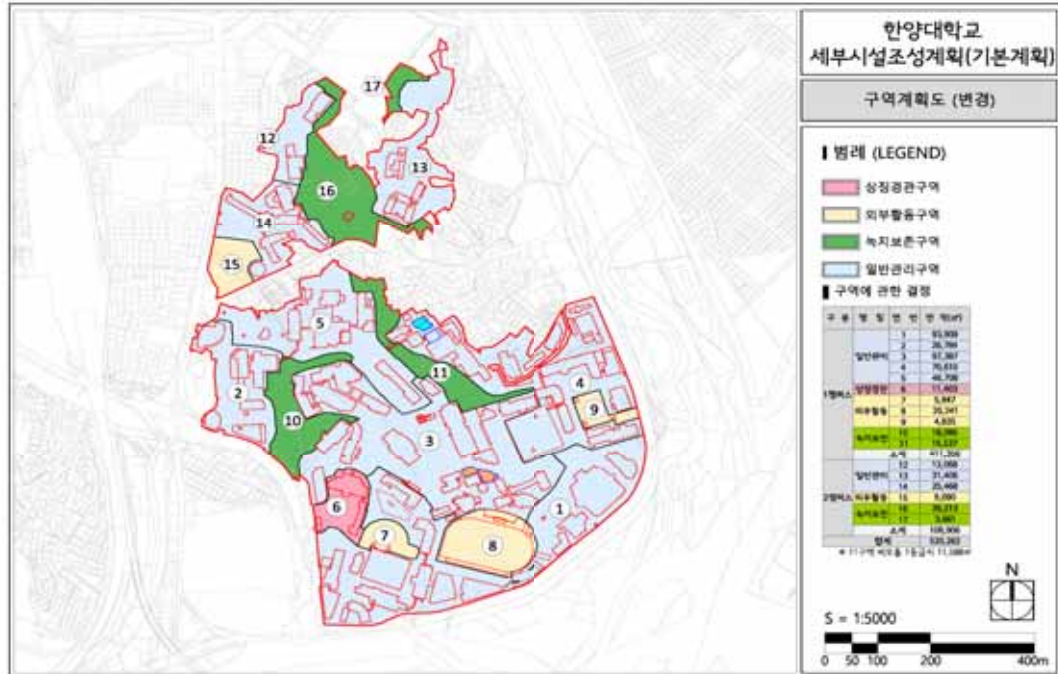
3. 관계도면 :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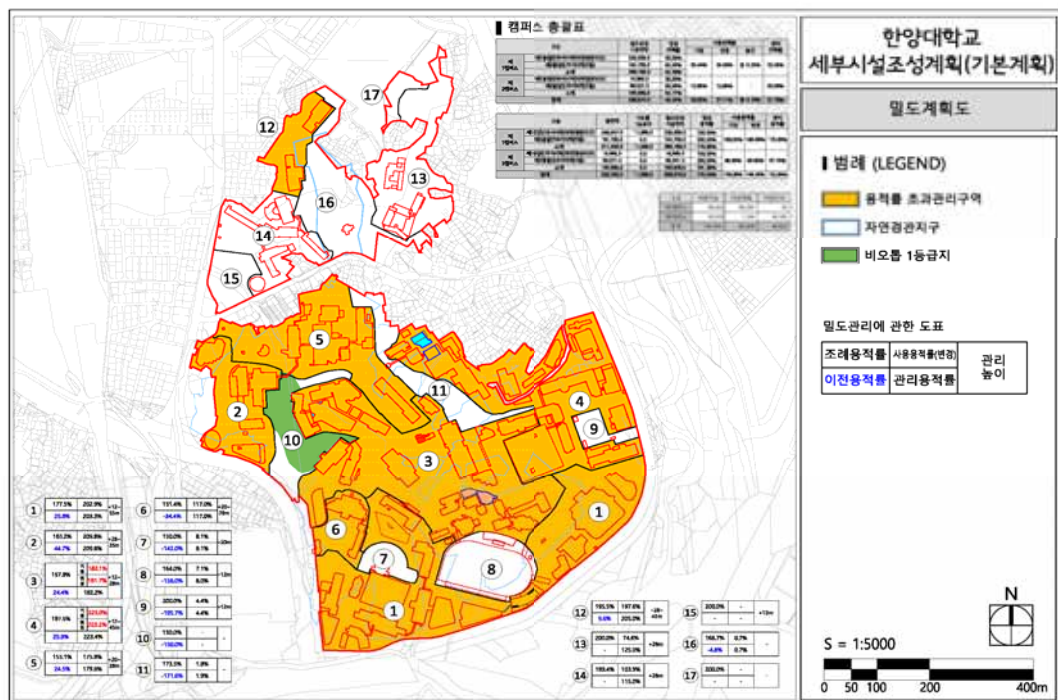
4.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2133-8413) 및 성동구 도시계획과(☎ 2286-5554)에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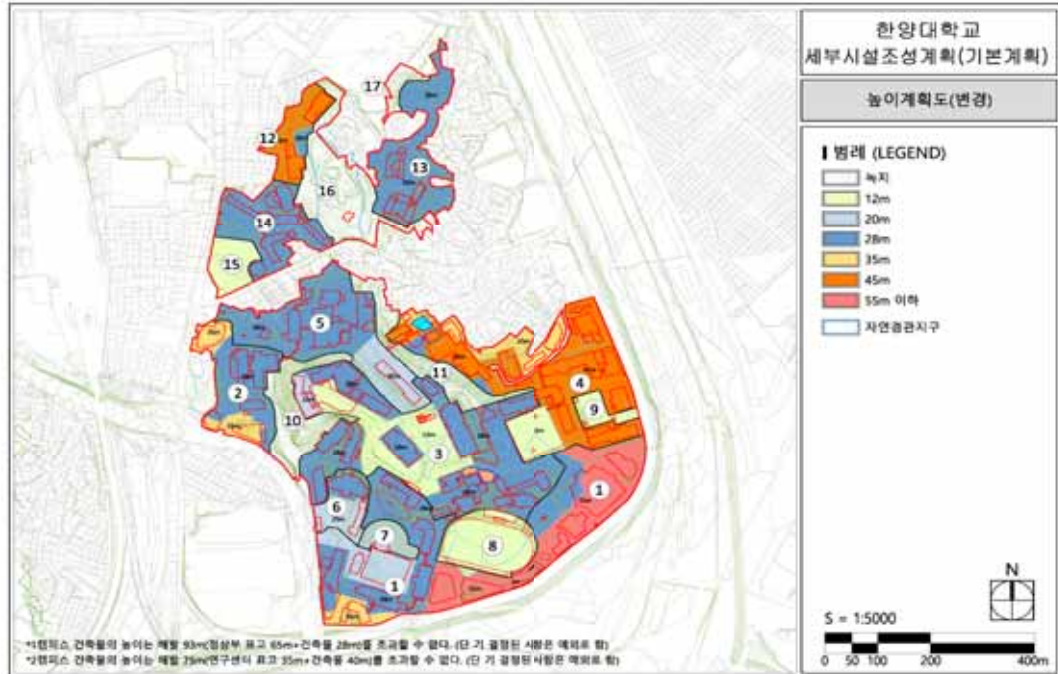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구역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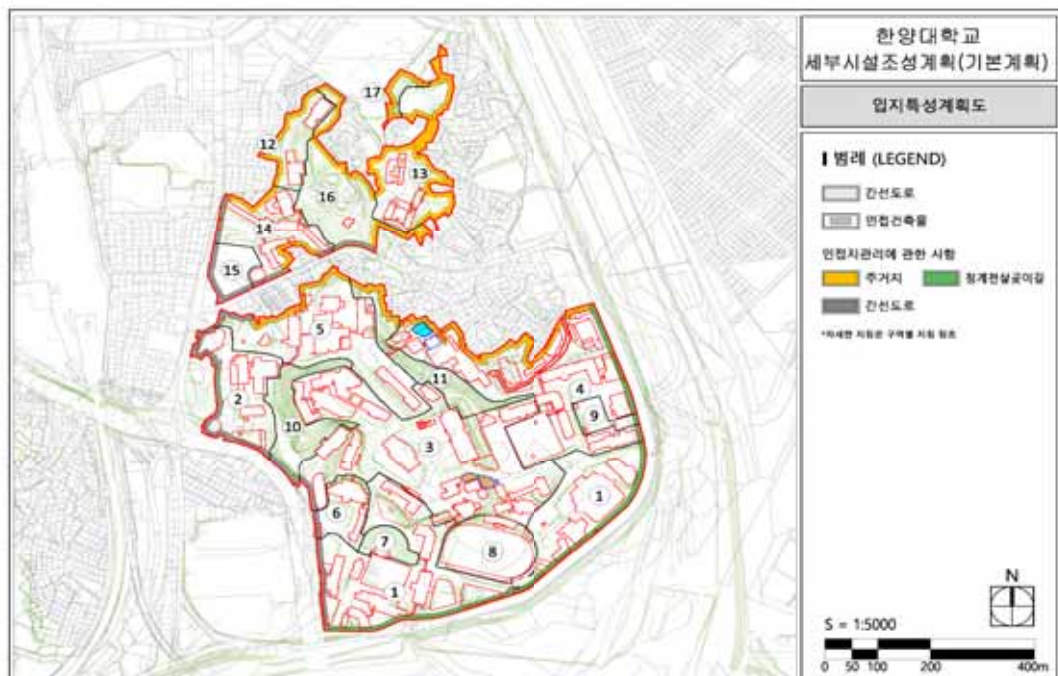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도(건폐율·용적률)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도(높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입지특성계획도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건축계획도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도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728호

문정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07호(2007.6.28.)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18호(2009.5.28.)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문정도시개발구역」의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위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신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장

I. 문정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문정도시개발구역 (변경없음)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49번지 일원
 - 면적 : 548,239.9㎡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문정지역 주변의 대규모 개발 계획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익성이 전제된 친환경적 도시개발 도모
 - 신성장동력산업 및 공공행정 지원시설을 계획적으로 유치하여 서울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공간 조성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시행자 : (기정)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변경)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현동
 - 사무소 소재지 : 강남구 개포로 621(강남구 개포동 14-5)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
 - 시행기간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총사업 시행기간	2007.06.28.~2022.06.30.	2007.06.28.~2022.12.31.	증)6개월
1공구	2007.06.28.~2017.05.18.	변경없음	사업부분준공 완료 (서울시공고제2017-1164호)
2공구	2007.06.28.~2021.12.31.	2007.06.28.~2022.03.31.	증)3개월
3공구	2007.06.28.~2022.06.30.	2007.06.28.~2022.12.31.	증)6개월

- 변경사유

- 2공구 : 문정 도시개발구역 2공구 (부분)준공검사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기간 필요

- 3공구 : 기반시설 공사 추진 및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한 협의 기간 필요
 -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 생략
7. 토지등의 세목 및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생략
8.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 (변경없음) : 생략
9.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구역지정의 고시일로부터 3년 (변경없음)
10.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생략
11. 관계도서의 열람 방법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 ☎ 02)2133-4647
 - 송파구청 혁신도시기획과 ☎ 02)2147-2170
 -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 ☎ 02)3410-7592

II. 문정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1. 사업의 명칭 : 문정도시개발구역 (변경없음)

2.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문정지역 주변의 대규모 개발 계획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익성이 전제된 친환경적 도시 개발 도모
- 신성장동력산업 및 공공행정 지원시설을 계획적으로 유치하여 서울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공간 조성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49번지 일원
- 면적 : 548,239.9㎡

4. 시행자 (변경)

- 시행자 : (기정)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변경)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현동

5. 시행기간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총사업 시행기간	2007.06.28.~2022.06.30.	2007.06.28.~2022.12.31.	증)6개월
1공구	2007.06.28.~2017.05.18.	변경없음	사업부분준공 완료 (서울시공고제2017-1164호)
2공구	2007.06.28.~2021.12.31.	2007.06.28.~2022.03.31.	증)3개월
3공구	2007.06.28.~2022.06.30.	2007.06.28.~2022.12.31.	증)6개월

- 변경사유

- 2공구 : 문정 도시개발구역 2공구 (부분)준공검사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기간 필요
- 3공구 : 기반시설 공사 추진 및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한 협의 기간 필요

6. 시행방식 (변경없음)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 내용 (변경없음) : 생략

8.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 (변경없음) : 생략

9.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10.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 ☎ 02)2133-4647
- 송파구청 혁신도시기획과 ☎ 02)2147-2170
-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 ☎ 02)3410-759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 - 72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74호(2010.10.2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29호(2013.5.2.)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05호(2013.7.4.), 제2014-352호(2014.10.16.), 제2015-44호(2015.2.17.), 제2020-130호(2020.4.2.)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작성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시 노원구 월계3동 성원APT ~ 노원구 상계동 상도교(의정부시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업의 명칭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다.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폭12.5~26.25m, 연장 6.85Km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변경없음)

- 성명 :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2층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실시계획인가고시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
- 변경) 실시계획인가고시일 ~ 2023년 6월 30일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3708-2579) 및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2133-80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 - 730호

**도시관리계획(금호동4가 1458번지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4가 1458번지 일원에 대하여 2021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2021.10.28.)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금호동4가 1458번지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장

I. 결정 취지

- 금호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금호동4가 1458번지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II.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금호동4가 1458번지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	금호동4가 1458번지 일원	-	증)13,103.0	13,103.0	-

주)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치	면적(㎡)	결정사유
신설	①	금호동4가 1458번지 일원	13,103.0	금호동4가 금호역 역세권의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2.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3,103.0	-	13,103.0	100.0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3,103.0	감)12,406.4	696.6	5.3	
	준주거지역	-	증)12,406.4	12,406.4	94.7	

주)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금호동4가 1458번지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2,406.4	·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따라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1	15.7~18	집산도로	97	금호동4가 1389-1	금호동4가 1440-1	일반도로	-	2019.09.19 (성동구고시 2019-88호)	장터길
변경	중로	2	1	18~20	집산도로	97	금호동4가 1389-1	금호동4가 1440-1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3	가	10~14	집산도로	48	금호동4가 1400-1	금호동4가 1394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2	가	8	집산도로	113	금호동4가 1401-2	금호동4가 1418-9	일반도로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1	중로2-1	· 도로 확폭, 연장 변경없음 - 폭원 : 15.7~18m → 18~20m	·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로 폭원 확폭
-	중로3-가	· 도로 신설 - 폭원 : 10~14m / 연장 : 48m	·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로 신설
-	소로2-가	· 도로 신설 - 폭원 : 8m / 연장 : 113m	·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로 신설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획지 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구분	위치	면적(㎡)	비고
A	획지	금호동4가 1458번지 일원	12,406.4	

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A	금호동4가 1458번지 일원	권장용도 (A)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다음 각 항목 - 제2호의 공동주택(주상복합건물) - 제3호의 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의 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7호의 판매시설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		
		불허용도 (I)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다음 각 항목 - 제3호의 1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 제4호의 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제외) -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제외) -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제28호의 장례식장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기준	· 200% 이하	
			허용	· 430% 이하	
			상한	· 490% 이하	
		최고높이		· 최고높이 95m 이하	
		최고층수		· 최고층수 29층 이하	

나) 허용용적률에 관한 계획

■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도면표시번호	운영기준	계획내용
A	· 사업계획에 따라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전용 60㎡ 이하 주택으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차별 또는 이용상 불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혼합(social mixing)을 반드시 계획하여야 하며, 사회혼합에 대한 별도로 운영기준 수립된 경우 이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 전용면적 60㎡ 이하 - 171세대 (55㎡ : 94세대, 59㎡ : 77세대)

주) 계획내용은 향후 건축계획 등이 변경될 경우 운영기준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

구분		운영기준	계획내용	비고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건축법 제8조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 할 수 있을 것 ◦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리모델링이 가능한 비내력벽체 부분설치	건축 위원회 결정 사항	
	커뮤니티 지원시설 설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주택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 : 공공임대주택 포함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의 3%(최소 450㎡)이상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 3-3(5)에 따라 기부채납 후 커뮤니티 지원시설 면적기준 1/2로 완화하여 적용	◦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 : 56,515.20㎡ ◦ 법정 커뮤니티면적 : 847.73㎡이상 ◦ 커뮤니티 확보면적 : 1,332.91㎡ ∴ 847.73㎡(1.5%) < 1,332.91㎡(2.36%)	기부 채납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실 아이돌봄 담당관)	
	친환경 건축물	환경 성능 부분	녹색건축물설계기준에 따른 등급 그린1등급(최우수) 이상 획득	㉠ 등급 상향단계적용	2가지 이상 상향 단계 적용
		에너지 성능 부분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획득(평균전용면적 60㎡ 초과)	㉠ 등급 상향단계적용	
		에너지 관리 부분	세대별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기능 + 공용부분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기능	㉠ 등급	
		신재생 에너지	연도별 설치비율 -0.5% 포인트 적용	㉠ 등급	
역사문화 보전	사업대상지에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 및 등록문화재 또는 역사생활 문화유산이 포함된 경우 보전계획을 준수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건축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해당없음			

주) 계획내용은 향후 건축계획 등이 변경 될 경우 운영기준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주) 커뮤니티 지원시설(우리동네키움센터)은 토지지분을 포함하여 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로 귀속되며, 서울시가 운영 및 관리함

다) 용적률 산정

■ 공공시설 부담계획

구분		합계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비고	
용적률산정면적		12,406.40	12,406.40			
공공시설부담율		-	20%		2,481.3㎡	
공공시설 확보면적	도로	696.60	696.60		용적률산정 면적의 18.7%	
	공공청사	1,628.51	1,628.51			
	소계	2,325.11	2,325.11			
세대수 및 면적		구분	합계	60㎡ 이하	60㎡ 초과	대지면적(㎡)
		합계(세대)	598 (100.0%)	402 (67.2%)	196 (32.8%)	10,959.40
		분양(세대)	427 (71.4%)	231 (38.6%)	196 (32.8%)	8,154.69
		공공임대(세대)	171 (28.6%)	171 (28.6%)	-	2,804.71
공공시설 부담률 산정		· 공공시설 부담률을 산정함에 있어 임대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하는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의 1/2을 부담률로 갈음할 수 있음 · 본 사업대상지는 공공시설 의무면적의 1/2이상인 도로(696.60㎡)와 공공청사(1,628.51㎡)를 순 부담면적으로 설치하였으며, 공공시설 의무면적의 1/2은 무상양여하는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2,804.71㎡)를 확보함으로써 공공시설 의무면적 이상으로 계획하였음			전체 기부채납 면적 = 2,325.11㎡ (순부담률 : 18.7%) + 2,804.71㎡ (공공임대 : 22.6%) = 5,129.82㎡(41.3%)	

주) 계획 면적은 향후 건축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 공공청사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로 성동구(여의신장애인복지회)에 귀속·관리되며, 세부 성능 수준, 설비 등은 관할 관리청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승인 시 확정하여 준공 시 기부채납

■ 상한용적률 산정

구분	산출결과	산 출 내 역	비 고
공공시설 제공면적	1,083.29	· 도로 + 건축물(공공시설) 대지지분 = 696.60㎡ + 386.69㎡ = 1,083.29㎡	
기중치	0.6560	· 공공시설 제공부지 용적률 / 사업부지 용적률 = 282.1% / 430.0% = 0.6560	
α토지	0.0901	· 공공시설 제공부지 면적 / 공공시설 제공 후의 대지면적 = 1,083.29㎡ / (12,406.40㎡ - 386.69㎡) = 0.0901	
α건축물	0.1033	· 공공시설 제공 면적 / 공공시설 제공 후의 대지면적 = 1,241.81㎡ / (12,406.40㎡ - 386.69㎡) = 0.1033 * 환산부지면적: 건축비 / 부지가액 = (3,254,000원/㎡ × 3,061.45㎡) / 8,022,091.80원/㎡ = 1,241.8155	
기준용적률	200.00%	-	

구분	산출결과	산 출 내 역	비 고
허용용적률	430.00%	-	
상한용적률	490.00%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토지+0.7×α건축물) = 430.0% × (1+1.3×0.6560×0.0901+0.7×0.1033) = 494.15% ≒ 490.00% 이하 적용	
공공임대주택용적률	115.00%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1/2 이상 = (430.00% - 200.00%) × 1/2 = 115.00% 이상	

주)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은 인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

라) 비주거시설에 관한 계획

획지 번호	운영기준	계획내용
A	· 준주거지역으로 계획 시에는 역세권 가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상층 연면적의 10% 이상을 비주거시설(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로 지상층에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여건, 지하철 연결 통로 및 지하상가 활성화 등이 가능할 경우 관련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중로2-1 도로에 접한 지하1층~지하2층 근린생활시설 가로활성화를 위해 비주거시설 설치 완화	· 지상층 연면적 : 61,738.26㎡ · 법정 비주거시설 면적 : 6,173.83㎡이상 · 비주거시설 확보면적 : 7,254.91㎡ - 지상층 비주거시설 : 5,223.06㎡ - 지하층 비주거시설 : 2,031.85㎡ ∴ 6,173.83㎡(10.0%) < 7,254.91㎡(11.75%)

주) 계획내용은 향후 건축계획 등이 변경될 경우 운영기준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건축물의 배치·형태·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물의 배치계획

도면표시 번호	구분	계획내용	위치	비 고
A	건축한계선	3m	· 광로 2-63호변 · 중로 2-1호변 · 중로 3-가호변 · 소로 2-가호변 · 소로 3-1호변	대지경계선에서 3m

■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 등에 관한 계획

도면표시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A	형 태	· 탑상형 위주	
	색 채	· 주조색 : 밝은색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 보조색 : 2가지 이내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 강조색 : 원색 또는 강한색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가. 대지내 공지 계획 결정조서

도면표시 번호	구분		계획내용	비 고
A	전면공지	간선도로변	· 건축한계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보도형) · 간선도로변 미관증진 및 보행공간 확보 · 접하는 보도와 단차를 없애고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 · 주차장, 통행방해물 등의 설치 금지	건축한계선 3m
		이면도로변		
	공공보행통로		· 폭원 8m 이상	

나. 차량동선계획 결정조서

■ 차량 진·출입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 광로 2-63호선 구간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비상차량 허용

다. 지하연결통로 설치 및 운영계획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운영계획	설치계획
지하 연결 통로	지하1층	폭원 2m 이상	· 관리운영 : 건물주 · 운영시간 : 상시운영	· 지하철 역사와 동호로2길을 연결하는 통로 및 건물 내부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상시 공공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

III. 관련도면 : 붙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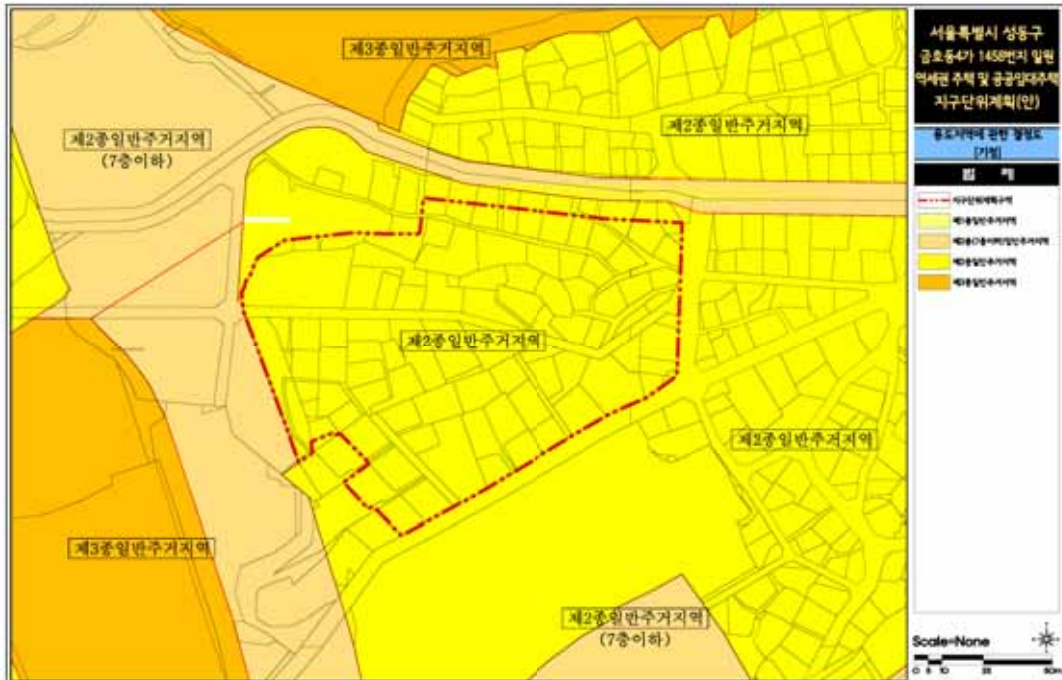
IV.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전략사업과(☎02-2133-8240) 및 성동구 도시계획과(☎02-2286-5562)에 관련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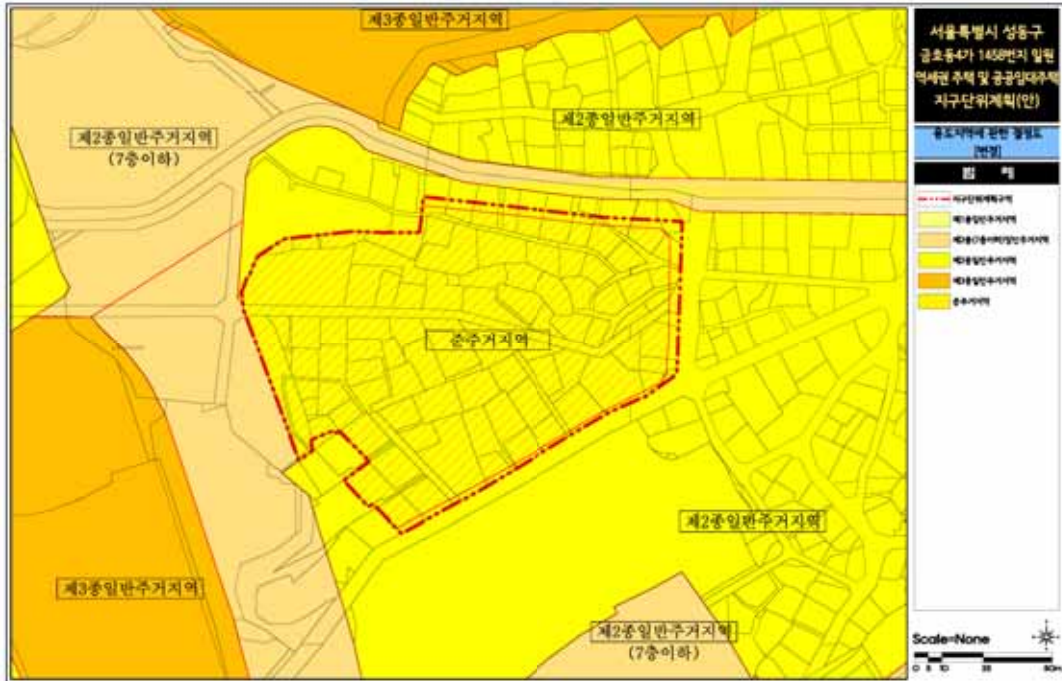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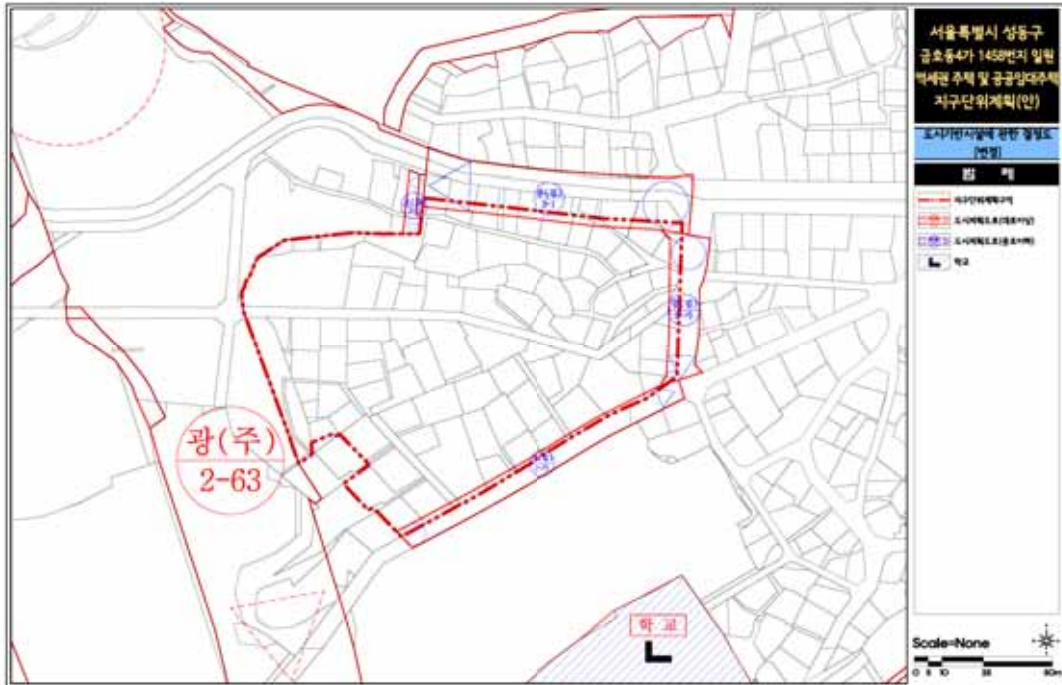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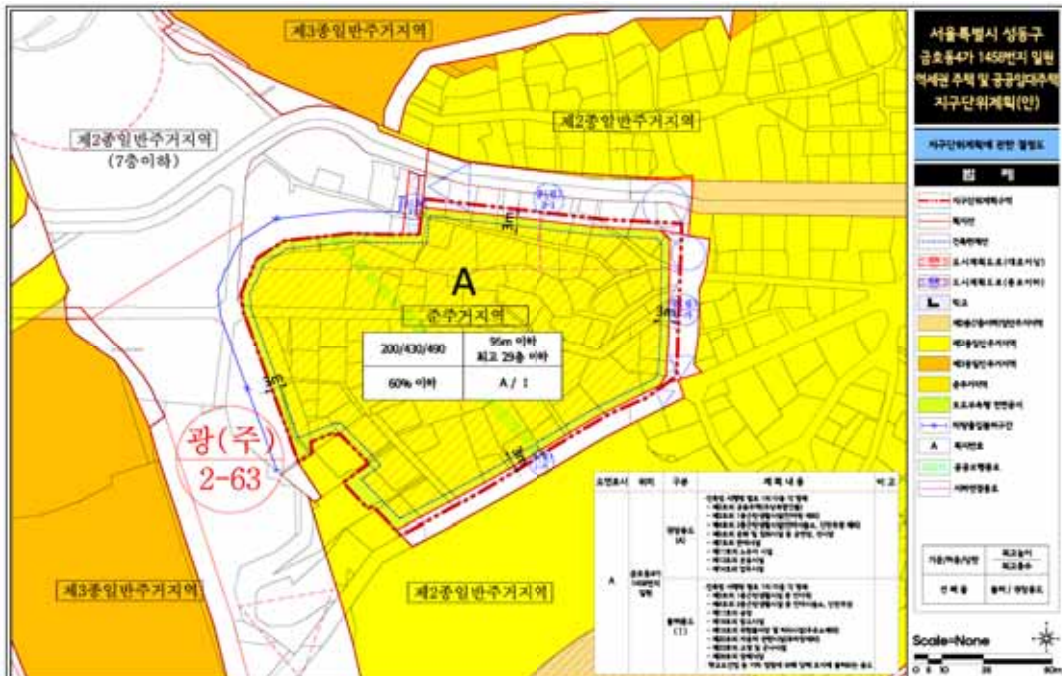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기정)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



■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도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 - 731호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 제13조의4제1항,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지정목적이 상실된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1. 보호수 지정해제 수목내역

구분	관리번호	수종	소재지	수목 현황			토지소유자	비고
				수령(년)	수고(m)	흉고직경(m)		
지정해제	서2-13	향나무	중구 예관동 99	300	10	1.6	서울특별시중구	
지정해제	서12-9	가죽나무	은평구 수색로 380-1	117	16	0.8	철도청	
지정해제	서13-6	느티나무	서대문구 백련사길 170-72	115	10	0.6	백련사	
지정해제	서24-7	회화나무	송파구 석촌동 248	235	12	0.7	서울특별시	

2. 지정해제 사유

관리번호	수종	지정해제 사유	비고
서2-13	향나무	' 19.9.7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지상부 하부의 줄기만 남은 상태로, 보호수 가치 상실	
서12-9	가죽나무	' 21.10.1 야간 돌풍으로 인해 근부를 포함한 수목전체가 완전히 도복·고사됨	
서13-6	느티나무	콘크리트 포장 단층면에 생립하고 있어 수목의 생장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요인이 많은 상태로, 원줄기의 세로 방향 균열 및 수피 탈락현상 등 관찰에 따라 고사된 것으로 판정	
서24-7	회화나무	근계의 기능저하 및 뿌리 고사 등으로 인해 수목의 활력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녹병이 줄기 및 가지 등으로 확산되어 고사됨	

3. 지정해제일 : 2021년 12월 30일

4.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조경과(☎2133-21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 - 732호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및 등록 고시

「문화재보호법」 제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등),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8조(지정문화재), 제11조(지정의 고시 및 통보), 제62조(등록문화재의 등록), 제67조(준용 규정)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및 등록 사실을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장

1.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및 등록 개요

가. 문화재 지정 및 등록 개요

지정 종별	지정 명칭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보관장소 (소유자/ 관리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502호	미타사 금수암 처성광여래도 (彌陀寺 金水庵 處成光如來圖)	1점	전체 : 138.8×139.2cm 그림 : 133×132.3cm	1883년	성동구 (대한불교조계종 미타사)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503호	미타사 금수암 신중도 (彌陀寺 金水庵 神衆圖)	1점	전체 : 164.5×156cm 그림 : 155.3×145.8cm	1900년	성동구 (대한불교조계종 미타사)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504호	미타사 극락전 지장시왕도 (彌陀寺 極樂殿 地藏十王圖)	1점	전체 : 164×245cm 그림 : 152×228cm	1887년	성동구 (대한불교조계종 미타사)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505호	미타사 극락전 현왕도 (彌陀寺 極樂殿 現王圖)	1점	전체 : 163×246cm 그림 : 154.5×239.6cm	1887년	성동구 (대한불교조계종 미타사)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506호	봉은사 시왕도 (奉恩寺 十王圖)	3점	제2·4대왕 116×148.5cm	1777년	강남구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제5·7·9대왕 113×121.3cm		중구 (국유)
			제6·8·10대왕 115×216cm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507호	경조낭청구선생안 (京兆郎廳舊先生案)	1책	49×33.5cm	조선시대 (1644년~18세기)	용산구 (서울특별시교육청 남산도서관)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508호	경성당상구선생안 (京兆堂上舊先生案)	1책	48.9×33.5cm	조선시대 (1640년~18세기)	용산구 (서울특별시교육청 남산도서관)

지정 종별	지정 명칭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보관장소 (소유자/ 관리자)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제84호	미타사 정수암 소조여래좌상 (彌陀寺 淨水庵 塑造如來坐像)	1점	높이 : 30cm 무릎 너비 : 19cm	1930년	성동구 (대한불교조계종 미타사)
서울특별시 등록문화재 제10호	남산도서관 소장 일제강점기 잡지 3종	3종 16책	서울(1종 3책) 15×21.7~22cm	1919~1920년	용산구 (서울특별시교육청 남산도서관)
			備聲(1종 1책) 15×22.2cm	1931년	
			우리의 가당(1종 12책) 14.5×20.7cm	1914년	
서울특별시 등록문화재 제11호	남산도서관 소장 경성부 발간 자료 16종	16종 156책	京城府における公定價格集 15×21.8cm	1942년	용산구 (서울특별시교육청 남산도서관)
			京城府勸業施設概況 15×22.2~22.3cm	1934, 1937년	
			京城府立圖書館報 19×26cm	1936년	
			京城府立順化院要覽 15.3×22.5cm	1935년	
			京城府方面委員提要 13×19cm	1928년	
			京城府歳入歳出豫算書 19×26.5cm	1923년	
			京城府歳入出豫算書 19.2×26.5cm	1927년	
			京城府人口統計 26.5×18.5cm	1942년	
			京城府一般會計特別會計歳入出豫算 書 19.3~19.5~×26.5cm	1931~1932년	
			京城府學事一覽 15.2×22.3~22.5cm	1926~1927년	
			京城學校組合歳入出豫算書 19.3×26.3cm	일제강점기	
			京城彙報 22.5×29.5cm	일제강점기	
			内鮮風俗習慣のしるべ 13×18.8cm	일제강점기	
			商工累年統計書 19~20.5×26.5~26.8cm	1924~1926년	
			重要商品調査 : 線布の部 15.2×22.3cm	1924년	
			會社と所得稅 15.2×22.5cm	1933년	

나. 지정 및 등록 사유

1) 유형문화재

【 미타사 금수암 치성광여래도(彌陀寺 金水庵 熾盛光如來圖) 】

미타사 금수암 치성광여래도는 도교적 사고가 약화된 설법회도 형식을 갖고 있으며, 수미단 위 청련좌(靑蓮座)에 결가부좌하고 앉아 왼 손에 법륜(法輪)을 들고 있는 치성광여래를 중심으로 머리광배(頭光) 좌우로는 칠원성군(七元聖君) 형식의 좌우 보·필성(輔弼星)을 두었다. 보·필성 바깥쪽으로 복두칠성을 여래화 한 7불(좌측3불, 우측 4불)을 배치하였으며 본존불 하단으로는 협시보살인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을 위시하여 칠원성군을 두었는데, 7불과 수를 맞추어 좌우 대칭을 이루도록 좌측에 4구 우측에 3구를 배치하였다. 조성연대 및 조성지와 봉안처가 분명하고 당시 시대상을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 당시 경기도를 중심으로 큰 활약상을 보인 ‘체훈’ 이 차화승으로 참여한 불화로서 그 기량을 엿볼 수 있다는데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서울시 유형문화재 지정하여 보존해야 한다.

【 미타사 금수암 신중도(彌陀寺 金水庵 神衆圖) 】

미타사 금수암 신중도는 거의 정방형에 가까운 크기의 화면을 상·하 2단으로 나누어 상단에는 서로 마주 보듯 서서 합장하고 있는 제석천(帝釋天:향우측)과 범천(梵天:향좌측)을 비롯하여 중앙 부에는 쌍계(雙髻) 머리를 하고 공양하고 있는 천동(天童) 3명이 자리하고 있으며, 제석천과 범천 바깥쪽에는 주악천녀(奏樂天女)가 자리 하였다. 화면 구성 및 도상의 차용에 있어 19세기 후반 조성의 서울 성북구 보문동 보문사 〈신중도〉(1867년,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99호)의 영향을 받은 서울 흥천사 극락보전 〈신중도〉(1885년,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407호), 서울 흥천사 대방(만세루) 〈신중도〉(1890년,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410호) 등에 바탕을 두고 있는 불화로서 20세기 초반 경기지역 신중도의 새로운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 미타사 극락전 지장시왕도(彌陀寺 極樂殿 地藏十王圖) 】

미타사 극락전 지장시왕도는 지장보살상을 비롯하여 십대왕 등의 도상이라든가 각 존상들의 배치로 보아 서울 성북구 소재의 흥천사 지장시왕도(1867년 作)를 모본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흥천사 지장시왕도를 주도하여 조성한 ‘의운자우’의 경우 경상북도 문경 대승사 중심의 사불산파(四佛山派) 화승으로서 그 영향관계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화기를 통해 광서 13년인 1887년 학허석운이 수화승을 맡고 한봉창엽과 금화기형이 동참하여 조성 동참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자 조성하여 미타사에 봉안되었음이 파악된다. ‘한봉창엽’과 ‘금화기형’은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화승들 가운데 가장 왕성하게 활약상을 보인 대표적 화승이라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미타사 극락전 지장시왕도는 경상지역의 대표적인 화파인 사불산화파와의 영향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데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이에 미타사 극락전 봉안의 지장시왕도를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 미타사 극락전 현왕도(彌陀寺 極樂殿 現王圖) 】

미타사 극락전 현왕도는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화기가 잘 남아 있어 조성시기와 동참 화승을 명

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현재 극락전 안 서벽에 모셔져 있으며, 41.7cm×51.5cm폭의 비단 다섯 폭을 가로로 잇대어 바탕을 만들고 중앙의 現王을 중심으로 22위의 존상들을 좌우로 배치하였다. 특히 현왕 및 성왕들의 원유관과 홀 및 각 기물의 금속장식 및 향로 등에 화려하게 금박을 올려 적색과 녹색의 보색에 황금색의 대비를 줌으로써, 각 존상들의 움직임 있는 표현과 더불어 화면에 생기가 넘쳐 남을 느낄 수 있다. 화면 중앙 하단에 마련된 화기 중의 ‘光緒十三年丁亥十月日 奉安于終南山彌陀寺…金魚 比丘影明天機 比丘義菴現照 竺潭…’이라는 내용으로 보아 미타사 극락전 현왕도는 1887년 영명천기와 의함현조 및 축담에 의해 조성되어 미타사에 봉안되었음이 확인된다. 미타사 극락전 현왕도는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화기가 잘 남아 있어 조성시기와 동참 화승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서울·경기지역 도상과의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어 당시 도상 유형을 살필 수 있다는데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미타사 극락전에 봉안되어 있는 현왕도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 봉은사 시왕도(奉恩寺 十王圖) 】

봉은사 시왕도는 제1·3대왕도, 제5·7·9대왕도, 제2·4대왕도, 제6·8·10대왕도의 4폭으로 제작되었으며 서울지역 시왕도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이다. 오래전 사찰에서 유출되었다가 제5·7·9대왕도와 제6·8·10대왕도 2점은 일찍이 회수되어 동국대학교박물관에 기탁(국유)되어 왔다. 제1·3대왕도는 국립중앙박물관이 1996년 미국 경매를 통해 수집하였고, 제2·4대왕도 역시 2018년 미국 텍사스주 뉴브론필스 이베이옥션에 경매로 나온 것을 낙찰 받아 봉은사로 환수한 것이다. 제1·3대왕도와 제2·4대왕도는 비록 현재 화기가 잘려있고 화면에 접혔었던 금이 다수 보이고 채색이 약간 탈락되어 있긴 하지만 그림의 원형은 잘 유지되어 있다. 현존 시왕도 중에서는 연대가 앞서는 불화이며 자연스러운 화면구성과 섬세한 필치 등 뛰어난 양식을 보여주는 불화이다. 제작시기도 올라가고 섬세한 필치와 격조 있는 화풍을 지니고 있으며, 화기가 일부 잘리긴 하였으나 그림은 큰 훼손이 없이 원형이 보존되어 있다. 그러므로 봉은사 시왕도는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를 충족하는 불화이며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경조낭청구선생안(京兆郎廳舊先生案) 】

《경조낭청구선생안(京兆郎廳舊先生案)》은 조선시대(후기) 한성부에 재직한 낭청, 즉 서윤(종4품), 판관(종5품), 겸참군, 참군(정7품)의 명단을 수록된 책이다. 《경조낭청구선생안》의 작성 시기는 1644년(인조 22)을 기점으로 한 것으로 추정되고, 수록된 인물들은 임진왜란 이후의 서윤, 판관, 겸참군, 참군들이다. 맨 마지막에 수록된 참군 정교량은 1758년(영조 34)에 한성부참군에 제수되었다. 《경조낭청구선생안》은 조선후기(임진왜란 이후~18세기) 한성부의 낭청(4품 이하), 즉 역대 서윤, 판관, 참군을 역임한 인물들을 수록한 자료로서 사료적 가치뿐만 아니라 서지적, 문화적 보존 가치가 인정된다. 특히 조선시대 한성부의 역대 실무 관료의 명단을 수록한 원본 자료로서의 유일성과 희소적 가치가 크다. 따라서 이 자료는 유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데 부합한다고 판단한다.

【 경조당상구선생안(京兆堂上舊先生案) 】

《경조당상구선생안(京兆堂上舊先生案)》은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한성부에 채직한 “삼윤(三尹)”, 즉 판윤, 좌윤, 우윤의 명단이 수록된 책이다. 본문 앞부분에 수록된 <한성부제명기(漢城府題名記)>는 한성부 우윤 허계(許啓, 1594~1653)가 9월 20일에 삼가 적었다는 기록이 있고, 조선 후기(1700년대 중후반까지)에 채수된 인물까지 열거되어 있어 최종적인 기재 시기는 18세기 중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선시대 한성부의 역대 고위 관료의 명단을 수록한 원본 자료로서의 유일성과 희소적 가치가 크다. 따라서 이 자료는 유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데 부합하다고 판단한다

2) 문화재자료
【 미타사 정수암 소조여래좌상(彌陀寺 淨水庵 塑造如來坐像) 】

미타사 정수암 소조여래좌상은 전체 높이가 30cm 가량 되는 흙으로 만든 작은 크기의 불상이다. 바닥에는 직경 5cm, 깊이 7cm 크기로 원통형 복장공을 마련하여 조성발원문, 후령통, 다라니 등을 납입했다. 미타사 정수암의 소조여래좌상은 복장물이 처음 조성 당시 그대로 잘 남아있다. 특히 제작 시기와 조각승을 알려주는 조성발원문이 발견되어 이 상의 내력을 분명히 알려준다. 조각을 담당한 춘담성한(春潭盛漢)은 원래 불화를 그리는 화승이다. 근대불화에서 일가를 이룬 금호약효(錦湖若效)의 제자이며, 보응문성(普應文性)과는 동문이다. 앞으로 춘담성한이 제작한 불상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지만, 미타사 정수암의 이 소조여래좌상은 지금까지 알려진 춘담성한의 불상 가운데는 가장 이른 예이다. 크기가 작고 표면이 거칠어 조각의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으나 복장물이 조성 당시 그대로 잘 남아있어 1930년 춘담성한이 제작했음이 밝혀졌고, 20세기 전반의 화승인 춘담성한이 제작한 불상 가운데 가장 이른 예라는 점에서 서울시 문화재 자료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3) 등록문화재
【 남산도서관 소장 일제강점기 잡지 3종 】

『서울』, 『鏞傭』, 『우리의 가덩』은 남산도서관의 전신인 경성부립도서관 장서로 1941년부터 현재까지 남산도서관에서 보존해왔다. 『서울』은 1919년 12월 15일 창간되어 1920년 12월에 제8호(임시호)로 중단된 잡지이다. 출판법에 근거한 잡지여서 정치와 시사를 다룰 수 없었지만 1920년대 전반기를 풍미한 『개벽』 이전의 사회상과 시대사조를 이해하는 데 빠질 수 없는 자료이다. 『鏞傭』은 어느 잡지의 창간호와 다르게 창간 축하 광고의 대부분을 서울의 권번(기생조합) 소속 기생들의 명함 광고로 채운 것이 특징으로 1926년에 창간된 최초의 기생 잡지 『장한』처럼 1930년대 초반 서울의 기생 사회를 엿볼 수 있다. 『우리의 가덩』은 일본인 발행이라는 한계를 지니지만 1910년대 전반기에 유일하게 발행된 여성잡지라는 점과 시기적 특성, 그리고 희소성 때문에 역시 서울시 문화재로 등록될만한 가치가 있다.

【 남산도서관 소장 경성부 발간 자료 16종 】

조사대상 자료는 현재의 서울특별시에 해당하는 일제강점기 경성부와 그 산하기관(부립도서관, 순화원) 또는 유관기관(경성부교육회)에서 발행한 도서류이다. 발행 시기로는 1923년부터 1942년 사이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 경성부청의 부정(府政)을 홍보하는 『경성회보』와 경성부도서관의

도서출납과 이용자 현황을 알 수 있는 『경성부립도서관보』는 남산도서관만 전호를 소장중으로 그 가치가 충분하며, 이 외 경성부의 부정 일반과 경성부민의 생활상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자료군이란 점에서 서울시 등록문화재로 등록되기에 충분하다.

2. 문화재 지정(등록) 일자 : 서울시보 고시일자
3. 문화재 지정(등록)을 위한 조사보고서: 붙임 참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02-2133-2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등록)을 위한 조사보고서

【 미타사 금수암 치성광여래도(彌陀寺 金水庵 熾盛光如來圖) 】

1. 문화재 현황
 - 미타사 영역 안의 금수암 법당인 무량수전 내 정면 우측(중앙 본존불 좌측) 벽에 걸어두고 외부와의 차단을 위해 유리로 막음하였다.
2. 원형유지정도
 - 패널 형식으로 상단부의 미미한 변색을 제외하고 안료 박락 및 화면 손상 없이 원형유지가 비교적 잘 되어 있으며, 보존상태 또한 양호한 편이다.
3. 내용 및 특징

도교적 사고가 약화된 설법회도 형식의 치성광여래도로서 수미단 위 청련좌(靑蓮座)에 결가부좌하고 앉아 왼 손에 법륜(法輪)을 들고 있는 치성광여래를 중심으로 머리광배(頭光) 좌우로는 칠원성군(七元聖君) 형식의 좌우 보·필성(輔弼星)을 두었으며, 보·필성 바깥쪽으로 복두칠성을 여래화 한 7불(좌측3불, 우측 4불)을 배치하였다. 본존불 하단으로는 협시보살인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을 위시하여 칠원성군을 두었는데, 7불과 수를 맞추어 좌우 대칭을 이루도록 좌측에 4구 우측에 3구를 배치하였다. 본존인 치성광여래의 경우 변형우견편단에 둥근 모양의 머리광배와 몸광배(身光)를 구비하였는데, 머리광배는 녹색으로 단순화 시킨 반면 몸 광배는 금박 처리하여 본존불로서의 격을 나타내고 있다. 팽이 모양의 육계를 한 머리에는 중앙계주와 정상계주가 갖추어져 있으며, 정상계주 위로 네 가닥의 서기(瑞氣)가 표현되어 있다. 합장하고 있거나 치성광여래와 동일한 손 모양을 한 7불은 모두 정면향으로 서 녹색 머리광배를 구비하였으며, 정상계주 위로 본존불과 같은 모양의 서기를 나타내었다. 둥근 모양의 별이 표현된 원형 관모를 쓰고 조복(朝服)을 입고서 두 손을 모아 홀(笏)을 들고 있는 좌우 보·필성은 칠원성군과 동일한 유형으로 7불과 달리 모두 본존불을 향하고 서있어, 마치 신하가 조복을 갖추어 입고 조정에 나아가 하례를 하는 듯 표

현하여 유교를 기반으로 하는 당시 시대상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본존불을 위시하여 7불과 협시보살상의 경우 표정이 없는 얼굴을 하였으며, 긴 눈썹과 수염을 표현한 권위적인 모습의 철원 성군 역시 눈을 부릅뜨거나 분노형으로 표현하여 화면 전반에 걸쳐 경직성이 엿보인다. 이를 만회하기라도 하듯 당시 흐름과 다소 다르게 탁한 색채 대신 각 존상들의 피부색을 다양하게 하고 법의 및 조복을 화려하게 채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불화 구성에 참여한 화승들 과도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특히 당시 유명세를 떨쳤던 ‘금암천여, 경선응석, 금곡영환, 한봉창엽, 영명천기’ 등과의 교류를 통해 19세기 중반부터 19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경기도를 중심으로 대 활약상을 보이던 ‘체훈(体訓)’ 이 차화승으로 동참하고 있음을 보아서도 충분히 짐작이 된다고 하겠다. 화면 하단 중앙부에 남아 있는 화기로 미루어 보아 이 불화는 광서 9년인 1883년 봉은사에서 조성되어 미타사에 봉안되었음을 알 수 있다.

〔畫記〕

七星幀奉恩寺造成 奉安于終南山彌陀寺

緣化秩

證明 比丘 包含

金魚 比丘 進浩 比丘 体訓 比丘 戒淳 比丘 奉照

供司 太還

化主 比丘尼 義還 致弘 守安

都監 比丘尼 性欣

別座 比丘尼 普錫

光緒九年四月 日

4. 지정 여부 : 서울시 유형문화재 지정

도교적 색채가 약화된 설법도형식의 치성광여래도로서 조성연대 및 조성지와 봉안처가 분명하고 당시 시대상을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 당시 경기도를 중심으로 큰 활약상을 보인 ‘체훈’ 이 차화승으로 참여한 불화로서 그 기량을 엿볼 수 있다는데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서울시 유형문화재 지정하여 보존해야 한다.

참고 자료	문화재 이미지
치성광여래도 전체	좌보성, 칠여래 중 3여래
	
우필성, 칠여래 중 4여래	일광보살, 칠원성군 중 4성군
	
월광보살, 칠원성군 중 3성군	화기



【 미타사 금수암 신중도(彌陀寺 金水庵 神衆圖) 】

1. 문화재 현황

- 미타사 영역 안의 금수암 법당인 무량수전 내 정면 우측(중앙 본존불 좌측) 벽에 걸어두고 외부와의 차단을 위해 유리로 막음하였다.

2. 원형유지정도

- 패널 형식으로 상단부의 미미한 변색을 제외하고 안료 박락 및 화면 손상 없이 원형유지가 비교적 잘 되어 있으며, 보존상태 또한 양호한 편이다.

3. 내용 및 특징

거의 정방형에 가까운 크기의 화면을 상·하 2단으로 나누어 상단에는 서로 마주 보듯 서서 합장하고 있는 제석천(帝釋天:향우측)과 범천(梵天:향좌측)을 비롯하여 중앙부에는 쌍계(雙髻) 머리를 하고 공양하고 있는 천동(天童) 3명이 자리하고 있으며, 제석천과 범천 바깥쪽에는 주악천녀(奏樂天女)가 자리 하였다.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서로 중앙을 향하고 있는 제석천과 범천의 경우 장방형으로 턱이 둥글어진 얼굴에 작지만 뚜렷한 모습의 이목구비(耳目口鼻)를 표현하였는데, 크게 치켜 뜬 듯한 눈에 콧수염과 입 꼬리를 살짝 치켜 올려 미소가 엿보인다. 머리에는 높은 보관을 썼으며 녹색 머리광배(頭光)를 구비하였다. 제석천과 범천 사이 중앙에 자리한 천동들의 경우 천도복숭아와 향로를 받쳐 들고 있으며, 화면 좌우 끝부분의 주악천녀는 생황(笙簧)을 연주하고 통소(洞簫)를 들고 있다. 천상의 세계인 상단과 달리 하단에는 하늘을 지키는 군대로 민간신앙의 산신(山神)과 관우(關羽)의 영인 관성제군(關聖帝君)의 도상을 차용한 도교신 조왕신(竈王神)이 호위하고 있는 위태천(韋馱天)을 중심으로, 거의 좌우대칭을 이루며 일·월궁천자(日月宮天子)와 호법신장(護法神將)이 좌우로 각각 세 구씩 배치되어 있다. 하단 중앙에 위치한 위태천 및 산신과 조왕신 중 정상부에 큰 붉은색 술이 달린 투구를 쓴 위태천의 경우, 두 발을 벌린 채 오른 발을 앞으로 하여 왼쪽으로 몸을 튼 채 머리를 오른쪽으로 향하도록 하고 배를 내민 당당한 자세로 날이 큰 금강저를 두 손으로 짚고 서 있다. 하늘을 지키는 군대의 수장인 천룡장군(天龍將軍)으로서 투구와 갑옷과 삼지창에 금박(金箔)을 올려 화려함은 물론 장군으로서의 위엄이 느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뺨이 통통하니 살집이 있어 보이는 얼굴에는 이목구비의 표현이 정연하고 상단의 제석·범천과 같이 콧수염과 입 꼬리를 살짝 치켜 올려 웃는 표정을 짓게 하여 대조적이다. 위태천 좌측(향우측)의 산신은 영지버섯을 든 노인 모습으로 긴 눈썹과 수염에 백발이 성성하니 인자함이 느껴진다. 우측(향좌측)의 조왕신은 홀(笏)을 받쳐 든 모습으로 몸은 위태천 쪽을 향해 있으면서 얼굴은 위태천과 동일 방향으로 돌아보고 있다. 머리에는 청회색 두건을 썼으며, 날카로운 눈매에 입을 굳게 다물고 덩수룩한 콧수염과 턱수염을 하여 근엄한 느낌이다. 제석천과 범천 뒤쪽에 위치한 존상은 홀을 든 근엄한 자세로 관모(官帽)에 해와 달 상징의 붉은색과 흰색이 묘사된 일·월궁천자(日月宮天子)를 비롯하여 검을 든 자세로 눈썹과 콧수염 및 턱수염이 덩수룩한 신장상 2구가 그려져 있다. 그 아래 산신과 조왕신 바깥쪽에 위치한 신장상 중 우측부 신장상은 장수형(將帥形) 신장상으로, 신선(神仙) 가운데 순양건(純陽巾)의 변형건을 쓰고 청룡언월도(靑龍偃月刀)를 든 여동빈(呂洞賓)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나 변형건이 아닌 동(銅)으로 만들어진 투구를 쓰고 있다. 이들 신장들은 비록 무기를 소지한 호법신장들이기는 하지만 위협적이라기보다는 동세를 느낄 수 있는 신체에 살집 있는 통통한 얼굴로 표정이 밝고 약간 익살스러워 보인다. 상단의 제

석·범천을 비롯한 천상계의 상들과 하단의 위태천 및 호법신장들 모두 자연스러운 자세에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활기 넘치는 표정을 하여 화면 전반에 걸쳐 생동감이 묻어난다. 그러나 색채의 경우 탁해진 느낌의 적색 위주로 19세기 후반 이후 20세기에 걸쳐 나타나는 경향을 잘 보여준다. 이상 미타사 금수암 〈신중도〉는 화면 구성 및 도상의 차용에 있어 19세기 후반 조성의 서울 성북구 보문동 보문사 〈신중도〉(1867년,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99호)의 영향을 받은 서울 흥천사 극락보전 〈신중도〉(1885년,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407호), 서울 흥천사 대방(만세루) 〈신중도〉(1890년,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410호) 등에 바탕을 두고 있는 불화로서 20세기 초반 구성이 간소화하는 경기지역 신중도의 새로운 경향을 파악하는데 학술 자료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하겠다. 화면 하단 중앙부에 마련된 화기로 보아 이 불화는 광무 4년인 1900년에 조성·봉안되었으며, ‘보암금법(普庵肯法)’이 수화승을 맡아 조성하였음이 확인된다. 수화승 ‘금법’은 19세기 중후반부터 경기도를 중심으로 크게 활약상을 보인 화승으로서, 1887년 ‘완송당 중현(玩松堂 宗顯)’과 서울 경국사 〈팔상도〉(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62호) 중 4폭(雪山修道相, 樹下降魔相, 鹿苑傳法相, 雙林涅槃相)을 조성하고 1905년에는 서울 봉원사 대웅전 〈극락구품도〉를 조성하는 등 20세기 초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畫記〕

光武四年更子八月初一日神供十日 點眼奉安于彌陀寺無量壽殿

緣化所

證明 永夏重賢

誦呪 德松道亨

指殿 惺庵泰隱

金魚 普庵肯法 梵華允益 月般奉宗

片手 淸庵雲照 比丘在謙 比丘啓恩

鍾頭 比丘啓訓

茶角 沙彌尼雲涉

供司 比丘尼妙性

別供 比丘尼妙峰 頓悟 廣典 普業 大福

化主 比丘尼致洪

大施主

乾辛亥生孫氏 坤癸丑生金氏 兩主

長子乙亥生孫氏 兩主

次子庚寅生孫氏喜景

乾己未生金氏

長子乙酉生金氏

童子更子生金氏

乾戊午生韓氏

坤乙卯生張氏

乾壬戌生白氏 兩主

乾乙未生金氏

乾壬戌生金氏
 乾癸未生朴氏 兩主
 乾庚申生朴氏 兩主
 乾丁巳生金氏
 乾乙酉生崔氏 兩主
 乾壬申生崔氏 兩主
 乾辛巳生崔氏 兩主
 乾乙未生崔氏 兩主
 乾甲申生崔氏 兩主
 乾丁未生柳氏 兩主
 乾庚戌生李氏 坤戊辰生金氏 兩主
 坤甲寅生裴氏

4. 지정 여부 : 서울시 유형문화재 지정

화면 구성 및 도상의 차용에 있어 19세기 후반 조성의 서울 성북구 보문동 보문사 〈신중도〉(1867년,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99호)의 영향을 받은 서울 홍천사 극락보전 〈신중도〉(1885년,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407호), 서울 홍천사 대방(만세루) 〈신중도〉(1890년,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410호) 등에 바탕을 두고 있는 불화로써 20세기 초반 경기지역 신중도의 새로운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참고 자료	문화재 이미지
신중도 전체	화면 상단의 제석천과 범천상
	

화면 하단의 위태천 및 산신과 조왕신	화면 상단의 공양 천동상
	
화면 좌측 하단의 산신과 여동빈	화기
	

【 미타사 극락전 지장시왕도(彌陀寺 極樂殿 地藏十王圖) 】

1. 문화재 현황

- 비단 다섯 폭을 가로로 잇대어 만든 바탕에 지장보살상을 본존으로 하여 십대왕 등 44위의 존상을 좌우대칭 되게 배치한 지장시왕도이다.

2. 원형유지정도

- 패널 형식의 불화로 극락전 동벽에 걸어두었는데 화면 전반에 걸쳐 부분적으로 그을음과 찢농 및 박락 등이 보이지만, 큰 손상 및 훼손 없이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3. 내용 및 특징

4.5cm×51.5cm 폭의 비단 다섯 폭을 가로로 잇대어 만들어 가로 폭이 넓어진 장방형의 화면에 중앙부의 지장삼존(地藏三尊) 및 선악동자(善惡童子)를 중심으로 十大王과 判官 및 錄事, 使者와 將軍, 獄卒, 供養天女, 童子·童女 등의 권속들이 좌우 대칭을 이루도록 배치되어 있다. 화면 중앙부를 크게 차지하고 있는 지장보살상은 지장시왕도의 본존상으로서 둥근 머리광배와 몸 광배를 구비한 채 蓮花座 위에 結跏趺坐하고 앉아,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 지장보살의 상징적 지물인 투명 寶珠를 감싸 안고 있다. 머리카락을 표현하지 않은 僧形 민머리에 두 귀에는 큼직한 꽃 모양 귀걸이 장식을 하였으며, 턱이 둥글어진 얼굴에는 눈·코·입의 표현이 뚜렷하고 단정한데 눈 꼬리를 위로 치켜 올리고 입을 작게 표현하여 약간 근엄한 느낌이다. 붉은색 大衣의 경우 끝단에는 채색의 연화당초무늬를 장식하였으며, 몸통에는 큼직한 菱形의 둥근 무늬를 넣었는데, 안과 밖으로 세 가닥의 선을 사용하여 구획지는 다음 테두리에는 삼중 원을 연속적으로 그렸다. 그리고 구획 안쪽으로는 테두리의 삼중 원과 동일한 문양을 이중으로 시문하고 그 위로는 뭉게뭉게 피어나는 듯한 구름 문양을 중첩되게 표현하여 화려함을 더해주고 있다. 좌우로 늘어서 있는 권속들 가운데 지장보살상의 협시인 道明尊者和 無毒鬼王 두 상 모두 합장한 채 본존을 향해 서 있다. 청년 비구 형태의 좌협시 도명존자상은 홀씨 모양의 꽃무늬를 장식하였으며, 왕의 모습으로 원유관을 쓰고 있는 우협시 무독귀왕은 구름무늬를 장식 하였다. 본존을 향해 좌우로 대칭을 이루며 서 있는 十大王(시왕)은 각기 지물을 들거나 홀을 들고 있는데, 朝服의 무늬를 보면 안쪽에 파도문이 보이는 능형 원문과 용무늬, 중첩된 삼중 원문, 작은 원 문양 등의 무늬를 그려 넣어 다양성을 보인다. 지장보살상 무릎 아래쪽에 자리한 善惡童子像은 亡者의 善行과 惡行을 저승명부에 기록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머리 위에 화사하게 피어난 모란화를 엮고 있어 앳되고 귀여운 모습의 동자를 연상케 한다. 좌측(向右側)의 善童子는 지장보살의 지물인 錫杖을 어깨에 걸쳐 들고 있는데, 고리가 네 개 달린 4환장으로 석장 머리 장식에 아미타불 상이 안치되어 있다. 우측의 惡童子는 인장함(印櫃)을 어깨에 둘러메고 있는데, 표면에 高粉法을 사용한 點紋을 장식하여 가슴의 금 고리 장식과 조화를 이룬다. 선악동자 도상은 18세기 후반부터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렇듯 머리에 모란꽃을 장식하고 인계를 어깨에 둘러메는 예는 19세기 후반 경 조성의 서울·경기지역 중심의 지장보살도 및 치성광여래도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양식 특징이다. 지장보살삼존상을 둥글게 에워싼 십대왕 주위의 판관 및 녹사와 사자, 장군, 공양천녀, 동자·동녀상들의 경우 위로 갈수록 상의 크기를 작게 함으로써 평면의 화면에 공간감을 제공하고 있어 특징적이다. 미타사 극락전 지장시왕도는 지장보살상을 비롯하여 십대왕 등의 도상이라든가 각 존상들의 배치로 보아 서울 성북구 소재의 흥천사 지장시왕도(1867년 작)를 모본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흥천사 지장시왕도를 주도

하여 조성한 ‘의운 자우(意雲慈雨)’의 경우 경상북도 문경 대승사 중심의 사불산파(四佛山派) 화승으로서 그 영향관계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미타사 극락전 지장시왕도는 畵記가 좌측, 중앙, 우측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墨書되어 있다. 화기 내용 중의 “光緒十三年丁亥十月日 奉安于終南山彌陀寺… 金魚片手 比丘鶴虛石雲 漢峰瑯曄 錦華機炯… 往生極樂之願…”이라는 내용으로 보아, 광서 13년인 1887년 학허석운이 수화승을 맡고 한봉창엽과 금화기형이 동참하여 조성 동참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자 조성하여 미타사에 봉안되었음이 파악된다. 특히 ‘한봉창엽’과 ‘금화기형’은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화승들 가운데 가장 왕성하게 활약상을 보인 대표적 화승이라는데 의미를 둘 수 있겠다.

[畵記]

<좌측 ; 向右>

光緒十三年丁亥十月日 奉安于終南山彌陀寺

證明 比丘含影法曇

誦呪 比丘慶隱 □益

金魚片手 比丘鶴虛石雲 漢峰瑯曄 錦華機炯

持殿 比丘奉碩

鍾頭 比丘富仁

<중앙>

都監 比丘尼奉寂

比丘尼萬保

別座 比丘尼性律

比丘尼取喜

化主 比丘尼妙正

施主秩

清信士 辛亥生梁□赫

坤命 癸丑生金氏 兩主

清信士 甲寅生韓慶文

坤命 戊午生李氏 兩主

信女 辛巳生李氏上品花

往生極樂之願

<우측 ; 向左>

乾命 乙卯生池學淵

坤命 庚辰生宋氏 兩主

信士 辛酉生池氏覺心

坤命 癸亥生方氏 兩主

童子 壬午生池世元

童女 乙酉生玉順

乾命 朴永奎

乾命 安弼珠

乾命 白完赫

乾命 崔奇昌

乾命 金仁煥

4. 지정 여부 : 서울시 유형문화재 지정

미타사 극락전 지장시왕도는 보존상태가 양호할 뿐만 아니라 화기가 잘 남아 있어 조성시기와 동참 화승을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서울 홍천사 지장시왕도 도상을 모본으로 삼고 있어 경상지역의 대표적인 화파인 사불산화파와의 영향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데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이에 미타사 극락전 봉안의 지장시왕도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 자료	문화재 이미지
서울 미타사 지장시왕도 (1887년)	서울 흥천사 지장시왕도(1867년)
	
지장보살상 부분도	지장보살상 두상 부분도
	
향좌측 부분도	향우측 하단 부분도
	

향좌측 상단 부분도		향우측 상단 부분도	
			
선악동자상 부분도		자장보살상 대의 문양	
			
화기			
향좌측	중앙		향우측
			

【 미타사 극락전 현왕도(彌陀寺 極樂殿 現王圖) 】

1. 문화재 현황

- 비단 다섯 폭을 가로로 잇대어 만든 바탕에 병풍을 배경으로 하여 현왕과 권속들을 그린 현왕도이다.

2. 원형유지정도

- 패널 형식의 불화로 극락전 서벽에 걸어두었는데 화면 전반에 걸쳐 부분적으로 그을음과 찢농 및 박락 등이 보이지만, 큰 손상 및 훼손 없이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3. 내용 및 특징

미타사 극락전 안 서벽에 모셔져 있는 現王圖로서, 41.7cm×51.5cm폭의 비단 다섯 폭을 가로로 잇대어 바탕을 만들고 중앙의 現王을 중심으로 22위의 존상들을 좌우로 배치하였다. 화면구성을 보면 10곡 병풍을 배경으로 중앙에는 冥府會主로서 普賢王如來 상징의 現王을 두고, 현왕 앞쪽 좌우로 원유관을 쓴 채 笏을 들거나 두루마리 서류를 펼쳐 든 6위의 聖王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성왕의 바깥쪽과 위쪽으로는 책과 두루마리 문서를 들거나 傘蓋와 寶劍을 든 8위의 검고 투명한 烏紗帽를 쓴 判官 및 緣事가 에워싸듯 자리하고 있으며, 하단 좌우 끝 부분에는 각각 槍과 名簿를 들고 있는 日直·月直·年直·時直 등 四直使者가 배열되어 있다. 그리고 그 위 좌우 상단에는 부채(團扇)를 받쳐 든 동자와 印櫃와 香爐를 들고 있는 동자와 天女가 위치하였는데, 사자와 동자·천녀상의 크기를 중앙부의 현왕 및 성왕, 판관과 녹사 등에 비해 작게 묘사함으로써 평면의 화면에 遠近을 나타내어 공간감을 형성하고 있다. 녹색 원형 머리광배를 구비하고 용머리 팔걸이에 녹색 등받이를 한 의자에 앉아 있는 현왕은 經冊을 위에 올린 원유관을 쓴 왕과도 같은 모습으로, 뺨까지 내려오는 긴 눈썹과 단정하게 빗어 내린 듯 가슴 부위까지 내려오는 턱수염을 하고 미소 띤 표정을 하여 기품과 함께 인자함이 느껴진다. 복식은 龍袍와도 같은 붉은색 큰 옷으로 양쪽 어깨 부분에 가득 차게 菱形紋 윤곽의 반원형문 안에 파도와 구름을 뚫고 떠오르는 태양을 그린 金泥의 日出紋을 묘사하여 장엄하다. 어깨를 제외한 몸통에는 네 모서리에 螺線紋 3개씩을 장식한 마름모꼴 花紋을 그려 넣었다. 허리를 묶은 腹帶에는 채색의 연화문을 장식하고, 목의 깃에는 반원형 구획을 연속되게 마련하고 그 안쪽에 화문을 표현하였다. 자세는 책상을 앞에 두고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몸은 왼쪽으로 틀고 있으면서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려 성왕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듯 한 자세를 취하였다. 6위의 성왕들 역시 붉은색 朝服의 양어깨에 현왕에서 볼 수 있는 능형 윤곽의 반원형문을 표현하였는데, 안쪽에는 태양 대신 파도와 구름을 뚫고 피어난 연꽃에서 방사하는 빛줄기를 나타내어 특징적이다. 몸통의 문양은 현왕과 거의 동일한 유형의 마름모꼴 화문을 장식하였는데, 다소 간략화 된 판관과 녹사의 마름모꼴 화문과는 차별성을 보인다. 현왕을 비롯한 모든 존상들의 얼굴 표현의 경우 곡선적이고 양감이 있어 보이며 섬세한 이목구비로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어, 전반적으로 부드럽고 원만하며 조화로움을 엿볼 수 있다. 특히 현왕 및 성왕들의 원유관과 홀 및 각 기물의 금속장식 및 향로 등에 화려하게 금박을 올려 적색과 녹색의 보색에 황금색의 대비를 줌으로써, 각 존상들의 움직임 있는 표현과 더불어 화면에 생기가 넘쳐 남을 느낄 수 있다. 화면 구성에 있어서도 각이 진 병풍을 배경으로 하여 한정된 공간 속에 간혀 있는 느낌을 주지만, 중앙부 상들보다 크기를 작게 한 권속들을 화면 바깥쪽에 배치시킴으로서 공간감을 부여해 주고 있다. 미타사 극락전 현왕도는 1844년 ‘中峰慧皓’ 필의 미타사 정수암 현왕도로부터 시작

하여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는 1846년의 혜호 작 남양주 홍국사 현왕도를 모본으로 하여 확대 변용시켰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홍국사 현왕도 도상의 경우 1899년 미타사 칠성각 현왕도를 조성할 시 이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혜호’와의 영향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화면 중앙 하단에 마련된 화기 중의 ‘光緒十三年丁亥十月日 奉安于終南山彌陀寺…金魚 比丘影明天機 比丘義菴現照 竺潭…’이라는 내용으로 보아 미타사 극락전 현왕도는 1887년 영명천기와 의함 현조 및 축담에 의해 조성되어 미타사에 봉안되었음이 확인된다.

[畫記]

光緒十三年丁亥十月日 奉安于終南山彌陀寺

緣化所秩

證明 比丘濟菴應荷

誦呪 比丘慶隱□益

金魚 比丘影明天機

比丘義菴現照

竺潭

化主 比丘尼妙正

施主秩

信士 丙寅生朴正心

坤命 辛未生安氏 兩主

坤命 己卯生朴氏

信士 己酉生朴慶□

乾命 丁未生李長□

乾命 乙卯生張啓□

乾命 戊寅生趙奉□

坤命 壬寅生金□□

乾命 高閨相

4. 지정 여부 : 서울시 유형문화재 지정

이상에서 살펴 본 미타사 극락전 현왕도는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화기가 잘 남아 있어 조성시기와 동참 화승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서울·경기지역 도상과의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어 당시 도상 유형을 살필 수 있다는데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이에 미타사 극락전 봉안의 현왕도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자료	문화재 이미지
서울 미타사 현왕도(1887년)	남양주 흥국사 현왕도(불암사 소장, 1846년)
	
현왕상 상반신 부분도	현왕상 조복 앞부분
	
향좌측 부분도	향우측 부분도
	

화기



【 봉은사 시왕도(奉恩寺 十王圖) 】

1. 문화재 현황

시왕은 인간이 살아있을 때 지었던 죄를 죽은 후 10번에 걸쳐 심판하여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마지막에 육도(六道) 중 다음 생에 태어날 곳을 결정하는 지하세계를 주재하는 10명의 왕이다. 시왕도는 명부전(冥府殿)에 봉안된다. 중앙에는 주존인 지장보살상과 후불화인 지장보살도 혹은 지장시왕도를 봉안하고 그 좌우 벽면에 시왕도를 봉안한다. 왼쪽(향우) 벽에는 제1, 3, 5, 7, 9대 왕도, 반대쪽에는 제2, 4, 6, 8, 10대왕도를 봉안하는데 각 왕을 한 폭에 그려 10폭으로 제작하는 경우와 2대왕 혹은 3대왕씩 그려 4폭, 6폭 등으로 제작하는 경우도 있다. 봉은사 시왕도를 비롯해 보광사 시왕도(1872년), 화계사 시왕도(1878년), 흥천사 시왕도(1885년), 봉곡사 시왕도(1898년), 봉원사 시왕도(19세기), 안양함 시왕도(1922년) 등이 4폭 형식이다. 봉은사 시왕도는 제1·3대왕도, 제5·7·9대왕도, 제2·4대왕도, 제6·8·10대왕도의 4폭으로 제작되었으며 서울지역 시왕도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이다. 오래전 사찰에서 유출되었다가 제5·7·9대왕도와 제6·8·10대왕도 2점은 일찍이 회수되어 동국대학교박물관에 기탁되어 왔다. 제1·3대왕도는 국립중앙박물관이 1996년 미국 경매를 통해 수집하였고, 제2·4대왕도 역시 2018년 미국 텍사스주 뉴브론필스 이베이옥션에 경매로 나온 것을 낙찰 받아 봉은사로 환수한 것이다. 사찰에서 유출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에 4폭이 온전하게 회수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도 다행스러운 경우이다. 봉은사로 환수된 대왕도는 2명의 대왕과 해당지옥을 한 폭에 그린 것이다. 향우측의 대왕은 길고 풍성한 흰 수염이 난 노인의 모습으로 머리에는 통천관(通天冠)을 쓰고 적색 곡령대수포(曲領大袖袍)를 입고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앉아있다. 오른손으로 홀(笏) 살짝 잡고 의자에 앉아 있는데 탁자 위에는 명부와 벼루 등이 놓여있고, 의자 뒤로 병풍이 둘러져 있다. 대왕 주위에는 판관(判官)과 사자(使者), 산개(傘蓋)와 일월선(日月扇) 및 번(幡)을 받쳐들고 있는 천녀(天女), 동자, 그리고 무기를 들고 있는 마두(馬頭)와 호두(虎頭)옥졸 등이 둘러서 있다. 대왕의 심판 광경 아래에는 기둥에 묶여 있는 죄인 앞에서 옥졸이 죄인의 배꼽에서 창자를 뽑아내고 있는 모습, 칼을 쓰고 별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죄인들이 그려져 있고, 이러한 지옥광경은 구름층으로 재판 광경과 구별된다. 이렇게 창자를 꺼내는 벌은 받는 추장지옥(抽腸地獄)은 대개 제2초강대왕도에 묘사되는 지옥장면이다. 그러므로 이 그림은 제2초강대왕도(初江大王圖)임을 알 수 있다. 향좌측의 대왕은 일월관을 썼으며 역시 홀을 들고 있다. 이 대왕은 수염을 검게 표현하여 맞은편의 초강왕과 구별하였다. 탁자와 의자 및 병풍은 같은 모습이며 주위 권속들의 구성도 유사한데 향좌측의 천녀는 공작선(孔雀扇) 들고 있고, 마두는 크고 무시무시한 무기를 받쳐들고 있으며 맞은편의 옥졸은 붉은 머리칼이 뻗어있다. 다양한 인물상들이 각기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어 화면이 동적이고 활력 있는 모습이다. 구름으로 구획된 지옥의 광경에는 옥졸이 죄인을 창에 꿰어 꿰는 가마솥에

넣고 있는 끔찍한 장면이 그려져 있고 그 주위에는 역시 칼을 쓰고 떨면서 대기하고 있는 죄인들, 명부를 들고 있는 동자, 죄인을 구제하고자 자리한 지장보살 등이 그려져 있다. 이러한 확탕지옥(鑊湯地獄)의 광경은 제4오관대왕이 주재하는 지옥이다. 그러므로 이 시왕도는 제2초강대왕도와 제4오관대왕(五官大王圖)임을 알 수 있다. 이 제2·4대왕도는 대부분의 시왕도와는 달리 해당 그림에 왕의 명칭을 써넣지 않았는데 이점은 제5·7·9대왕도나 제6·8·10대왕도도 마찬가지다. 이 불화에서 두 명의 대왕은 실체는 그렇지 않지만 서로 마주보고 있듯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하단의 지옥장면은 칸을 구분하지 않고 한 장소인 것처럼 이어져 있다. 심판장면과 지옥장면을 녹색의 구름층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시왕의 뒤에 오곡병풍을 두른 점, 그리고 주조색인 적·녹·청색의 색감, 지옥을 구분하는 구름의 흰색이 많이 가미된 옥색, 지옥의 짙은 황갈색 바닥면의 설채법 그리고 대왕의 적색 포에 가해진 문양 또한 동국대학교 박물관 기탁본(제5·7·9대왕도, 제6·8·10대왕)과도 공통적인 점이다. 또한 섬세한 인물 묘사, 정교한 필치와 채색 경향은 현존 시왕도 중 주목되는 양식의 불화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시왕도 역시 2명의 왕과 지옥세계가 그려져 있다. 각 대왕의 모습과 자세는 거의 동일하게 그려져 있다. 대왕은 탁자를 앞에 놓고 높은 의자에 앉아 있으며 둥근 적색의 곡령대수표를 입고 홀을 잡고 있다. 의자 뒤에는 오곡병풍이 둘러져 있고 대왕의 주위로 명부를 읽는 판관과 사자, 일월선과 산개를 받쳐든 천녀, 무기를 들고 있는 옥졸들과 같은 권속들이 모여 있는 재판의 광경을 묘사하고 있다. 옥색 구름층 아래에는 지옥에서 벌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광경이 묘사되어 있다. 제1대왕 아래에는 칼을 쓰고 앉아 있거나 밧줄에 엮여 옥졸에게 끌려가는 죄인, 그리고 형틀에 눕혀져서 온 몸에 못을 박히는 고통을 당하는 망인이 그려져 있다. 향우측의 지옥장면은 한 사람이 형틀에 묶여 서있는데 그의 허가 길게 뻗혀 내려와 있고 그 위에 소가 밭을 매듯 쟁기를 메고 걸어가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그 뒤에는 옥졸이 채찍으로 소를 내리치며 몰고가는 광경이 첨가되어 있다. 이는 발설지옥(拔舌地獄) 또는 경설지옥(耕舌地獄)이라는 지옥에서 벌받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대왕도는 제1진광왕도(秦廣王圖)와 제3송제대왕도(宋帝大王圖)이다. 이 역시 화기의 첫줄 외에 화면이 잘려서 역시 ‘乾’ 자만 알 수 있지만 화면의 크기, 각 상의 형태와 이미지, 화풍 등으로 보아 봉은사시왕도의 한 폭임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화면구성 및 양식상의 특징들은 현재 동국대학교 박물관에 기탁되어 있는 제5·7·9대왕도와 제6·8·10대왕도,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제1·3대왕도와 동일한 구성과 화풍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제2초강대왕도와 제4오관대왕도는 사찰에서 유출될 당시 화면이 칼로 오려져 하단의 화기가 한 줄 정도만 남아있다. 앞부분에 ‘乾’ 자만 보여 건륭년간(1736~1795)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어 동국대학교에 보관되어 있는 시왕도의 연대인 건륭42년인 1777년에 함께 제작되었던 봉은사 시왕도의 한 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불화 화면의 크기도 115,5×146cm(제1·3대왕도), 116×148.5cm(제2·4대왕도), 113×213cm(제5·7·9대왕도), 115×216cm(제6·8·10대왕도)여서 세로가 거의 같은 동일 세트로 볼 수 있다. 동국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제5·7·9대왕도와 제6·8·10대왕도는 화면의 구성은 동일하다. 상부에 세명의 대왕이 권속들에 둘러싸여서 명부가 놓인 탁자를 앞에 두고 죄인을 심판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 구름으로 장면을 살짝 구획하여 하단에는 망자들이 벌을 받고 있는 지옥이 묘사되어 있다. 이들을 살펴보면 제5염라대왕도에는 죄인을 업경대(業鏡臺)로 끌고 와 전생의 죄를 비추는 장면과 방아 찧듯이 죄인의 머리를 찧으며 고통을 주는 석애(碩磔)지옥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제7태산대왕도에는 죄인을 톱질하는 거해(鋸解)지옥 장면, 제9도시대왕도에는 업칭(業秤)에 죄의 무게를 다는 장면 등이 묘사되었다. 제6변성대왕도

에는 칼이 뾰족하게 꽂혀있는 칼 산에서 찢리며 고통받는 도산(刀山)지옥, 제8평등대왕도에는 암 산 사이에 죄인을 넣어 압사시키는 장면, 제10오도전륜대왕도에는 육도윤회하는 장면이 각각 묘사되었다. 두 폭 모두 화기가 온전히 남아있어 제작 연대와 화승 등 관련 사항을 알 수 있어 제1·3대왕도와 제2·4대왕도의 봉안처와 제작연대를 찾을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 제5·7·9대왕도의 제작자는 인종(印宗), 도준(道俊), 환봉(喚奉), 연홍(演弘), 정인(定印)이 편수(片手)로 기록되어 있고, 제6·8·10대왕도의 편수는 수밀(守密), 한계(漢戒), 영인(永印), 상훈(尙訓), 번평(煩平), 축함(竺含), 인종(印宗), 축헌(竺軒), 도준(道俊), 환봉(喚奉), 연홍(演泓), 정인(定印)이다. 이들은 경기도 지역에서 활동했던 화승들이고, 화기의 기록으로 보아 이들이 주축이 되어 시왕도, 삼장보살도 및 사자도 2점을 함께 봉은사에서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乾隆四十二年丁酉五月
初七日始役畢功六月初二日
而三藏幀十王各部及
兩使者幀奉安于光
州修道山奉恩寺又
大雄殿三世如來中釋迦
彌陀兩尊改塗面金
也耳~~

2. 지정 여부 : 서울시 유형문화재 지정

봉은사 명부전에 봉안되었던 4폭으로 구성된 시왕도 4점은 이백년 가까이 사찰에 봉안되어 예배의 대상이었으나 수십 년 전 유출되어 서로 다른 곳에서 각기 유전되다가 이제 4폭의 존재가 모두 국내에서 확인되었다. 그중 제2대왕과 제4대왕을 그린 한 폭은 가장 마지막에 봉은사로 환수되었다. 이 불화는 기존 동국대학교에 보관 중(국유)이던 제5·7·9대왕도 및 제6·8·10대왕도와 화면구성 및 제작 양식이 동일한 것으로 분석되어 봉은사에서 유출되었던 1폭임이 확실하다. 더구나 동국대학교 보관본은 화기까지 완존하고 있어 제작연대와 제작 화승들도 알 수 있다. 제1·3대왕도와 제2·4대왕도는 비록 현재 화기가 잘려있고 화면에 접혔었던 금이 다수 보이고 채색이 약간 탈락되어 있긴 하지만 그림의 원형은 잘 유지되어 있다. 현존 시왕도 중에서는 연대가 앞서는 불화이며 자연스러운 화면구성과 섬세한 필치 등 뛰어난 양식을 보여주는 불화이다. 제작시기도 올라가고 섬세한 필치와 격조 있는 화풍을 지니고 있으며, 화기가 일부 잘리긴 하였으나 그림은 큰 훼손이 없이 원형이 보존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시왕도는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를 충족하는 불화이며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참고 자료

문화재 이미지



(그림2) 제2초강대왕도 · 제4오관대왕도, 1777년, 봉은사 소장



(그림3) 제5염라대왕 · 제7태산대왕 · 제9도시대왕도, 1777년, 비단에 채색, 동국대학교박물관(국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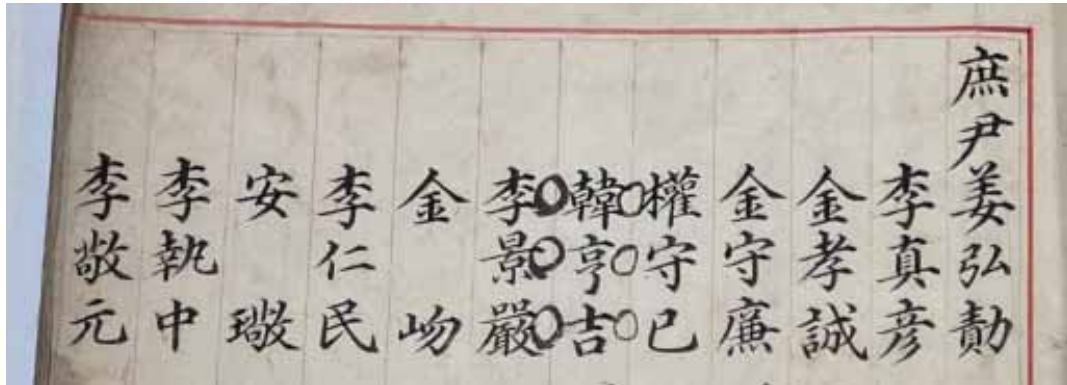


(그림4) 제6번성대왕 · 제8평등대왕 · 제10오도전륜대왕도, 1777년, 비단에 채색, 동국대학교박물관(국유)

【 경조낭청구선생안(京兆郎廳舊先生案) 】

1. 문화재 현황

일제강점기인 1941년 경성부립도서관 장서로 등록된 이래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남산도서관 장서로 보존 관리되고 있다. 《경조낭청구선생안(京兆郎廳舊先生案)》은 조선시대(후기) 한성부에 재직한 낭청, 즉 서운(종4품), 판관(종5품), 겸참군, 참군(정7품)의 명단을 수록된 책이다. 앞부분에 수록된 <낭청선생치부(郎廳先生致賻)> 관련 기록은 한성부 낭청들이 상을 당했을 때 조치할 사항을 적은 것으로서 “順治元年(1644) 十月”에 제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함께 전래된 《경조당상구선생안(京兆堂上舊先生案)》에 기재된 치부(致賻) 관련 내용이 제정된 시기도 이와 동일하므로 기본적으로 《경조낭청구선생안》과 《경조당상구선생안》의 제작 시기는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조낭청구선생안》의 작성 시기는 1644년(인조 22)을 기점으로 한 것으로 추정되고, 수록된 인물들은 임진왜란 이후의 서운, 판관, 겸참군, 참군들이다. 맨 마지막에 수록된 참군 정교량은 1758년(영조 34)에 한성부참군에 제수되었다.



〈참고 1〉 명단이 수록된 첫 면

서운 강홍적(1580~?), 1609년 생원
 서운 이진언(1553~?), 승정원일기 인조 6년(1628) 한성서운
 서운 이효성(?~?), 1651년 무과
 서운 김수렴(1574~1651), 1623년 인조반정 이후 한성부서운
 서운 권수기(1550~?), 1582년 진사
 서운 한형길(1582~1644), 문과, 승정원일기 인조 4년(1626) 한성부서운
 서운 이경엽(1579~1652), 1610년 문과

명단 수록 방식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앞부분에는 정확한 제수 연월일을 알 수 없는 낭청들을 열거하였고, 이어서 제수 연월일이 명확한 인물들을 열거하되 재직 시기가 같은 서운, 판관, 참군을 차례로 적었다. (※전체 수록 인원 870여 명) 유사 자료 문화재 지정 현황으로는 현재 《경주부사선생안(慶州府司先生案)》과 《경상도영주제명기(慶尙道營主題名記)》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 기타 《울산부선생안》, 《경상좌수영선생안》 등이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2. 원형유지정도

전체적으로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외적으로 앞뒤 표지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책 끈은

일부 끊어진 상황이다. 내부에 사용된 종이는 다소 두꺼운 한지가 사용되었고, 하단 부분에 다소 종이섬유가 느슨해지면서 일어난 현상이 관찰된다. 변란과 계선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다.

3. 지정 여부 : 서울시 유형문화재 지정

조선후기(임진왜란 이후~18세기) 한성부의 낭청(4품 이하), 즉 역대 서윤, 판관, 참군을 역임한 인물들을 수록한 자료로서 사료적 가치뿐만 아니라 서지적, 문화적 보존 가치가 인정된다. 특히 조선시대 한성부의 역대 실무 관료의 명단을 수록한 원본 자료로서의 유일성과 희소적 가치가 크다. 따라서 이 자료는 유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데 부합한다고 판단한다.

참고 자료

문화재 이미지



표지 사진



첫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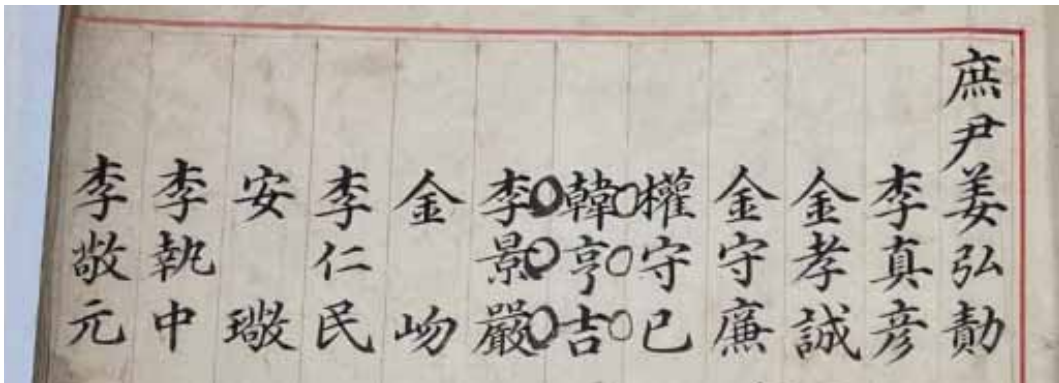


내지

【 경조당상구선생안(京兆堂上舊先生案) 】

1. 현황

일제강점기인 1941년 경성부립도서관 장서로 등록된 이래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남산도서관 장서로 보존 관리되고 있다. 《경조당상구선생안(京兆堂上舊先生案)》은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한성부에 재직한 “삼윤(三尹)”, 즉 판윤, 좌윤, 우윤의 명단이 수록된 책이다. 본문 앞부분에 수록된 <한성부제명기(漢城府題名記)>는 한성부 우윤 허계(許啓, 1594~1653)가 9월 20일에 삼가적었다는 기록이 있고, 이어서 “順治元年(1644)”과 “順治五年(1648)”을 명시한 치부(致賻, 상중 부조)에 관한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허계는 1640년 9월 19일에 한성부 우윤에 제수되었다. 따라서, 《경조당상구선생안》의 작성 배경은 1640년(인조 18)을 기점으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수록된 인물들을 살펴보면, 조선 전기에 제수된 한성부 판윤, 우윤, 좌윤을 비롯하여 조선 후기(1700년대 중후반까지)에 제수된 인물까지 열거되어 있어 최종적인 기재 시기는 18세기 중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 1〉 명단이 수록된 첫 면

판윤 김종순, 세조실록 9년(1463) 10월 18일, “한성부 윤”
 판윤 이축, 선조실록 30년(1597) 8월 22일, “한성부 판윤”
 우윤 유영길, 선조실록 26년(1593) 7월 29일, “우윤 유영길”
 판윤 권을, 선조실록 28년(1595) 10월 9일, “한성부 판윤”

명단 수록 방식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앞부분에는 정확한 제수 연월일을 알 수 없는 판윤, 우윤, 좌윤들을 열거하였고, 이어서 제수 연월일이 명확한 인물들을 열거하되 판윤들을 일괄 먼저 수록한 다음 좌윤과 우윤들을 별도로 열거하였다. (※전체 수록 인원 1,400여 명) 《경조당상구선생안》은 동일한 서명을 쓰는 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이본(異本) 또는 부분(副本)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두 책을 자세히 비교해 보면, 본문 첫 부분에 <한성부제명기>가 수록된 순서가 서로 다른 점, 명단 기재의 일부 차이점 등이 관찰된다(남산도서관 관리번호 EM059307에 수록된 명단이 EM059308보다 조금 더 많다.) 유사 자료 문화재 지정 현황으로는 현재 《경주부사선생안(慶州府司先生案)》과 《경상도영주제명기(慶尙道營主題名

記)》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 기타 《울산부선생안》, 《경상좌수영선생안》 등이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2. 원형유지정도

외적으로 앞뒤 표지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책끈은 일부 끊어진 상황이다. 내부에 사용된 종이는 다소 두꺼운 한지가 사용되었고,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는 등의 손상은 보이지 않으나, 일부에서 습해를 입은 얼룩이 보인다. 변란과 계선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다.

3. 지정 여부 : 서울시 유형문화재 지정

조선 전기부터 조선 후기(18세기)까지 한성부의 역대 판윤, 좌윤, 우윤을 역임한 인물들을 수록한 자료로서 사료적 가치뿐만 아니라 서지적, 문화적 보존 가치가 인정된다. 특히 조선시대 한성부의 역대 고위 관료의 명단을 수록한 원본 자료로서의 유일성과 희소적 가치가 크다. 따라서 이 자료는 유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데 부합하다고 판단한다.

참고 자료

문화재 이미지



표지 사진(1)



첫장(1)



표지 사진(2)



첫장(2)

【 미타사 정수암 소조여래좌상(彌陀寺 淨水庵 塑造如來坐像) 】

1. 문화재 현상

미타사 법당에 봉안되어 있는 소조여래좌상으로 전체 높이가 30cm 가량되는 흙으로 만든 작은 크기의 불상이다. 바닥에는 직경 5cm, 깊이 7cm 크기로 원통형 복장공을 마련하여 조성발원문, 후령통, 다라니 등을 납입했다. 좌대는 최근 새로 조성한 것이다. 불상은 정수리에는 둥근 정상계주를, 이마 윗쪽에는 반달 모양의 커다란 중간계주를 두었는데 중간계주의 너비는 3.7cm이다. 육체는 평평집하여 머리와 구분되지 않는다. 양 귀는 얼굴에 비해 큰 크기이며, 눈은 양쪽으로 길게 조각했지만 코와 입은 오밀조밀하다. 소라머리카락은 앞면에만 선을 그어 표현했다. 좁은 어깨의 아담한 신체 위에는 2장의 가사를 걸쳤는데 개금이 두텁게 입혀져 있고 표면 처리가 거칠다. 이로 인해 불신(佛身)이 전체적으로 울퉁불퉁하여 조각선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가부좌를 튼 발목 앞으로 퍼진 부채꼴 모양의 옷자락, 왼쪽 어깨 뒤로 넘겨졌을 대의 자락 역시 조각선이 뭉개져 작가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손 모양은 양손을 무릎 위에 얹어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했다. 이처럼 양손을 모두 신체에 밀착되게 표현한 것은 흙으로 조각한 상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양손을 신체와 분리하면 파손되기 쉽기 때문이다.

2. 내용과 특징

미타사 정수암의 소조여래좌상은 복장물이 처음 조성 당시 그대로 잘 남아있다. 특히 제작 시기와 조각승을 알려주는 조성발원문이 발견되어 이 상의 내력을 분명히 알려준다. 가장 중요한 조성발원문은 크기가 세로×가로 20×35cm이며 비단 위에 주서(朱書)한 것이다. 이 발원문을 통해 미타사 정수암의 소조여래좌상의 제작 시기와 조각승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다. 발원문에는 이 불상을 위한 증명법사는 동고봉근(東果奉根)이며, 금어는 춘담성한(春潭盛漢)이라고 적었다. 제작시기는 ‘世尊應化二千九百五十六年 庚午三月初二日神供十日点安 奉安于 普陀殿’라 적었다. ‘세존응화이천구백오십육년’은 1929년이며, 경오(庚午)는 1930년이다. 통상 이처럼 불기(佛紀)와 간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간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에 따라 이 소조여래좌상의 제작 시기는 1930년이다. 조성발원문을 통해 이 불상이 정수암 보타전의 주불이었음도 확인되는데, 보타전은 지금은 소실되어 없지만, 20세기 전반 노스님 생존 시에 존재했던 법당으로 추정한다. 50여 년 전 보타전 소실 이후 법성스님이 새로 법당을 중창하여 지금(주지 상덕스님)에 이른다. 조각을 담당한 춘담성한(春潭盛漢)은 원래 불화를 그리는 화승이다. 근대불화에서 일가를 이룬 금호약효(錦湖若效)의 제자이며, 보응문성(普應文性)과는 동문이다. 금호약효는 보응문성, 춘화만종(春花萬聰), 호은정연(湖隱正淵), 춘담성한을 제자로 두었으며, 이후 금용일섭(金蓉日燮)으로 이어진다. 이들을 계룡사파(鷄龍寺派) 혹은 마곡사파(麻谷寺派)라 부르기도 한다. 이들의 계보는 <금호불모비(錦湖佛母碑)>를 통해 확인된다.¹⁾ 이처럼 춘담성한은 불화를 그리는 화승으로 잘 알려져 있다. 1923년에는 경남 하동 쌍계사에서 보응문성과 함께 대웅전 삼세불도 가운데 <석가설법도>를, 1925년에는 고산축연과 함께 법주사 대웅보전의 <사천왕도>를 그렸다. 1932년에는 석성화경(石城和璟)을 만나 함께 작품활동을 이어간다. 1932년에는 과천 연주암에서 석성화경과 함께 <아미타설법도>, <지장시왕도>, <신중도>를 그렸으며, 동시에 소조관음보살좌상과 소조대세지보살좌상도 석성화경과 함께 조성했다. 이후에도 석성화경과 함께 활동하는데 전남 담양군 용주사

1) 공주시·마곡사·한얼문화유산연구원, 『麻谷寺誌』, 한얼문화유산연구원, 2012, p.354.

소장의 원통사 치성광여래도를 비롯하여 충남 아산 옥련암이 소장하고 있는 1934년 <영산회상도>도 그와 함께 그렸다. 이처럼 춘담성한은 불화작업에 매진했던 화승이지만, 흠으로 불상을 조성하기도 했다. 미타사의 소조여래좌상은 춘담성한이 석성화경과 함께 활동하기 전인 1930년에 춘담성한이 혼자 조성한 상이다. 이 상을 조성하기 3년 전인 1927년 이미 미타사 금보암의 <아미타삼존도>를 그린 것을 보면, 미타사와의 인연은 불상을 조성하기 이전부터 이미 맺어졌던 것으로 추정한다.

3. 지정 여부 : 서울시 문화재자료 지정

미타사 정수암에 봉안되어 있는 소조여래좌상은 1930년 춘담성한이 제작한 불상이다. 춘담성한은 금호약효의 제자로 불화를 그리는 화승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상은 그의 특기인 불화가 아니라 불상이다. 앞으로 춘담성한이 제작한 불상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지만, 미타사 정수암의 이 소조여래좌상은 지금까지 알려진 춘담성한의 불상 가운데는 가장 이른 예이다. 춘담성한은 1927년 미타사 금보암의 <아미타삼존도>를 그리면서 미타사와 인연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며, 이후 정수암에 소조여래좌상을 조성 봉안했다. 미타사 정수암의 소조여래좌상은 크기가 작고 표면이 거칠어 조각의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복장물이 조성 당시 그대로 잘 남아있어 1930년 춘담성한이 제작했음이 밝혀졌고, 20세기 전반의 화승인 춘담성한이 제작한 불상 가운데 가장 이른 예라는 점에서 서울시 문화재 자료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참고 자료	문화재 이미지
	
(도1) 미타사 정수암의 소조여래좌상 봉안 위치	(도2) 미타사 정수암 소조여래좌상과 복장물
	
(도3) 미타사 정수암 소조여래좌상	(도4) 미타사 정수암 소조여래좌상 옆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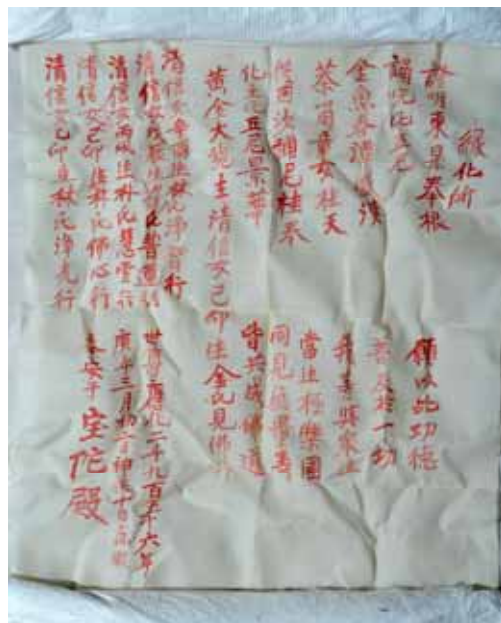
	
(도5) 미타사 정수암 소조여래좌상 뒷면	(도6) 미타사 정수암 소조여래좌상 세부
	
(도7) 미타사 정수암 소조여래좌상 바닥면	(도8) 미타사 정수암 소조여래좌상 복장물



(도9) 미타사 소조여래좌상 사리



(도10) 미타사 소조여래좌상 후령통



(도11) 미타사 소조여래좌상 복장발원문



(도12) 미타사 소조여래좌상 복장발원문 세부

【 남산도서관 소장 일제강점기 잡지 3종 】

1. 문화재 현황

1) 『서울』 제1호, 제6호, 제7호 (1종 3권)

1919년 12월 15일 창간되어 1920년 12월에 제8호(임시호)로 종간된 잡지이다. 주간은 장도빈이며 제1~3호는 서울사, 제4~8호는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 발행되었다. 3·1운동 이후 언론출판의 자유가 조금 완화될 때 국내에서 최초로 발행된 잡지였으며, 한성도서주식회사의 첫 출판물이었다. 출판법에 근거한 잡지여서 정치와 시사를 다룰 수 없었지만 1920년대 전반기를 풍미한 『개벽』 이전의 사회상과 시대사조를 이해하는 데 빠질 수 없는 자료이다. 재단법인 현담문고가 제4호를 제외한 7개 호수를, 연세대 학술정보원이 제2~5호, 제8호(임시호)를 소장 중이다.

2) 『鏞傭』 창간호 (1종 1권)

1931년 8월 13일에 용성사에서 발행되었다. 편집 겸 발행인은 장두정이었고, 신소년사인쇄부에서 인쇄하였다. 창간호가 종간호였다. 제목처럼 피고용인의 목소리를 대변하지만 사회주의계열의 잡지는 아니었다. 여느 잡지의 창간호와 다르게 창간 축하 광고의 대부분을 서울의 권번(기생조합) 소속 기생들의 명함 광고로 채웠다. 1926년에 창간된 최초의 기생 잡지 『장한』처럼 1930년대 초반 서울의 기생 사회를 엿볼 수 있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도 잡지 창간호 컬렉션으로 한 부를 소장중이다.

3) 『우리의 가덩』 제1호~제12호 (1종 12권)

1913년 12월 15일에 창간되어 1914년 11월에 제12호로 종간하였다. 1910년대 조선에서 발행된 유일한 여성잡지로서 순한글로 발행되었다. 편집 겸 발행인은 다케우치 로쿠노스케(竹内録之助)였다. 다케우치는 신문사(新文社)의 사장으로 『우리의 가덩』을 발판으로 이후 『新聞界』, 『半島時論』, 『半島新聞』 등을 발간한 1910년대의 주요 잡지인이었다. 특히 『반도시론』은 3·1운동을 다루고 총독정치를 비판하다가 폐간되었다. 일제의 한국병합 이후 여성에게 ‘보통 지식’을 보급하여 가정과 아동을 변화시키고자 한 잡지였다. 최남선의 『소년』이 1911년에 폐간되고 1914년 11월에 『청춘』이 발간될 때까지의 공백을 메운 잡지라는 의미도 있다. 서강대학교 로올라도서관도 제3호와 제8호, 제9호, 제11호를 소장중이지만 상태가 좋지 않다. 남산도서관은 전호를 소장하고 있다.

4) 『新生』 창간호 외 35호

1928년 10월 1일에 창간되어 1934년 1월에 통권 60호를 끝으로 폐간하였다. 주간은 목사인 유형기였고 이운재, 이운상, 이태준 등이 편집에 참여하였다. 기독교 잡지였지만 종교 외에도 역사, 철학, 문학 등을 폭넓게 다루었다. 정신계몽을 통해 조선 민족, 특히 청년들에게 활력을 심고자 했다. 비슷한 기독교 계통 잡지로서 『眞生』, 『新生命』, 『青年』 등이 있었다.

2. 등록 여부 : 서울시 등록문화재 등록(조건부 가결 ※ 『신생』을 제외한 3종만 가능)

- 『서울』은 발행 시기와 내용, 희소성 등의 이유로, 『용성』은 피고용인과 기생층 대상 잡지라는 사료적 가치와 희소성 때문에 서울시 등록문화재로 등록되기에 충분하다. 『우리의 가덩』은 일본인 발행이라는 한계를 지니지만 1910년대 전반기에 유일하게 발행된 여성잡지라는

점과 시기적 특성, 그리고 희소성 때문에 역시 서울시 문화재로 등록될만한 가치가 있다.

- 『신생』은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초반을 엿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비슷한 잡지가 적지 않고, 총 60권 중 절반 정도만 소장 중이어서 문화재로 등록하기에는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서울』과 『용성』, 『우리의 가뉘』에는 가결을, 『신생』에는 부결로 결정하였다.

참고 자료	문화재 이미지
	
서울 제1호 표지	용성 창간호 표지
	
우리의 가정 제1호 표지	우리의 가정 제12호 목차

【 남산도서관 소장 경성부 발간 자료 16종 】

1. 문화재 현황

남산도서관 소장 경성부 발간 자료 28종 자료는 현재의 서울특별시에 해당하는 일제강점기 경성부와 그 산하기관(부립도서관, 순화원) 또는 유관기관(경성부교육회)에서 발행한 도서류이다. 발행 시기로는 1923년부터 1942년 사이에 해당한다. 주제별로 분류하면 예산 관계(『경성부세입세출예산서』, 『경성부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서』 등), 교육 관계(『경성부학사일람』, 『경성학교조합세입세출예산서』, 『내선풍속습관의 길잡이』, 『학급경영참고자료』 등), 통계 자료(『경성부인구통계』, 『상공누년통계서』, 『세무통계』 등), 전시통제경제 자료(『경성부의 공정가격집』, 『사치품등제조판매규칙 및 개정폭리행위등취체규칙』 등), 위생관계(『경성부순화원요람』, 『경성부방면위원제요』 등), 각각 경성부와 경성부도서관의 기관잡지인 『경성회보』와 『경성부립도서관보』 전호, 경성부 공무원의 사무지침인 『예규집』과 기타 자료(『중요상품조사 : 면포의 부』, 『회사와 소득세』 등)이다. 이 중에서 경성부청의 부정(府政)을 홍보하는 『경성회보』와 경성부도서관의 도서출납과 이용자 현황을 알 수 있는 『경성부립도서관보』는 남산도서관만 전호를 소장중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에는 결호가 많다. 세입세출예산 자료와 상공통계자료, 『경성부학사일람』, 『경성부순화원요람』, 『경성부방면위원제요』 등 대부분의 자료들이 남산도서관 유일본이다.

2. 원형유지정도

『경성부 인구통계』의 경우 표지의 절반이 찢어진 상태이며, 『내선풍속습관의 길잡이』 등 몇 책은 표지의 좌측 하단이 일부 손상되었다. 그 외의 자료는 대개 양호한 상태이다.

2. 등록 여부 : 서울시 등록문화재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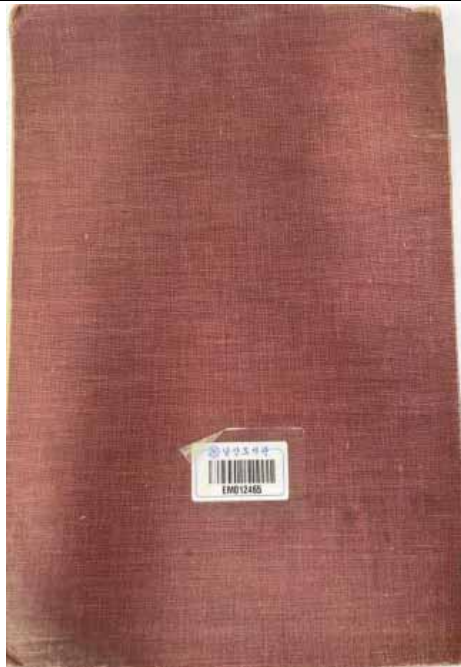
신청한 총 28종 중 16종의 자료는 생산기관과 발행자, 남산도서관 유일 소장이라는 희소성, 경성부의 부정 일반과 경성부민의 생활상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자료군이란 점에서 서울시 등록문화재로 등록되기에 충분하다.

연번	서명	저작자	발행자	발행년도	권차
1	京城府における公定價格集	京城府經濟課 編纂	朝鮮圖書出版株式會社	昭和17[1942]	1
2-1	京城府勸業施設概況	京城府 [編]	京城府	昭和9[1934]	1
2-2	京城府勸業施設概況	京城府 [編]	京城府	昭和12[1937]	1
3	京城府立圖書館報	京城府立圖書館 [編]	京城府立圖書館	昭和11[1936]	95
4	京城府立順化院要覽	-	京城府立順化院	昭和10[1935]	1
5	京城府方面委員提要	京城府 [編]	[發行者不明]	昭和3[1928]	1
6	京城府歲入歲出豫算書	京城府 [編]	京城府	大正12[1923]	1
7	京城府歲入出豫算書	京城府 [編]	京城府	昭和2[1927]	1
8	京城府人口統計	京城府廳 [編]	[發行者不明]	昭和17[1942]	1

연번	서명	저작자	발행자	발행년도	권차
9-1	京城府一般會計特別會計歲入出豫算書	京城府 [編]	[發行者不明]	昭和6[1931]	1
9-2	京城府一般會計特別會計歲入出豫算書	京城府 [編]	[發行者不明]	昭和7[1932]	1
10-1	京城府學事一覽	-	[京城府]	大正15[1926]	1
10-2	京城府學事一覽	-	[京城府]	昭和2[1927]	1
11	京城學校組合歲入出豫算書	-	[發行者不明]	[發行年不明]	1
12-1	京城彙報	京城府 [編]	[發行者不明]	[發行年不明]	22
12-2	京城彙報	京城府 [編]	[京城府]	大正12[1923]	20
13	內鮮風俗習慣のしるべ	-	京城府公立普通學校教員會	[發行年不明]	1
14-1	商工累年統計書	京城府 [編]	[發行者不明]	大正13[1924]	1
14-2	商工累年統計書	京城府 [編]	京城府	大正14[1925]	1
14-3	商工累年統計書	京城府 [編]	[發行者不明]	大正15[1926]	1
15	重要商品調査: 線布の部	京城府 [編]	京城府	大正13[1924]	1
16	會社と所得稅	京城府 [編]	京城府	昭和8[1933]	1

참고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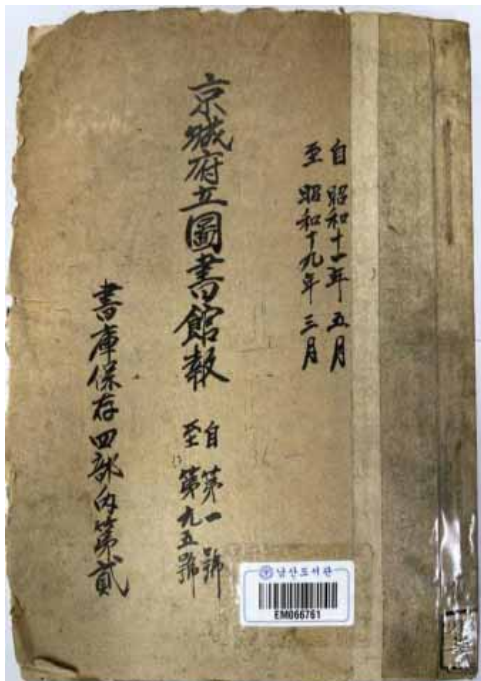
문화재 이미지



경성휘보 표지



경성휘보 표지, 목차, 판권지



경성부립도서관보 표지



경성부립도서관보 제1호 표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 - 733호

도시관리계획(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418호('01.12.15.)로 최초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408호('04.12.10.)로 변경 결정된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에 대한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2021년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1.12.9.) 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양재택지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변경)취지

서울시 「양재 Tech +City 조성계획」에 따라 양곡도매시장을 서초구 양재동 229번지 일대로 이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

II.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변경 결정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구 양재동, 우면동, 염곡동 일대	3,067,090.0	-	3,067,090.0	'01.12.15 (서고 제2001-418호)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3,067,090.0	-	3,067,090.0	100.0	
일반 주거 지역	합 계	1,547,347.7	-	1,547,347.7	50.3	-
	제1종일반주거지역	226,595.1	-	226,595.1	7.4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698,105.0	-	698,105.0	22.8	-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제2종일반주거지역	179,434.7	-	179,434.7	5.7	-
제3종일반주거지역	354,517.9	-	354,517.9	11.5	-
준주거지역	88,695.0	-	88,695.0	2.9	유통업무설비
일반상업지역	412,892.0	-	412,892.0	13.5	유통업무설비 삼호물산일대
자연녹지지역	1,106,850.3	-	1,106,850.3	36.2	-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변경 결정 조서

가. 교통시설 결정조서 : 변경

(1) 도로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유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1	33	50 ~61	주간선 도 로	7,580 (423)	광 1-28 (양재동)	광 1-29 (송파구 장지동)	일반도로	-	' 72.03.06 (건고 제78호)	현릉로
변경	광로	1	33	50 ~61	주간선 도 로	7,580 (423)	광 1-28 (양재동)	광 1-29 (송파구 장지동)	일반도로	-	' 72.03.06 (건고 제78호)	현릉로 (일부구간 폭원변경)
기정	중로	2	259	15 ~21	집 산 도 로	179	광 1-33	하천	일반도로	-	' 83.09.07 (건고 제296호)	-
변경	중로	2	259	15 ~27.5	집 산 도 로	179	광 1-33	하천	일반도로	-	' 83.09.07 (건고 제296호)	(일부구간 폭원변경)

주) 연장의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사항이며, 해당구간 이외의 도로는 변경 없음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1-33	광로1-33	• 노선일부 폭원 확장 (B = 50m → 53m)	• 현행도로를 반영하여 도로폭원 변경
중로2-259	중로2-259	• 노선일부 폭원 확장 (B = 21m → 27.5m)	• 현행도로를 반영하여 도로폭원 변경

(2) 철도(변경없음)

(3) 주차장(변경없음)

(4) 자동차정류장(변경없음)

나. 도시공간시설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유통공급시설 결정조서 : 변경

(1) 유통업무설비

가) 유통업무설비 변경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①	유통업무설비	서초구 양재동 214번지 일대	318,331.55	감) 1,228.8	317,102.75	'82.02.18 (건고 제76호)	
기정	②	유통업무설비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일대	87,251.40	-	87,251.40	'90.12.20 (건고 제946호)	

나) 유통업무설비 총괄 조서 : 변경

- 양재동 214번지 일대

구분	시설명	세부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유통 업무 설비	계		318,331.55	감) 1,228.8	317,102.75		
		사무소	양재동214	15,355.20	-	15,355.20	'91.2.11. (서고 제36호)	
		대규모점포(도매센터, 대형점), 집배송시설	양재동215	28,972.30	-	28,972.30	'03.9.20. (서고 제269호)	
		간이주유소	양재동216외 1	7,976.90	-	7,976.90	'85.8.19. (서고 제553호)	
		화물터미널	양재동 217-7외 2	3,768.50	-	3,768.50	'01.12.15 (서고 제413호)	
		자동차매매업에 제공되는 사무소 또는 점포, 자동차 경매장	양재동217외 3	12,858.90	-	12,858.90	'01.12.15. (서고 제413호)	
		대규모 점포	양재동217-6	9,598.50	-	9,598.50	'99.8.10. (서고 제249호)	
		집배송시설	양재동222외 1	16,789.60	-	16,789.60	'04.10.20. (서고 제318호)	
		농수산물도매시장 공동집배송센터	양재동223외 1	32,093.47	-	32,093.47	'11.9.15. (서고 제270호)	
		물류터미널, 대규모점포, 창고	양재동225외 6	86,002.50	-	86,002.50	'14.5.22. (서고 제193호)	

구분	시설명	세부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유통 업무 설비	생활물자저장소	양재동229외 4	17,539.30	감) 17,539.30	-	'90.4.17 (서고 제105호)	
변경		창고	양재동229	-	증) 7,883.60	7,883.60	-	
		농수산물도매시장	양재동229-7	-	증) 8,426.90	8,426.90	-	
기정	유통 업무 설비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양재동230외 2	64,438.40	-	64,438.40	'07.03.08. (서초구고 제16호)	
		자동차매매업 및 도매업에 제공되는 사무소 또는 점포	양재동231	22,937.98	-	22,937.98	'07.03.08. (서초구고 제16호)	

주) 양재동 232번지 일대 유통업무설비는 변경 없음

○ 유통업무설비 변경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①	유통업무 설비	- 도로부지 제척에 따른 면적 변경 - 기정 : 318,331.55㎡ - 변경 : 317,102.75㎡ (감 1,228.8㎡)	도로 부지 일부 편입에 따른 유통업무설비 면적 변경

다) 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 조서

— 양재동 214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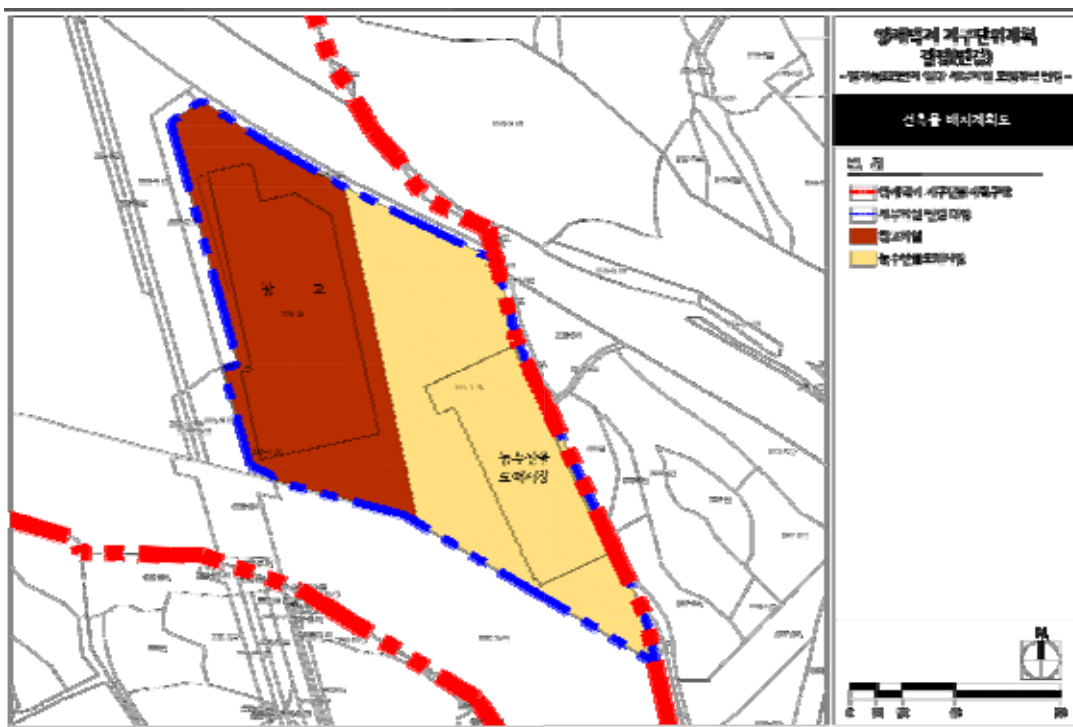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세부시설	건축규모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정	유통 업무 설비	양재동 214	15,355.20	사무소	-	-	지하3층 지상6층	'91.2.11. (서고 제36호)
		양재동 215	28,972.30	대규모점포 (도매센터, 대형점), 집배송시설	40%이하	270%이하	19층 이하 (해발125m이하)	'03.9.20. (서고 제269호)
		양재동 216 외1	7,976.90	간이주유소	-	-	-	'85.8.19. (서고 제553호)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세부시설	건축규모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양재동 217-7 외2	3,768.50	화물터미널	-	-	-	'01.12.15 (서고 제413호)
		양재동 217 외3	12,858.90	자동차매매업에 제공되는 사무소 또는 점포, 자동차 경매장	50%이하	200%이하	6층 이하 (해발75m이하)	'01.12.15. (서고 제413호)
		양재동 217-6	9,598.50	대규모 점포	-	-	-	'99.8.10. (서고 제249호)
		양재동 222 외1	16,789.60	집배송시설	50%이하	60%이하	3층 이하 (해발60m이하)	'04.10.20. (서고 제318호)
		양재동 223 외1	32,093.47	농수산물도매시장 공동집배송센터	46%이하	47%이하	3층 이하 (해발60m이하)	'11.9.15. (서고 제270호)
		양재동 225 외6	86,002.50	물류터미널, 대규모점포, 창고	60%이하	400%이하	해발 190m이하 (단, 건축법에 의한 도로사선 제한 적용)	'14.5.22. (서고 제193호)
기정	유통 업무 설비	양재동 229 외2	17,539.30	생활물자저장소	-	-	-	'92.3.10. (서고 제66호)
변경		양재동 229	7,883.60	창고	60%이하	300%이하	해발82m이하 (11층 이하)	-
		양재동 229-7	8,426.90	농수산물 도매시장	60%이하	100%이하	해발50m이하 (5층 이하)	양곡도매시장 이전
기정	유통 업무 설비	양재동 230외2	64,438.40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50%이하	60%이하	4층 이하 (해발50m이하)	'07.3.8. (서초구고 제16호)
		양재동 231	22,937.98	자동차매매업 및 도매업에 제공되는 사무소 또는 점포, 창고, 유통업무와 관련된 연구시설	55%이하	허용용적률 400%이하 *단,기부채납에 의한 상한용적률 적용	-	'07.3.8. (서초구고 제16호)

주) 양재동 232번지 일대 유통업무설비는 변경없음\

○ 토지이용계획(신설)

구분	위치	세부시설 면적(㎡)	토지이용계획 상 세부시설	주요 건축물·공작물	비고
신설	양재동 229	7,883.60	창고 부지	창고	-
신설	양재동 229-7	8,426.90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	농수산물 도매시장	양곡도매시장 이전



○ 건축물조서(신설)

구분	위치	세부시설 면적(㎡)	토지이용계획 상 세부시설	건축물 조서				비고
				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신설	양재동 229	7,883.60	창고	창고시설	4,378㎡	23,168㎡	해발82m (지상11층)	지하2층
신설	양재동 229-7	8,426.90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도매시장	2,750㎡	3,300㎡	해발40m (지상2층)	지하2층

주) 연면적 합계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면적(지하층 등)은 제외

－ 건축물 세부 조서

위치	구 분			용도	연면적(㎡)	비고
양재동 229 (창고)	주시설		저온창고 : 농식품 및 생활물자를 위한 창고	창고, 하역장 등	21,710	-
	부대 및 편익시설		농식품 및 생활물자지원 사무소, 지원사무실 등	사무소 등	4,519	-
	연면적	지상	주시설 : 창고 및 하역장(18,649㎡) 부대 및 편익시설 : 사무소 등(4,519㎡)		23,168	-
		지하	주시설 : 창고(3,061㎡) 주차장, 기계/전기실(7,127㎡)		10,188	-
		합계			33,356	-
양재동 229-7 (농수산물 도매시장)	주시설		농수산물 도매시장	물류창고, 저온저장고 등	4,610	-
	부대 및 편익시설		시장도매인 사무실 및 관리사무소	사무소 등	800	-
	연면적	지상	주시설 : 물류창고 및 저온저장고(2,500㎡) 부대 및 편익시설 : 사무소 등(800㎡)		3,300	-
		지하	주시설 : 저온저장고(2,110㎡) 주차장 및 기계/전기실(3,860㎡)		5,970	-
		합계			9,270	-

○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유통업무 설비	◦ 세부시설 종류 및 면적 변경 - (기정)생활물자저장소 → (변경)창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 생활물자저장소 : 17,539.3㎡ → 0 (감 17,539.3㎡) - 창고 : 0 → 7,883.6㎡ (증 7,883.6㎡) - 농수산물 도매시장 : 0 → 8,426.9㎡ (증 8,426.9㎡)	◦ 양곡도매시장 이전 계획에 따라 현재 노후화된 생활물자저장소 부지의 세부시설(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 조서 신설 포함)을 창 고 및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임

(2)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3) 시장(변경없음)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조서 : 변경없음

마. 방제시설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

가. 대지내 공지계획(변경없음)

나. 경관계획(변경없음)

다. 차량진출입 및 보행동선에 관한 계획 : 변경

(1) 기본방향(변경없음)

(2) 계획기준(변경없음)

(3) 차량출입불허구간에 관한 지침(변경없음)

(4) 공동주차출입구에 관한 지침(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위 치	기 정	변 경	
(공동)주차 출입구	마방로	9개소	9개소	· 변경없음
	바우외로	13개소	13개소	· 변경없음
	양재천로	1개소	1개소	· 변경없음
	매현로	5개소	5개소	· 변경없음
	현릉로	-	1개소	· 변경

5. 경미한 변경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6.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III.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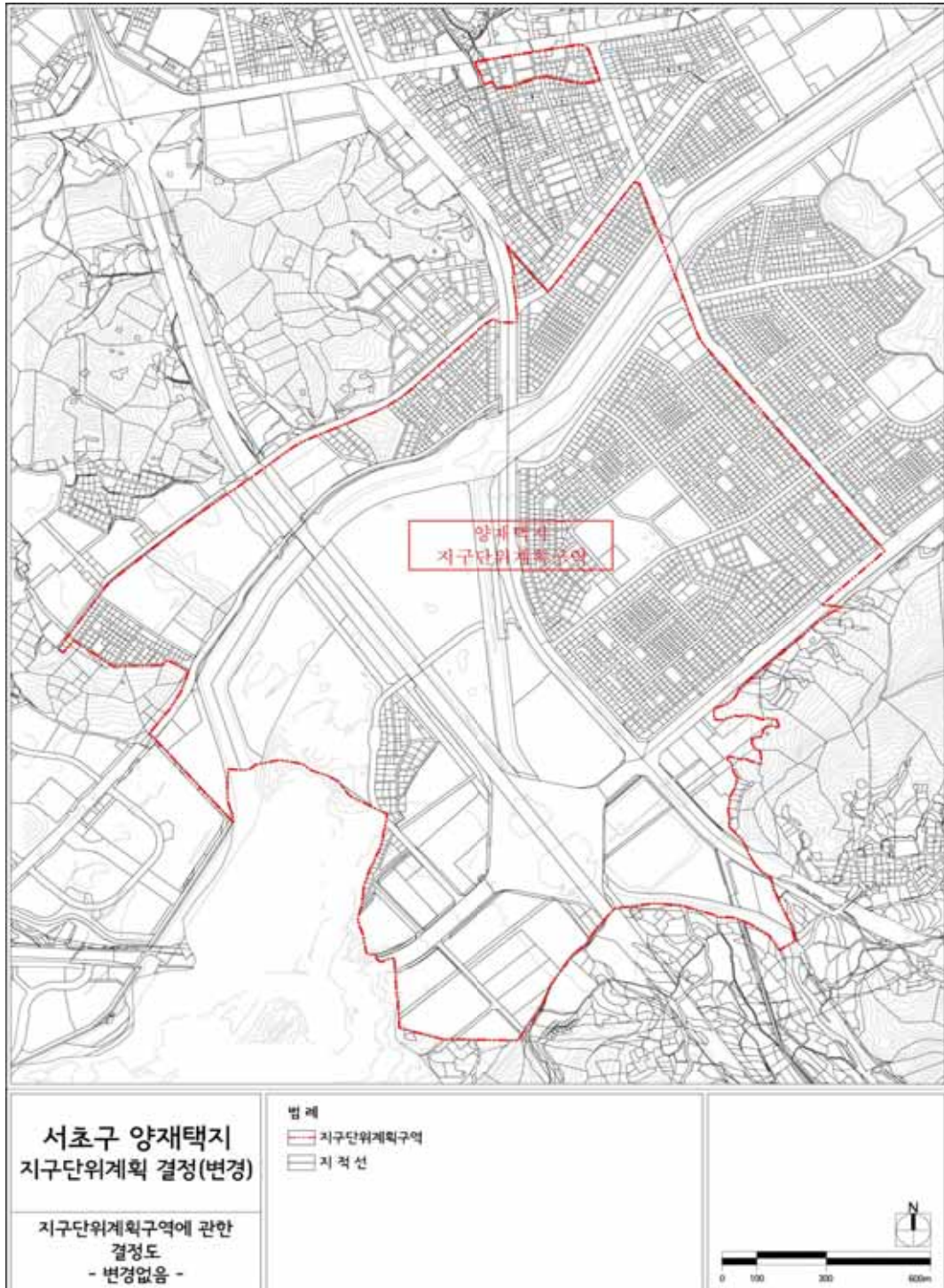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V.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02-2133-8407), 도시농업과(2133-5434) 및 서초구 도시계획과(☎02-2155-6787)에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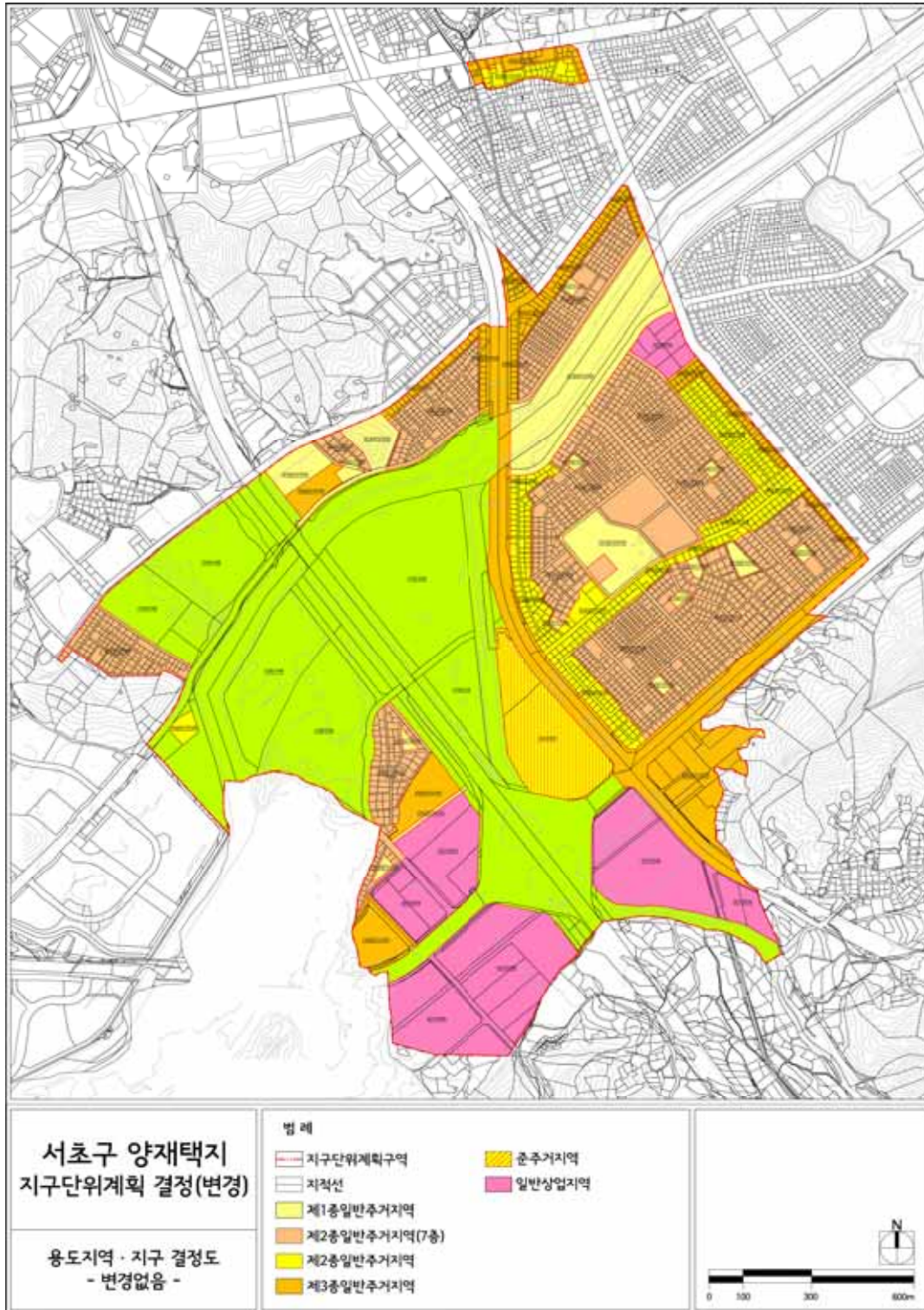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계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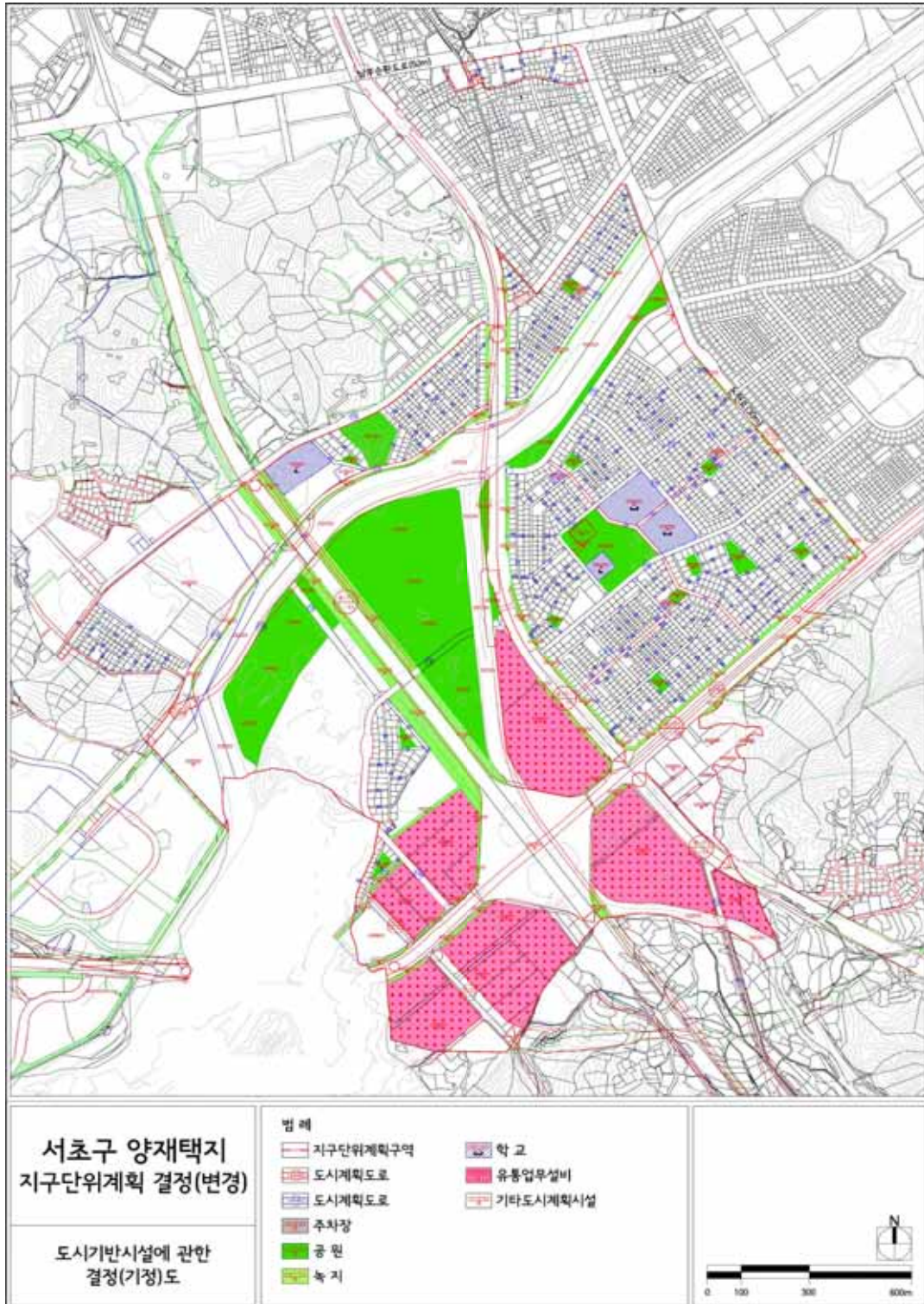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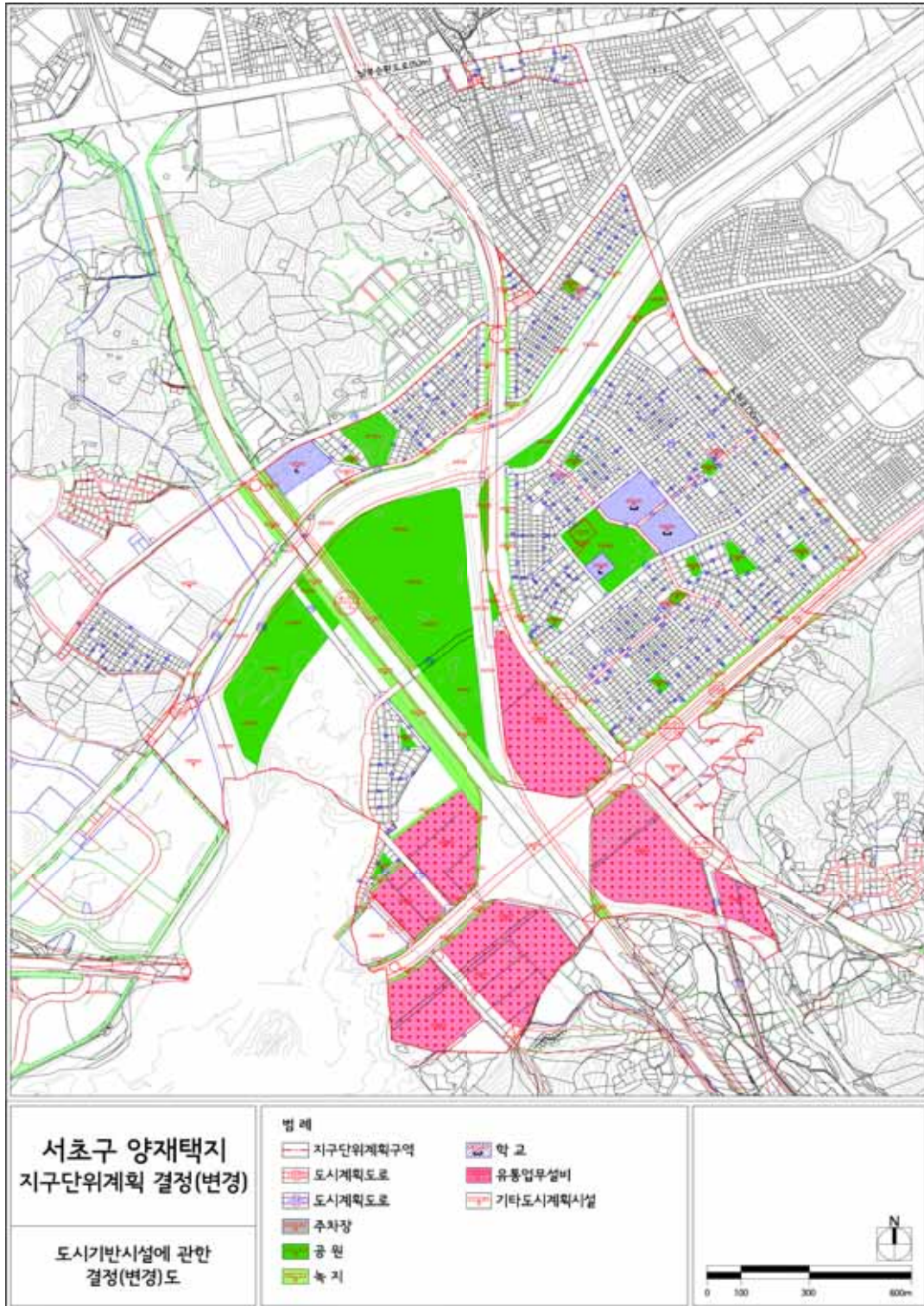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없음) >



< 도시기반시설 결정(기정)도 >



<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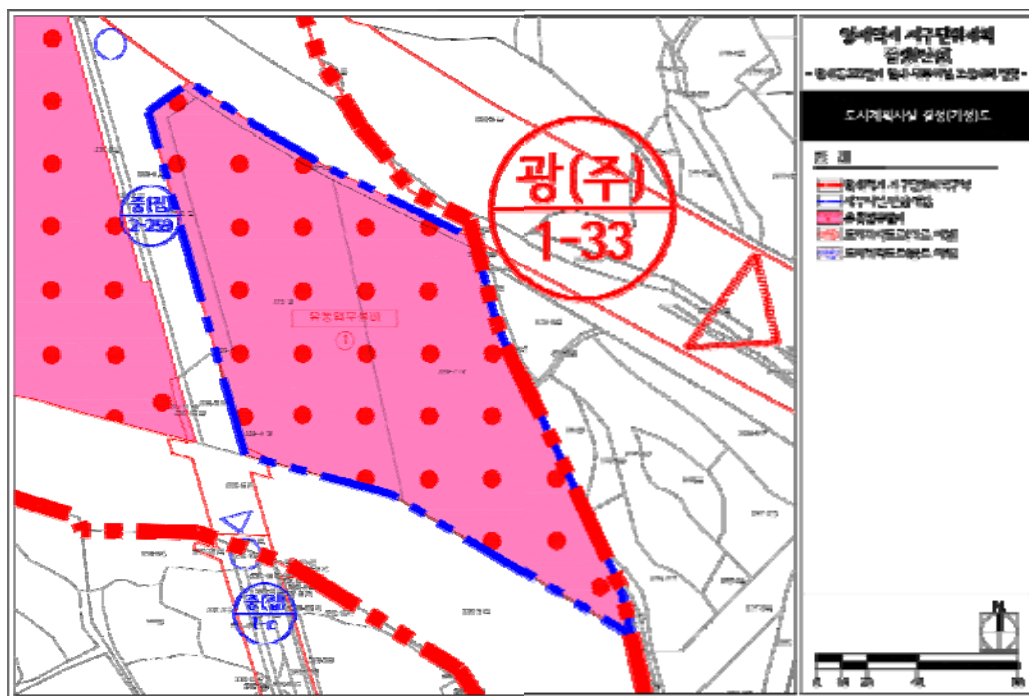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 결정(기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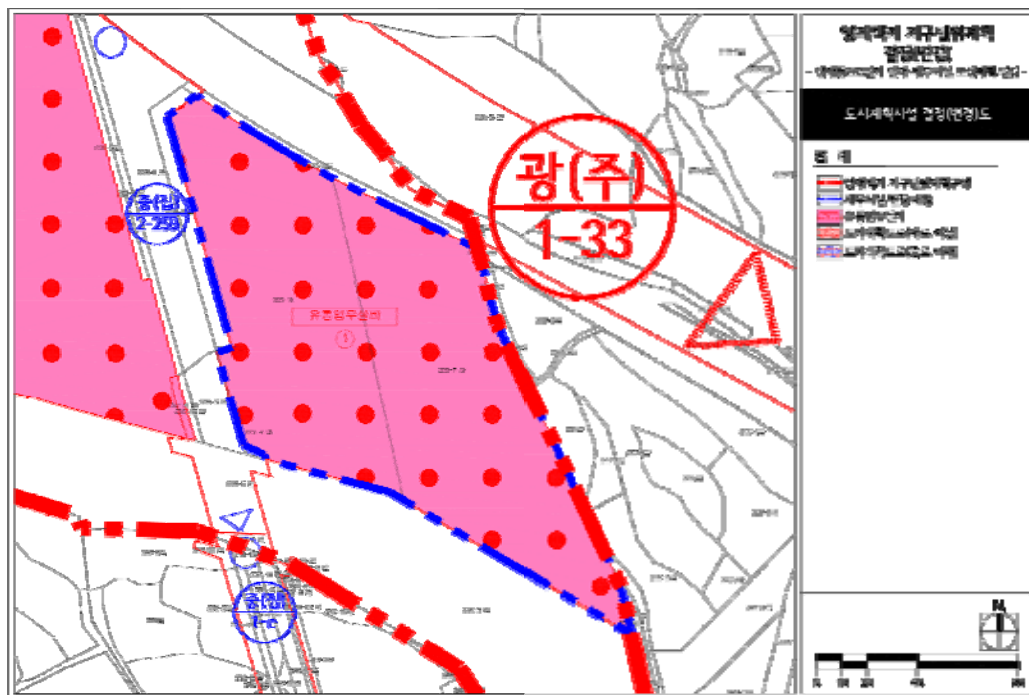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 결정(변경)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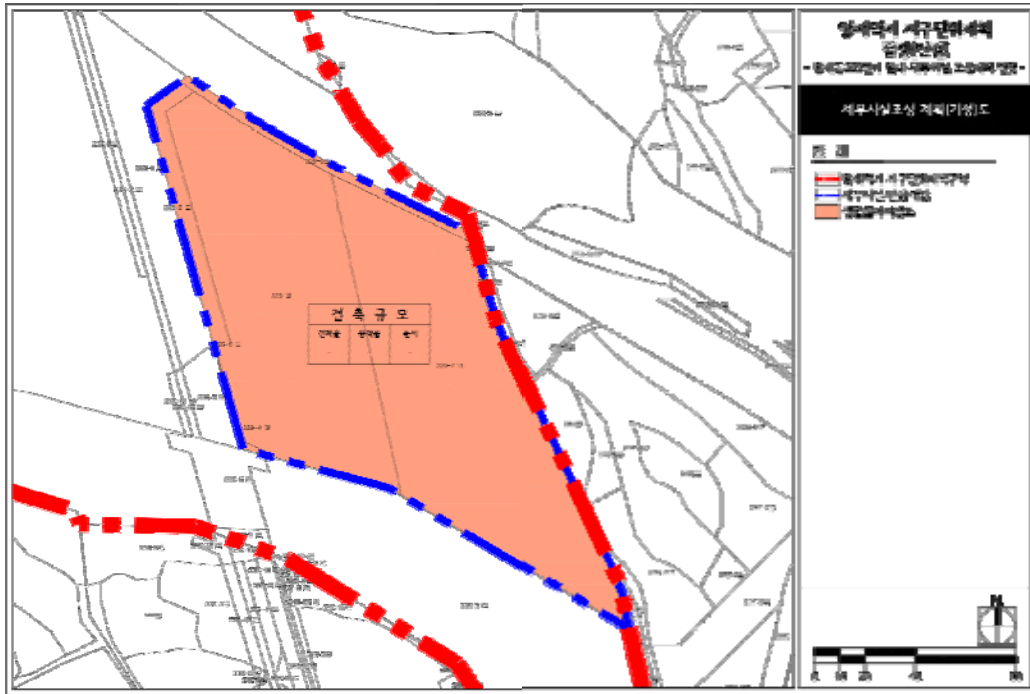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양재동229번지 일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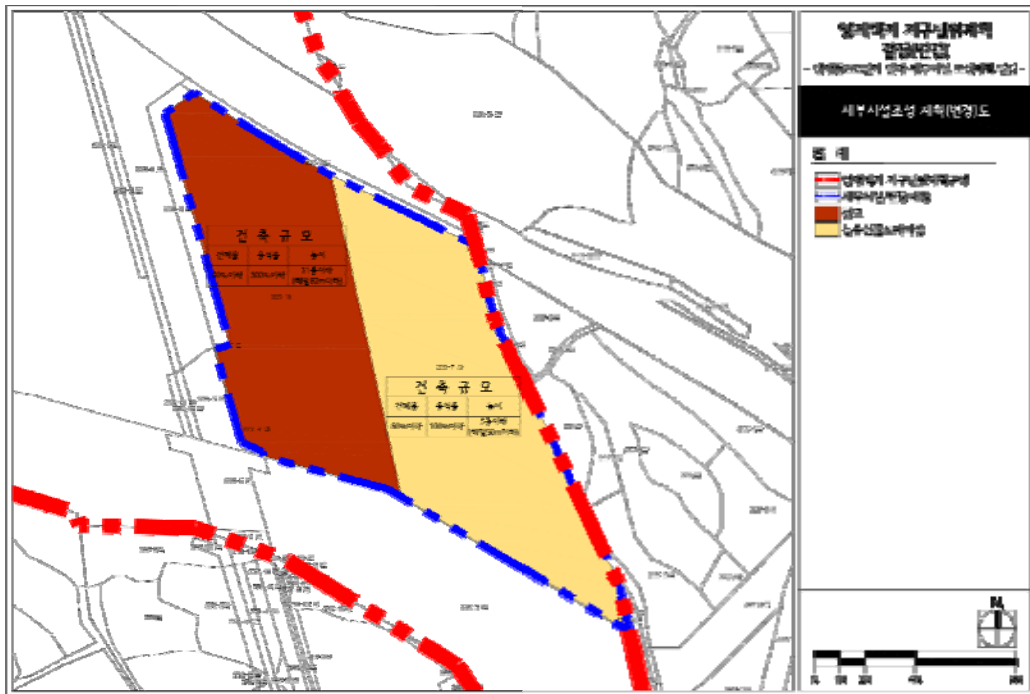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양재동229번지 일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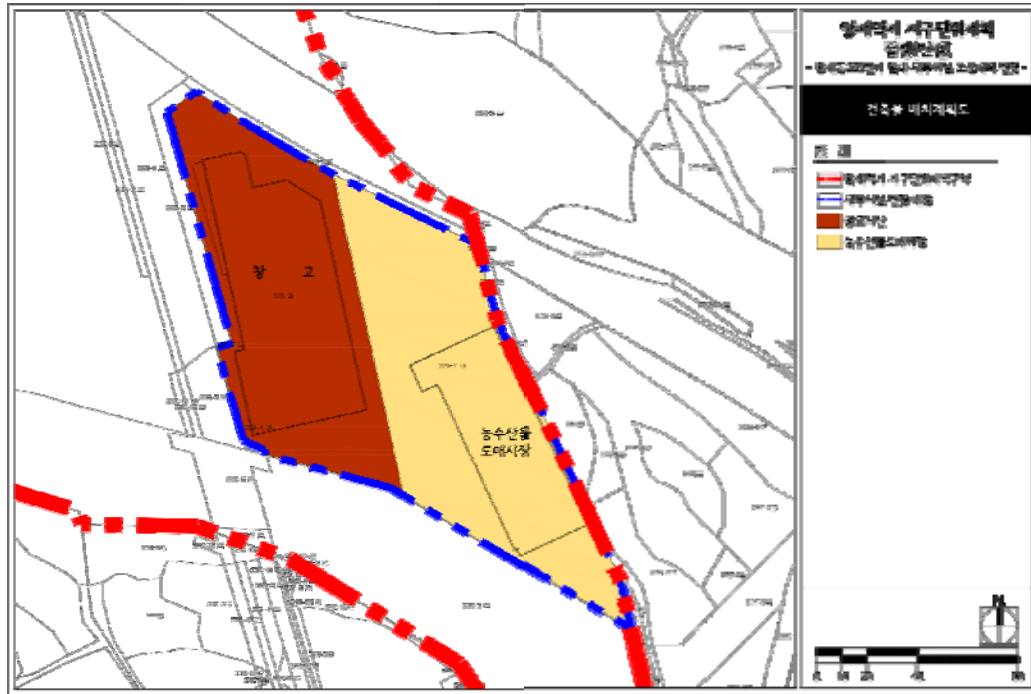
< 세부시설 결정(기정)도(양재동 229번지 일대) >



< 세부시설 결정(변경)도(양재동 229번지 일대) >



< 건축물 배치계획도(양재동 229번지 일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734호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372호(2003.11.18.)에 의거 천호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81호(2014.07.31.)에 의거 천호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의제처리)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68호(2014.10.3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76호(2014.11.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59호(2015.03.0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321호(2015.10.1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279호(2016.09.0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45호(2017.04.2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36호(2017.07.0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28호(2018.1.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94호(2018.3.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272호(2018.8.3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391호(2018.12.0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243호(2019.07.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653호(2021.12.0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고시된 천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천호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합니다.
2.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없음

명칭	유형	위치	면적(㎡)			지정목적
			기정	변경	변경후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강동구 천호동 362-60번지 일대	409,096.3	-	409,096.3	강동구 천호동일대 기성시까지 재정비 및 활성화, 전창촌과 노후 재래시장 정비 등을 통해 신 주거문화 중심으로 개발하기 위함

2.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 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분		면적(㎡)			비율(%)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09,096.3	-	409,096.3	100.0
획지	소계	282,957.0	-	282,957.0	69.2
	공동주택용지	45,662.3	-	45,662.3	11.2
	근린생활시설용지	33,468.8	-	33,468.8	8.2
	주상복합용지	27,510.0	-	27,510.0	6.7
	종교용지	453	-	453	0.1
	준치	175,862.9	-	175,862.9	43.0
정비기반시	소계	126,139.3	-	126,139.3	30.8
	유수지	10,626.6	-	10,626.6	2.6
	공공청사	1,406.2	-	1,406.2	0.3
	공원	35,407.7	-	35,407.7	8.7

구 분		면 적(㎡)			비 율(%)
		기 정	변 경	변경후	
설	도 로	78,698.8	-	78,698.8	19.2

나. 인구·주택수용계획 : 변경 (20,105인 / 8,488세대)

구 분		주 택 수(호)			인 구 수(인)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8,488	-	8,488	20,105	-	20,105	-
촉진 구역	소 계	1,722	-	1,722	4,306	-	4,306	세대당 약2.5인
	40㎡ 이하	0	-	0	-	-	-	
	40㎡~60㎡	773	감)1	772	1,933	감)3	1,930	
	60㎡~85㎡	786	증)1	787	1,965	증)3	1,968	
	85㎡ 초과	163	-	163	408	-	408	
존치관리구역		6,766	-	6,766	15,799	-	15,799	현행인구 및 세대

- 변경 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 규모별 주택수 40㎡~60㎡: 773호 → 772호 60㎡~85㎡: 786호 → 787호 - 규모별 인구수 40㎡~60㎡: 1,933인 → 1,930인 60㎡~85㎡: 1,965인 → 1,968인	천호3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평면 등 조정으로 인한 계획세대수 및 인구수 변경

다.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	공공청사	-	천호동422-1	1,406.2	-	1,406.2	09.11.26	천호1구역 (주차장, 체육시설 중복결정)
기정	1	유수지	천호유수지	천호동329	10,626.6	-	10,626.6	75.10.07	-
기정	1	체육시설	수영장	천호동422-1	6,827.2	-	6,827.2	-	천호1.3구역 (공공청사, 소공원 중복결정) (지하1~지하3층)

라.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원	기정	14	천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천호동360	26,696.8	-	26,696.8	97.1.15
	기정	21	천사공원	소공원	천호동363-5	1,617.2	-	1,617.2	72.4.22 09.11.26
	변경			어린이공원	천호동363-5	1,617.2	-	1,617.2	72.4.22 09.11.26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47-1	-	소공원	천호동422-1	5,421.0	-	5,421.0	-	천호1,3구역
	기정	-	광진공원	어린이공원	천호동338-19	1,672.7	-	1,672.7	-	천호7구역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공원 시설의 세분 - 천사공원: 소공원 → 어린이공원	오기로 인한 정정

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21호」 천호5단지정비구역 해제 당시 기존시설로 환원하였으나, 공원시설 세분에 대한 환원내용이 누락되어 오기 정정

마. 교통계획 : 변경없음

1)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110	25~33	주간선 도로	3,000 (456)	풍납동 광로5	암사동 강변	일반 도로	올림픽로	2009.11.30. (서고 2009-472)	-
기정	중로	1	406	20~23	보조간선 도로	235	천호동 217-134	천호동 550-6	일반 도로	구천면로	2001.6.2. (서고 158) 2006.7.27. (서고2006-264)	구천면로 (천호1구역)
기정	소로	2	16	8	집산도로	549	천호동 367-1	천호동 393-20	일반 도로	-	2021.12.2. (서고 2021-653)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399	천호동 357-1	천호동 397-16	일반 도로	-	2006.2.8. (서고2006-49)	
기정	소로	2	44	8	국지도로	150	천호동 337-98	천호동 337-17	일반 도로	-	-	천호7구역
기정	중로	2	20	15	집산도로	65	천호동 357-12	천호동 357-1	일반 도로	-	2005.10.13. (강고2005-59)	존치시설
기정	소로	2	17	8	국지도로	237	천호동 392-1	천호동 386-19	일반 도로	-	-	천호5구역
기정	중로	3	7	12~15	집산도로	134	천호동 417-57	천호동 423-158	일반 도로	-	1969.1.18	천호1구역
기정	소로	1	5	10	국지도로	45	천호동 373-2	천호동 373-2	일반 도로	-	-	천호13구역
기정	소로	1	6	10	국지도로	71	천호동 377	천호동 377	일반 도로	-	-	천호13구역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108	천호동 358-9	천호동 358-3	일반 도로	-	-	천호3구역
기정	소로	2	9	8~10	국지도로	119	천호동 373-2	천호동 563-1	일반 도로	-	2006.2.8. (서고2006-49)	천호2구역
기정	소로	2	11	8	국지도로	214	천호동 361	천호동 362-3	일반 도로	-	-	천호11구역
기정	소로	3	8	6	국지도로	66	천호동 357-1	천호동 373-2	일반 도로	-	2006.2.8. (서고2006-49)	천호2구역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18	8	국지도로	200	천호동 391-1	천호동 382-13	일반 도로	-	1978.6.1	천호5구역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120	천호동 398-5	천호동 399-50	일반 도로	-	-	천호4구역
기정	소로	3	7	6	국지도로	100	천호동 282-25	천호동 280-15	일반 도로	-	1990.11.12	천호6구역

2)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주차장	천호동329	7,004.0	-	7,004.0	-	천호7구역
기정	2	주차장	천호동422-1	6,827.2	-	6,827.2	-	천호1,3구역

바. 경관계획 : 변경없음

사. 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아.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 : 변경없음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도서참조

2) 건축물에 관한 계획 : 도서참조

3) 존치관리구역 운영지침 : 도서참조

자. 용도지역·지구계획 : 변경없음

1) 용도지역계획

구 분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409,096.3	-	409,096.3	-
주거 지역	소 계	395,965.3	-	395,965.3	-
	제1종일반주거지역	49,403.9	-	49,403.9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38,204.4	-	138,204.4	-
	제2종일반주거지역	106,072.1	-	106,072.1	-
	제3종일반주거지역	74,879.9	-	74,879.9	-
	준주거지역	27,405.0	-	27,405.0	-
상업 지역	소 계	13,131.0	-	13,131.0	-
	일반상업지역	13,131.0	-	13,131.0	-

2) 촉진구역별 용도지역계획

가) 천호1 재정비촉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38,509.2	-	38,509.2	100.0
주거지역	소 계	31,926.2	-	31,926.2	82.9
	제3종일반주거지역	4,521.2	-	4,521.2	11.7
	준주거지역	27,405.0	-	27,405.0	71.2
상업지역	소 계	6,583.0	-	6,583.0	17.1
	일반상업지역	6,583.0	-	6,583.0	17.1

나) 천호2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건축사업)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9,986.3	-	9,986.3	100.0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9,986.3	-	9,986.3	100.0

다) 천호3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건축사업)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23,083.7	-	23,083.7	100.0
주거지역	소 계	23,083.7	-	23,083.7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914.8	-	1,914.8	8.3
	제2종일반주거지역	21,168.9	-	21,168.9	91.7

차. 촉진사업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구역명	주 된 용 도	건 폐 율	용적률(%)		높이계획	
				기준	최대 (법적상한)	평균층수 /최고층수	최고높이 (m)
재정비 촉진구역	천호1	공동주택, 판매·업무	50%이하	350	519	- / 40	135
	천호2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30%이하	190	300	- / 23	70
	천호3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30%이하	192	250	- / 25	78

카.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 변경

1) 촉진사업별 비용분담계획 : 변경

구 분		재정비 촉진구역 ①	계획 기반시설 ②	계획기반 시설내 국공유지 ③	기존기반 시설내 국공유지 ④	유상매입 시설 ⑤	순부담면적 (㎡) (②-③-④-⑤)	비 고
총 계	기정	71,129.2	22,563.1	1,296.5	6,704.0	-	14,551.3 (20.46%)	-
	변경	71,579.2	22,563.1	1,296.5	6,704.0	-	14,562.6 (20.34%)	

구 분		재정비 촉진구역 ①	계획 기반시설 ②	계획기반 시설내 국공유지 ③	기존기반 시설내 국공유지 ④	유상매입 시설 ⑤	순부담면적 (㎡) (②-③-④-⑤)	비 고
천호1재정비촉진구역	기정	38,059.2	15,187.5	-	4,969.2	-	10,218.3 (26.50%)	
	변경	38,509.2	15,187.5	-	4,969.2	-	10,218.3 (26.53%)	
천호2재정비촉진구역	기정	9,986.3	3,398.7	1,225.1	182.6	-	1,991.0 (19.93%)	-
	변경	9,986.3	3,398.7	1,225.1	182.6	-	1,991.0 (19.94%)	-
천호3재정비촉진구역	기정	23,083.7	3,976.9	71.4	1,552.2	-	2,353.3 (10.19%)	-

※ 계획기반시설내 공공시설 설치 환산면적 포함(천호1, 천호3)

－ 변경 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 재정비촉진구역 및 순부담 면적비율	• 오기로 인한 정정

주) 총계: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53호」, 천호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43호」, 천호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91호」 천호1 촉진구역 면적 단순요기에 따른 면적 및 총계 정정과 순부담 면적 계산 착오에 따른 총계 및 비율 오기 정정

2) 기반시설별 재원조달계획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사업비(백만원)			설치주체 및 비용분담		비 고
				소 계	보상비	공사비	공공(시,구)	민간	
도로	촉진 구역	천호1구역	6,478.0	43,139	40,689	2,450	-	●	부지는 해당구역 사업시행자가 부담
		천호2구역	3,398.7	27,313	26,263	1,050	-	●	
		천호3구역	423.2	7,339	7,062	277	-	●	
	소로2-16호선		4,195.4	8,809	8,514	295	-	●	천호3구역 부담
	소 계		14,495.3	86,600	82,528	4,072	-	-	-
공원 녹지	촉진 구역	천호1구역	3,115.0	19,136	18,690	446	-	●	부지는 해당구역 사업시행자가 부담
		천호3구역	2,306.0	20,359	19,931	428	-	●	
	소 계		5,421.0	39,495	38,621	874	-	-	-
공공 정사	천호1재정비촉진구역		19,100.23	42,727	7,379	35,348	-	●	부지는 해당구역 사업시행자가 부담 (공영주차장 포함)

※ 소로2-16호선은 공공(강동구)에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며, 사업계획 승인전 해당조합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검토하도록 할 것

※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사업계획 승인전 세부계획 수립에 따라 조정가능

타.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 변경

구 분		합 계	분 양				임 대				
			소계	60㎡ 이하	60~85㎡	85㎡ 초과	소계	40㎡ 이하	40~50㎡	50~60㎡	60~85㎡
총계	기정	1,722	1,528	573	795	160	194	-	144	50	-
	변경	1,722	1,528	572	796	160	194	-	144	50	-
천호1촉진구역		999	882	352	384	146	117	-	99	18	-
천호2촉진구역		188	156	22	124	10	32	-	-	32	-
천호3촉진구역	기정	535	490	199	287	4	45	-	45	-	-
	변경	535	490	198	288	4	45	-	45	-	-

- 변경 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 천호3촉진구역 규모별 분양 계획세대수 - 60㎡ 이하: 199호 → 198호 - 60㎡~85㎡: 287호 → 288호	천호3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평면 등 조정으로 인한 계획세대수 변경

과.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변경

구 분	사업시기	대상지역	비 고
1단계	기정 2005~2024	천호1구역, 천호2구역, 천호3구역	구역별 촉진사업 시행 소로2-16호선 조성
	변경 2005~2026		
2단계	기정 2005~2024	천호4구역, 천호5구역, 천호6구역, 천호7구역	존치구역 개별사업 추진
	변경 2005~2026		
기타	기정 2005~2024	기타 존치구역(천호11~14구역)	존치구역 개별사업 추진
	변경 2005~2026		

※ 단계별 추진계획은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사업추진과정에서 일부 조정 가능

※ 대규모 철거 및 이주로 인한 전세난이 우려 될 경우 구청장은 전 단계 사업의 입주 시기를 맞추어 다음 단계 관리처분계획 인가시기를 조정 할 수 있음

하. 광고물 관리계획 : 변경없음

거. 폐기물 관리계획 : 변경없음

너. 방재계획 : 변경없음

더. 정보화계획 : 변경없음

러. 에너지순환계획 : 변경없음

머. 특성화계획 : 변경없음

버. 기타계획 : 변경없음

서.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 변경

1) 구역별 정비계획 개요 : 변경

구역명		구역면적 (㎡)	건폐율(%)		용적률(%)			층수					
								평균			최고높이		
			기준	계획	법적상한	완화	계획	기준	완화	계획	기준	계획	
재정비 촉진 구역	천호1	38,509.2	50이하	50이하	519이하	519.00	516.05	-	-	-	-	40층(135m)이하	
	천호2	9,986.3	30이하	30이하	300이하	264.65	299.72	-	-	-	-	23층(70m)이하	
	천호3	기정	23,083.7	30이하	30이하	250이하	221.51	248.45	-	-	-	-	25층(78m)이하
		변경	23,083.7	30이하	30이하	250이하	221.51	248.56	-	-	-	-	25층(78m)이하

- 변경 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 계획용적률 변경 - 천호3: 248.45% → 248.56%	천호3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평면 등 조정으로 인한 계획용적률 변경

2) 구역별 주택규모별 배분계획 : 변경

구 분		합 계	분 양				임 대				
			소계	60㎡ 이하	60~85㎡	85㎡ 초과	소계	40㎡ 이하	40~50㎡	50~60㎡	60~85㎡
총 계	기정	1,722	1,528	573	795	160	194	－	144	50	－
	변경	1,722	1,528	572	796	160	194	－	144	50	－
천호1촉진구역		999	882	352	384	146	117	－	99	18	－
천호2촉진구역		188	156	22	124	10	32	－	－	32	－
천호3촉진구역	기정	535	490	199	287	4	45	－	45	－	－
	변경	535	490	198	288	4	45	－	45	－	－

- 변경 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 천호3촉진구역 규모별 분양 계획세대수 - 60㎡ 이하: 199호 → 198호 - 60㎡~85㎡: 287호 → 288호	천호3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평면 등 조정으로 인한 계획세대수 변경

3) 정비계획

가) 천호1 재정비촉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 변경없음

나) 천호2 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주택재건축사업) : 변경없음

다) 천호3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건축사업) : 변경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구 분	촉진사업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천호3구역	천호동 423-76번지 일원	23,083.7	-	23,083.7	-

(2) 정비계획 : 변경

①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23,083.7	-	23,083.7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2,729.2	-	2,729.2	11.82	-
	도 로	423.2	-	423.2	1.83	-
	공 원	2,306.0	-	2,306.0	9.99	-
택지 (획지)	소 계	20,354.5	-	20,354.5	88.18	-
	획 지 1	19,901.5	-	19,901.5	86.22	공동주택부지
	획 지 2	453.0	-	453.0	1.96	종교부지

②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 도로 결정조서

구 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위 치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소로	2	16	8	집산도로	150 (549)	천호동 367-1	천호동 393-20	일반도로	2021.12.2. (서고 2021-653)	

※ () 지구의 포함 연장임

㉠ 주차장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	주차장	천호동 422-1	2,306.0 (6,827.2)	-	2,306.0 (6,827.2)	-	공공청사 및 소공원 (천호1,천호3) 중복결정

※ () 천호1구역 공공청사, 소공원 내 중복결정 합산면적임

㉡ 공원 결정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47-1	-	소공원	천호동 422-1번지	2,306.0 (5,421.0)	-	2,306.0 (5,421.0)	-	주차장, 체육시설 중복결정

※ () 천호1구역 합산면적임

㉢ 체육시설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체육시설	수영장	천호동 422-1	2,306.0 (6,827.2)	-	2,306.0 (6,827.2)	-	공공청사 및 소공원 (천호1,천호3) 중복결정 (지하1층~지하3층 일부)

※ () 천호1구역 소공원, 공공청사 중복결정 합산면적임

③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변경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변경없음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천호3재정비 촉진구역	23,083.7	획지1	19,901.5	천호동 423-76번지일원	139	-	-	139	-	-
			획지2	453.0	천호동 359-5번지일원						

㉠ 건축시설계획 : 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용적률 산정 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층) 높이(m)																							
	명칭	면적(㎡)	명칭	면적(㎡)					법적상한용 적률	완화 용적률	계획 용적률																								
기정	천호3 재정비 촉진구역	23,083.7	획지1	19,901.5	천호동 423-76 번지 일원	49,444.93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50이하	221.51	248.45	최고78m (25층)이하																							
			획지2	453.0	천호동 359-5 번지 일원	-	종교시설	50 이하	200 이하		최고4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세대수</th></tr><tr><th>합계(비율)</th><th>분양</th><th>소형주택(장기전세)</th></tr><tr><td>합계</td><td>535(100.0%)</td><td>490</td><td>45</td></tr><tr><td>전용 60㎡이하</td><td>244 (45.6%)</td><td>199</td><td>45</td></tr><tr><td>전용 60㎡~85㎡이하</td><td>287 (53.6%)</td><td>287</td><td>-</td></tr><tr><td>전용 85㎡초과</td><td>4 (0.8%)</td><td>4</td><td>-</td></tr></table>										구분	세대수			합계(비율)	분양	소형주택(장기전세)	합계	535(100.0%)	490	45	전용 60㎡이하	244 (45.6%)	199	45	전용 60㎡~85㎡이하	287 (53.6%)	287	-	전용 85㎡초과	4 (0.8%)	4	-
			구분	세대수																															
합계(비율)				분양	소형주택(장기전세)																														
합계			535(100.0%)	490	45																														
전용 60㎡이하			244 (45.6%)	199	45																														
전용 60㎡~85㎡이하	287 (53.6%)	287	-																																
전용 85㎡초과	4 (0.8%)	4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획지1,2선변(3m)																																	
변경	천호3 재정비 촉진구역	23,083.7	획지1	19,901.5	천호동 423-76 번지 일원	- 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50이하	221.51	248.56	최고78m (25층)이하																							
			획지2	453.0	천호동 359-5 번지 일원	1)	종교시설	50 이하	200 이하		최고4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세대수</th></tr><tr><th>합계(비율)</th><th>분양</th><th>소형주택(장기전세)</th></tr><tr><td>합계</td><td>535 (100.0%)</td><td>490</td><td>45</td></tr><tr><td>전용 60㎡이하</td><td>243 (45.4%)</td><td>198</td><td>45</td></tr><tr><td>전용 60㎡~85㎡이하</td><td>288 (53.8%)</td><td>288</td><td>-</td></tr><tr><td>전용 85㎡초과</td><td>4 (0.8%)</td><td>4</td><td>-</td></tr></table>										구분	세대수			합계(비율)	분양	소형주택(장기전세)	합계	535 (100.0%)	490	45	전용 60㎡이하	243 (45.4%)	198	45	전용 60㎡~85㎡이하	288 (53.8%)	288	-	전용 85㎡초과	4 (0.8%)	4	-
			구분	세대수																															
합계(비율)				분양	소형주택(장기전세)																														
합계			535 (100.0%)	490	45																														
전용 60㎡이하			243 (45.4%)	198	45																														
전용 60㎡~85㎡이하	288 (53.8%)	288	-																																
전용 85㎡초과	4 (0.8%)	4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획지1,2선변(3m)																																	

주1) 연면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444호, 2009. 2. 6.) 개정에 따라 삭제함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은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시 확정되는 관련법규상의 세부건축계획(심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④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⑤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없음

⑥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구 분	가 구	면 적(㎡)	획 지			비 고
			구 분	위 치	면 적(㎡)	
기정	천호3 재정비촉진구역	23,083.7	획지1	천호동 423-76번지일원	19,901.5	주택용지
			획지2	천호동 359-5번지일원	453.0	종교용지

⑦ 임대주택의 규모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가 구		공급면적(㎡)		세대수	세대규모
		기 준	계 획		
천호3 재정비촉진구역	기정	2,680.56	2,733.75	45	전용면적 60㎡이하(44type)
	변경	2,691.68	2,740.50	45	전용면적 60㎡이하(44type)

- 변경 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 임대주택 공급면적 변경 - 기준: 2,680.56㎡ → 2691.68㎡ - 변경: 2,733.75㎡ → 2740.50㎡	- 기준 공급면적: 용적을 변경에 따른 임대주택 기준공급 면적 변동 - 대지면적 × (증가되는 용적률 × 50%) = 19,901.50 × (248.56 - 221.51) % × 50% = 2691.68㎡ - 계획 공급면적: 공동주택 평면 등 조정으로 인한 공급면적 변경

어.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1)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409,096.3	-	409,096.3	-
주거 지역	소 계	395,965.3	-	395,965.3	-
	제1종일반주거지역	49,403.9	-	49,403.9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38,204.4	-	138,204.4	-
	제2종일반주거지역	106,072.1	-	106,072.1	-
	제3종일반주거지역	74,879.9	-	74,879.9	-
	준주거지역	27,405.0	-	27,405.0	-
상업 지역	소 계	13,131.0	-	13,131.0	-
	일반상업지역	13,131.0	-	13,131.0	-

2)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변경

가) 교통시설 : 변경없음

①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110	25~33	주간선 도로	3,000 (456)	풍납동 광로5	암사동 강변	일반 도로	올림픽로	2009.11.30. (서고 2009-472)	-
기정	중로	1	406	20~23	보조간선 도로	235	천호동 217-134	천호동 550-6	일반 도로	구천면로	2001.6.2. (서고 158) 2006.7.27. (서고 2006-264)	구천면로 (천호1구역)
기정	소로	2	16	8	집산도로	549	천호동 367-1	천호동 393-20	일반 도로	-	2021.12.2. (서고 2021-653)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399	천호동 357-1	천호동 397-16	일반 도로	-	2006.2.8. (서고 2006-49)	
기정	소로	2	44	8	국지도로	150	천호동 337-98	천호동 337-17	일반 도로	-	-	천호7구역
기정	중로	2	20	15	집산도로	65	천호동 357-12	천호동 357-1	일반 도로	-	2005.10.13. (강고 2005-59)	존치시설
기정	소로	2	17	8	국지도로	237	천호동 392-1	천호동 386-19	일반 도로	-	-	천호5구역
기정	중로	3	7	12~15	집산도로	134	천호동 417-57	천호동 423-158	일반 도로	-	1969.1.18	천호1구역
기정	소로	1	5	10	국지도로	45	천호동 373-2	천호동 373-2	일반 도로	-	-	천호13구역
기정	소로	1	6	10	국지도로	71	천호동 377	천호동 377	일반 도로	-	-	천호13구역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108	천호동 358-9	천호동 358-3	일반 도로	-	-	천호3구역
기정	소로	2	9	8~10	국지도로	119	천호동 373-2	천호동 563-1	일반 도로	-	2006.2.8. (서고 2006-49)	천호2구역
기정	소로	2	11	8	국지도로	214	천호동 361	천호동 362-3	일반 도로	-	-	천호11구역
기정	소로	3	8	6	국지도로	66	천호동 357-1	천호동 373-2	일반 도로	-	2006.2.8. (서고 2006-49)	천호2구역
기정	소로	2	18	8	국지도로	200	천호동 391-1	천호동 382-13	일반 도로	-	1978.6.1	천호5구역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120	천호동 398-5	천호동 399-50	일반 도로	-	-	천호4구역
기정	소로	3	7	6	국지도로	100	천호동 282-25	천호동 280-15	일반 도로	-	1990.11.12	천호6구역

②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주차장	천호동329	7,004.0	-	7,004.0	-	천호7구역
기정	2	주차장	천호동422-1	6,827.2	-	6,827.2	-	천호1,3구역

나) 공간시설 : 변경

① 공원 결정조서 :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원	기정	14	천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천호동 360	26,696.8	-	26,696.8	97.1.15	도로중복결정
	기정	21	천사공원	소공원	천호동 363-5	1,617.2	-	1,617.2	72.4.22 09.11.26	천호5구역
	변경			어린이공원	천호동 363-5	1,617.2	-	1,617.2	72.4.22 09.11.26	
	기정	47-1	-	소공원	천호동 422-1	5,421.0	-	5,421.0	-	천호1,3구역 (주차장,수영장 중복결정)
	기정	-	광진공원	어린이공원	천호동 338-19	1,672.7	-	1,672.7	-	천호7구역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공원 시설의 세분 - 천사공원: 소공원 → 어린이공원	오기로 인한 정정

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21호」 천호5존치정비구역 해제 당시 기존시설로 환원하였으나, 공원시설 세분에 대한 환원내용이 누락되어 오기 정정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①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	공공청사	-	천호동 422-1	1,406.2	-	1,406.2	2009.11.26	주차장, 체육시설 중복결정

② 체육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체육시설	수영장	천호동 422-1	6,827.2	-	6,827.2	-	공공청사 및 소공원 (천호1,천호3) 중복결정 (지하1층~지하3층 일부)

라) 방재시설 : 변경없음

① 유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유수지	천호유수지	천호동 329	10,626.6	-	10,626.6	75.10.7	일부 주차장 중복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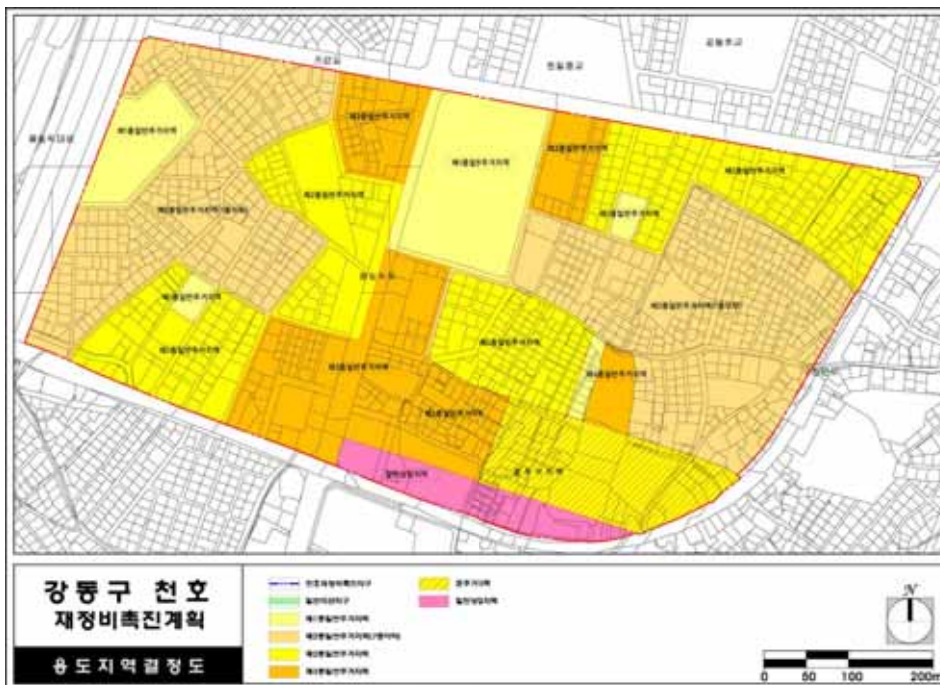
3. 관계도서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4.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02-2133-7226) 및 강동구 도시계획과(☎02-3425-6054)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붙임] 천호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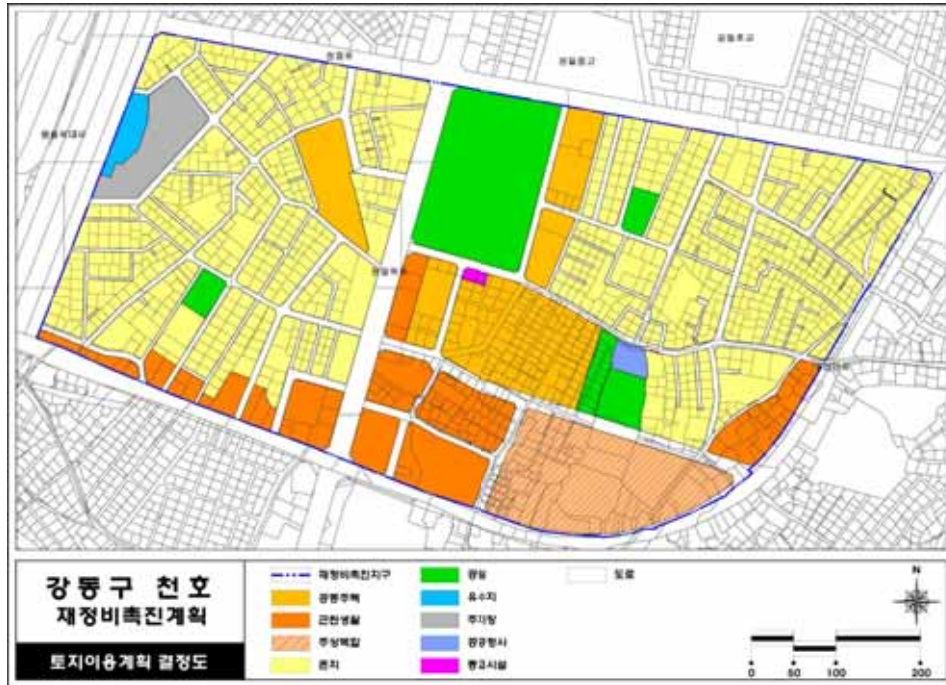
[천호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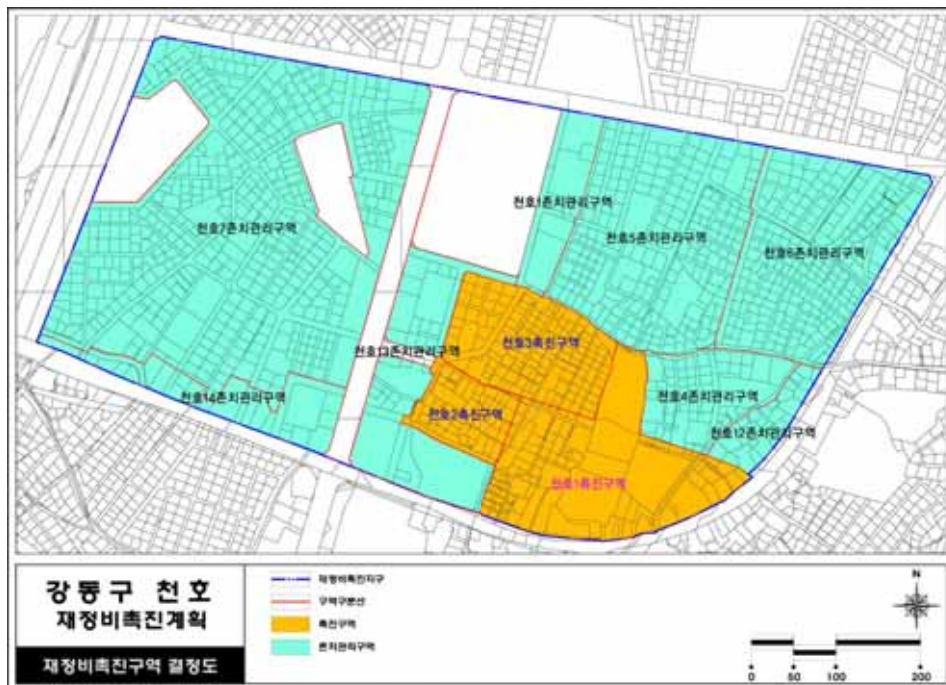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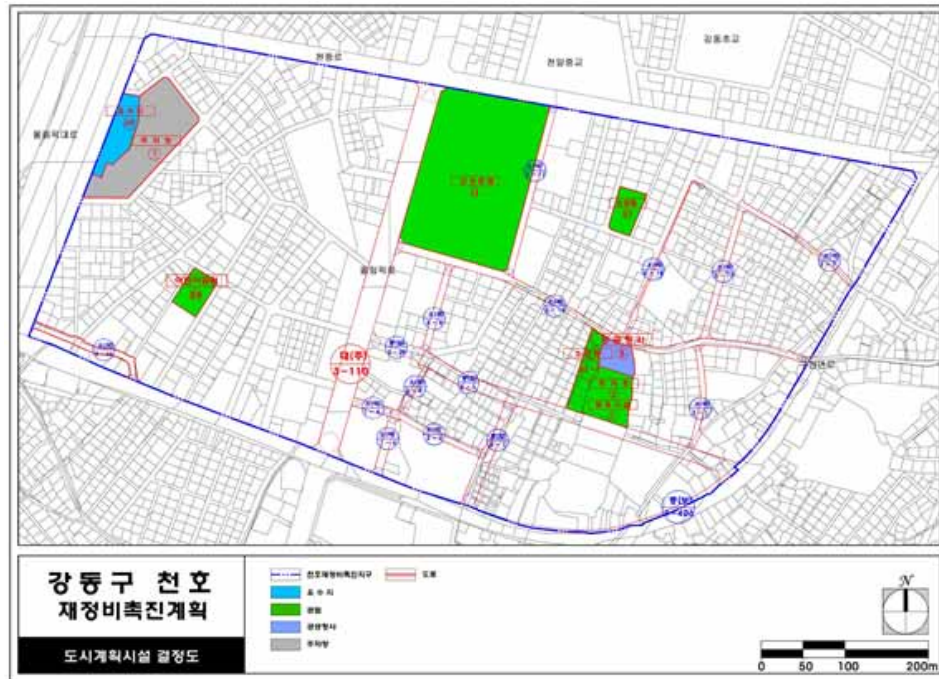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도(변경없음)]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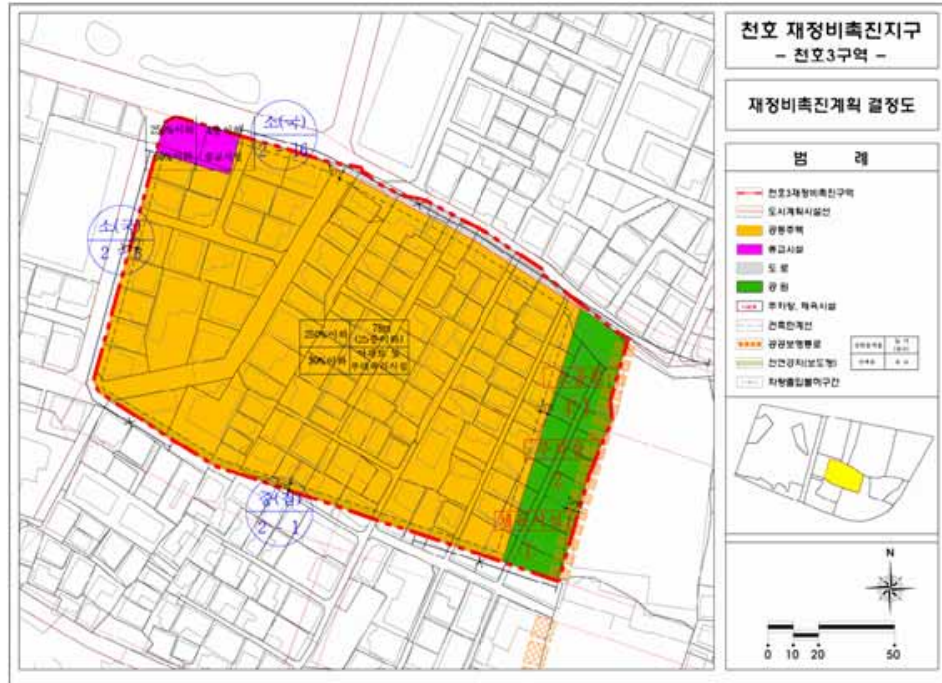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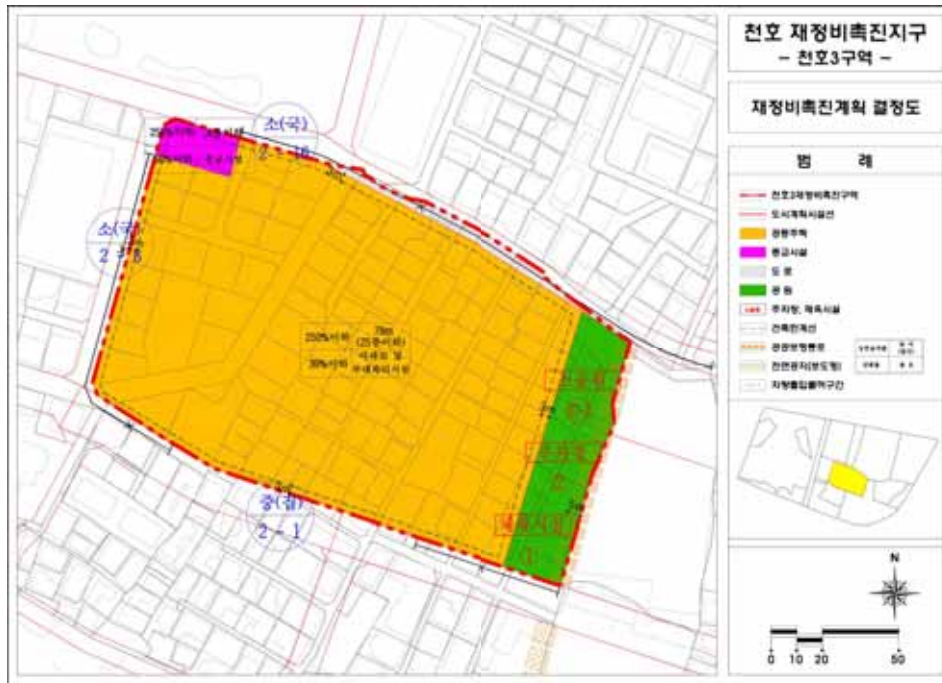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기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변경)]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3154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로 신규등록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내역 (2021년 12월)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영업소 소재지
1	㈜이에이엔 테크놀로지	제187호	' 21.12.0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7길 11-19 (삼성동, E&N빌딩)
2	(주)에스티 홀딩스	제188호	' 21.12.08.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337, 704호(역삼동, 스톤엘리시온역삼)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3157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61조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장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가.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이건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4길 4*, (응암동)	위반일시 : 2021-09-02 14:39 위반장소 : 용산구 이촌동 강변북로 한강자이아파트 부근 위반내용 : 차량의 높이 초과(실측값:4.19m, 초과값:0.19m, 82수21**)	과태료 : 30만원 부과 처분일 : 2021-09-26 납기일 : 2021-12-31
강정원	인천광역시 서구 칠천왕로7번길 8, 4동 60*호 (석남동, 상상빌리지)	위반일시 : 2021-09-02 15:30 위반장소 : 마포구 상암동 가양대로 구룡사거리부근 위반내용 : 차량의 폭 초과(실측값:2.79m, 초과값:0.29m, 인천83바87**)	과태료 : 30만원 부과 처분일 : 2021-09-26 납기일 : 2021-12-31
김성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15길 4, 20*호 (구산동, 엔에스아파트)	위반일시 : 2021-09-03 06:26 위반장소 : 마포구 상암동 강변북로 난지한강공원부근 위반내용 : 차량의 폭 초과(실측값:2.67m, 초과값:0.17m, 서울15가68**)	과태료 : 30만원 부과 처분일 : 2021-09-26 납기일 : 2021-12-31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기한 : 2022. 01. 31.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가.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고 7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행정청(이의제기 및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 02-300-8347, 팩스번호: 02-300-8337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3165호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2공구) 공사완료 공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38호(2009.12.03.)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 건설해양부고시 제2010-242호(2010.04.27.)로 지구계획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69호(2010.12.01.), 제2011-63호(2011.03.04.), 제2011-682호(2011.11.22.), 제2012-759호(2012.11.0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27호(2013.07.15.), 제2014-618호(2014.10.16.), 제2016-907(2016.12.21.), 제2017-853호(2017.12.20), 제2018-654호(2018.11.06.), 제2018-984호(2019.01.02.), 제2019-310호(2019.06.24.), 제2019-634호(2019.11.25.), 제2019-863호(2019.12.31.), 제2020-497호(2020.07.08.), 제2020-938호(2020.12.17.), 제2021-885호(2021.06.23.)로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2공구가 공사완료 되었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명칭 :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2.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 대표자의 성명 : 황 상 하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율현동, 자곡동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 사업시행지의 전체 면적 : 770,488.1㎡ (1공구 : 594,720.7㎡, 2공구 : 25,212.8㎡, 3공구 : 150,561.4㎡)
 - ※ 금회 준공지역 : 2공구 (25,212.8㎡)
 - 용도별 면적

구분				면적				비고
				계	1공구(준공)	2공구(준공)	3공구(미준공)	
총계				770,494.9	594,720.7	25,212.8	150,561.4	
공공주택 용지	합계			664,536.3	594,538.1	25,212.8	44,785.4	
	주택 건설 용지	소계		332,108.4	332,108.4	0.0	0.0	
		단독주택 건설용지	단독주택	31,669.1	31,669.1	0.0	0.0	

구분			면적				비고
			계	1공구(준공)	2공구(준공)	3공구(미준공)	
공공시설 용지	공동주택 건설용지	아파트	292,747.7	292,747.7	0.0	0.0	
		근린생활시설	7,691.6	7,691.6	0.0	0.0	
	소계		332,427.9	262,429.7	25,212.8	44,785.4	
	도시 지원 시설 용지	도시형생활주택용지	1,991.1	1,991.1	0.0	0.0	
		소계	24,723.5	16,533.0	0.0	8,190.5	
		공공청사	7,441.0	6,632.3	0.0	808.7	• 3개소
		업무시설	1,594.7	1,594.7	0.0	0.0	• 1개소
		주거복지시설	7,404.9	7,404.9	0.0	0.0	• 1개소
		문화체육시설	3,482.8	0.0	0.0	3,482.8	• 1개소
		문화시설	901.1	901.1	0.0	0.0	• 1개소
		도서관	3,899.0	0.0	0.0	3,899.0	
	공원 · 녹지	소계	180,472.4	139,872.6	22,676.0	17,923.8	
		근린공원	87,607.2	66,134.2	14,449.0	7,024.0	• 3개소(돌산공원 일부(1,374.2㎡) 포함)
		소공원	6,389.0	6,389.0	0.0	0.0	• 2개소
		역사공원	20,514.0	20,514.0	0.0	0.0	• 1개소(저류지 일부(2,365.5㎡) 포함)
		원충녹지	15,653.1	14,127.1	0.0	1,526.0	• 6개소
		경관녹지	27,073.6	23,366.6	0.0	3,707.0	• 13개소
		연결녹지	22,956.9	9,064.1	8,227.0	5,665.8	• 4개소
		저류지	0.0	0.0	0.0	0.0	• 3개소(공원 내 포함) (저류지1:22,819㎡, 저류지2:4,152㎡, 저류지3:2,365.5㎡)
		공공공지	10.0	9.0	0.0	1.0	• 1개소
		보행자전용도로	268.6	268.6	0.0	0.0	• 10m 이상
	교육시설		12,247.3	12,247.3	0.0	0.0	• 초등학교1개소, 유치원 1개소
	종교시설		3,441.6	3,441.6	0.0	0.0	• 3개소(종교2 : 천주교 용지 포함)
	주차장		5,261.2	4,602.5	658.7	0.0	• 3개소
	주유소		1,911.4	1,020.9	890.5	0.0	• 2개소(주유1, 2 존치)
	수도공급설비		0.0	0.0	0.0	0.0	• 1개소(공원 내 포함(4,024㎡))

구분			면적				비고
			계	1공구(준공)	2공구(준공)	3공구(미준공)	
훼손지 복구 용지	공공 시설 용지	방수설비	2,969.0	0.0	0.0	2,969.0	• 1개소
		철도	0.0	0.0	0.0	0.0	• 2개소(녹지 내 포함(5,796.8㎡))
		도로	98,138.9	81,492.2	987.6	15,659.1	• 가각 및 완화차로 포함
		보행자전용도로	1,271.5	1,228.5	0.0	43.0	• 8개소
	공원 · 녹지	합계	105,958.6	182.6	0.0	105,776.0	
		소계	102,756.0	0.0	0.0	102,756.0	
		근린공원	97,767.0	0.0	0.0	97,767.0	
		경관녹지	4,989.0	0.0	0.0	4,989.0	
	도로		3,202.6	182.6	0.0	3,020.0	

주) 녹지율은 공원, 녹지, 저류지, 공공공지, 보행자전용도로(폭10미터 이상) 면적 포함(훼손지 복구용지 제외)

5. 준공일 : 2021년 12월 21일 (2공구)

※ 사업시행기간 : 1공구 2009. 12. 03. ~ 2020. 03. 31.

2공구 2009. 12. 03. ~ 2021. 12. 31.

3공구 2009. 12. 03. ~ 2022. 12. 31.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 토지의 관리처분 계획

구분		면적(㎡)	관리처분사항
계		25,212.8	
공공시설용지		25,212.8	
공원 · 녹지	공원	14,449.0	• 「공공주택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관리청에 무상귀속
	녹지	8,227.0	• 「공공주택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관리청에 무상귀속
주차장		658.7	•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주유소		890.5	•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도로		987.6	• 「공공주택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관리청에 무상귀속

※ 3공구(미준공)에 해당하는 용지는 금회 관리처분에서 제외

○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시설의 종류	규 격	수 량		관리처분사항	비고
		연장(m)	면적(㎡)		
도 로	• 지구내도로 4개소	-	987.6	•시설물 관리기관(강남구청)으로 무상귀속	
공 원	• 근린공원 1개소	-	14,449.0		
녹 지	• 연결녹지 2개소	-	8,227.0		
저류시설 (유수지)	• 1개소	-	4,152.0 (4,152.0)		근린공원1 중복결정

※ 3공구에 해당하는 용지는 금회 관리처분에서 제외

※ ()는 근린공원1과 중복결정임

7. 시민들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전화 : 02-2133-7079) 및 서울주택
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전화 : 02-3410-759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3170호

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처분사전 통지(청문)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登記발송 하였으나 이사불명,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 2021.12.30.~2022. 1.10.(14일간)
2. 처분 사전통지 사항

업 체 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청문실시		처분 근거
					일시 및 장소	주재자	
유니종합건설주 (최송희)	건축 공사업 150613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53, 409(구로동)	건설업 등록기준 (2019년 자본금) 실태조사 자료 미보고	등록말소	2022. 1.10.(월) 15:00 건설혁신과 청문실	주무관 김문수	법 제83조 제8호의2

3.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29로 문의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3176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도로법」 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가.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김대희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관로174번길 ***호 (삼산동)	일시: 2021-10-11 06:42 장소: 올림픽대로 여의하류IC 내용: 운행제한 폭 0.28m 초과	처분일: 2021. 11. 26.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22. 1. 31.
라영훈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1로 52, ***동 ***호 (문산읍, 한양수자인)	일시: 2021-11-03 14:20 장소: 용산역세권 개발 부지 오염토 정화공사 현장 내용: 운행제한 축하중 1.05t 초과	처분일: 2021. 11. 26.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22. 1. 31.
정현우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남대전길 *** (의성읍)	일시: 2021-11-04 14:17 장소: 신길동 4826 근생시설 공사현장 내용: 도로법 제77조 제2항 임차인 등의 과적 방지 의무 위반	처분일: 2021. 11. 26.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22. 1. 31.

나.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송석두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19번길 **, ***호 (선화동)	일시: 2021-07-19 20:58 장소: 안양천로 내용: 운행제한 폭 0.28m 초과	처분일: 2021. 9. 27.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21. 11. 30.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5. 납부기한: 2022. 1. 31.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가.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3%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 가. 이의제기 기한: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 라. 과태료 부과 처분청(이의제기서 제출처)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2657-7922, 팩스번호: 02-2657-7950
 - 전자우편: skyblue7@seoul.go.kr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3191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 압류 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장

1. 공고기간 : 2021.12.30. ~ 2022.01.13.

2. 공시송달 대상 : 재산(부동산) 압류 통지서

○ 압류 관련 내용

(단위 : 원)

고객번호	압류물건(부동산-건물) - 급수설비 소재지	수도요금 체납 및 압류 현황				물건소유자		반송사유	등기번호
		납기	횟수	금액	압류일	성명	우편송달		
038269288	서울 중랑구 상봉로17길 43-5 303호(면목동)	2019.08. ~2021.06.	12	234,080	2021. 08.10.	김○숙	주민등록 등본 주소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11026- 0354-7981
000740133	서울 중랑구 겸재로54길 25-15(면목동)	2020.10. ~2021.06.	5	441,490	2021. 09.15.	송○호	주민등록 등본 주소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11026- 0237-6484
040221916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178 B동 302호(중화동)	2018.12. ~2021.06.	16	344,600	2021. 09.15.	곽○진	주민등록 등본 주소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11026- 0237-6480
000681319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20 6동 106호(면목동, 한신)	2018.05. ~2021.07.	20	357,880	2021. 10.22.	김○재	주민등록 등본 주소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11026- 0237-9352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담당 정은경(☎ 02-3146-269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3193호

2021년도 제16차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제16차 서울특별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장

가. 심의일시 : 2021. 12.22.(수) ~ 12.23.(목)

나. 심의방법 : 서면심의

다. 심의대상 : 일반안전 22건 32작품

라. 심의결과 : 승인 11작품, 조건부 승인 1작품, 부결 20작품

마. 작품별 심의결과 : 별첨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02-2133-27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제16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일반안전 심의결과

☐ 부결사유는 회의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건물위치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비 고
				승인	부결	
1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조각	Bridge station -Flying		○	
2	강북구 수유동 179-1,2,3,4,5,21	조각	物外物(물외물) -공시성		○	
3	동대문구 용두동 753-9번지 일대	조각	구름비		○	

2021년 제16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일반안전 심의결과

☐ 부결사유는 회의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건물위치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비 고
				승인	부결	
4-1	동대문구 답십리로 1길 48(620-47)일대	조각	Slice image -광야를 달리다		○	
4-2		조각	Resilience-Life	○		
4-3		조각	Face-Trace		○	
5	도봉구 방학동 717-6번지 외 10필지	조각	한가한 오후	○		
6	중구 필동1가 43-1	조각	보호자-Guardian		○	
7	동대문구 용두동 753-9번지 일대	조각	① 사색적공간 _A moon ② 사색적공간 _Stars		○	
8	서초구 서초동 1595-1 외 4필지	조각	밤하늘 -별이내린다!		○	

2021년 제16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일반안전 심의결과						
☐ 부결사유는 회의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건물위치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비 고
				승인	부결	
9-1	서초구 서초동 1362-27외 1필지	조각	하늘을 품은 새	○		
9-2		조각	WOW POINT		○	
10	강남구 역삼동 831-11 외 5필지	조각	Rain&Cloud -구름이 머물다	○		
11	구로구 고척동 102-1번지 일원	조각	Knot Together (함께 이어가기)		○	
12	동대문구 용두동 11-1 외 6필지	조각	동심으로의 여정	○		
13-1	서초구 서초동 1303-34	회화	Untitled(BS3026)	○		
13-2		조각	Spherique		○	

2021년 제16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일반안전 심의결과

☐ 부결사유는 회의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건물위치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비 고
				승인	부결	
14-1	송파구 문정동 문정도시개발구역 8-3블럭	조각	Circular Time -순회하는 시간	○		
14-2		회화	WAVE-물결	○		
15	강동구 상일동 152번지	조각	내면속의 풍경 -(도시풍경)		○	
16	구로구 가리봉동 113-1 외 3필지	조각	"space(공간)"		○	
17-1	동작구 대림지구 특별계획3구역	조각	셸 위 댄스 (Shall We Dance?)	○ (조건부)		작품의 뾰족한 부분에 대한 안전상의 보완 필요
17-2		조각	AC.2022 구로 오디세이		○	
18-1	강동구 고덕동 136번지 일원	조각	Geometric -Rainbow Cloud		○	
18-2		조각	Urban Forest (어반 포레스트)	○		

2021년 제16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일반안전 심의결과						
□ 부결사유는 회의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건물위치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비 고
				승인	부결	
19	중구 충무로4가 12-1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2-24구역)	조각	TIME		○	
20-1	영등포구 신길동 145-40번지 일대	조각	빛의 소원	○		
20-2		조각	시간의 탑		○	
21-1	용산구 한강로 3가 65-1번지 외 10필지	조각	With You		○	
21-2		조각	Melody of swan		○	
21-3		조각	상상의 숲 -Dreaming pine tree		○	
22	구로구 고척동 100-7번지 일대	조각	Stellation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3197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후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 행정처분 대상 업체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위 반 사 항	처분내용	비 고
1	(주)에조도시개발(2004-7)	석성길	등록기준 미달	업무정지 1년	

1.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청(서울시)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3200호

서울특별시 지정(등록)문화재 지정(등록)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을 위한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8조(지정문화재) · 제9조(문화재자료) · 제62조(등록문화재의 등록)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지정문화재의 지정절차) · 제9조(문화재자료의 지정기준 및 절차) · 제41조(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문화재자료 지정 및 서울특별시 등록문화재 등록 계획을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1.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등록) 계획

가. 문화재 지정 개요

지정예정 종별	지정예정 명칭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보관장소 (소유자/관리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1권 1책	32.0×21.0cm	1576년	용산구 (서울특별시교육청 남산도서관)
	미타사 금수암 산신도 (彌陀寺 金水庵 山神圖)	1점	전체 : 97.5×86.4cm 그림 : 65×53.7cm	1869년	성동구 (대한불교조계종 미타사)
	미타사 금수암 현왕도 (彌陀寺 金水庵 現王圖)	1점	전체 : 149.5×129.5cm 그림 : 141×122.3cm	1900년	성동구 (대한불교조계종 미타사)
	미타사 극락전 아미타불회도 (彌陀寺 極樂殿 阿彌陀佛會圖)	1점	180×226cm	1887년	성동구 (대한불교조계종 미타사)
	미타사 극락전 감로도 (彌陀寺 極樂殿 甘露圖)	1점	163×245.5cm	1887년	성동구 (대한불교조계종 미타사)
서울특별시문화재 자료	미타사 책거리 병풍 (彌陀寺 冊거리 屏風)	1점	전체 : 92.5×332cm 각폭 : 92.5×41.5cm	19세기말~ 20세기초	성동구 (대한불교조계종 미타사)
	백화사 목련경변상도 (白華寺 目連經變相圖)	1점	전체 : 126×113.3cm 화면 : 114.4×100.3cm	1925년	은평구 (대한불교조계종 백화사)
서울특별시등록문 화재	남산도서관 소장 대한제국기 간행 유학생 잡지 5종	5종 18책	『공수학보(共修學報)』(1종 2책) 210×148cm	1907년	용산구 (서울특별시교육청 남산도서관)
			『대한유학생회학보(大韓留學生會學報)』(1종 2책) 21.2×14.6cm	1907년	

지정예정 종별	지정예정 명칭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보관장소 (소유자/관리자)
			『동인학보(同寅學報)』(1권 1책) 210×148cm	1907년	
			『대한학회월보(大韓學會月報)』(1종 9책) 21.1~21.5×145cm	1908년	
			『대한흥학보(大韓興學報)』(1종 4책) 22.0~22.2×14.2~14.6cm	1909년	
	남산도서관 소장 대한제국기 간행 교지 1종	1종 1책	『보중친목회보(普中親睦會報)』(1종 1책) 22.5×15.5cm	1910년	용산구 (서울특별시교육청 남산도서관)
	남산도서관 소장 대한제국기 간행 애국계몽운동학회지 2종	2종 22책	『서우(西友)』(1종 13책) 22~23×15~15.5cm	1906~ 1908년	용산구 (서울특별시교육청 남산도서관)
			『기호흥학회월보(畿湖興學會月報)』 1종 9책) 21×15cm	1908~ 1909년	
	남산도서관 소장 대한제국기 간행 종합잡지 3종	3종 14책	『소년한반도(少年韓半島)』(1종 6책) 24.2~24.6×15~16.2~16.5cm	1906~ 1907년	용산구 (서울특별시교육청 남산도서관)
			『대동보(大同報)』(1종 4책) 23.4~23.7×15.3~15.5cm	1907년	
			『장학월보(獎學月報)』(1종 4책) 22.0~22.2×15.3cm	1908년	

나. 공고 사유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등록)하고자 하는 바,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고함.

1) 유형문화재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는 조선시대 대우(大愚)가 사후(死後)의 극락왕생을 빌기 위해 살아 있을 때 재를 올려 공덕을 쌓는 불교의례의 일종인 여수재에 관한 의식 절차를 편찬한 의식집이다. 남산도서관 소장본은 선조 9년(1576) 안동 학가산(鶴駕山) 광흥사(廣興寺)에서 간행한 목판본이며 당시 각수는 석견(釋堅)으로 권말에는 육화(六和)가 지은 「예수천왕통의(預修薦王通儀)」가 수록되어 있다. 형태적 판식을 살펴보면 오침안정법을 사용한 선장으로 표지의 문양은 능화문이며 전체적인 상태는 보통이다. 저자는 ‘松堂野衲大愚 集述’이라 되어있다. 내용의 여러 곳에 한글로 묵서한 발음이 묵서되어 있고 방점도 찍혀 있는 1책(56張)이다. 판심의 제목은 ‘預修文’이며 그 아래에 張次가 순서대로 인쇄되어 있다. 특히 제일 뒷장에는 ‘萬曆四年丙子(1576)五月日慶尙道安東地鶴駕山廣興寺開板’이라는 간기가 있다. 그리고 施主者가 다수 인쇄되어 있고 刻手者로 ‘釋堅’, 鍊板者는 ‘圓悟’, ‘天熙’ 등이 인쇄되어 있다. 특이한 점은 뒤표지 이면에 ‘崇禎元年戊辰(1628)五月日引經施主’라는 기록과 함께 이 경을 시주한 기록과 함께 시주자 명단도 묵서되어 있다는 것이다. 남산본은 간기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목판본으로 비교적 원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본문 내용 여러 곳에 한글로 음을 달아 놓아

국어학적 연구 가치와 함께 임란 전 간행본으로 비교적 판본이 많지 않아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미타사 금수암 산신도(彌陀寺 金水庵 山神圖) 】

미타사 금수암 산신도는 미타사 금수암 무량수전의 하단불화로 조성되었다. 화기는 그림 왼쪽 하단에 구획을 마련하여 묵서되어 있는데, 緣化秩로부터 시작하여 施主秩과 化主를 마지막으로 끝 부분에 조성시기를 표기하였다. 화기로 미루어 보아 이 산신도는 1869년에 조성되었으며, 수화승인 金魚片手 應□을 비롯하여 漢峰堂 璿燁, 比丘斗正, 比丘守燭, 比丘肯印 등 5명의 화승들에 의해 그려졌음을 알 수 있다. 한봉당 창엽은 19세기 중반부터 후반에 걸쳐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대 활약상을 보인 화승으로, 당시 불교 화단을 좌우지하던 ‘惺雲永義, 金谷永煥, 大虛體訓, 慶船應釋’과의 교류를 통해 패불화를 비롯한 많은 불화들을 남기고 있다. 이처럼 미타사 금수암 산신도는 화기를 통해 조성연대와 조성 화승들이 명확하게 밝혀졌음은 물론, 조선시대 후반의 민화화도 연결 지어볼 수 있는 화풍을 엿볼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당시 화승들과의 교류를 통해 대형 불화인 패불화를 비롯하여 많은 불화들을 남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19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의 경기지역 불화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있어 학술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에 미타사 금수암 산신도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미타사 금수암 현왕도(彌陀寺 金水庵 現王圖) 】

미타사 금수암 현왕도는 미타사 금수암 무량수전의 하단불화로 조성되었다. 폭 38cm, 92cm의 무명천 두 폭을 잇대어 만든 바탕에 그린 현왕도로서, 8폭 병풍을 배경으로 중앙의 현왕(現王)을 비롯하여 2위의 성왕(聖王)과 2위의 귀왕(鬼王), 4위의 판관(判官)과 녹사(綠事), 3위의 동자(童子)와 2위의 천녀(天女) 등 총 14위의 존상이 등장한다. 화면 하단 중앙부에 화기란이 마련되어 묵서를 통해 대한광무 4년인 1900년 8월에 점안하여 미타사 중사 무량수전에 봉안하였으며, 그림은 재검이 그렸음이 확인된다. 도상은 1846년 조성의 남양주 흥국사 현왕도를 수용하여 약간 변용 시킨 작품으로,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초반의 화승 계보와 화풍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다. 이에 미타사 금수암 현왕도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 미타사 극락전 아미타불회도(彌陀寺 極樂殿 阿彌陀佛會圖) 】

미타사 극락전에는 아미타삼존상(阿彌陀三尊像)을 주존불로 모시고, 후불도로 아미타불회도(阿彌陀佛會圖)를 봉안하고 있다. 동쪽벽에는 좌우로 지장시왕도(地藏十王圖)와 신중도(神衆圖)를 모셨고, 서벽에는 칠성도(七星圖), 현왕도(現王圖), 감로도(甘露圖)를 모셨다. 이중 미타사 극락전 아미타불회도(1887년)는 조성연대 및 조성지와 봉안처가 분명하며, 제작 화승, 시주자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불화로, 당대를 대표하는 수화승 금곡 영환의 기량을 엿볼 수 있다는데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부처의 붉은 가사에 굵은 금니의 용 문양을 중심으로 파도문을 주 문양으로 포치하고 그 바깥쪽에는 소용돌이 문양(渦圈文)을 두른 큼직한 문양이 화려하게 가사를 장식한 바, 금박의 신광(身光)과 더불어 충분한 금을 다양하게 사용해서, 극락전 불화 중 가장 화려한 금의 효과를 나타낸 미타사 아미타불회도는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 미타사 극락전 감로도(彌陀寺 極樂殿 甘露圖) 】

미타사 극락전 하단불화로 영가단(靈駕壇)에 봉안된 감로도는 1887년에 일련의 불사로 조성되었다. 미타사 감로도는 비단 5폭을 가로로 잇대어(향좌로부터 폭46.21cm, 51.3m, 51.2m, 51.2, 46cm) 바탕을 만들고 그 위에 주(朱), 녹(綠) 등의 안료를 주조색으로 채색한 불화다. 미타사 극락전 내부의 불화는 대부분 가로로 긴 장방형의 구성과 51.5cm가 한 폭인 비단폭, 채색 등에서 당시 조성한 불화로서의 공통점이 간취된다. 극락전 감로도는 조성연대와 화승, 시주자가 명확한 불화로 화승의 경우 19세기 후반 근기지역에서 활동했던 주요한 불화승들이 망라되어 있다. 수화승 학허 석운(鶴虛石雲), 명응 응감(明應幻鑑), 허곡 궁순(虛谷肯巡), 보암 공법(普庵肯法), 혜조(慧照) 등 5명의 화승에 의해 제작되었다. 19세기 근기지역에서 공유된 도상을 보이는 미타사 감로도는 근기지역 도상 계보와 화승 학허의 감로도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해야 된다고 판단된다.

2) 문화재자료

【 미타사 책거리 병풍(彌陀寺 冊거리 屏風) 】

『미타사 정수암에 소장된 책거리로서 종이에 채색한 8폭 병풍으로 높이가 1m미만의 작은 병풍, 실내용 단병이다. 전체적으로 넓게 설치되어 있으며 짙은 푸른색과 엷은 붉은 색이 많이 쓰였다. 龍文, 雲文, ‘壽’, ‘福’ 문양 등이 도자기와 서갑에 적극적으로 시문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원근법이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서갑의 표현에서 입체감을 주려는 다양한 시도가 보인다. 19세기말 - 20세기 초에 제작된 서가가 생략된 책거리의 전형적인 양식을 보여준다. 미타사 정수암 책가도의 주문자와 현 소장처와의 관계를 특정하기 어렵다. 궁중책가도의 공필법과는 거리가 있으며, 병풍이 비단이 아닌 종이 바탕이며, 안료 역시 값이 나가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궁중 소장품이라 보기는 어렵다. 또한 독창성이 떨어지며 19세기말-20세기초의 정형화된 형식을 보이므로, 책거리의 미술사적 가치 높지는 않다. 한편 19세기말 서가가 생략된 책가도의 전형 양식을 살펴보기에 자료적 가치가 충분하다. 전체적으로 전형 양식을 유지하는 가운데 문양과 입체 표현 등에서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덧칠이 많이 가해지지 않고, 처음 장황을 유지하는 등 원형을 보존하고 있다. 따라서 명칭을 <미타사 책거리 병풍>으로 수정하여 서울시 문화재자료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백화사 목련경변상도(白華寺 目連經變相圖) 】

백화사 <목련경변상도>는 건봉사 만일회(萬日會)에서 1862년 간행한 『불설대목련경』의 권수변상도를 토대로 제작하였다. 일제강점기에 그린 불화로 찢겨진 부분은 없으나 화면 곳곳에 얼룩이 묻어있는 등 오염되어 있을 뿐 도상의 원형은 잘 유지되어 있다. 18세기중엽에서 1930년경까지 경기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불화를 제작한 화승 예운당 상규와 속인 화원으로 추정되는 방한태가 함께 제작하였다. 예운당 상규는 전통에 바탕을 둔 능란한 필선을 구사하는데 이 불화에서는 필선도 약간 이완되어 보이고 특히 존상의 얼굴이 매우 세속적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규는 출초(出草)를 담당하고 속인인 방한태(方漢泰)가 화면을 완성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필치가 뛰어난 불화는 아니지만 화승과 속인 화원이 함께 제작하였고, 불화로서는 현존하는 유일한 목련경변상도라는 점에서 서울시 문화재자료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3) 등록문화재

【 남산도서관 소장 대한제국기 간행 유학생 잡지 5종 】

1905년 말부터 일본에 건너간 유학생들은 친목도모와 지식교환을 위해 주로 출신지역별로 여러 단체를 구성했다. 이후 이들 단체는 차례로 통합되어 1909년에는 대한홍학회로 통일을 이루게 된다. 각 단체는 잡지 발행을 주요한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이들 잡지는 각 단체나 일본의 유학생 사회 안에서 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유통되어, 당시 국내의 학회지들과 마찬가지로 국민계몽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남산도서관 소장 대한제국기 간행 유학생 잡지 5종(『공수학보』, 『대한유학생회학보』, 『동인학보』, 『대한학회월보』, 『대한홍학보』) 모두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으로 애국계몽운동기의 일본유학생들의 동향과 학지(學知)의 수용·유통의 양상을 아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동인학보』, 『대한학회월보』는 남산도서관에 전권이 소장되어 있으며, 나머지 3종도 모두 창간호를 포함하고 있어서 컬렉션으로서의 가치가 뛰어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서울시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남산도서관 소장 대한제국기 간행 교지 1종 】

보성학교는 1906년 이용익(李容翊)이 창립한 학교로 대한제국 황실의 일정한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소학교·중학교·전문학교로 구성되고 인쇄소까지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설립자 이용익과 그 뒤를 이은 손자 이종호(李種浩)가 정치적 이유로 잇달아 해외로 망명을 하면서, 결국 1910년 말 보성학교는 천도교 쪽에 인수되었다. 또 1911년 8월 일제의 (제1차)「조선교육령」으로 대한제국기의 소학교·중학교·전문학교 등의 학제는 폐지된다. 남산도서관에는 이 시기 동안 보성중학교와 보성전문학교 학생들의 친목회지인 『보중친목회보(普中親睦會報)』이 소장되어 있다. 『보중친목회보』는 1910년 6월 10일자로 창간된 보성중학교 졸업생 친목회지인데, 그해 12월 제2호로 중단되었다. 편집 겸 발행인 이수삼(李秀三), 발행소는 중부 박동(礪洞) 보성중학교 내에 있는 보중친목회, 인쇄인 김한수(金漢洙), 인쇄소 동문관(同文館)으로 되어 있다. A5 156면, 정가 15전이다. 주시경 선생 및 <애국가> 관련 중요자료(김인식 교유의 글)로 통권 2호 중 남산도서관에는 창간호가 소장되어 있어 서울시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 남산도서관 소장 대한제국기 간행 애국계몽운동학회지 2종 】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으로 남산도서관 소장 대한제국기 간행 애국계몽운동학회지 2종은 애국계몽운동기의 중요한 학회 또는 사회단체의 기관지이다. 특히 『서우』는 지역 단위 학회지의 효시이고, 『기호홍학회월보』는 그중 최대 규모의 학회였다. 또 남산도서관 소장본이 두 종 다 창간호를 포함해서 『서우』는 통권 14호 중 한 호(9호)가 빠진 13호, 『기호홍학회월보』는 통권 12호 중 9호를 갖추고 있어 컬렉션으로서도 비교적 우수한 편이다. 따라서 『서우』, 『기호홍학회월보』는 서울시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남산도서관 소장 대한제국기 간행 종합잡지 3종 】

『소년한반도』, 『대동보』, 『장학월보』는 모두 발행자가 잡지의 발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출판사를 설립해서 운영한 경우로, 학회지의 경우와는 또 다른 한국 잡지사의 독특한 사례들이다. 특히 『대동보』는 종래 국채보상운동의 ‘기관지’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그보다는 김광제 개인이 대동보사를 세워 간행한 잡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장학월보』는 현상모집한 독자 투고로만 운영

한 특이한 잡지다. 또 남산도서관은 『소년한반도』는 통권 6호 전부, 『대동보』는 통권 6호 중 4권, 『장학월보』는 통권 5호 중 4권(모두 창간호 포함)을 소장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 등록문화재 등록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2. 의견 제출 방법 안내

-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 ① 전화 : (02) 2133-2632 ② 팩스 : (02) 768-8873
 - ③ 우편 :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또는 팩스나 우편 제출
-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붙임> 조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및 입증자료
 - 문화재 지정에 대한 찬반의견 및 그 사유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02-2133-2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등록)을 위한 조사보고서

【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

1. 문화재 현황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는 조선시대 대우(大愚)가 사후(死後)의 극락왕생을 빌기 위해 살아 있을 때 재를 올려 공덕을 쌓는 불교의례의 일종인 여수제에 관한 의식 절차를 편찬한 의식집이다. 이 책의 저자 대우는 정확히 언제 어디서 태어난 사람인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동명이인으로 1676년에 태어나 1763년에 88세로 입적한 전라도 영암 출신 선승(禪僧)이 있을 뿐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남산도서관 소장본(이하 남산본)은 선조 9년(1576) 안동 광흥사(廣興寺)에서 간행한 목판본이며 당시 각수는 석견(釋堅)으로 권말에는 육화(六和)가 지은 「예수천왕통의(預修薦王通儀)」가 수록되어 있다. 이보다 앞서 발간된 도서는 명종 21년(1566)년 평안도 성천의 영천사(靈泉寺)에서 발간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간행된 것이다. 또한 선조 7년(1574) 순천 송광사(松廣寺)에서 간행한 목판본이 있다. 이후에는 인조 10년(1632) 삭녕(朔寧) 용복사(龍腹寺)본, 인조 26년(1648) 순천 송광사본, 효종 6년(1655) 영암 도갑사(道岬寺)본 등을 비롯하여 16~17세기 사이에 전국 사찰에서 15종 이상의 판본이 간행되었을 정도로 널리 유포되었다.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의 내용을 보면 통서인유(通叙因由), 엄정팔방(嚴淨八方), 주향통서(呪香通序), 주향공양(呪香供養), 소청사자(召請使者), 안위공양(安位供養), 봉송사자(奉送使者), 소청성위(召請聖位), 봉영부욕(奉迎赴浴), 찬탄관욕(讚歎灌浴), 인성귀위(引聖歸位), 헌좌안위(獻座安位), 소청명부(召請冥府), 청부향욕(請赴香浴), 가지조욕(加持澡浴), 출욕참성(出浴參聖), 참례성중(參禮聖衆), 헌좌안위(獻座安位), 소청중사판관(召請重司判官), 보례삼보(普禮三寶), 수위안좌(受位安座), 제위진구(諸位陳句), 가지변공(加持變供), 보신배헌(普伸拜獻), 가지변공(加持變供), 공성회향(供聖回向), 경신봉송(敬伸奉送), 화재수용(化財受用), 봉송명부(奉送冥府), 보신회향(普伸回向), 예수시왕의문(預修十王儀文) 그리고 마지막에 육화(六和)가 지은 예수천왕통의(預修薦王通儀) 등 총 32편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편마다 의식을 행하는 의의를 먼저 말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순서로 되어있는데, 예수재는 우리나라의 각 사찰에서 3년마다 돌아오는 윤달에 행하고 있다. 남산도서관 본은 선조 9년(1576) 안동 학가산(鶴駕山) 광흥사(廣興寺)에서 간행한 목판본으로 동일본이 국립중앙도서관 등에도 소장되어 있다. 이 자료는 2004년 4월 1일자로 남산도서관에 등록된 자료로 강운호가 기증한 것이다. 형태적 판식을 살펴보면, 오침안정법을 사용한 선장으로 표지의 문양은 능화문이며 전체적인 상태는 보통이다. 특히 일부 내용면에 종이 먹어 글자를 훼손한 부분이 존재한다. 표지서명은 지침(紙簽)으로 묵서하여 ‘預修文’이라 붙여 있는데 훗날 붙인 것으로 보이고 그 옆에 큰 글자로 ‘預修文’이라 묵서되어 있다. 표지 이면에 ‘主上殿下壽萬歲’라 묵서되어 있고 이어서 다음 장에 권수제가 나온다. 저자는 ‘松堂野納大愚 集述’이라 되어 있다. 판식은 四周單邊 半郭 20.3x16.9cm, 無界, 8行16字 註雙行, 大黑口, 內向黑魚尾; 27.1x20.2cm.으로 내용의 여러 곳에 한글로 묵서한 발음이 묵서되어 있고 방점도 찍혀 있는 1책(56張)이다. 판심의 제목은 ‘預修文’이며 그 아래에 張次가 순서대로 인쇄되어 있다. 특히 제일 뒷장에는 ‘萬曆四年丙子(1576)五月日慶尙道安東地鶴駕山廣興寺開板’이라는 간기가 있다. 그리고 施主者가 다수 인쇄되

어 있고 刻手者로 ‘釋堅’, 鍊板者는 ‘圓悟’, ‘天熙’ 등이 인쇄되어 있다. 특이한 점은 뒤표지 이면에 ‘崇禎元年戊辰(1628)五月日引經施主’ 라는 기록과 함께 이 경을 시주한 기록과 함께 시주자 명단도 목서되어 있다는 것이다.

2. 신청 문화재 상태

남산도서관본은 종이 먹어 일부 상태가 좋지 않으나 조선 선조 때인 1576년에 간행되었다는 간기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목판본으로 비교적 원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본문 내용 여러 곳에 한글로 음을 달아 놓아 국어학적 연구 가치와 함께 임진왜란 전 간행본으로 비교적 판본이 많지 않아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지정 여부 : 지정 가치 있음(※ 유형문화재)

남산본은 조선 선조 때인 1576년 경상도 안동 학가산의 광흥사라는 사찰에서 간행한 목판본으로 간기와 시주자, 각수자 등이 기재되어 있는 판본으로 1628년 어느 사찰에 시주한 기록이 있으며, 임진왜란 이전의 판본으로 현존하는 동일본이 많지 않아 보존의 가치와 함께 한글음이 표기되어 있어 국어학적 연구가치가 높아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 한다.

참고 자료	문화재 이미지
표지(앞)	표지(뒤)
	
권수면	간기
	

【 미타사 금수암 산신도(彌陀寺 金水庵 山神圖) 】

1. 문화재 현황

미타사 영역 안의 금수암 법당인 무량수전 내 정면 우측(중앙 본존불 좌측) 벽에 걸어두고 외부와의 차단을 위해 유리로 막음하였다.

2. 원형유지정도

패널 형식으로 상단부의 미미한 변색을 제외하고 안료 박락 및 화면 손상 없이 원형유지가 비교적 잘 되어 있으며, 보존상태 또한 양호한 편이다.

3. 내용 및 특징

거의 정방형에 가까운 크기의 화면을 상·하 2단으로 나누어 상단에는 서로 마주 보듯 서서 합장하고 있는 제석천(帝釋天:향우측)과 범천(梵天:향좌측)을 비롯하여 중앙부에는 쌍계(雙髻) 머리를 하고 공양하고 있는 천동(天童) 3명이 자리하고 있으며, 제석천과 범천 바깥쪽에는 주악천녀(奏樂天女)가 자리 하였다.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서로 중앙을 향하고 있는 제석천과 범천의 경우 우 장방형으로 턱이 둥글어진 얼굴에 작지만 뚜렷한 모습의 이목구비(耳目口鼻)를 표현하였는데, 크게 치켜 뜬 듯한 눈에 콧수염과 입 꼬리를 살짝 치켜 올려 미소가 엿보인다. 머리에는 높은 보관을 썼으며 녹색 머리광배(頭光)를 구비하였다. 제석천과 범천 사이 중앙에 자리한 천동들의 경우 천도복숭아와 향로를 받쳐 들고 있으며, 화면 좌우 끝부분의 주악천녀는 생황(笙簧)을 연주하고 통소(洞簫)를 들고 있다. 천상의 세계인 상단과 달리 하단에는 하늘을 지키는 군대로 민간신앙의 산신(山神)과 관우(關羽)의 영인 관성제군(關聖帝君)의 도상을 차용한 도교신 조왕신(竈王神)이 호위하고 있는 위태천(韋馱天)을 중심으로, 거의 좌우대칭을 이루며 일·월궁천자(日月宮天子)와 호법신장(護法神將)이 좌우로 각각 세 구씩 배치되어 있다. 하단 중앙에 위치한 위태천 및 산신과 조왕신 중 정상부에 큰 붉은색 술이 달린 투구를 쓴 위태천의 경우, 두 발을 벌린 채 오른 발을 앞으로 하여 왼쪽으로 몸을 튼 채 머리를 오른쪽으로 향하도록 하고 배를 내민 당당한 자세로 날이 큰 금강저를 두 손으로 짚고 서 있다. 하늘을 지키는 군대의 수장인 천룡장군(天龍將軍)으로서 투구와 갑옷과 삼지창에 금박(金箔)을 올려 화려함은 물론 장군으로서의 위엄이 느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뺨이 통통하니 살집이 있어 보이는 얼굴에는 이목구비의 표현이 정연하고 상단의 제석·범천과 같이 콧수염과 입 꼬리를 살짝 치켜 올려 웃는 표정을 짓게 하여 대조적이다. 위태천 좌측(향우측)의 산신은 영지버섯을 든 노인 모습으로 긴 눈썹과 수염에 백발이 성성하니 인자함이 느껴진다. 우측(향좌측)의 조왕신은 활(笏)을 받쳐 든 모습으로 몸은 위태천 쪽을 향해 있으면서 얼굴은 위태천과 동일 방향으로 돌아보고 있다. 머리에는 청회색 두건을 썼으며, 날카로운 눈매에 입을 굳게 다물고 덩수룩한 콧수염과 턱수염을 하여 근엄한 느낌이다. 제석천과 범천 뒤쪽에 위치한 존상은 활을 든 근엄한 자세로 관모(官帽)에 해 와 달 상징의 붉은색과 흰색이 묘사된 일·월궁천자(日月宮天子)를 비롯하여 검을 든 자세로 눈썹과 콧수염 및 턱수염이 덩수룩한 신장상 2구가 그려져 있다. 그 아래 산신과 조왕신 바깥쪽에 위치한 신장상 중 우측부 신장상은 장수형(將帥形) 신장상으로, 신선(神仙) 가운데 순양건(純陽巾)의 변형건을 쓰고 청룡언월도(靑龍偃月刀)를 든 여동빈(呂洞賓)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나 변형건이 아닌 동(銅)으로 만들어진 투구를 쓰고 있다. 이들 신장들은 비록 무기를 소지한 호법신장들이기는 하지만 위협적이라기보다는 동세를 느낄 수 있는 신체에 살집 있는 통통한 얼굴로 표정이 밝고 약간 익살스러워 보인다. 상단의 제석·범천을 비롯한 천상계의 상들과 하단의 위태천 및 호법신장들 모두 자연스러운 자세에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활기 넘치는 표정을 하여 화면 전반에 걸쳐 생동감이 묻어난다. 그러나 색채의 경우 탁해진 느낌의 적색 위주로 19세기 후반 이후 20세기에 걸쳐 나타나는 경향을 잘 보여준다. 이상 미타사 금수암 <신중도>는 화면 구성 및 도상의 차용에 있어 19세기 후반 조성의 서울 성북구 보문동 보문사 <신중도> (1867년,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99호)의 영향을 받은 서울 흥천사

극락보전 〈신중도〉(1885년,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407호), 서울 흥천사 대방(만세루) 〈신중도〉(1890년,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410호) 등에 바탕을 두고 있는 불화로서 20세기 초반 구성이 간소화하는 경기지역 신중도의 새로운 경향을 파악하는데 학술 자료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하겠다. 화면 하단 중앙부에 마련된 화기로 보아 이 불화는 광무 4년인 1900년에 조성·봉안되었으며, ‘보암공법(普庵肯法)’이 수화승을 맡아 조성하였음이 확인된다. 수화승 ‘공법’은 19세기 중후반부터 경기도를 중심으로 크게 활약상을 보인 화승으로서, 1887년 ‘완송당 종현(玩松堂 宗顯)’과 서울 경국사 〈팔상도〉(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62호) 중 4폭(雪山修道相, 樹下降魔相, 鹿苑傳法相, 雙林涅槃相)을 조성하고 1905년에는 서울 봉원사 대웅전 〈극락구품도〉를 조성하는 등 20세기 초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畫記〕

光武四年更子八月初一日神供十日 點眼奉安于彌陀寺無量壽殿

緣化所

證明 永夏重賢

誦呪 德松道亨

指殿 惺庵泰隱

金魚 普庵肯法 梵華允益 月般奉宗

片手 清庵雲照 比丘在謙 比丘啓恩

鍾頭 比丘啓訓

茶角 沙彌尼雲涉

供司 比丘尼妙性

別供 比丘尼妙峰 頓悟 廣典 普業 大福

化主 比丘尼致洪

大施主

乾辛亥生孫氏 坤癸丑生金氏 兩主

長子乙亥生孫氏 兩主

次子庚寅生孫氏喜景

乾己未生金氏

長子乙酉生金氏

童子更子生金氏

乾戊午生韓氏

坤乙卯生張氏

乾壬戌生白氏 兩主

乾乙未生金氏

乾壬戌生金氏

乾癸未生朴氏 兩主

乾庚申生朴氏 兩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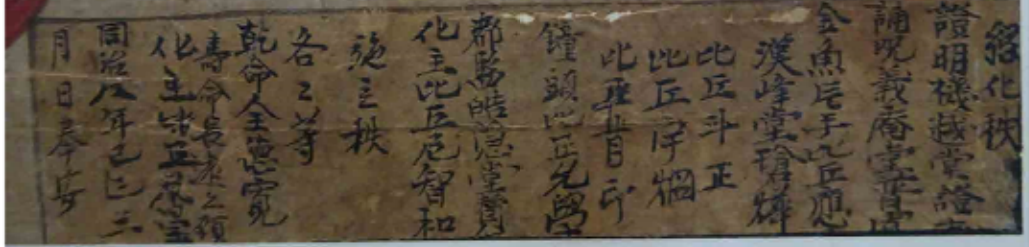
乾丁巳生金氏

乾乙酉生崔氏 兩主

乾壬申生崔氏 兩主
乾辛巳生崔氏 兩主
乾乙未生崔氏 兩主
乾甲申生崔氏 兩主
乾丁未生柳氏 兩主
乾庚戌生李氏 坤戊辰生金氏 兩主
坤甲寅生裴氏

4. 지정 여부 : 지정 가치 있음(※ 유형문화재)

이상에서 살펴 본 미타사 금수암 산신도는 화기를 통해 조성연대와 조성 화승들이 명확하게 밝혀졌음은 물론, 조선시대 후반의 민화화도 연결 지어볼 수 있는 화풍을 엿볼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당시 화승들과의 교류를 통해 대형 불화인 괘불화를 비롯하여 많은 불화들을 남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19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의 경기지역 불화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있어 학술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에 미타사 금수암 산신도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 자료	문화재 이미지
서유 미타사 금수암 산신도(1869년)	연곡 부부노
	
호랑이 부부노	부채(白羽扇) 부부노
	
회기	
	

【 미타사 금수암 현왕도(彌陀寺 金水庵 現王圖) 】

1. 문화재 현황

미타사 금수암에 봉안된 현왕도는 면 바탕에 그린 불화로써 무량수전의 하단 불화로 조성되었다.

2. 원형유지정도

부분적으로 보수 흔적이 엿보지만 액자에 넣은 채 무량수전 벽에 걸어 두어 비교적 손상도가 작고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3. 내용 및 특징

폭 38cm, 92cm의 무명천 두 폭을 잇대어 만든 바탕에 그린 현왕도로서, 8폭 병풍을 배경으로 중앙의 현왕(現王)을 비롯하여 2위의 성왕(聖王)과 2위의 귀왕(鬼王), 4위의 판관(判官)과 녹사(綠事), 3위의 동자(童子)와 2위의 천녀(天女) 등 총 14위의 존상이 등장한다. 보통은 현왕을 중심으로 대칭되게 권속들을 배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는데 비해 금수암 현왕도를 살펴보면 좌측(向左侧)에 동자상 1위를 더 추가하여 좌우대칭이 어긋남을 보여 특징적이다. 경갑(經甲)과 『금강경』 1책, 먹과 벼루, 안경, 영지가 꽂혀 있는 삼족백자(三足白瓷), 인장(印章), 그리고 두루마리 문서 등이 놓인 2단 책상을 앞에 두고 있는 현왕은, 몸을 왼쪽으로 향한 채 등받이 의자에 기대고 앉아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려 눈썹이 삐죽삐죽 위로 치켜 올라간 매서운 눈초리로 문서를 내려다 보고 있는 자세를 취하여 심판관으로서의 위엄과 함께 역강함이 느껴진다. 특히 가슴부위까지 길게 자란 희끗희끗한 검은 색 구레나룻과 턱수염을 빚은 듯 몸 쪽으로 단정하게 흘날리게 표현함으로써 보다 역동적이고 강한 느낌을 준다. 머리에는 『금강경』으로 짐작되는 경책을 엮어 묶은 원유관을 썼는데 경책을 묶은 끈이 좌우로 길게 드리워져 마치 관의 수식(垂飾)과도 같아 보이며, 불보살상들에서 볼 수 있는 머리광배(頭光)를 구비하여 명부(冥府)를 주관하는 보현왕여래(普現王如來)로서의 격을 나타내고 있는 듯하다. 현왕이 착용하고 있는 붉은색 큰 옷의 목깃과 허리 묶음 띠, 소매 단에는 덩굴을 혼합한 채색 연꽃무늬를 장식하였으며, 몸체에는 안쪽에 화문(花紋)이 있는 금색 둥근 무늬를 두었다. 두 손 가운데 책상에 팔꿈치를 대고 있는 듯한 자세의 오른 손은 큰 옷 속에 감추어져 알 수 없으나, 왼손은 앞으로 살짝 내밀어 홀(笏)을 잡고 있다. 현왕 앞쪽에는 『금강경』을 펼쳐 보고 있는 자와 인장이 찍혀 있는 두루마리 문서를 펼쳐 들고 있는 자, 그리고 두 손으로 홀을 들고 있는 자 등 4위의 상이 배치되어 있는데, 모두 원유관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현왕의 협시인 전륜성왕과 대륜성왕 및 『불설예수시왕생칠경(佛說預修十王生七經)』의 4대 귀왕 중 2대 귀왕일 것으로 짐작된다. 현왕의 등받이 의자 좌우에 서있는 4위의 판관과 녹사 모두 검고 투명한 오사모(烏紗帽)를 쓰고 있다. 이 중 위쪽의 홍색 겹옷을 입고 있는 2위는 현왕의 시중을 드는 미동(美童)과 같은 곱상한 얼굴로 현왕의 인계(印櫃)와 보검(寶劍)을 들었으며, 콧수염과 턱수염을 길러 관록이 있어 보이는 아래쪽의 2위는 짙은 청색 조복을 착용하고 두 손을 겹옷 속에 감춘 채 북부 쪽으로 내려 맞잡아 공수자세를 취하여 경계하는 듯한 자세를 하고 있다. 하단부의 4왕과 중단부의 판관 및 녹사 모두 중앙 쪽의 현왕을 향하고 있는 것과 달리, 위쪽의 인계를 들고 있는 상의 경우 홀로 바깥쪽을 향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화면 맨 위쪽에는 일산(日傘)과 번(幡)을 든 동자와 선과(仙果)를 공양하는 천녀 등을 배치하였는데, 다른 상들에 비해 크기를 작게 하여 원근을 나타내어 공간감을 부여해 주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현왕도의 화면구성은 1846년 조성의 남양주 홍국사 현왕도와 이를 도상을 거의 옮겨 놓은 듯한 1889년의 미타사

칠성각 현왕도를 바탕으로 하여 살짝 변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화면 하단 중앙부에 화기란이 마련되어 묵서되어 있는데, 이 중의 “大韓光武四年更子閏八月初一日神供初十日 點眼奉安于彌陀寺中寺無量壽殿… 金魚 比丘在謙… …” 라는 내용으로 보아 금수암 현왕도는 대한광무 4년인 1900년 8월에 점안하여 미타사 중사 무량수전에 봉안하였으며, 그림은 재검이 그렸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이중 “彌陀寺 中寺 無量壽殿” 이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지금의 금수암이 당시에는 중사로 불리었음을 알 수 있다.

〔畫記〕

大韓光武四年更子閏八月初一日神供初十日

點眼奉安于彌陀寺中寺無量壽殿

緣化所

證明 永夏重賢

誦呪 德松道亨

持殿 惺庵泰隱

片手 淸庵雲照

金魚 比丘在謙

鍾頭 比丘啓訓

茶角 沙彌尼雲涉

供司 比丘尼妙性

別供 比丘尼妙性 頓悟 廣典 普業 大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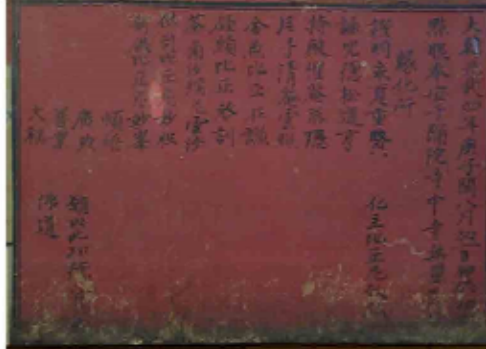
化主 比丘尼致弘

願以此功德皆共成佛道

4. 지정 여부 : 지정 가치 있음(※ 유형문화재)

미타사 금수암 현왕도는 화기가 잘 남아 있어 1900년으로 조성연대가 분명함은 물론,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까지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활약상을 보인 ‘재검’에 의해 조성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도상 또한 1846년 조성의 남양주 흥국사 현왕도를 수용하여 약간 변용 시킨 작품으로,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초반의 화승 계보와 화풍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다. 이에 미타사 금수암 현왕도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 자료	문화재 이미지
서울 미타사 금수암 현왕도(1900년) 	남양주 홍국사 현왕도(불암사 소장, 1846년) 
서울 미타사 칠성각 현왕도(1889년) 	미타사 금수암 현왕도 현왕상 상반신 부분도 

황화측 상단 부분도	황우측 상단 부분도
	
황화측 하단 부분도	황우측 하단 부분도
	
기본 표현 부분도	회기
	

【 미타사 극락전 아미타불회도(彌陀寺 極樂殿 阿彌陀佛會圖) 】

1. 문화재 현황

미타사 극락전에는 아미타삼존상(阿彌陀三尊像)을 주존불로 모시고, 후불도로 아미타불회도(阿彌陀佛會圖)를 봉안하고 있다. 동쪽벽에는 좌우로 지장시왕도(地藏十王圖)와 신중도(神衆圖)를 모셨고, 서벽에는 칠성도(七星圖), 현왕도(現王圖), 감로도(甘露圖)를 모셨다. 1887년에 모두 6점의 불화를 봉안하여 불전을 장엄하였는데, 6점 불화의 화주에 비구니 묘정(妙正)이 등장한다. 아미타불회도(도 1)는 미타사의 신앙과 교리를 상징하는 불화로 극락전의 상단에 봉안되어 있다. 19세기 후반에는 아미타정토신앙이 크게 성행하면서 의식에서도 아미타괘불도가 새롭게 조성되었고, 한성부와 근기지역에 아미타불회도를 후불도로 봉안한 전각이 증가하였다. 미타사 역시 왕실의 후원으로 일신한 사찰이고, 대방이 존재하는 등 원당으로서의 특징이 뚜렷한 곳이었기에, 신앙과 사찰의 특성상 주불전에 아미타불회도를 봉안한 것이다.

2. 내용 및 특징

아미타불회도는 목리문(木理文)이 그려진 넓은 대좌위에 결가부좌하고 왼손은 들어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오른손은 무릎 아래로 내린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보살중과 제자, 사천왕 등이 둘러선 구도이다. 불회(佛會) 장면의 중심인 아미타불좌상을 중심으로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등 8위의 보살과 십대제자, 사천왕, 용왕과 용녀, 야차, 건달바, 타방불을 배치하였다. 이 아미타불회도는 수화승 금곡 영환(金谷永煥), 영성 엄혁(影惺嚴赫), 석암 두열(石菴斗烈), 비구 묘협(比丘 妙洽), 비구 대허 체훈(比丘 大虛體訓) 비구 □조(比丘 □照) 등 6명이 불화 제작에 참여했다. 比丘 □照는 감로도도의 화승 慧照로 추정된다. 불화는 3면 유리장 안에 봉안되어 있고 화기를 기록한 부분은 유리로 마감한 액자 틀로 가려져있어 실견으로는 화기를 확인할 수가 없다. 더구나 액자들을 제거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헌자료(문화재청, 사찰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 서울시 3, p. 132 및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의 사찰불화』 2(2008), p. 329)를 통해 옮겨 적은 화기는 아래와 같다.

〔畫記〕

光緒十三年丁亥十月日奉安于終南山彌陀寺」證明比丘拈嘆定修」
 誦呪比丘 慶隱秉益」改金 金谷永煥」影惺嚴赫」石菴斗烈」比丘妙洽」
 比丘 大虛體訓」比丘□照」坤命壬寅生金氏」乾命乙卯生張啓現」
 乾命金元植」乾命高閏相」乾命白完赫」乾命安弼珠」持殿比丘奉石」
 鍾頭比丘富仁」供司比丘奉□」都監比丘尼」奉寂」比丘尼萬保」
 別座」比丘尼性律」比丘尼取喜」化主」比丘尼妙正」
 施主秩」信士辛亥生梁鎮赫」坤命癸丑生金氏兩住」乾命己酉生朴慶煥」
 信士甲寅生韓慶文」坤命戊午生李氏兩主」信士己卯生池學淵」
 坤命庚辰生宋氏兩主」信士辛酉生池學心」坤命癸亥生慶州方氏兩主」
 清信女辛巳生李氏上品華」乾命丁未生李長釗」信士丙寅生朴正心」
 坤命辛未生安氏 兩主」坤命己巳生朴氏」信士癸卯生申有信」

수화승인 금곡영환 앞에 개금(改金)이라고 쓰인 점으로 미루어 금곡 영환이 불화를 화려하게

장엄하는 금박기법과 금니(金泥)로 문양을 그리는 역할을 주도한 것으로 간주된다. 극락전의 후불도인 만큼 금으로 장식적 효과를 더하는 등의 심혈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금곡영환은신중도에도 수화승으로 참여했다. 채색은 전체적으로 붉은색, 녹색을 주조색으로 하였고 부처가 앉은 목리문 대좌는 남색으로 채색하면서 음영법을 사용하였다. 부처의 붉은 가사에는 용문양을 중심으로 파도문을 주문양을 포치하고 그 바깥쪽에는 소용돌이 문양(渦圈紋)을 둘러 화려하게 가사를 장식하였다. 극락보전 내에 5점의 불화에서도 금니와 금박기법을 다양하게 사용했는데 아미타불회도에서 가장 화려한 금의 효과를 보인다.

수화승 금곡 영환은 1856년 경북 성주 선석사 대웅전 <석가모니불회도>를 시작으로 19세기 후반 서울, 경기지역 중심으로 많은 불화의 조성에 참여한 당대의 대표적인 화승이었다.

3. 원형유지정도

극락전 내부 5점의 불화와 마찬가지로 이 아미타불회도 역시 목재로 틀을 짠 패널형태이며, 현재 앞면에 유리를 액자로 밀착하여 보존하고 있다.

4. 지정 여부 : 지정 가치 있음(※ 유형문화재)

이 아미타불회도(1887년)는 조성연대 및 조성지와 봉안처가 분명하며, 제작 화승, 시주자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불화로, 당대를 대표하는 수화승 금곡 영환의 기량을 엿볼 수 있다는데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부처의 붉은 가사에 붉은 금니의 용문양을 중심으로 파도문을 주문양으로 포치하고 그 바깥쪽에는 소용돌이 문양(渦圈文)을 두른 큼직한 문양이 화려하게 가사를 장식한 바, 금박의 신광(身光)과 더불어 충분한 금을 다양하게 사용해서, 극락전 불화 중 가장 화려한 금의 효과를 나타낸 미타사 아미타불회도는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참고 자료

문화재 이미지



(도 1) 미타사 극락전 아미타불회도



(도 2) 아미타불회도(부분), 미타사 극락전, 견본채색, 180cm×226cm

【 미타사 극락전 감로도(彌陀寺 極樂殿 甘露圖) 】

1. 문화재 현황

극락전 하단불화로 영가단(靈駕壇)에 봉안된 감로도(도 1)는 극락전의 다섯 점의 불화(아미타 불회도, 신중도, 현왕도, 지장시왕도, 치성광여래도)와 동일하게 1887년에 일련의 불사로 조성되었다. 이중, 학허가 수화승으로 주도한 불화는 이 감로도와 지장시왕도, 치성광여래도이다.

2. 내용 및 특징

미타사 감로도는 비단 5폭을 가로로 잇대어(향좌로부터 폭46.21cm, 51.3m, 51.2m, 51.2, 46cm) 바탕을 만들고 그 위에 주(朱), 녹(綠) 등의 안료를 주조색으로 채색한 불화다. 화면 상단에는 의식에 강림하는 칠여래를 중심으로 좌에 아미타삼존과 右에 지장보살, 인로왕보살을 배치하였고 중단에는 의식단아래 2위의 아귀를, 중단과 하단에 걸쳐 생활상 및 지옥의 장면을 도해하였다. 의식단은 양 옆에 용조각이 새겨진 석주(石柱)가 있고 양 석주의 고리에 긴 끈을 걸고 금전(金錢)·은전(銀錢)의 지전(紙錢), 보산개(寶傘蓋), ‘南無清淨法身毘盧佛’ 등의 삼신불변(三身佛幡), 백색·황색의 폐백목, ‘普告十方諸刹海所有一切群生’ 이 쓰인 변, 범자(梵字)가 쓰인 변이 휘날리고 있다. 목리문(木理文)이 그려진 시식단 위에는 높은 고임 위에 지화(紙花)와 전패(殿牌), 중반(甌飯)이 올려져 있다. 시식단 앞으로는 중앙의 대형 화로를 중심으로 거대한 화병이 양측으로 배치되었으며 재단에 올릴 공양물을 옮기는 승려들의 바쁜 움직임이 묘사되었다. 큰 의식단 앞에는 분주하게 의식을 준비하는 승려들이 있으며 그 측면에는 의식이 펼쳐진다. 흰 차일을 치고 독송하는 승려를 비롯하여 경쇠, 법고 등을 두드리는 승려무리와 밥을 지고 의식단을 향하는 승려들이 주를 이룬다. 한편 차일 옆쪽으로는 큰 소나무와 전각, 그리고 집 안에서 밖을 구경하는 사람들도 그려졌다. 당시 풍정(風情)을 반영했던 일반 회화의 풍속 장면이 불화에 삽입된 것을 엿볼 수 있다. 2위의 아귀는 합장한 모습이며 다리 한쪽을 세우고 한쪽은 꿇은 형태다. 아귀는 구름으로 그 외곽을 장식하여 현실장면과의 사이에 차별을 두고자 하였다. 중단과 하단에 걸쳐 풍속과 지옥의 모습들이 펼쳐진다. 줄타기, 무당의 굿과 같은 풍속장면, 호랑이에게 물려죽거나 물에 빠져 죽는 장면, 전쟁장면 등은 전 시기에 이어 계속되는 장면이다. 장면과 장면 사이를 수목이나 구름 표현 등으로 구분하였다. 화기는 화면의 하단 양측(①, ②)에 나뉘어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畫記〕 ①은 향하여 오른쪽 ②는 향하여 왼쪽

① 光緒十三年十月十四日奉安于彌陀寺」證明比丘濟庵應荷
誦呪比丘慶隱秉益」金魚比丘鶴虛石雲」比丘明應幻鑑」比丘虛谷肯巡」
比丘普庵肯法」比丘慧照」化主比丘尼妙正」
鍾頭比丘富仁」供司比丘奉碩」都監比丘尼奉寂」
比丘尼性欣」比丘尼取喜」比丘尼永謙」別座比丘尼性律」比丘尼富弘」

② 施主秩」乾命李石浩 乾命黃龍周
乾命金元植」乾命金仁煥」乾命具鍾悅」信女辛巳生李氏上品花」
信士癸卯生申有信」朴永奎」比丘尼致弘」
信士己未生南法性」乾命丙辰生魯德允」

위 화기를 통해 이 감로도(1887년) 10월에 종남산 미타사에 봉안되었으며, 조성한 승려는 학허 석운(鶴虛石雲)을 수화승으로 명응 응감(明應幻鑑), 허곡 긍순(虛谷肯巡), 보암 공법(普庵肯法), 혜조(慧照) 등 5명이 제작하였다. 화주는 비구니 묘정(妙正)이 하였는데 극락전에 봉안된 나머지 불화 5점에서도 모두 동일하다. 즉 묘정 비구니가 불사를 일으킨 정해년(1887년)의 불사는 극락전의 불화를 모두 조성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묘정스님은 1915년 괘불조성 불사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시주질을 살펴보면 일반인 시주자들의 이름으로 확인된다. 범명을 표기한 인물도 있으나 대체로 출생년에 해당되는 간지를 한자로 기록하고 그 뒤에 이름을 적었다. 1863년 신정왕후 조씨를 중심으로 한 풍양조씨의 후원으로 극락전 중수 불사가 이루어졌지만 이후 1887년 불화의 조성에는 대다수의 민간 후원으로 불사가 마무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감로도는 19세기 한성부와 경기도 지역에서 유행했던 감로도의 도상을 보여주는 불화로, 많은 감로도가 제작되어 당시 이 지역에서 의식이 성행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중단의 의식장면이 전대의 감로도에 비해 비중있게 차지하는데, 대형화된 의식장면이 도해진 중단장면은 마치 실제로 거행되는 천도제를 옮겨놓은 것처럼 보인다. 공연이나 연희의 장면으로 인식되는 도상의 등장은 19세기 감로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시식단 앞에는 범패, 작법무와 같은 이른바 불교음악과 불교의식무가 공간을 차지하면서 단 위와 앞에는 대형 장엄물과 대형 향로가 장엄된다. 대형 장엄물과 청동향로, 연꽃과 모란을 장식한 모습은 이 시기에 만연하던 새로운 완물(玩物) 취향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형 차일(遮日)의 등장과 경상 위에 촛불이 사라지는 것은 더 이상 의식이 밤이 아니라 낮에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해준다. 한편 예수재(豫修齋)를 진행할 때 필요한 지전(紙錢)이나 괘전(掛錢)이 그려지거나 영청단(迎請壇), 하단 배치를 위한 도량의 장엄 요소들도 감로도에 등장한다. 이 점은 19세기 감로도에 수록재 뿐 아니라 예수재, 우란분재, 사명일, 영혼시식 등 여러 의식의 장면이 감로도의 장면을 구성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이다. 19세기 미타사 극락전 감로도의 조형이 되는 불화는 1868년 수락산 홍국사 감로도(도 2)를 들 수 있는데 미타사 감로도 역시 이 계열을 공유하였다고 볼 수 있다. 미타사 감로도는 경국사 감로도(1887년), 불암사 감로도(1890년), 삼각산 청룡사 감로도(1898년, 도3) 등으로 이어지는 도상 계보를 보인다.

3. 원형유지정도

극락전 내부 다섯 점의 불화와 마찬가지로 불화의 형식은 목재로 틀을 짠 패널형태이며, 후대에 앞면에 유리를 액자로 밀착하여 보존하고 있다. 화면 하단은 촛농 등으로 부분적으로 오염된 상태다.

4. 지정 여부 : 지정 가치 있음(※ 유형문화재)

감로도 등 1887년 일련의 불사로 이루어진 미타사 극락전 내부의 불화는 대부분 가로로 긴 장방형의 구성과 51.5cm가 한 폭인 비단폭, 채색 등에서 동시 조성한 불화로서의 공통점이 간취된다. 극락전 감로도는 조성연대와 화승, 시주자가 명확한 불화로 화승의 경우 19세기 후반 근기지역에서 활동했던 주요한 불화승들이 망라되어 있다. 수화승 학허 석운(鶴虛石雲), 명응 응감(明應幻鑑), 허곡 긍순(虛谷肯巡), 보암 공법(普庵肯法), 혜조(慧照) 등 5명의 화승에 의해 제작되었다. 19세기 근기지역에서 공유된 도상을 보이는 미타사 감로도는 근기지역 도상 계보와 화승 학허의 감로도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해야 된다고 판단된다.

참고 자료

문화재 이미지



도 1. <감로도>, 견본채색, 163×245.5cm, 미타사 극락전



도 2. 수락산 홍국사 <감로도>, 1868년, 견본채색, 173cm×191.5cm, 금곡 영화 등



도 3. 청룡사 <감로도>, 1887년, 견본채색, 187.7cm×252.8cm, 경선 응석 등

【 미타사 책거리 병풍(彌陀寺 冊거리 屏風) 】

1. 문화재 현황

미타사 정수암에 소장된 책거리로서 종이에 채색한 8폭 병풍이다. 전체 크기는 92.5×332cm이며, 각 폭은 평균 92.5×41.5cm 이다. 화면의 크기는 각 폭 평균 60.5×37cm 이다. 각 폭마다 붉은 색의 두꺼운 종이를 사면에 대었으며, 남색 천을 대어 장황하였다. 병풍 발을 포함하여 높이가 1m미만의 작은 병풍, 실내용 단병이다.

○ 도상: 서가가 생략된 책거리이다. 고동기와 서책, 그리고 꽃과 과일 등의 식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포함된 도상은 도자기(화병, 주전자, 술잔, 찻잔, 접시), 고동기(향로, 향통), 문방용품(벼루, 연적), 서화(책갑, 두루마리), 열매(복숭아, 불수감, 석류, 배, 고추), 꽃(매화, 이화) 등이다. 동물이나 사람 등의 생물과 시계나 안경 등의 기물은 없는 것이 특징이다.

○ 표현: 전체적으로 얇게 설채되어 있으며 짙은 푸른색과 옅은 붉은 색이 많이 쓰였다. 龍文, 雲文, ‘壽’, ‘福’ 문양 등이 도자기와 서갑에 적극적으로 시문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원근법이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서갑의 표현에서 입체감을 주려는 다양한 시도가 보인다.

2. 특징 및 평가

○ 시기: 19세기말 - 20세기 초에 제작된 서가가 생략된 책거리의 전형적인 양식을 보여준다. 특히 책더미와 함께 화병에 가지가 꺾인 꽃과 열매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기명절지도가 유행한 19세기말-20세기 초의 유행을 반영하고 있다.²⁾ 회중시계, 탁상시계, 담배갑, 골동기 등 이국적인 사치품을 포함한 책가도와는 계열이 다르며, 동물이나 사람, 문자가 들어간 민화 책거리와도 거리가 있다.

○ 미술사적 가치: 기물의 입체감이나 원근감의 표현, 문양의 정교함이나 채색의 밀도 등에서 궁중 책가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가 눈에 띈다. 예를 들어 뒤집어진 서갑이나 지그재그로 놓인 서책은 원근감을 표현하려는 참신한 시도이며, 아랫부분에 흰색 바탕이 된 도자기들은 입체감을 주려고 한 의도로 보인다.

3. 원형유지정도

현재 원형을 거의 유지하고 있다. 화면상 가채가 보이지 않으며, 병풍 틀 역시 처음의 제작을 유

2) 안휘준은 책거리 발전을 네 단계로 나눈 후 꽃이 등장하여 장식성이 강화된 시기를 마지막 단계로 보았다. 안휘준, 『한국회화의 이해』(시공사, 2000), pp. 357-358. 기명절지도의 등장과 책거리의 변화에 대해서는 정병모, 『세계를 닮은 조선의 정물화 책거리』(다함미디어, 2020), pp. 248-259 참조. 『各庫物品成冊』(1907, 장식각)의 ‘절지도서병(節枝圖書屏)’ 물명과 궁중 책가도의 기명절지 도상을 연결시킨 연구는 윤진영, 「조선후반기 궁중책가도의 편년적 고찰」, 『민화연구』3(2014), pp. 64-65. 20세기 초 절지 도상이 강화된 책거리 유형에 대해서는 김수진, 「전통과 혁신: 석당 공방과 20세기 책거리의 도전」, 『미술자료』98(국립중앙박물관, 2020), pp. 220-222.

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채색이 일부 박락되고, 찢어짐, 낙서, 오염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1, 2쪽의 구멍 뚫림과 8쪽의 찢어짐과 묵서로 된 낙서가 있다. 병풍틀의 뒷면은 수리가 필요하다. 물기로 인해서 표면에 곰팡이가 쓴 부분이 있고, 표지 종이가 떨어졌다.

4.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 여부 : 가능(※ 문화재자료)

미타사 정수암 책가도의 주문자와 현 소장처와의 관계를 특정하기 어렵다. 궁중책가도의 공필법과는 거리가 있으며, 병풍이 비단이 아닌 종이 바탕이며, 안료 역시 값이 나가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궁중 소장품이라 보기는 어렵다. 또한 독창성이 떨어지며 19세기 말-20세기 초의 정형화된 형식을 보이므로, 책거리의 미술사적 가치 높지는 않다. 한편 19세기말 서가가 생략된 책가도의 전형 양식을 살펴보기에 자료적 가치가 충분하다. 전체적으로 전형 양식을 유지하는 가운데 문양과 입체 표현 등에서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덧칠이 많이 가해지지 않고, 처음 장황을 유지하는 등 원형을 보존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 문화재 자료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명칭은 <미타사 책거리 병풍>으로 수정하여 지정하는 것을 권고한다.

참고 자료	문화재 이미지

작가미상, <책가도> 종이에 채색, 92.5×332cm, 성북구 미타사 정수암 소장



4쪽



3쪽



2쪽



1쪽



8쪽



7쪽



6쪽



5쪽

【 백화사 목련경변상도(白華寺 目連經變相圖) 】

1. 문화재 현황 및 원형유지정도

면 바탕에 그린 이 불화는 불설대목련경(佛說大目連經)의 주요 내용을 그림 <목련경변상도>라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그린 불화로 찢겨진 부분은 없으나 화면 곳곳에 얼룩이 묻어있는 등 오염되어 있을 뿐 도상의 원형은 잘 유지되어 있다.

2. 내용 및 특징

목련경은 분다의 10대제자 중神通제일(神通第一)로 알려진 목련존자가 분다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아버지옥(阿鼻地獄)에 빠진 어머니를 도리천궁(忉利天宮)으로 구제한다는 내용이다. 목련경은 은중경과 함께 효(孝)를 강조한 경전으로 중국화된 불교의 모습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위경(僞經)이다. 유교의 중심적인 가르침인 효라는 덕목을 분다의 근본적인 가르침의 하나라고 강조하는 것은 불교가 중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기 위한 방편이었을 것이다. 목련경은 아귀도(餓鬼道)에 빠진 어머니를 구제하는 내용을 담은 작은 분량의 우란분경(盂蘭盆經)이 대중에게 유포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지옥에 빠진 원인,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찾아다니며 본 다양한 지옥의 광경, 그리고 지옥에 빠진 어머니를 천상으로 구원하는 구체적인 방법 등의 내용이 첨가되어 형성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드라마틱한 설화성과 세속성, 그리고 효사상이 내포되어 있어 한국, 중국, 일본의 동양3국에서는 널리 민간에 유포되어서 불교적 행사 뿐만 아니라 이를 주제로한 미술과 문학 등 여러 분야에 차용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우란분제(盂蘭盆齋)는 대표적인 영가천도제로서 고려시대 이래 꾸준히 선행되어온 불교행사이고, 우란분제시에는 목련경을 강설(講說)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 같다. 또한 목련경을 비롯한 여러 경전을 배경으로 조성한 감로도(甘露圖)는 조선시대 후기에 많은 작품이 제작되었다. 현재 국내에 알려진 목련경 판본은 12종 정도인데, 이들 중 강원도 철원 건봉사(乾鳳寺) 간행본(1862년)에는 경전의 앞부분에 1매의 판화가 실렸다. 여기에는 <天上尋阿孃 靈山問世尊>, <阿鼻獄門外 母子執手泣>의 2장면이 실렸다. 목련존자가 천상으로 어머니를 찾아다녔으나 지옥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석가모니 분다에게 어머니를 구제하는 방법을 묻는 장면과 여러 차례 공양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지옥에서 어머니를 만나 손을 잡고 우는 모습이 표현된 변상도이다. 백화사의 목련경변상도는 내용상 화면이 좌우로 양분된다. 화면의 오른쪽에는 불단 위에 붓다가 선정인을 취하고 앉아있고 그 좌우에는 6위의 보살이 시립하여 있으며, 위쪽에는 사천왕상이 자리하고 있다. 불단 아래에는 가섭과 아난존자가 서있고 가운데에는 목련존자가 합장하며 붓다에게 어머니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이 보인다. 화면의 왼쪽에는 중앙에 높은 담이 둘러진 아버지옥이 있고 그 아래에는 목련존자가 옥졸에게 끌려나온 어머니와 상봉하는 장면, 무기를 들고 있는 옥졸들과 끌려온 죄인들의 모습, 그리고 붓다에게서 뺨아 나오는 서광을 타고 어머니가 승천하는 모습이 더해져 있다. 이러한 화면구성은 강원도 건봉사간행 <불설대목련경>의 도상에 도리천승천 장면을 첨가한 것이다. 좌우로 화면이 나뉘는 구성과 각 장면의 모습 등 동일한 도상이어서 화가가 이 건봉사간행 목련경변상도의 도상을 참고하여 그렸다는 것을 직감하게 된다. 그러나 인물의 표현은 전통 불화의 화풍과는 달리 다분히 세속적이고 희화적으로 그려져 있다. 갈색 바탕에 적색, 녹색과 흰색, 그리고 양청색이 주조색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채색 구성은 주로 19세기 불화에서 주조색으로 사용되어 왔다. 화기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이 그림의 편수는 예운상규(禮雲尙圭)인데, 그는 19세기 중엽부터 안성 칠장사, 남양주 흥국사, 수원 청련암, 서울 봉은사 등 서울과 경기지방은 물론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등 1930년대

까지 오랜 시간동안 전국 각지에서 활발히 활동하여 매우 많은 불화를 제작하였다. 그의 화풍은 다양하지만 전통에 기반을 두면서 새로운 구도를 시도하거나 음영을 구사하는 등 근대기의 새로운 화풍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예운당은 전통에 바탕을 둔 능란한 필선을 구사하는데 이 불화에서는 필선도 약간 완화된 채 보이고 특히 존상의 얼굴이 매우 세속적으로 보인다. 아마도 예운당 상규는 출초(出草)를 담당하고 속인인 방한태(方漢泰)가 화면을 완성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書記〕

大正拾四年乙丑十月

日仁川奉安干

目連幀畫一軸

緣化所

片手金禮芸

金魚方漢泰

乾命丁亥生金龍鎮

坤命戊子生文氏

長子辛亥生金千義

3.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 여부 : 가능(※ 문화재자료)

이 불화는 건봉사 만일회(萬日會)에서 1862년 간행한 『불설대목련경』의 권수변상도를 토대로 제작한 <목련경변상도>이다. 18세기중엽에서 1930년경까지 경기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불화를 제작한 화승 예운당 상규와 속인 화원으로 추정되는 방한태가 함께 제작하였다. 필치가 뛰어난 불화는 아니지만 화승과 속인 화원이 함께 제작하였고, 불화로서는 현존하는 유일한 목련경변상도라는 점에서 서울시 문화재자료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 자료	문화재 이미지
	 (그림 2) 『불설대목련경』 변상도, 1862년, 건봉사
(그림 1) 목련경변상도, 1925년, 백화사	 (그림 3) 그림1의 부분, 화기
	
(그림 4) 백화사 산신도 부분, 호랑이	(그림 5) 지옥문 앞에서 어머니와 상봉 장면

【 남산도서관 소장 대한제국기 간행 유학생 잡지 5종 】
1. 문화재 현황

1905년 말부터 일본에 건너간 유학생들은 친목도모와 지식교환을 위해 주로 출신지역별로 여러 단체를 구성했다. 이후 이들 단체는 차례로 통합되어 1909년에는 대한홍학회로 통일을 이루게 된다. 각 단체는 잡지 발행을 주요한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이들 잡지는 각 단체나 일본의 유학생 사회 안에서 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유통되어, 당시 국내의 학회지들과 마찬가지로 국민계몽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 1) 『공수학보(共修學報)』: 1906년 9월경 설립된 대한공수회(공수회, 공수학회)는 정부에서 파견한 관비생(官費生)으로 구성된 단체다. 1907년 1월 31일에 나온 『공수학보』 창간호 표지는 ‘공수학보’라는 표제를 대한제국의 상징인 이화(李花)와 태극 문양, 4괘로 둘러싼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 편집 겸 발행인은 유전(劉銓), 발행 겸 편집소는 도쿄에 있던 공수회사 무소이고, 교문관(敎文館)인쇄소에서 인쇄했다. A5판 75면에 정가는 신화(新貨) 12전이다. 이 『공수학보』는 이듬해 1908년 3월의 통권 5호까지 발행되었고, 이후 공수학회는 1909년 1월 대한홍학회로 통합된다. 남산도서관에는 『공수학보』 통권 5호 중 창간호와 제2호가 소장되어 있다.
- 2) 『대한유학생회학보(大韓留學生會學報)』: 1906년 7월 대한유학생구락부와 한금청년회가 통합되어 유학생 단체 중 최대 규모의 대한유학생회가 되었다. 대한유학생회는 1907년 3월 ‘매월 1회 제1일요일 발행’의 월간 『대한유학생회학보』를 창간했다. 창간호 편집자는 최남선(崔南善), 발행인은 유승훈(柳承勳), 발행소는 도쿄의 대한유학생회, 인쇄소는 도쿄 명문사(明文舍)로 되어 있다. 그러나 대한유학생회는 초기부터 임원의 교체가 잦았고, 유학생 단체의 통합운동이 이어지면서 학회 활동 자체의 동력은 떨어졌던 것 같다. 『대한유학생회학보』는 1907년 5월의 제3호를 끝으로 간행이 중단되었다. 남산도서관에는 총 3호 중 창간호와 제2호가 소장되어 있다.
- 3) 『동인학보(同寅學報)』: 유학생 단체 대한동인회에서 1907년 7월 1일에 낸 잡지인데, 표지에 ‘매계발행(每季發行)’이라고 했지만 창간호 이후 속간되지 못했다. 표지에는 한반도 지도 위에 세로로 ‘동인학보’라고 기입하였다. 권말에는 일본에 유학 오는 동포들을 위해 학회에서 ‘동인학교’를 세워 6개월 과정으로 일본어 속성과(速成科)수업을 한다는 광고가 실려 있다. 편집 겸 발행인 구자학(具滋鶴), 발행소는 도쿄 간다(神田)구에 있는 동인회, 인쇄소는 도쿄의 명문사(明文舍)이며, A5판 52면, 정가 12전이다.
- 4) 『대한학회월보(大韓學會月報)』: 대한유학생회와 낙동친목회, 호남학회가 통합되어 1908년 2월 대한학회가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의 회장은 최린(崔麟), 편집부장 김기환(金淇驩)이었다. 대한학회에서 낸 『대한학회월보』는 A5판 64면의 잡지로, 창간호의 편집 겸 발행인 김기환, 발행소는 도쿄 고지마치(麹町)구에 있던 대한학회사무소, 인쇄소는 『대한유학생회학보』와 같은 명문사다. 『대한학회월보』는 1908년 11월까지 통권 9호가 간행되었는데, 남산도서관에는 전권이 소장되어 있다.

5) 『대한흥학보(大韓興學報)』: 1909년 1월 대한학회와 태극학회와 공수학회 등이 통합됨으로써 마침내 단일한 일본 유학생 단체인 대한흥학회가 만들어졌다. 이어 3월에 『대한흥학보』가 창간되었는데, 잡지 발간은 대한흥학회의 가장 주요한 사업이었다. 창간호 발행인은 고원훈(高元勳), 편집인 강전(姜堉), 발행소는 대한흥학회 사무소, 인쇄소는 ‘대한흥학회출판부’였다. 『대한흥학보』는 연단(演壇)·학해(學海)·사전(史傳)·문원(文苑)·사조(詞藻)·잡찬(雜纂)·회보(彙報)·회록(會錄) 등으로 구성되었고, 2천 부를 발행했는데, 그중 1,500부 정도가 무료로 배포되었다. 이 잡지는 일본의 한국 ‘병합’ 기획이 본격화되던 1910년 6월, 제13호(5월호)가 도쿄 경시청에 압수당함으로써 중단되었다. 현재 남산도서관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가 소장되어 있다.

○ 이 책들의 동일 판본 소장처는 다음과 같다.

『공수학보』=아단문고: 1-5호, 고려대도서관: 2-4호

『대한유학생회학보』=아단문고, 연세대학술정보원, 고려대도서관: 1-3호

『동인학보』=아단문고, 고려대도서관: 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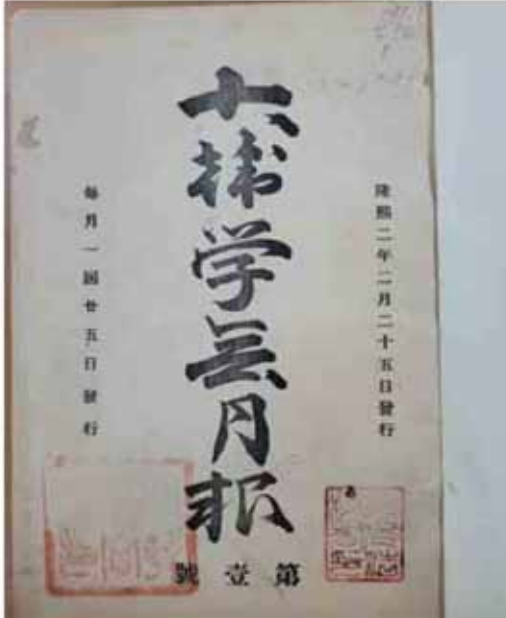
『대한학회월보』=아단문고, 서울대도서관,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1-9호

『대한흥학보』=고려대도서관: 1-13호, 아단문고: 2-4, 6-13호, 연세대학술정보원: 1, 3, 4, 8호

2. 시 등록문화재로 등록 여부 : 가능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으로 조사대상 5종은 모두 애국계몽운동기의 일본유학생들의 동향과 학지(學知)의 수용·유통의 양상을 아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동인학보』, 『대한학회월보』는 남산도서관에 전권이 소장되어 있으며, 나머지 3종도 모두 창간호를 포함하고 있어서, 컬렉션으로서의 가치가 뛰어나다고 판단된다.

참고 자료	문화재 이미지
『공수학보』 창간호 앞표지	『공수학보』 창간호 판권장
	
『대한유학생회학보』 창간호 앞표지	『대한유학생회학보』 창간호 판권장
	
『동인학보』 창간호 앞표지	『동인학보』 창간호 판권장
	

『대한학회월보』 창간호 앞표지 	『대한학회월보』 창간호 판권장 
『대한흥학보』 창간호 앞표지 	『대한흥학보』 창간호 판권장 

【 남산도서관 소장 대한제국기 간행 교지 1종 】
1. 문화재 현황

보성학교는 1906년 이용익(李容翊)이 창립한 학교로 대한제국 황실의 일정한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소학교·중학교·전문학교로 구성되고 인쇄소까지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설립자 이용익과 그 뒤를 이은 손자 이종호(李種浩)가 정치적 이유로 잇달아 해외로 망명을 하면서, 결국 1910년 말 보성학교는 천도교 쪽에 인수되었다. 또 1911년 8월 일제의 (제1차) 「조선교육령」으로 대한제국기의 소학교·중학교·전문학교 등의 학제는 폐지된다. 남산도서관에는 이 시기 동안 보성중학교와 보성전문학교 학생들의 친목회지가 각각 한 권씩 소장되어 있다.

1) 『보중친목회보(普中親睦會報)』: 1910년 6월 10일자로 창간된 보성중학교 졸업생 친목회지인데, 그해 12월 제2호로 중단되었다. 편집 겸 발행인 이수삼(李秀三), 발행소는 중부 박동(礪洞) 보성중학교 내에 있는 보중친목회, 인쇄인 김한수(金漢洙), 인쇄소 동문관(同文館)으로 되어 있다. A5 156면, 정가 15전이다. 주시경 선생 및 <애국가> 관련 중요자료(김인식 교유의 글)로 통권 2호 중 남산도서관에는 창간호가 소장되어 있다.

2) 『친목(親睦)』: 보성전문학교의 재학생 모임이라고 생각되는 보전친목회에서 1907년 3월 창간한 잡지다. 자세한 것은 분명치 않다.

○ 이 책들의 동일 판본 소장처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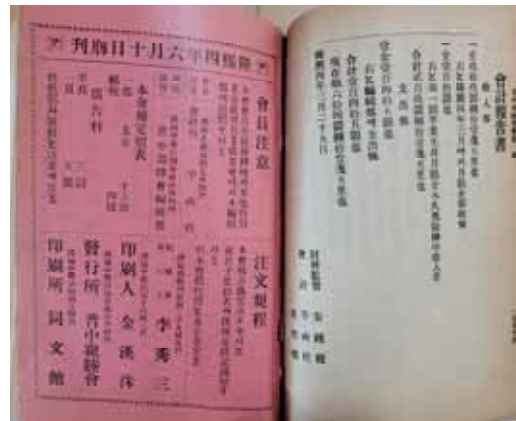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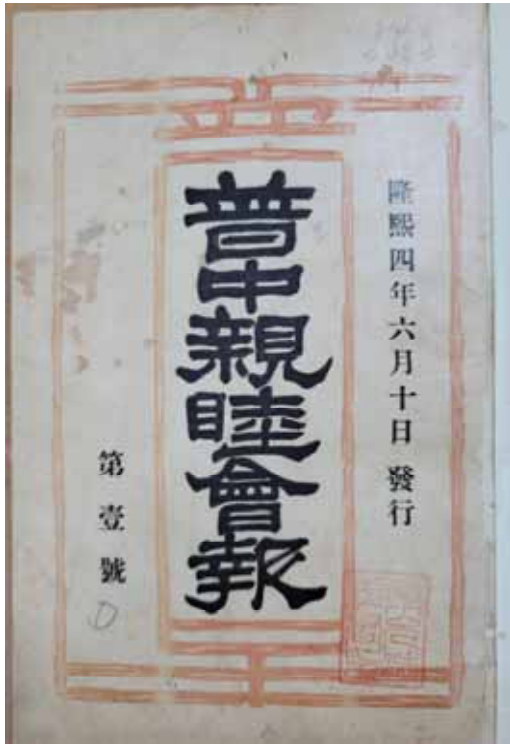
『보중친목회보』: 보성고교 역사자료실(1. 2호), 서울대학교 도서관(1호)

2. 시 등록문화재로 등록 여부 : 『보중친목회보』 가능, 『친목』 불가능

○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으로 『보중친목회보』는 구한말 중학교 졸업생들의 친목회지라는 독특한 성격의 잡지이고, 주시경 선생 및 <애국가> 관련 중요자료(김인식 교유의 글)가 수록되어 있어서, 서울시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 『친목』 역시 구한말의 귀한 잡지이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특기할 만한 것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서울시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참고 자료	문화재 이미지
『보충친목회보』 창간호 앞표지	『보충친목회보』 창간호 판권장



【 남산도서관 소장 대한제국기 간행 애국계몽운동학회지 2종 】
1. 문화재 현황

1905년 이후 국민의 계몽과 실력양성을 통한 국권회복을 목표로 학회들이 다수 만들어졌다. 대한자강회-대한협회처럼 전국적인 것도 있었고, 주로 서울에 와 있는 지역 출신 인사들이 결성한 학회도 있었다. 이들 학회의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 바로 학회지였다. 학회지 지면 대부분은 근대지식의 소개와 약간의 정치적 논설로 채워졌다. 주요 인사들은 여러 학회 회원으로 중복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이들 학회지의 원고 투고와 구독은 비단 학회 회원에게만 한정되지 않았으므로, 당시 학회지의 영향력은 개별 학회의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

- 1) 『서우(西友)』: 관서지방 즉 평안도와 황해도 출신 인사들이 조직한 서우학회의 잡지다. 1906년 12월에 창간되어 1908년 1월 통권 14호로 중단되었다. 국판, 50면 내외이고 값은 10전이였다. 1908년 1월에 서우학회가 관북지방(함경도) 출신들이 조직한 한북학회와 통합해서 ‘서북학회’가 되었다. 서북학회는 『서우』의 지령을 이어서 1908년 5월까지 『서우』 15~17호를 발행하고, 1908년 6월부터 잡지 제호를 『서북학회월보』로 바꾸어 지령 1호부터 1910년 7월까지 통권 25호를 발행했다. 남산도서관에는 서우학회가 발행한 『서우』 통권 14호 중 제9호를 제외한 전권이 소장되어 있다.
- 2) 『기호흥학회월보(畿湖興學會月報)』: 서우학회의 『서우』 이후 1908년에는 호남학회의 『호남학보』, 경기·충청도 출신 지식인들의 『기호흥학회월보』가 잇달아 창간되었다. 1908년 1월 창립된 기호흥학회가 추구한 ‘흥학(興學)’은 비단 학교교육만이 아니라 기성세대의 식자층과 민중까지 포함하는 전인구의 계몽이었다. 회원이 8백 명이 넘는 큰 학회였고, 그해 8월부터 간행된 『기호흥학회월보』의 발행인은 이규동(金奎東), 편집인은 이해조(李海朝)였다. 1909년 들어 학회지에 대한 검열과 탄압이 강화되는 가운데, 『기호흥학회월보』는 1909년 7월까지 통권 12호를 발행했다. 남산도서관에는 그 중 창간호부터 제8호까지와 제12호, 모두 9권이 소장되어 있다.
- 3) 『대동학회월보(大東學會月報)』: 대동학회는 유도(儒道)와 신학문의 합일을 목표로 1907년 3월 조직된 유림단체지만, 실제로는 유림계의 친일화를 피하려는 일제의 책동이 배후에 있었다. 일본 황태자와 이토 히로부미의 기부금에 순종황제와 황태자까지 거액의 하사금을 내어 학회를 지원했다. 초대 회장은 신기선(申箕善), 부회장 홍승목(洪承穆), 총무 서상훈(徐相勛)이고 도별로 지방총무를 두었는데, 이들 대부분이 이후 친일행태를 보이게 된다. 월간 『대동학회월보』는 1908년 2월 창간되어 1909년 9월까지 통권 20호가 발행되었다. 남산도서관에는 그 중 제2호, 제4호가 소장되어 있다.
- 4) 『대한협회회보(大韓協會回報)』: 1907년 7월 대한자강회 강제해산 후 그 세력들은 11월 남궁억(南宮億)을 회장으로 하는 대한협회로 다시 결집했고, 1908년 4월 홍필주(洪弼周)를 편집 겸 발행인으로 하여 월간 『대한협회회보』를 창간했다. 대한자강회와 대한협회는 당시 여러 학회·사회단체 중 ‘정치적’ 활동을 가장 활발히 벌이기도 했지만, 잡지 기사의 수준도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대한협회 시기에는 일제에 대한 타협, 보호국 논리에 동조하는 논

조가 강해졌다. 『대한협회회보』는 1909년 3월 통권 12호로 중단되는데, 남산도서관에는 그 중 제3호와 제10호가 소장되어 있다.

○ 이 책들의 동일 판본 소장처는 다음과 같다.

『서우(西友)』=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1-17호, 아단문고, 서울대도서관: 1-14호, 연세대 학술정보원: 1-10, 14호, 국립중앙도서관: 1-7호

『기호흥학회월보』=아단문고, 연세대, 고려대,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1-12호

『대동학회월보』=아단문고: 1, 8, 10, 12-20호, 연세대: 1-4, 17, 19, 20호, 고려대: 3-9호

『대한협회회보』=아단문고, 연세대, 서울대, 성균관대: 1-12호

2. 시 등록문화재로 등록 여부 : 『서우』, 『기호흥학회월보』 가능, 『대동학회월보』, 『대한협회회보』 불가능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으로 조사대상 4종은 모두 애국계몽운동기의 중요한 학회 또는 사회단체의 기관지이다. 특히 『서우』는 지역 단위 학회지의 효시이고, 『기호흥학회월보』는 그중 최대 규모의 학회였다. 또 남산도서관 소장본이 두 종 다 창간호를 포함해서 『서우』는 통권 14호 중 한 호(9호)가 빠진 13호, 『기호흥학회월보』는 통권 12호 중 9호를 갖추고 있어 컬렉션으로서도 비교적 우수한 편이다. 반면, 『대동학회월보』와 『대한협회회보』는 남산도서관 소장본 자체가 각각 2권씩으로 무척 제한적이고, 또 두 단체의 성격과 활동, 구성원들의 이후 행적 등이 순수하게 애국계몽학회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데가 있다. 따라서 『서우』, 『기호흥학회월보』는 서울시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있으나 『대동학회월보』, 『대한협회회보』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참고 자료

문화재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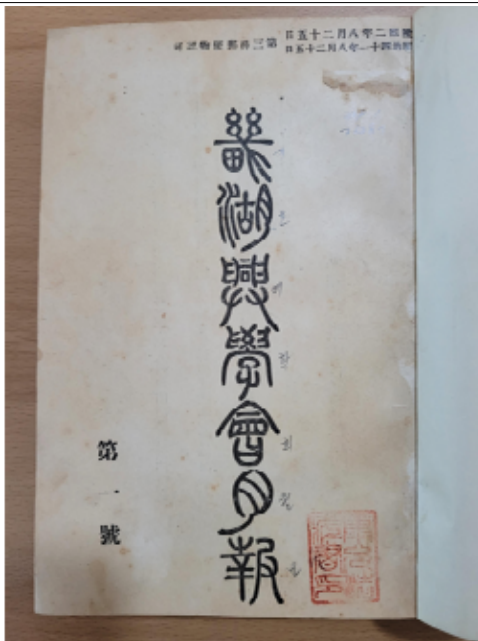
『서우』 창간호 앞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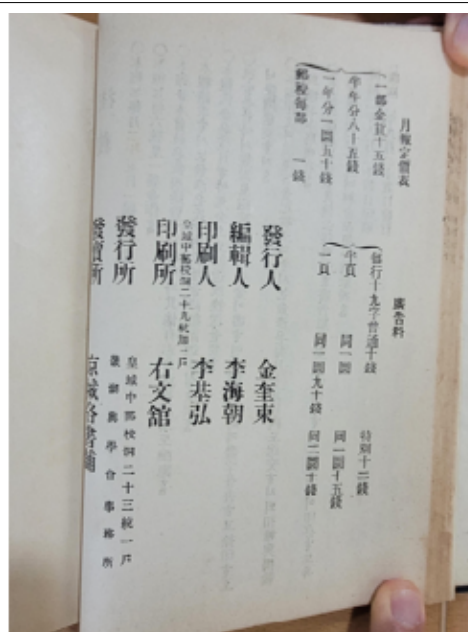
『서우』 창간호 판권장



『기호흥학회월보』 창간호 앞표지



『기호흥학회월보』 창간호 판권장



【 남산도서관 소장 대한제국기 간행 종합잡지 3종 】
1. 문화재 현황

1905년 이후 애국계몽운동이 확대되는 가운데 잡지 자체의 발간을 목적으로 출판사를 설립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이런 잡지는 대개 학회지보다는 더 넓은 독자층을 상대로 해서 더 간결하고 쉬운 기사들을 실었고 다양한 지면을 기획했으며, 수익성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시기 학회를 배경으로 하지 않고 출판된 종합잡지가 4종 28책 남산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 1) 『소년한반도(少年韓半島)』: 1906년 11월 창간된 A5판, 60면 내외의 월간 종합잡지다. 사장은 양재건(梁在奮), 찬술원(撰述員) 양재건·조중응(趙重應)·이해조(李海朝) 등이었다. 제목의 ‘소년한반도’란 소년층이 아니라 한국/한민족이 아직 근대문명을 성취하지 못한, 현실성보다 가능성을 더 많이 가진 존재라는 뜻이다. 이 제목부터가 그렇듯이 량치차오(梁啟超)의 사상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고 「사회학」, 「교육신문」, 「국제공법」 등 여러 분과학문의 지식을 다수 소개하였다. 1907년 4월로 모두 6호를 내고 중단되었다. 남산도서관에 6권 전권이 소장되어 있다.
- 2) 『대동보(大同報)』: 1907년 5월 창간된 월간 계몽잡지다. A5판 71면, 정가 15전이다. 창간호에는 발행소 대동보사, 인쇄소 보문관(普文館)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3호에 따르면 국채보상운동의 중심인물 중 한 명인 김광제(金光濟)가 사장 겸 발행인이고, 편집인은 최승학(崔承學)이다. 국민계몽을 위해 폭넓은 정보를 담았고, 특히 각종 신문에 보도된 국채보상의 연금 총금액과 모범사례로 추정되는 주요 의연자 명단을 게재하였다. 1908년 1월 통권 6호를 내고 중단하였다. 남산도서관에는 통권 6호 중 창간호부터 4호까지 4권이 소장되어 있다.
- 3) 『장학월보(獎學月報)』: 1908년 1월 20일에 창간된 월간 교육·학습잡지로 최남선의 『소년』보다 10개월 앞서 나왔다. 잡지 창간 전부터 미리 신문에 잡지 발행과 현상모집 사실을 광고하여 논설·소설·사조(詞藻)·작문·역사·지리·산술·재담·미어(謎語)·국문·외국어 등 12개 분야에 걸쳐 독자 원고를 현상공모하고 입선자의 작품 중 일부를 게재하는 특이한 방법으로 잡지를 냈다. 제2호부터 『장학보』로 개제했다. 1908년 5월 제 5호를 내고 학생연합친목회의 잡지로 전환했으나 장학월보사가 운영에서 손을 떼면서 정간, 폐간으로 이어졌다. 남산도서관에는 통권 5호 중 창간호부터 제4호까지가 소장되어 있다.
- 4) 『소년(少年)』: 1908년 11월부터 최남선(崔南善)이 출판사 신문관(新文館)을 통해 발행한, 월간 종합잡지다. 창간호에 실린 최초의 신체시(新體詩) 「海에게서 少年에게」 등이 잘 알려져 있다. 최남선 혼자 집필과 편집을 담당하는 1인 잡지 형태였다가 3권 2호부터 이광수(李光洙), 홍명희(洪命熹)가 집필에 가담했다. 식민지기에 접어든 1911년 5월, 『소년』은 통권 23호로 강제폐간되었다. 『소년』은 남산도서관에 창간호 등 14권이 소장되어 있다.

○ 이 책들의 동일 판본 소장처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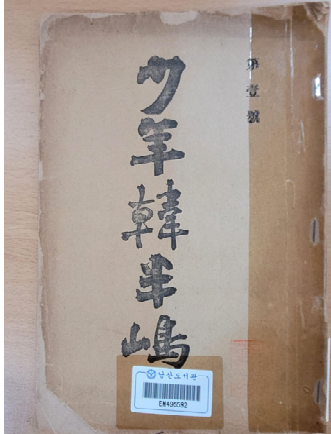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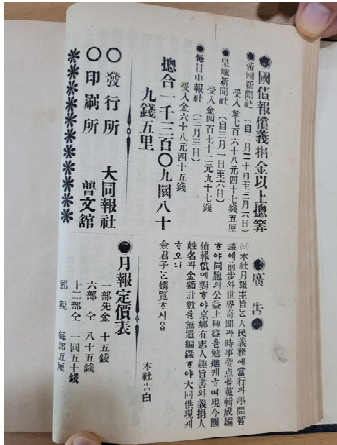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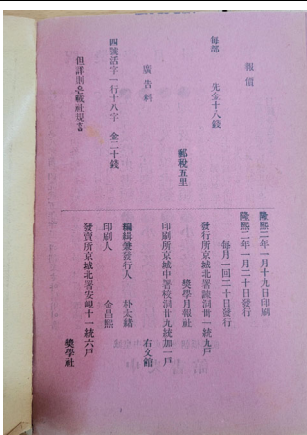
『소년한반도』=서울대도서관, 연세대학술정보원: 1-6호, 아단문고: 2-6호

『대동보』=아단문고: 1-3, 5호, 고려대도서관: 1-4, 6호, 연세대: 2, 3호

『장학월보』=연세대학술정보원: 1-4호, 서울대도서관: 2, 4, 5호, 아단문고: 1, 2호
 『소년』= (소장처가 매우 많음.)

2. 시 등록문화재로 등록 여부 : 『소년한반도』, 『대동보』, 『장학월보』 가능, 『소년』 불가능

- 『소년한반도』, 『대동보』, 『장학월보』는 모두 발행자가 잡지의 발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출판사를 설립해서 운영한 경우로, 학회지의 경우와는 또다른, 한국 잡지사의 독특한 사례들이다. 특히 『대동보』는 종래 국채보상운동의 ‘기관지’ 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그보다는 김광제 개인이 대동보사를 세워 간행한 잡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장학월보』는 현상모집한 독자 투고로만 운영한 특이한 잡지다. 또 남산도서관은 『소년한반도』는 통권 6호 전부, 『대동보』는 통권 6호 중 4권, 『장학월보』는 통권 5호 중 4권(모두 창간호 포함)을 소장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 등록문화재 등록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통권 23호 중에 남산도서관에서는 14권을 소장하고 있는 『소년』의 경우는 다른 기관에 더 좋은 컬렉션이 있어서, 남산도서관 소장본을 서울시 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참고 자료	문화재 이미지
『소년한반도』 창간호 앞표지	『소년한반도』 창간호 판권장
	
『대동보』 창간호 앞표지	『대동보』 창간호 판권장
	
『장학월보』 창간호 앞표지	『장학월보』 창간호 판권장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3204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안내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1. 사업개요

- ☐ 사업명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 사업목적 :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
- ☐ 용자지원 조건
 - 용자취급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용자최대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 용자용도 :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
 - ※ 당해연도 예산 규모에 따라 일일 신청건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4.신청안내 참조

2. 신청자격

- ☐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주) 대출신청일은 은행 담당자가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보증서 발급신청 한 날을 의미하며, 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 제출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 대출명의자(=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추천서 신청자)는 반드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세대주가 아닌 자를 세대주로 인정하는 요건은 FAQ 마지막 페이지 참고

-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 동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
 - (※ 서울시 역세권 2030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대출지원을 신청했거나 신청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

□ 대상주택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주)
 - ※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주택’의 요건은 2022.1.3. 신청 건부터 적용됨
 - 주) 「노인복지법」 부칙 제4조의3에 따라 2008년 8월 4일 전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

〈 필 독 〉

-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움(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은행상담 필요)
-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주)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주)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

3. 대출안내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추천서 신청은 잔금일(대출실행일) 2개월 전부터 가능함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

□ 대출금리 : ① 기준금리+ ② 가산금리

- ①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② 가산금리(1.6%)
 - ※ COFIX금리 : 8개 시중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 보증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보증신청 비용은 신청인 부담)
 - ※ 전세계약자가 공동임차인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 소득으로 대출한도 설정이 부족해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추가 연대보증 필요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6% 이하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

※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금리
0 ~ 2천만원 이하	3.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1.2%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0.9%

○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0.6% 이하

1)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2)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 1)과 2)는 중복적용 불가, 1)은 최초 대출 시에만 적용되며 대출연장 시 적용 안됨

※ 최초 신청시 임신중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 단 신청시점에 자녀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기한연장 시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해당되지 않음

※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기한연장 시 자녀수에 따라 재산정됨

※ 지원대상 자녀나이는 민법상 미성년 자격기준인 만 19세 미만임

(최초신청 시 : 서울시 용자추천서 발급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기한연장 시 : 기한연장 대출기간 시작일 기준 만 19세 미만)

□ 이자지원기간 : 최장 10년 이내(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 기본지원은 2년+2년 이내(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가능)

○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이내 연장지원 가능

○ 이자지원 중단사유

대출기간 중	기한연장 시
① 결혼예정자가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 사실 확인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 (중단일 : 대출실행 후 6개월 경과일) ②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중단일 : 주민등록 전출일) ③ 공공임대주택 입주 (중단일 : 주민등록 전출일) ④ 임대차계약 종료 (중단일 : 임대차계약 종료/전출일) ※ ①~④의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됨	①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초과 ② 무주택세대가 아닌 경우 ③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④ 지원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신청자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대출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지연 시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대출 실행 후 주택 매매 시 대출상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된 FAQ를 반드시 참고

□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4. 신청안내

□ 신청접수 : 상시접수

※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은 불가하고, 익일 신청할 수 있으며 일일 신청건수는 당해연도 예산규모 및 정책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 주거포털 공지사항 및 신청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접수방법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http://housing.seoul.go.kr>)

□ 문 의 처 : 대출문의 - 협약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조건 등)
홈페이지 이용 문의 - 다산콜센터 (☎ 02-120)
(홈페이지 오류, 신청서 변경 및 취소 등)

□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①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청자/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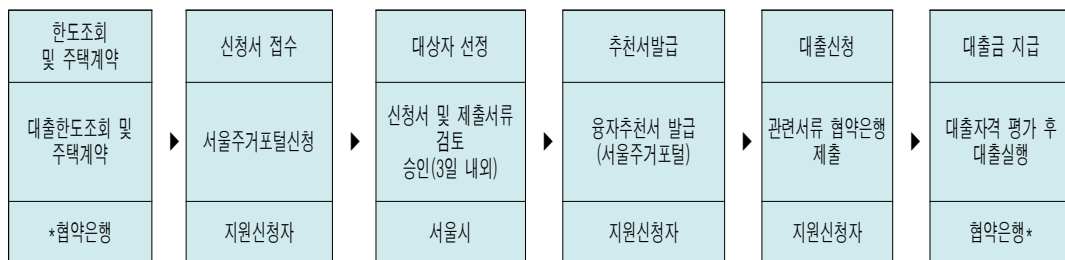
※ 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씩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예식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에 제출해야하며 대출실행일 기준 6개월 내 반드시 해당 은행에 혼인증빙자료 제출 필요)

④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갱신계약은 계약금 지급 영수증 대신 기존계약서 함께 첨부

※ 추천서 심사 및 협약은행의 대출심사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 및 대출절차 (*협약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대출 연장 시에는 서울시 추천서를 다시 신청·발급하지 않아도 되며, 추가 발급 불가능

※추천서 신청은 잔금일 기준 2개월 전, 은행 대출(대출 연장도 동일) 접수는 1개월 전부터 가능

5. 기타사항

- 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도 변경에 따른 적용시점은 기존 대출실행 약정기간이 만료되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시점에 변경 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내용이 협약은행에 제출된 서류와 상이하여 지원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추천이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재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 서울시 추천서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득증명과 관련한 서류 및 신청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기간 연장 시 연장이 거절되거나 지원이자를 반납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약정 기간 종료 전 대출금 상환 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기타 사항은 협약은행 콜센터(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FAQ.
2. 협약은행 대출신청 시 필요서류 안내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FAQ

구분	답 변
〈서울시 용자추천서〉 발급 절차	
대출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자격, 대출한도 확인 및 계약체결 예정인 대상주택의 대출 가능여부 등 사전 상담 ② 대출한도 감안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③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추천서 발급 신청 및 출력(서울시 발급 승인 후) ④ 대출신청(은행 지점 방문)
용자추천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에서 신청을 하신 후 서울시 승인을 거쳐 추천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본인 직접 출력)
용자추천서를 배우자가 신청해도 되나요?	임대차계약서 상의 계약자가 반드시 용자추천서 신청인, 대출신청인이 되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용자추천서 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FAQ 마지막 페이지 도표 참고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가 아닌 자를 세대주로 인정하는 요건으로는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1)세대주의 배우자, 2)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3)세대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4)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세대주가 아니라도 대출실행일(보증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사실 확인서류를 제출할 경우 세대주요건 인정 가능합니다. 해당 조건 외의 구성원으로 전입된 세대원(조카, 처조카 등의 기타친척 및 동거인)은 주택금융공사 보증 규정상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청 불가능 합니다.
용자추천서 발급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용자추천서 발급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계약시작일) 기준 2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용자추천서 유효기간은 ?	발급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2개월 이내 은행에 대출심사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추천서 발급 신청결과 언제 알 수 있나요?	추천서 발급신청 후 서울시 추천서류 검토 및 승인은 3일(평일 기준) 내외입니다.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현황에서 신청확인, 수정, 신청취소, 추천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된 경우 지원현황에 작성완료로 표시되며, 서울시 심사완료 후에는 신청자 휴대전화로 SMS(카카오톡 알림톡)가 발송됩니다. ※신청완료 후 통신상태 불량, 모바일/PC에서 파일 업로드 중 오류 등으로 인해 파일 첨부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서울주거포털-마이페이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내역(본인/배우자 성명 클릭)에서 파일 첨부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기 바

구분	답 변
	합니다. 추천서 발급은 신청 순차적으로 진행되므로 신청 후 유선 문의 등으로 빠른 심사를 요청하더라도 불가합니다.
심사결과가 ‘승인거부’ 가 나왔을 때는?	신청 완료 후 심사 부적격 사유 발생 시(필요 서류 미첨부, 인적사항 및 물건지 정보 오기재 등) 승인 거부 처리 됩니다. 심사 결과가 승인 거부일 시에는 마이페이지에서 수정 버튼을 누른 후 거부사유를 보완하면 재심사요청이 됩니다. 재심사요청 시에도 심사는 재심사 요청 기준 일로부터 평일 기준 3일 내외가 소요되오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용자추천서 및 대출〉 필요 서류	
용자추천서 신청 시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주민등록등본(본인/배우자가 따로 되어 있는 경우 각각 첨부) -세대원/세대주 확인 가능한 페이지 첨부 -주민등록 초본으로 갈음 불가 ○가족관계증명서(본인/배우자 명의 각각 첨부) -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 ○혼인관계증명서 (미혼상태임을 증빙하기 위해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한 자도 첨부해야 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및 배우자 각 1부씩 첨부 / 혼인신고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는 신혼부부의 경우 접수증으로 가능) ○주택임대차계약서 ○계약금납입 영수증(5% 이상 지급 필요) -갱신계약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첨부 ※ 은행 대출신청 시 필요서류 :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 직후에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시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혼인신고 후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를 미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어떤 서류로 입증해야 하나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출신청 시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을 증빙하는 자료를 ‘협약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출실행 후 6개월 이내 혼인신고를 증빙하는 서류를 ‘협약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협약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분	답 변
재직기간이 짧아 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서 발급하는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혹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소득은 소득합산액/근무월수*12개월로 환산됩니다. 소득과 관련한 사항은 대출 진행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발급 받나요?	가까운 동주민센터 혹은 민원24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세대원, 세대주 확인 할 수 있는 페이지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는 별도의 양식이 있나요?	재직증명서는 재직 중인 직장의 양식으로 발급 받으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혼인관계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가까운 동주민센터 혹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특정’으로 발급된 서류 아닌 ‘일반’ 또는 ‘상세’로 발급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직후에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시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혼인신고 후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서 각 1부를 미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어디서 발급 받나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등록증명원으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임신한 경우 제출서류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임신사실확인서 (임신사실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어디서 발급 받나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연금소득자는 소득금액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연금수령통장을 통해 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계약금 지급영수증은 어떻게 받는 건가요?	임대차 계약시 지불한 계약금에 대한 영수증으로 임대인(집주인)이 발급해 주셔야하며, 반드시 임대인의 도장 혹은 서명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계약금은 보증금의 최소 5%이상 지급하셔야합니다.

구분	답 변
대리인 계약시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위임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이 필요함에 따라 추천서 신청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추천서에 기재된 내용과 은행제출서류가 다를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은행제출서류가 지원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추천이 취소됩니다. 신청 시엔 반드시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어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용자추천서 및 대출〉 신청 자격 관련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서울시 용자추천서 발급 신청 후 예비신혼부부 자격 유지 기간은 ?	대출신청일 기준 예식일이 경과하지 않은 예비신혼부부는 은행에 대출신청(은행 담당자가 대출신청 접수하고 보증서 발급신청 기준) 완료시점까지는 예비신혼부부 자격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서울시 추천서 신청 시에는 예비신혼부부였으나, 예식일 경과 후 은행 대출을 하려고 합니다.	해당 경우 추천서 신청 당시 예비신혼부부 자격을 인정받았으므로 예비신혼부부 추가지원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은행 대출 신청 시에는 예식일 경과하였으므로 대출 전산 상 신혼부부로 신청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요청 시 혼인신고 후 혼인관계증명서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은 어떻게 확인 하나요?	근로자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게 되며,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금액증명원을 은행에 제출하여 확인받게 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는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기타 소득관련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타지역 거주자도 신청가능한가요?	계약하신 임차물건이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대항력 취득을 위해 입주일(잔금일)에 즉시 전입신고를 하시고, 관련 서류를 대출 은행 요청에 따라 제출하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이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 가능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도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여 연소득과 무주택 여부 확인 후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답 변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신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중이라도,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포함)가 무주택이면 가능합니다.
재혼의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한지? 연령제한은 없는지?	재혼의 경우에도 신혼부부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는 경우에는 과거 결혼기간을 합산하여 7년 이내인 경우 신혼부부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배우자와 결혼 시 과거 혼인기간을 합산해야 하므로 이혼 후 예비신혼부부로 신청 불가) 과거에 기 대출을 받은 경우도 대출이 불가합니다.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재외국민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재외국민의 경우 주택금융공사 규정 상 신청이 불가 합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기간 중 소득이 증가하거나 주택구입을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대출기간까지는 이자지원이 되며, 대출기간 종료 후 기한연장 시 지원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이자지원은 중단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구입한 주택의 조건에 따라 전세 대출 즉시 상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택 구입 전 반드시 은행 사전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실행 후 처음부터 부부 모두가 주민등록을 전입해야 하나요?	부부 모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임대차계약자인 대출신청인은 입주일에 임차물건지로 반드시 주민등록을 전입해야 합니다.
대출실행 후 타지역으로 전출해야 하는 경우는 ?	임대차계약자인 대출신청인은 해당 물건지에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배우자는 주소를 이전해도 됩니다.
입주권, 분양권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지?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보유수에 포함되지 않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잔금대출이 확인되는 분양권(입주권)은 주택보유수에 포함됨에 따라 신청이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반드시 은행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한 방법은 ?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주택을 매매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대출실행 전까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증을 제출해서 주택처분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반드시 협약은행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 신청조건이 결혼 7년 이내 인데 기준이 무엇인가요?	융자추천서 발급 받은 후 은행 대출신청일 기준 혼인 관계증명서에 명시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입니다. 주) 대출신청일은 은행 담당자가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보증서 발급 신청 한 날을 의미하며, 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 제출

구분	답 변
〈주택 및 계약 관련〉	
월세계약의 경우도 지원이 되는지?	보증금 있는 월세계약의 경우도 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 7억이하의 주택은 2022.1.3.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그 전까지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5억원 이하의 주택이 요건이 됩니다.
임대인의 대출동의를 필요한가요?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을 위해 경우에 따라 임대인을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임대인에게 사전 안내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본 대출에 대해 집주인의 의무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대출금은 집주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지만 대출금 상환의무는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집주인은 은행이 아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거주중인 주택계약서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면 신청가능 합니다. 단, 거주주택의 연장계약인 경우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일(재계약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은행에 대출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도 신청이 가능한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SH, LH, 서울리츠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급 또는 지원하는 주택에 입주(예정)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민간 임차주택인데 신청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지?	건축물대장에 명시되어있는 건물용도를 참고하셔야 하며, 위반건축물의 경우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이사 등으로 주택조건이 변경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은행에 방문하여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사전 고지 및 해당주택이 대출대상 주택에 적합한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시외 지역으로 전출 및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하거나, 전세계약이 종료되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이자지원 중단사유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미등기 신규주택인데 주소검색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물건지 부근 대표번호를 우선 기입하여 추천서 발급 신청한 후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02-2133-1200~8)에 전화하여 수정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 최근 신축빌라 등 적정가격을 알기 어려운 주택을 중심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야 할 경우 반드시 보증금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하기를 권고합니다.
임대차계약 시 가족간 거래도 가능한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보증규정상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	답 변
전세계약이 공동명의인 경우 어느 한 쪽이 신청이 가능한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용자추천서 신청인과 대출신청 인은 동일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의 경우 대출 신청인의 배우자는 연대보증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 전 갱신계약을 한 경우 신청이 가능한지 ?	보증관련 규정에 따라 보증금의 변경(증감)이 있는 경우나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해 갱신계약 변경사유가 인정됨(계약기간 변경은 관계가 없음)
신축아파트로 준공되고, 미등기 상태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한지 ?	정당한 임대인과의 계약여부 확인을 위해 ‘임대인 분양계약서’, ‘입주안내문’, ‘사용승인 확인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기타 대상주택 관련 자세한 사항은 협약은행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추천서 신청자격 요건에 부합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해당 대출은 서울시-은행-주택금융공사(HF)의 협약 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협약서 상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은행내규 및 주택금융공사 내규에 따라 판단 됩니다. 추천서 신청대상이 되더라도 임대차 계약사항, 소득, 신용도 등의 심사사항이 해당 규정들에 부합할 경우 추천서 발급 및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천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사항들에 대해 은행 사전상담을 받아보길 바랍니다.
대출금 지급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원칙이며, 임대차계약사실이 확인되고 영수증으로 잔금납입 사실이 확인된 경우 대출신청인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대출금 상환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생애 최초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조건 충족 시 기한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가능한도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고객별 연소득 등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한도 이내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신청 가능합니다. 고객별 대출가능금액은 협약은행(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용자신청금액은 얼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은행에서 사전상담 받은 대출가능한도 내에서 본인이 필요한 금액을 신청하면 됩니다. 단, 용자추천서 상 용자신청금액은 은행 대출신청금액과 동일해야 합니다. 추천서 승인 후 본인 변심으로 용자신청금액 수정 필요 시, 신청취소 후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기재 하기 바랍니다.

구분	답 변
대출한도를 사전 조회할 수 없나요?	대출한도는 개인의 신용도, 인정소득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협약은행의 사전 검토를 받으셔야 합니다. (단, 대략적인 보증한도는 한국주택 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hf/sub02/sub08_01.do)에서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타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대환대출 방식으로 진행 가능하나 은행 대출조건에 부합해야 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은행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제2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은 대환 불가합니다.
개인신용도로 인한 대출 제한이 있나요? 회생진행중인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개인신용이 현저히 나쁘거나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이면 은행에서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부분은 반드시 신청하시기 전에 협약은행 (국민/신한/하나)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증료가 있는지?	보증료는 임차보증금에 따라 대출금의 0.02~0.10%(’21.7.1.기준, 변동될 수 있음)가 적용될수 있으며 고객이 부담 합니다.
대출실행 후 대출금 증액 또는 추가대출이 가능한가요?	최초 대출실행 후 대출금 증액은 불가하며, 임차보증금 증액 등으로 추가대출이 필요한 경우 다른 상품으로 추가 대출 가능 여부를 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추가대출금에 대한 이자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일 기준 1개월 전부터 협약은행에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연장 시에도 연장 만기 시점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단, 대출 연장 시에는 서울시 추천서를 다시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며, 대출 연장과 관련한 문의(필요서류 등)는 대출 실행한 은행 지점에서 진행하기 바랍니다.
기한 연장시 반드시 대출금의 10%이상 상환해야 하나요?	변경된 제도에 따라 대출금의 10% 상환규정은 없으며, 지원조건에 부합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은행 대출신청시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은행에 방문해야 하나요?	서울시 융자추천서를 발급 받은 후 은행대출 신청 시에는 반드시 본인 및 배우자가 함께 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구분	답 변
〈대출 금리 및 이자지원〉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대출금의 이자 중 일부[대출금의 최대 연3.6%(기본 최대 3.0%, 결혼예정자 0.2%, 다자녀가구 최대 0.6% 이내)를 지원합니다. 지원되는 이자는 소득 및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단, 결혼예정자와 다자녀 가구 지원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결혼예정자(예비신혼부부) 추가 지원 금리는 최초 대출 시에만 적용되며, 대출 연장 시에는 추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 인지? 고정금리인가요?	신 잔액기준 COFIX 연동 6개월 변동금리로 운영 됩니다.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6개월 변동금리를 적용하게 되며 기준금리에 가산금리(1.6%)를 더해 대출금리가 결정됩니다.
기준금리가 무엇인가요?	기준금리는 8개 시중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 기준금리로 대출 실행일의 신잔액기준 COFIX 6개월 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검색예시 : 은행홈페이지 접속/개인/대출/대출가이드/가계대출금리/신잔액 COFIX 금리 확인)
은행의 우대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되며 은행의 우대금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이자는 없는 건가요?	이자지원금리 차감 후 본인부담금리는 최저 1.0% 이상으로, 은행에서 결정한 대출금리 중 서울시에서 지원해드리는 이자 외에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대출기간 중 사별 또는 이혼하는 경우 이자지원은 ?	기본 대출약정기간까지는 가능하며 이후 중단되게 됩니다.
대출기간 중 이자지원이 중단되는 사유 및 중단일은 ?	① 결혼예정자가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사실 확인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 (중단일 : 대출실행 후 6개월 경과일) ②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중단일 : 주민등록 전출일) ③ 공공임대주택 입주 (중단일 : 주민등록 전출일) ④ 임대차계약 종료 (중단일 : 임대차계약 종료/전출일) ※ ①~④의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됨 ※ 주택 보유 예정인 경우 아래 질문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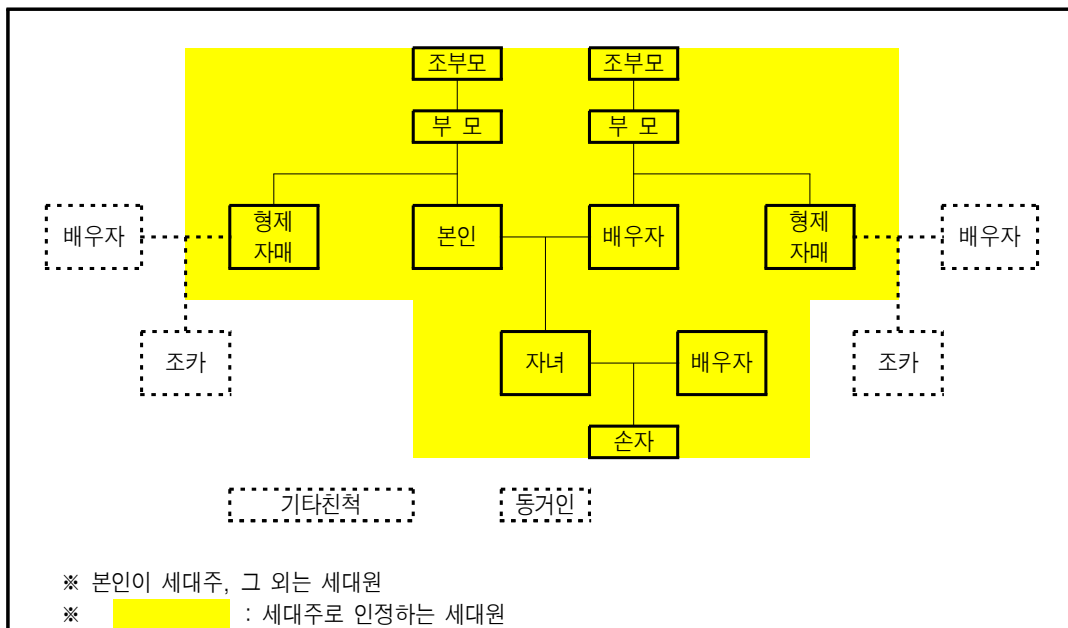
구분	답 변
대출기간 중에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현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는 전세대출 즉시 상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유동적인 정책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주택 보유 계획 시에는 해당 시점의 정책을 알아본 후 반드시 전세대출 실행 은행의 사전 상담을 받기 바랍니다.
기한연장 시 이자지원이 중단되는 사유는 ?	①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초과 ② 무주택세대가 아닌 경우 ③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④ 지원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기타〉	
일일 신청건수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18년부터 최대한 많은 신청을 받고 지속적인 이자 지원을 해왔으나, 코로나 19 확산 등으로 서울시 재정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일일 신청건수를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일일 신청건수 제한으로 불편함을 겪으실 수도 있으나 지원사업의 중단을 피하고 계속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신청자 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일일 신청건수 잔여수량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서울주거포털에 접속 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페이지로 들어오시면 팝업 및 신청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일일 신청건수가 초과되어 신청을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일일 신청건수가 초과되었을 경우, 매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이 가능한 날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신청 완료 후 심사 부적격 사유 발생 시(필요 서류 미첨부, 인적사항 및 물건지 정보 오기재 등) 승인 거부 처리 되며, 거부사유에 따른 보완 후 재심사요청 시에도 재심사요청 시점 기준으로 평일 3일 내외의 심사 기간이 소요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천서 승인 후 입력사항 오기로 인해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자와 배우자 인적사항 및 물건지 주소 오기재, 본인 변심으로 인한 융자추천금액 변경, 추천서 발급 후 계약서 변경(계약기간, 물건지 변경 등), 추천서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인해 수정 또는 재신청이 필요할 경우 ‘신청취소’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가능) 요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취소 처리는 추천서 발급과 마찬가지로 평일 기준 3일 내외입니다. ※대출을 이미 받아서 이용 중인 사람은 기존 융자추천서 승인취소 불가하며, 승인취소 시 이자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세대주” 가 아닌 자를 “세대주” 로 인정하는 경우

－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배우자
- ②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③ 세대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④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⑤ 보증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예정된 자

※ 참고 : 세대주 인정범위 (예시)



협약은행 대출 신청시 필요서류

(은행 대출신청 시 본인 및 배우자가 반드시 함께 은행에 방문하셔야 됩니다)

융자추천 대상자 선정 후 협약은행(국민·하나·신한은행)에 대출 신청시 필요 서류입니다.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전체가 표시되어야 하며, 신청일 1개월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①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신분증
- ②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 ③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④ 구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 ⑤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이상)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⑥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개월이내 발급분)
- ⑦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 ⑧-1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근로자인 경우)
- ⑧-2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1부(자영업자인 경우)
- ⑨-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등 각1부(근로자)
- ⑨-2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각1부(근로자 외)
- ※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 (소득신고 사실없음, 국세청발급분) 지참
- ⑩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예비신혼부부 포함))
- ⑪-1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인 경우)
- ⑪-2 예식장 계약서 등 예식일자 명기된 증빙서류 (예비신혼부부)

※ 자세한 사항은 협약은행 콜센터(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으로 문의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3205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예고서를 소유자 거주자(주민등록주소)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④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장

1. 공고기간 : 2021.12.30. ~ 2022.1.13.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 내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334559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5-16 201호(증가로20나길 33, 201호)	수도요금	2019.3. 외 16납기	17회	384,150원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 건 소 유 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5-16 201호	엄승호	821216-1***** (등기번호110500240610 5 폐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14길 래미안 장안아파트 81,108동 2102호	384,150원	2022.1.13. 이후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037454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79-32(홍연8길 23-16)	수도요금	2019.2. 외 15납기	16회	412,860원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 건 소 유 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79-32	이상동	630317-1***** (등기반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연8길 23-16	412,860원	2022.1.13. 이후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0364484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78-5(연희로25길 4)	수도요금	2018.12. 외 17납기	18회	220,040원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 건 소 유 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78-5	김병오	610827-1***** (등기번호1105002406472 폐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 DMC래미안클라시스 191 ,112동 1103호	220,040원	2022.1.13. 이후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0368505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77-21 (지하)B02호 (홍연8길 28-33, B02호)	수도요금	2018.12. 외 15납기	16회	196,210원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 건 소 유 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77-21 (지하)B02호	김희옥	620730-2***** (등기반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연8길 28-33 ,지층 2호	196,210원	2022.1.13. 이후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384544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11-792 501호(홍은중앙로7길 7, 501호)	수도요금	2018.11. 외 18납기	19회	199,840원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 건 소 유 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11-792 501호	조인숙	631126-2***** (등기반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중앙로7길 동부캐슬 7 ,501호	199,840원	2022.1.13. 이후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3345793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8-427 백석빌라 401호(포방터2다길 11-3, 401호)	수도요금	2018.11. 외 18납기	19회	395,720원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 건 소 유 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8-427 백석빌라 401호	안경원	650217-1***** (등기반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포방터2다길 11-3, 401호	395,720원	2022.1.13. 이후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037401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5-171 백명하이츠빌라 나동 101호 (증가로24가길 18, 나동 101호)	수도요금	2018.11. 외 18납기	19회	162,450원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 건 소 유 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5-171 백명하이츠빌라 나동 101호	인영덕	681126-1***** (등기반송)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우정로16길 망원동 다세대주택 24, 501호	162,450원	2022.1.13. 이후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김세영(☎02-3146-358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3206호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 제3호에 의해 과태료 처분 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처분통지서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장

1. 공고기간: 2021.12.30. ~ 2022.1.13.

2. 송달대상

연번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및 등록번호	위반 내용	공사명	위반법규	처분내용	금액(원)	처분근거
1	영림종합건설(주)	임호열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30, 501호(삼성동, 한홍삼성오피스텔)	토목공사업 170464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한국식품연구원부지 중로2-148호선 상수도 공사	법 제22조 제6항	과태료	750,000	법 제99조 제3호

3.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간: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까지

나. 이의제기 접수처: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다. 이의제기 방법: 이메일(con2133@seoul.go.kr)

라. 이의제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시 증빙서류를 첨부바랍니다.

4. 유의사항

공고대상자는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3%의 가산금의 발생하고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증가산금이 가산되며, 아울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재산에 대한 압류 등)을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납부기한: 2022. 1. 31.

6. 납부방법: <https://etax.seoul.go.kr> 및 은행계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전화 02-2133-81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고 시

종로구고시 제2021 - 26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내 아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종로구청장

1. 결정(변경) 취지

- 종로구 관내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로개설사업이 완료된 구간 내 편입된 사유지를 제척하기 위한 변경 결정으로써, 사유지를 제척하여도 도로 기능상 문제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변경)함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합계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55	15	국지 도로	1,000	보문동 6가 (종로3-9)	창신동 615-278	-	서고 제130호 (1977.4.28.)	일부구간 선형변경
변경	중로	2	55	15	국지 도로	1,000	보문동 6가 (종로3-9)	창신동 615-278	-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중로2-55	일부구간 선형변경(기점 각각부 조정) 면적(㎡): 11,496 → 11,469 (감27)	도로개설사업이 완료된 구간 내 편입된 사유지를 제척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선형을 변경 결정하고자 함

3. 관련도서 : 붙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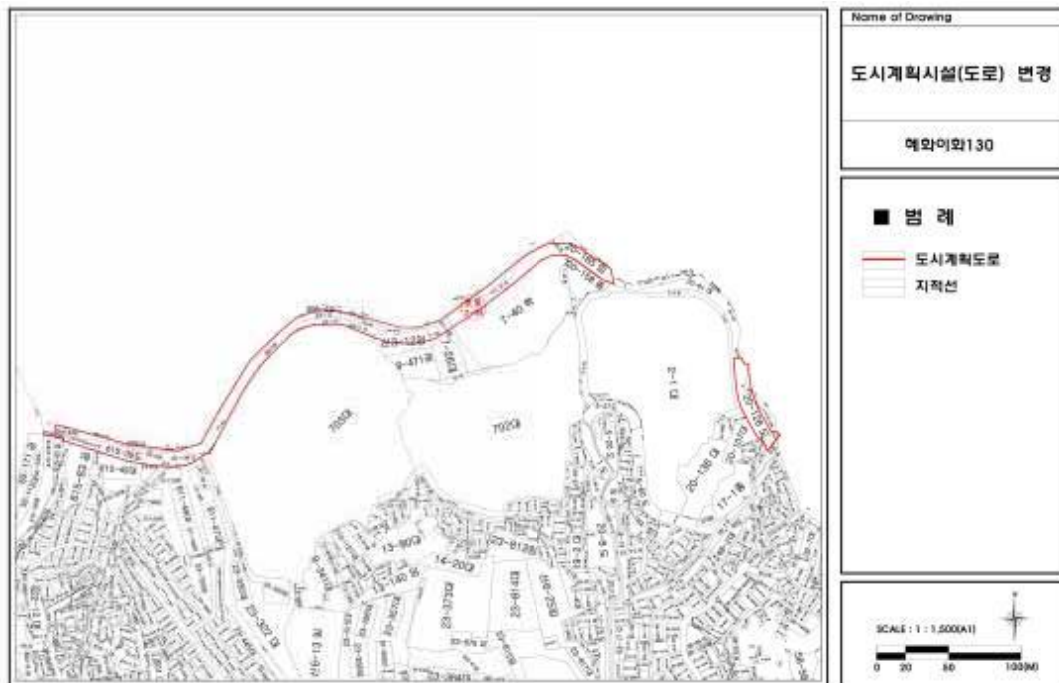
-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으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열람장소 : 종로구청 도시개발과(☎02-2148-2664) 및 도로과(☎02-2148-3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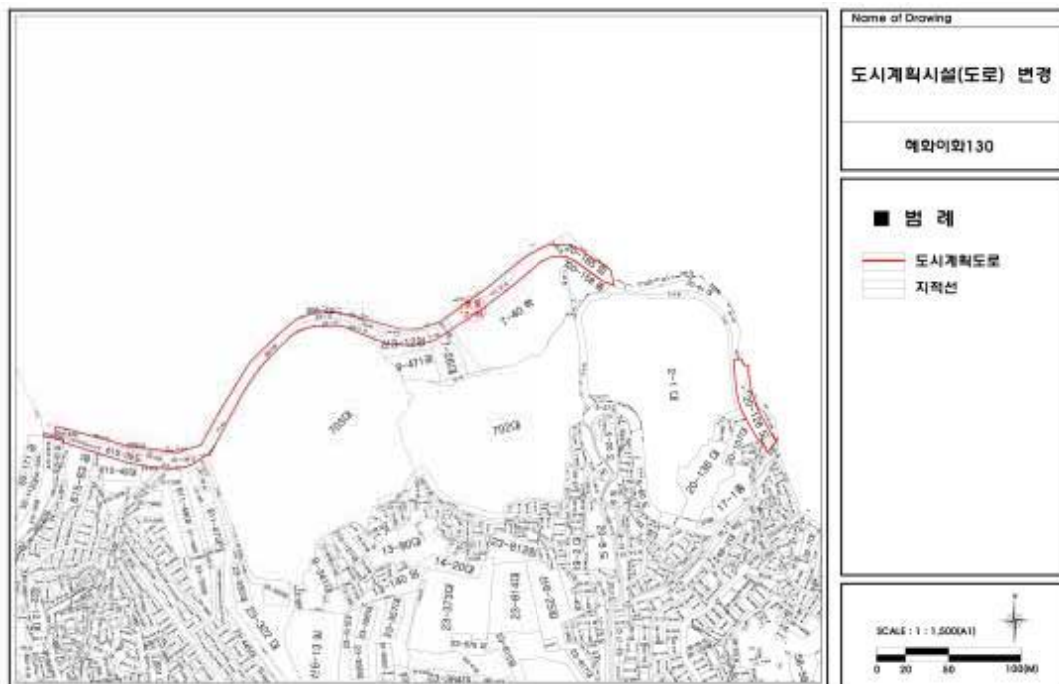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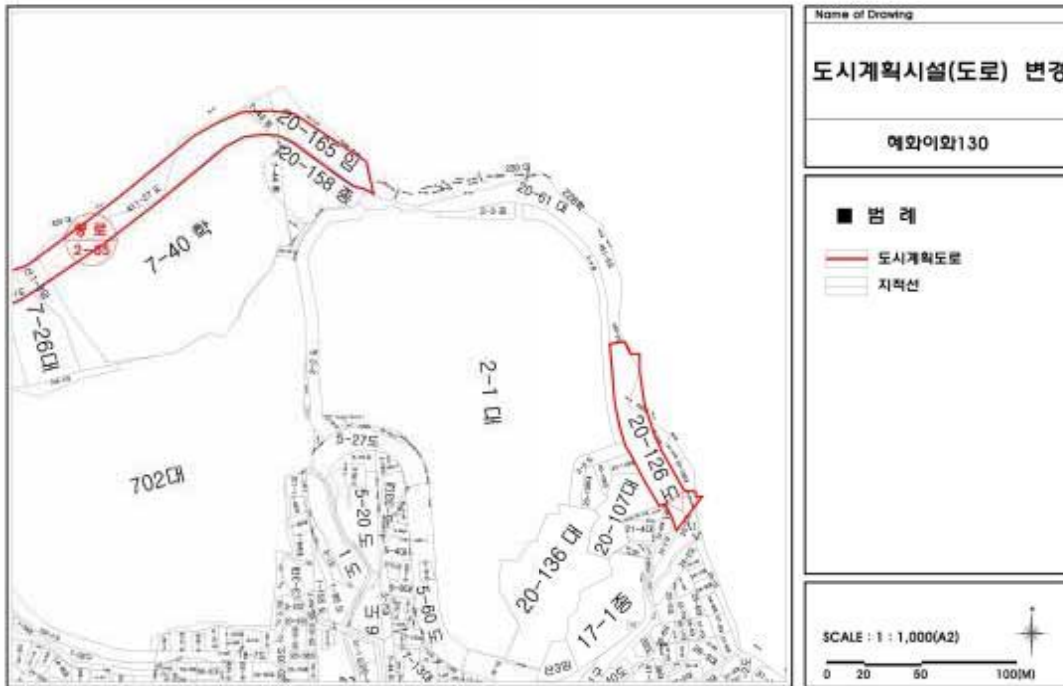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지형도면(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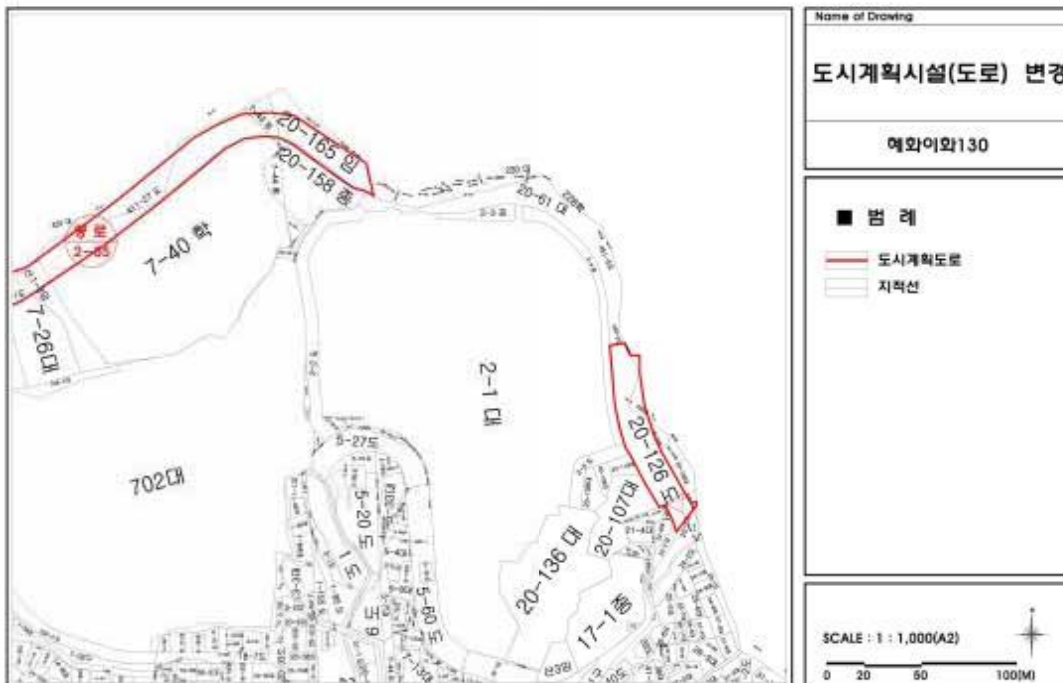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지형도면(변경)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지형도면(기정)(확대)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지형도면(변경)(확대)



성동구고시 제2021 - 231호

도시계획시설사업(응봉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성동구고시 제2018-89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응봉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기간 변경을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공고 제2021-1647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응봉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 열람공고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토지 및 물건 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4.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공원녹지과(02-2286-565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2월 30일

성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2가 산9-1호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사업의 명칭: 응봉근린공원 조성

다. 사업의 면적: 약4,000㎡(※ 보상 외 주변대상지 포함)

라. 사업의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시행자: 성동구청장
- 2)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마. 시설관리청: 서울특별시청

바. 사업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 고시방법: 성동구보 및 서울시보 게재, 인터넷 홈페이지

아.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장소: 성동구청 10층 공원녹지과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차.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카.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성동구청 공원녹지과 (☎2286-565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 건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응봉근린공원 조성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규격	면적(㎡) 및 수량		실제이용 상 황	소유자		세대주	세대원	비고		
				공부상 면 적	측 량 면 적		주소	성명					
1	금호동2가 산9-1	건 물	세멘블럭조	66.116	80	주거	금호산 **길 ** (금호동*가)	권**	권**				
		부속건물	세멘블럭조		2	화장실							
		수수꽃다리	H5.0*R30	1주					박**				
		담장	H2.5*L25m	1개소									
		대문	H1.8*W1.7m	1개소									
		화단	-	6㎡									
2	금호동2가 산9-1	건 물	세멘블럭조	82.645	89	주거	금호산 **길 *** (금호동*가)	박**	박**				
		부속건물	세멘블럭조		10	창고							
			세멘블럭조		8	화장실			이**			이**	
		꽃사과나무	H2.0*R4	1주									
		담장	H2.5*L1.5m	1개소									
		대문	H1.9*W1.7m	1개소									
		화단	-	4㎡									
3	금호동2가 산9-1	건 물	세멘블럭조	66.116	59	주거	금호산 **길 *** (금호동*가)	이**	이**	이**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규격	면적(㎡) 및 수량		실제이용 상 황	소유자		세대주	세대원	비고
				공부상 면 적	측 량 면 적		주소	성명			
		부속건물	세멘블럭조		2	창고			이**		
			세멘블럭조		5	창고					
			세멘블럭조		2	화장실					
		대문	H1.8*W1.4m	1개소					김**	이**	
		계단	W1.1*L1.6m	1개소						이**	
4	금호동2가 산9-1	건 물	세멘블럭조	59.5044	46	주거	금호산 **길 *** (금호동*가)	김**	장**		
					24	주거					
		부속건물	세멘블럭조		5	창고			이**	김**	
		대문	H1.9*W1.3m	1개소					이**		
		계단	W1.1*L1.1m	1개소					이**		
5	금호동2가 산9-1	건 물	세멘블럭조	82.645	84	주거	금호산 **길 *** (금호동*가)	민**	민**	장**	
		부속건물	세멘블럭조		4	창고					
		대문	H1.9*W1.5m	1개소							
		화단	-	42㎡							
		계단1	W1.0*L3.0m	1개소							
		계단2	W1.0*L1.0m	1개소							
		계단3	W1.5*L0.7m	1개소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규격	면적(㎡) 및 수량		실제이용 상 황	소유자		세대주	세대원	비고
				공부상 면 적	측 량 면 적		주소	성명			
		연탄광	-	2㎡							
		장독대		2㎡							
		담장(석축)	H2.0*L15.0m	1개소							
		담장	H1.5*L12.0m	1개소							
6	금호동2가 산9-1	건 물	세멘블럭조	36.3638	49	주거	금호산 **길 **-*** (금호동*가)	오**	안**		
		부속건물	세멘블럭조		4	창고					
		대문	H2.0*W1.3m	1개소							
		계단	W1.4*L1.6m	1개소					오**	임**	
		옥상텃밭	-	4㎡							
		장독대	-	7㎡					오**	오**	
		담장(석축)	H1.5*L8.0m	1개소							
7	금호동2가 산9-1	건 물	세멘블럭조	42.9754	53	주거	금호산 **길 **-*** (금호동*가)	김**	민**		
		부속건물	세멘블럭조		9	창고					
		대문	H2.0*W1.0m	1개소							
		계단	W2.0*L3.0m	1개소					이**	김**	
		담장(석축)	H1.5*L8.0m	1개소							

동대문구고시 제2021-261호

도시계획시설(철도: 정거장)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동 대 문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청량리4 재정비촉진구역내 지하도로(서고시 제2021-264호, '21.6.10)가 기존 도시철도(정거장:청량리역)와 중첩되어 있어 이를 현황에 맞게 정정하고자 철도(정거장) 선형 및 면적 변경

2.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도시철도	도시철도 (1호선 청량리역)	동대문구 전농동 620-67 일원	5,016.0	건설부고시 제158호 (1971.3.26.)	-
변경	①	도시철도	도시철도 (1호선 청량리역)	동대문구 전농동 620-67 일원	5,223.8	건설부고시 제158호 (1971.3.26.)	· 중복결정 - 도로 2,095.7㎡ - 광장 3,128.1㎡

※ 면적 산정 기준 : 건설부고시 제158호(1971.3.26.) 기준

※ 상기 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①	도시 철도	· 선형 및 면적 변경 - 5,016.0㎡ → 5,223.8㎡ (증 207.8㎡)	· 서고시 제2021-264호('21.6.10)로 결정된 지하도로가 기존 도시철도(정거장:청량리역)와 중첩되어 있어 이를 현황에 맞게 정정	-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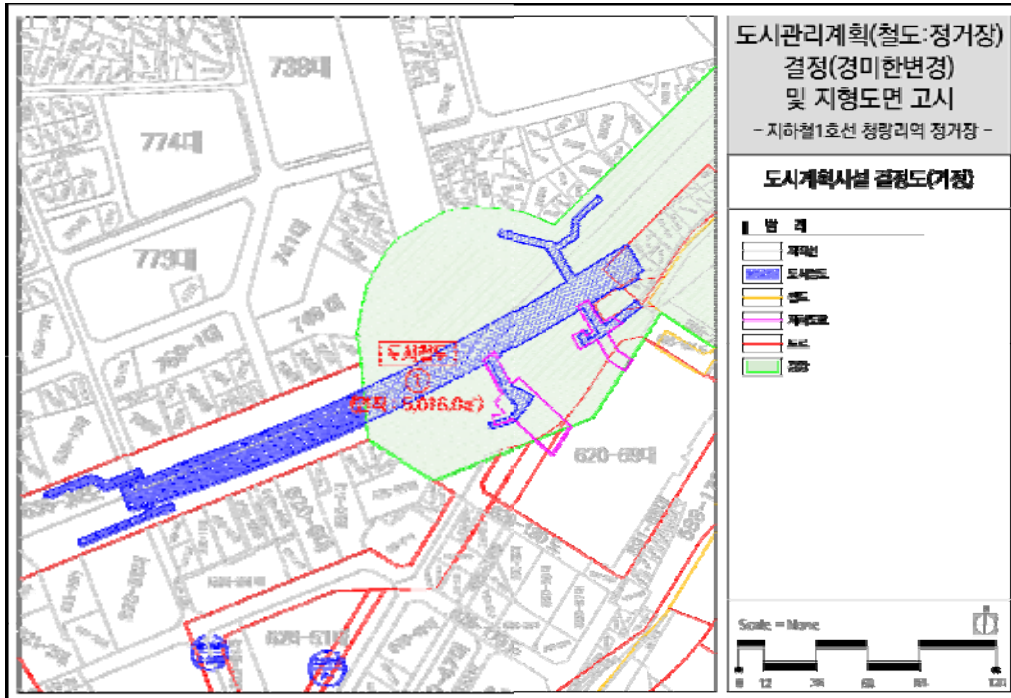
※ 첨부된 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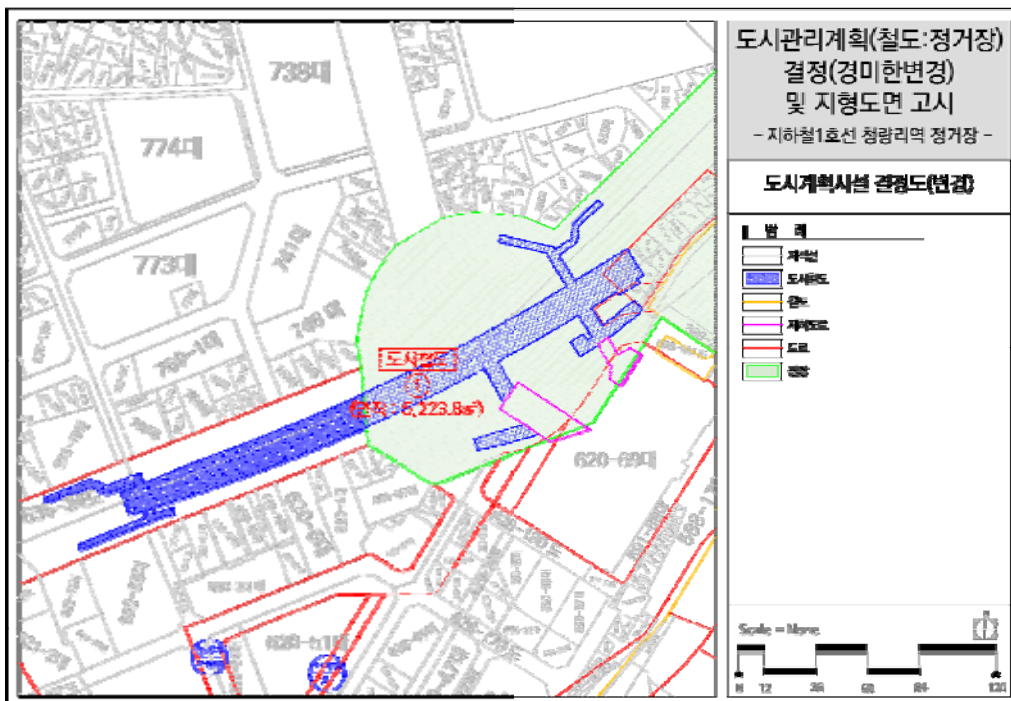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02-2127-4585)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결정도 : 기정



□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결정도 : 변경



은평구고시 제2021 - 246호

도시관리계획[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민간부분 시행지침)] 결정(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62호(2002.7.2.)로 수색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96호(2018.12.6.)로 재정비 결정(변경) 고시된 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분 시행지침을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하고자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은 평 구 청 장

I. 결정취지

‘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민간부분 시행 지침 중 생태면적률 지침을 변경하는 사항임

II. 민간부분 시행지침

① 생태면적률 시행지침의 적용

구분	계획지침	적용기준
기정	건축물 신축시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도시계획활용 개선방안(2007.12.)」 및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도시계획 적용편람(2004.6.)」에 따라 생태면적률을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권장
변경	건축물 신축시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업무지침」의 생태면적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규제

III. 기타 결정사항 : 변경 없음.

IV. 열람장소 : 은평구청 도시계획과(☎02-351-7405)에 관계도서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은 토지이음 고시정보(<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평구고시 제2021 - 24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3호(1969.1.18.), 서울특별시고시 제354호(1990.10.24.)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은평구고시 제2020-100호(2020.6.25.)로 실시계획 인가된 신사동 262-1~281-1 도로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서류는 은평구청 도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2월 30일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 신사동 262-1~281-1 도로개설

나. 사업시행 위치 : 신사동 262-1~281-1

다. 사업시행 규모 : B=6m, L=150m

라.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5년

마.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 조서 등 : 별첨

- 변경내용 : 편입필지 면적 변경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도로과(본관 5층) ☎351-79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토 지 조 서

○사업명 : 신사동 262-1~281-1 도로개설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동	번지				성 명	주 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권리내용	
1	신사동	산23-8	임야	99	79	신사라이프씨티아파트입 주자대표회의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3다길 15, ***동 ***호	1				
2	신사동	262-18	대	23	23	재단법인선학원	서울 종로구 안국동 **	1				
3	신사동	268-31	도로	7	7			1				
4	신사동	268-38	대	189	8	임**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	1/2				
						김**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3다길 *	1/2				
5	신사동	281-7	도로	205	63	윤**	서울 종로구 통의동 **-*	34/56				
						윤**	서울 종로구 통의동 **-*	11/56				
						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	11/56				
6	신사동	268-39	대	171	2	유**	서울시 마포구 방울내로5길 **, ***호	43.041/ 355	서서울농업협동조합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397-95(망원지점)	근저당권	
						김**	서울시 은평구 수색로20길 **, ***호	37.762/ 355	주식회사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청량리지점)	근저당권	
						윤**	서울시 마포구 효창목길 **	36.821/ 355	주식회사국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84(북악지점)	근저당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	28.572/ 355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권리내용	
6	신사동	268-39	대	171	2	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3다길*-, ***호	28.185/3 55	산외대부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5길 7, 5층	가압류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가압류	
									주식회사우리은행	서울 중구 소공로 51(여신관리부)	가압류	
									은평구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은평지사)	압류	
									주식회사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분당구미동지점)	근저당권	
									베스트캐피탈대부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65, 13층 1호	근저당권	
									동원주류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607-11	근저당권	
						조**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7라길 **, 2층동	24.016/3 55				
						권**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3다길 *-*, ***호	24.016/3 55	정릉새마을금고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 302	근저당권	
									현대캐피탈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	근저당권	
						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20길 *-*, ***호	28.185/3 55	주식회사국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84(북악지점)	근저당권	
7	신사동	산23-9	임야	17	17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 **층	28.185/3 55				
						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과원북4길 **, ***호	24.016/3 55				
						이**	서울특별시 양천구 은행정로19가길 **, ***호	12.008/3 55				
						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길 ** ***호	12.008/3 55				
						강**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3다길 *-*, ***호	28.185/3 55	주식회사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35(은평신사지점)	근저당권	
								1				
								1				
								1				
8	신사동	262-17	도로	2	2	은평구		1				
9	신사동	261-24	도로	1,960	665	서울시		1				
10	신사동	281-3	도로	1,379	30	은평구		1				

(변경)

토 지 조 서

○사업명 : 신사동 262-1~281-1 도로개설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동	번지				성 명	주 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권리내용	
1	신사동	산23-8	임야	99	82	신사라이프씨티아파트입 주자대표회의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3다길 15, ***동 ***호	1				
2	신사동	262-18	대	23	23	재단법인선학원	서울 종로구 안국동 **	1				
3	신사동	268-31	도로	7	7			1				
4	신사동	268-38	대	189	8	임**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	1/2				
						김**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3다길 *	1/2				
5	신사동	281-7	도로	65	65	윤**	서울 종로구 통의동 **-*	34/56				
						윤**	서울 종로구 통의동 **-*	11/56				
						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	11/56				
6	신사동	268-39	대	171	2	유**	서울시 마포구 방월내로5길 **, ***호	43.041/ 355	서서울농업협동조합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397-95(망원지점)	근저당권	
						김**	서울시 은평구 수색로20길 **, ***호	37.762/ 355	주식회사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청량리지점)	근저당권	
						윤**	서울시 마포구 효창목길 **	36.821/ 355	주식회사국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84(북악지점)	근저당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	28.572/ 355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면적 (㎡)	관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권리내용	
6	신사동	268-39	대	171	2	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3다길*-*, ***호	28.185/3 55	산외대부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5길 7, 5층	가압류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가압류	
									주식회사우리은행	서울 중구 소공로 51(여신관리부)	가압류	
									은평구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은평지사)	압류	
									주식회사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분당구미동지점)	근저당권	
									베스트캐피탈대부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65, 13층 1호	근저당권	
									동원주류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607-11	근저당권	
						조**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7라길 **, 2층동	24.016/3 55				
						권**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3다길 *-*, ***호	24.016/3 55	정릉새마을금고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 302	근저당권	
									현대캐피탈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	근저당권	
						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20길 *-*, ***호	28.185/3 55	주식회사국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84(북악지점)	근저당권	
7	신사동	산23-9	임야	17	17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 **층	28.185/3 55				
						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과원북4길 **, ***호	24.016/3 55				
						이**	서울특별시 양천구 은행정로19가길 **, ***호	12.008/3 55				
						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길 ** ***호	12.008/3 55				
						강**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3다길 *-*, ***호	28.185/3 55	주식회사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35(은평신사지점)	근저당권	
7	신사동	산23-9	임야	17	17	은평구		1				
8	신사동	262-17	도로	2	2	은평구		1				
9	신사동	261-24	도로	1,960	665	서울시		1				
10	신사동	281-3	도로	1,379	30	은평구		1				

은평구고시 제2021 - 250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이 건설교통부 고시 제138호(1977.7.14.)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시 은평구 고시 제7호(1993.3.27.)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서울시 고시 제128호(1996.5.15.)로 공원조성계획이 최초 고시되었고, 서울시 고시 제2021-323호(2021.7.8.)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신사근린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신사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시행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9-615호(2019.4.25.)로 공고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9-101호(2019.8.8.)로 최초 고시 및 은평구 고시 제2020-204호(2020.12.24.)로 고시(변경)한 신사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98-54 등 5필지

나. 사업시행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사업의 명칭 : 신사근린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의 주요내용 : 토지보상 8,366㎡(신사동 98-54 등 5필지)

라. 사업시행자

- 1) 성 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마.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당초) 고시일로부터 ~ 2021.12.31.까지
 변경) 고시일로부터 ~ 2022.12.31.까지

바. 고시방법 : 서울시보에 게재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의 지번,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공원녹지과, ☎ 351-80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토지 등의 감정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공고되는 내용과 달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의 보상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사 업 명 : 신사근린공원 조성

○사업시행자 : 은평구청장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	
1	신사동	98-54	잡종지	448	448	사회복지법인 빛과소금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119-3				
2	신사동	98-52	잡종지	270	270	사회복지법인 빛과소금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119-3				
3	신사동	98-4	잡종지	8,362	5,647	사회복지법인 빛과소금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119-3				
4	신사동	산80-5	임야	3,611	992	김동진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라졸라시 엔셀리아도로 7191				
						김동보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산프란체스코시 케어리대로 7730				
						김동운	미합중국 뉴욕주 고센시 레이크뷰 9				
						김동혜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영원시 화이트커티지로 북쪽 365				
						박정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413-87				
						한정옥	서울 성북구 아리랑로3길 34-7				
						장바울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2 현대아파트 414-1302				
5	신사동	산80-4	임야	7,670	1,007	국 (관리청 산림청)					
						이병옥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56 현대아파트 75-605				
						이병진	서울 중구 신당동 842 약수하이츠 112-1603				

은평구고시 제2021 - 251호

도시계획시설사업(향림근린공원)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이 건설교통부 고시 제138호(1977.7.14.)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392호(1998.12.05.)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서울시 고시 제22호(1997.2.13.)로 공원조성계획이 최초 고시되었고, 서울시 고시 제275호(2004.9.6.)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향림근린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향림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시행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9-697호(2019.5.9.)로 공고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9-103호(2019.8.16.)로 최초 고시 및 은평구 고시 제2021-19호(2021.01.28.)로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472-2 등 26필지

나. 사업시행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사업의 명칭 : 향림근린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의 주요내용 : 토지보상 21,453㎡(불광동 472-2 등 26필지)

라. 사업시행자

- 1) 성 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마.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당초 : 고시일로부터 ~ 2021.12.31.
- 변경 : 고시일로부터 ~ 2022.12.31.

바. 고시방법 : 서울시보에 게재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의 지번,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공원녹지과, ☎ 351-80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토지 등의 감정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공고되는 내용과 달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의 보상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사업명 : 향림근린공원 조성
☐ 사업시행자 : 은평구청장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 의권리	
1	불광동	472-2	전	1,359	1,185	윤효선	고양시 일산동구 노루목로 79, 404동 901호(장항동 호수마을)				
2	불광동	산138-5	임야	1,091	916	권희철	춘천시 후석로 325 102동 1106호(후평동, 춘천더샵아파트)				
3	불광동	472	전	532	532	윤효선	고양시 일산동구 노루목로 79, 404동 901호(장항동 호수마을)				
4	진관동	산56-2	임야	62	62	권희철	춘천시 후석로 325 102동 1106호(후평동, 춘천더샵아파트)				
5	진관동	산56-3	임야	669	669	권희철	춘천시 후석로 325 102동 1106호(후평동, 춘천더샵아파트)				
6	불광동	산137-3	임야	648	612	박상복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205번길 31(삼송동)	이몽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32-121	근저당권	
7	불광동	472-1	전	1,074	1,046	권희철	춘천시 후석로 325 102동 1106호(후평동, 춘천더샵아파트)	서울특별 시 (은평구청)		압류	
8	불광동	476-1	대지	417	39	권희철	춘천시 후석로 325 102동 1106호(후평동, 춘천더샵아파트)	서울특별 시		압류	
9	불광동	475-1	대지	38	38	전기선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94길 5-11(불광동)				
						김은숙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94길 5-11(불광동)				
10	불광동	산138-1	임야	11,448	2,573	주식회사 서안주택	서울시 은평구 불광로1길 6, A동 201호(대조동)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 의권리	
11	불광동	산149	임야	3,273	1,637	호부전	서울시 성북구 숭례로25길 28, 117동 104호(정릉풍림아이원아파트)				
						이종민	서울시 노원구 마들로 31, 118동 2703호(월계동, 그랑빌아파트)				
						호경수	서울시 은평구 증산로21길 35, 2층동 201호(신사동)				
12	불광동	산156-2	임야	1,414	823	차인철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1길 31, 101동 904호(한신희플러스아파트)				
13	불광동	산157	임야	397	397	권혁준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12, A동 4302호(갤러리아몰리스)				
14	불광동	44-1	전	152	152	최서환	서울시 서초구 나루터로4길 49, 334동 1003호(신반포17차아파트)				
15	불광동	44-3	전	106	106	최서환	서울시 서초구 나루터로4길 49, 334동 1003호(신반포17차아파트)				
16	불광동	산19-7	임야	2	2	오수호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88가길 12(불광동)				
17	불광동	산19-8	임야	19	19	오수호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88가길 12(불광동)				
18	불광동	산19-3	임야	99	98	오승준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38길 21, 4층 401호(불광동)				
19	불광동	산19-5	임야	627	627	양숙자	경기도 파주시 쇠재로30, 709동 1306호(금촌동, 서원마을)				
						천진아	경기도 파주시 쇠재로30, 709동 1306호(금촌동, 서원마을)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 의권리	
20	불광동	산18	임야	10,512	1,588	서혜자	대구시 동구 송라로10길 34, 103동 202호(화성파크드림 이스트밸리)				
						서정자	대구시 수성구 지범로46길 43, 106동 503호(보성송정아파트)				
						서경자	대구시 수성구 용학로25안길 17, 103호(지산동)				
						지병곤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20, 112동 505호(계양아파트)				
						지운석	대구시 수성구 용학로25안길 17, 103호(지산동)				
						정성광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13, 1826호(평촌아이파크아파트)				
						한승만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165, 1406호(논현동, 마일스디오빌)				
						오원선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조함해안로 59-6				
						이정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375-57(마두동)				
21	불광동	산6-1	임야	790	790	이기진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266, 113동 1706호(태영아파트)				
22	불광동	산6-8	임야	750	750	강진욱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20, 409동 1202호(현대아파트)				
23	불광동	산6-10	임야	7,269	3,170	유재운	서울시 중구 소공로 46, A동 701호(쌍용남산플레이티아파 트)				
						유재훈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99, 204동 702호(경희궁자이아파트)				
						유혜경	서울시 용산구 장문로27, 6동 405호(청화아파트)				
						유혜원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345, 207동 2901호 (헬리오시티아파트)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구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 의권리	
24	불광동	43-2	대지	1,620	159	유지선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99, 204동 702호(경희궁자이아파트)				
						유웅선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99, 204동 702호(경희궁자이아파트)				
						이주형	서울시 용산구 장문로27, 6동 405호(정화아파트)				
						이주윤	서울시 용산구 장문로27, 6동 405호(정화아파트)				
						유원선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369-1 현대아파트 25동 302호				
						유준선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369-1 현대아파트 25동 302호				
						최정수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345, 207동 2901호(헬리오시티아파트)				
						유재훈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99, 204동 702호(경희궁자이아파트)				
						최정원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345, 207동 2901호(헬리오시티아파트)				
						유혜경	서울시 용산구 장문로27, 6동 405호(정화아파트)				
						유재운	서울시 중구 소공로 46, A동 701호(쌍용남산플래티늄아파 트)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 의권리	
25	불광동	43-1	전	94	94	오흥석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38길 13(불광동)				
						오희택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고재길 22				
						오윤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73, 1022동 102호(판교원마을)				
						오용택	경기도 시흥시 배곧1로 27-16, 204동 106호(한라비발리캠퍼스2차)				
26	불광동	43-12	임야	9,988	3,369	오흥석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38길 13(불광동)				
						오희택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고재길 22				
						오윤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73, 1022동 102호(판교원마을)				
						오용택	경기도 시흥시 배곧1로 27-16, 204동 106호(한라비발리캠퍼스2차)				

물 건 조 서

○사업명 : 향림근린공원 조성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1	불광동 산19-5	고물상	컨테이너, 시설물	1식	양숙자	경기도 파주시 쇠재로30, 709동 1306호(금촌동, 서원마을)	
					천진아	경기도 파주시 쇠재로30, 709동 1306호(금촌동, 서원마을)	

은평구고시 제2021-252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이 건설교통부 고시 제138호(1977.7.14.)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459호(1995.1.7.)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건설교통부 고시 제286호(1989.6.20.)로 공원조성계획이 최초 고시되었고, 서울시 은평구 고시 제2018-2호(2018.1.4.)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봉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봉산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시행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9-626호(2019.4.25.)로 공고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9-89호(2019.7.18.)로 최초 고시 및 은평구 고시 제2020-206호(2020.12.24.)로 고시한 봉산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산131-21 등 7필지

나. 사업시행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사업의 명칭: 봉산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의 주요내용: 토지보상 36,010㎡(구산동 산131-21 등 7필지)

라. 사업시행자

- 1) 성 명: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2) 주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마.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당초 : 고시일로부터 ~ 2021.12.31.
- 변경 : 고시일로부터 ~ 2022.12.31.

바. 고시방법 : 서울시보에 게재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의 지번,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공원녹지과, ☎ 351-80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토지 등의 감정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공고되는 내용과 달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의 보상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사 업 명 : 봉산도시자연공원 조성

○ 사업시행자 : 은평구청장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	
1	구산동	산131-21	임야	33	33	김진영	서울 성북구 돈암동 609-1 한신아파트 111-1005				
2	구산동	산136-5	임야	27,990	27,990	한충국	서울 은평구 구산동 308-4				
						변수연	서울 은평구 구산동 308-98				
						심형보	서울 은평구 구산동 308-44				
						김정길	서울 은평구 구산동 308-94				
						차봉천	서울 은평구 갈현동 465-12 유진연립 에이동 103호				
						박성숙	서울 종로구 송월길 118-59(행촌동)				
						박석호	서울 종로구 송월길 118-59(행촌동)				
						김영선	서울 은평구 통일로82나길9, 401호(불광동 우성빌라)				
						김정배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27길 20-5(구산동)				
3	구산동	산136-16	임야	69	69	한충국	서울 은평구 구산동 308-4				
						변수연	서울 은평구 구산동 308-98				
						심형보	서울 은평구 구산동 308-44				
						김정길	서울 은평구 구산동 308-94				
						차봉천	서울 은평구 갈현동 465-12 유진연립 에이동 103호				
						박성숙	서울 종로구 송월길 118-59(행촌동)				
						박석호	서울 종로구 송월길 118-59(행촌동)				
						김영선	서울 은평구 통일로82나길9, 401호(불광동 우성빌라)				
						김정배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27길 20-5(구산동)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관리	
4	구산동	산138-2	임야	435	435	김형규	서울 은평구 구산동 355-98 동익파크아파트 2-801				
5	구산동	산139-1	임야	6,401	6,401	김학균	서울 은평구 구산동 355-98 동익파크아파트 2-801				
6	증산동	산18-2	임야	1,886	313	한양조씨가산공파종 회	서울 은평구 증산동 119-4				
7	증산동	산24-15	임야	769	769	최용근	서울 은평구 증산동 208-22				
						양정분	서울 은평구 증산동 208-22				
						최숙진	서울 도봉구 공릉동 366-19				
						최왕진	서울 은평구 증산동 208-22				
						최여진	서울 은평구 증산동 208-22				
						최유진	서울 은평구 증산동 208-22				
						최덕진	서울 은평구 증산동 208-22				

물 건 조 서

○사업명 : 봉산도시자연공원 조성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1	구산동 산138-2	수목	(주목, B8~15)	약 100주	김형규	서울 은평구 구산동 355-98 동익파크아파트 2-801	
2	구산동 산138-2	관리 시설물	웬스(철골)	약 10m	김형규	서울 은평구 구산동 355-98 동익파크아파트 2-801	
3	구산동 산139-1	수목	(주목, B8~15)	약 900주	김학균	서울 은평구 구산동 355-98 동익파크아파트 2-801	
4	구산동 산139-1	관리 시설물	웬스(철골)	약 200m	김학균	서울 은평구 구산동 355-98 동익파크아파트 2-801	
			출입문(철골)	1개소			
			창고(목조)	1개소			
			배수로(석조)	1식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5	구산동 산136-5	수목	교목 31주 관목 288주	1식	김정배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27길 20-5(구산동)	
6	구산동 산136-5	관리 시설물	원두막	1개소	김정배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27길 20-5(구산동)	
			계단	1개소			

양천구고시 제2021-232호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서울특별시양천구고시 제2021-146(2021.09.09.)호로 고시되고, 서울특별시양천구고시 제2021-200(2021.11.25.)호로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2동 129-9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 그 내용을 「주택법」 제15조제6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양 천 구 청 장

1. 사업명 : 양천구 신정2동 129-9번지 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가. 성 명 : (주)무궁화신탁 대표 권준명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3. 사업시행개요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2동 129-9번지 외 4필지

나.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다. 대지면적 : 1,554.00㎡

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45세대, 근린생활시설(복리시설) 1호

마. 건립규모 : 지하1층/지상7층

－ 건축면적 : 632.77㎡

－ 건 폐 율 : 40.72%

－ 연 면 적 : 4,205.56㎡

－ 용 적 륜 : 199.13%

4.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단위 : ㎡)

공급 구분	주택의 형 태	동수	세대수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			
				38.09	53.66	59.94	59.98
분양	아파트	1	45	12	5	14	14

5. 사업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2.08.31.

6. 사업계획 변경 내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업주체	주식회사 쓰리씨(대표 윤병남) (법인번호 : 110111-5056117)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97길 13, 2층(역삼동)	주식회사 무궁화신탁(대표 권준명) (법인번호 : 110111-286741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7. 의제 처리사항 : 「주택법」 제19조제1항 각호 관련 사항

구로구고시 제2021 - 278호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77호(1993. 3.18.)로 결정된 구로구 온수동 53번지 일대 지하철 7호선(온수역)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철도)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구로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명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철도	도시철도 (온수역)	온수동 53번지일대	7,735	(증) 61	7,796	서고시 제1993-77호 (1993.3.18.)	에스컬레이터 설치

나. 변경사유서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변 경 사 유
도시철도 (온수역 6번 출입구)	- 면적변경 (당초)7,735㎡ → (변경)7,796㎡ (증61㎡) - 에스컬레이터 신설	도시철도 이동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요구(장애인단체 등)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약자와 지하철 이용시민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7호선 온수역 6번 출입구 측에 에스컬레이터 2대를 설치하고자 함.

2. 지형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3. 열람장소 :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구로구 도시계획과(☎860-2280), 서울교통공사 토목사업소(☎6110-5261)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동작구고시 제2021-316호

동작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0호(2012. 1. 12)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동작구고시 제2014-18호(2014. 2. 20), 동작구고시 제2014-91호(2014. 9. 4), 동작구고시 제2016-21호(2016. 3. 10), 동작구고시 제2018-43호(2018. 6. 14.) 및 동작구고시 제2019-36호(2019. 5. 9)로 정비구역(경미한)변경 지정 된 동작구 동작동 102번지 일대 동작1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경미한)변경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동 작 구 청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동작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동작1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동작동 102번지 일대	20,667.7	-	20,667.7	-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용도 지역	계		20,667.7	-	20,667.7	100.0	-
	자연녹지지역		302.0	-	302.0	1.46	-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926.4	-	1,926.4	9.32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0,331.3	-	10,331.3	49.99	-
		제2종일반주거지역	8,108.0	-	8,108.0	39.23	-

2)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0,667.7	-	20,667.7	10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4,008.8	-	4,008.8	19.40	
	도 로	1,705.0	-	1,705.0	8.25	
	근린공원	2,200.8	-	2,200.8	10.65	
	공공공지	103.0	-	103.0	0.50	
택 지 (획 지)	소 계	16,658.9	-	16,658.9	80.60	
	획 지1	16,191.9	-	16,191.9	78.34	
	획 지2	253.0	-	253.0	1.22	
	획 지3	214.0	-	214.0	1.04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1	6~17.4	국지 도로	705 (122)	동작동 102-18	동작동 102-35	일반 도로	-	-	-
변경	소로	1	1	6~17.4 (9.3~11.1)	국지 도로	705 (122)	동작동 102-18	동작동 102-35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1	6~7	국지 도로	55.6	동작동 332-4	동작동 102	일반 도로	-	-	-

※ ()는 구역 내 연장 및 폭원임

(1)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1-1	소로1-1	- 구역내 폭원 표기 6~17.4m → 6~17.4m(9.3~11.1m)	• 미표기된 정비구역내 개설도로폭원을 명확히 하고자 정비 구역내 개설도로에 대하여 도로폭원을 명기함

나) 공원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현충	근린공원	동작동 산30-7일대	1,106,402.2 (2,200.8)	-	1,106,402.2 (2,200.8)	건설부187 (1962.12.20.)	-

※ ()는 구역 내 면적

다)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	공공공지	동작동 산89-1일대	103.0	-	103.0	-	-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시설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법 정
			기정	변경	변경후	
공 공 이 용 시 설	관리사무소	획지1	134.38	-	134.38	주1)
	경로당		172.69	-	172.69	면적기준 삭제
	어린이놀이터		567.00	-	567.00	면적기준 삭제
	주민공동시설		541.94	-	541.94	기준변경 주2)
	작은도서관		116.42	-	116.42	해당없음
	어린이집		230.88	-	230.88	21×4.29㎡ = 90.09
	근린생활시설		571.65	-	571.65	세대당 6㎡ = 2,196
	도정법 시행령 제13조제4호제3목(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 주1) $10 \text{㎡} + (\text{세대수} - 50) \times 0.05 \text{㎡} = 25.8 \text{㎡}$ ※ 주2) 세대당 $2.5 \text{㎡} \times 1.25 = 1,143.75 \text{㎡}$

주민공동시설 = 주민공동시설+경로당+작은도서관+주민운동시설+어린이집+어린이놀이터 = 1,628.93㎡

5)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변경없음)

결정구분	구역구분		획지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신축	철거 이주	
기정	동작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0,667.7	획지1	16,191.9	동작동 102번지 일대	89	-	-	89	-	-

나) 건축시설계획(변경없음)

결정구분	획지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동작1 주택 재건축 정비 구역	20,667.7	획지1	16,191.9	동작동 102번지 일대	공동주택	30 이하	236.0 이하	45m 이하 (최고15층) 평균 13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변경없음)			○ 주택공급계획(세대수)																					
			<table><tr><td>구 분</td><td>세대수</td><td>비율(%)</td></tr><tr><td>합 계</td><td>366</td><td>100.0</td></tr><tr><td>60㎡이하</td><td>88</td><td>24.04</td></tr><tr><td>60~85㎡이하</td><td>278</td><td>75.96</td></tr><tr><td>85㎡초과</td><td>-</td><td>-</td></tr></table>							구 분	세대수	비율(%)	합 계	366	100.0	60㎡이하	88	24.04	60~85㎡이하	278	75.96	85㎡초과	-	-
			구 분	세대수	비율(%)																			
			합 계	366	100.0																			
			60㎡이하	88	24.04																			
			60~85㎡이하	278	75.96																			
			85㎡초과	-	-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100%																								
○ 임대주택 건설계획 - 해당사항 없음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도시철도(4호선)변 :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상 ○ 인접대지 경계선 및 남측·서측도로 : 3~6m																					
기타사항(변경없음)			○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2m, 3m																					

다)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 변경없음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 (구역면적)	대 지 (확 지)	신설 정비기반시설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대지(확지)내 용도폐지되는기존기반시설국· 공유지
	20,667.7㎡	16,658.9㎡	4,008.8㎡	164.7㎡	595.8㎡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대지(확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 국·공유지 $= 4,008.8\text{㎡} - 164.7\text{㎡} - 595.8\text{㎡} = 3,248.3\text{㎡}$ (구역면적대비 15.72%)				
계획(기준) 용적률	○ 계획용적률 : 190% 이하				
개발가능 용 적 률 산 정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times$ (1+1.3 α) $= 190 \times (1 + 1.3 \times 0.19499)$ $= 238.16\%$ α = 공공시설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3,248.3\text{㎡} / 16,658.9\text{㎡} = 0.19499$ ○ 정비계획 용적률 = 236.00% < 238.16%				

6)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없음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동작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현황) 185세대 계획) 366세대 증가) 181세대	-

2. 지형도면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전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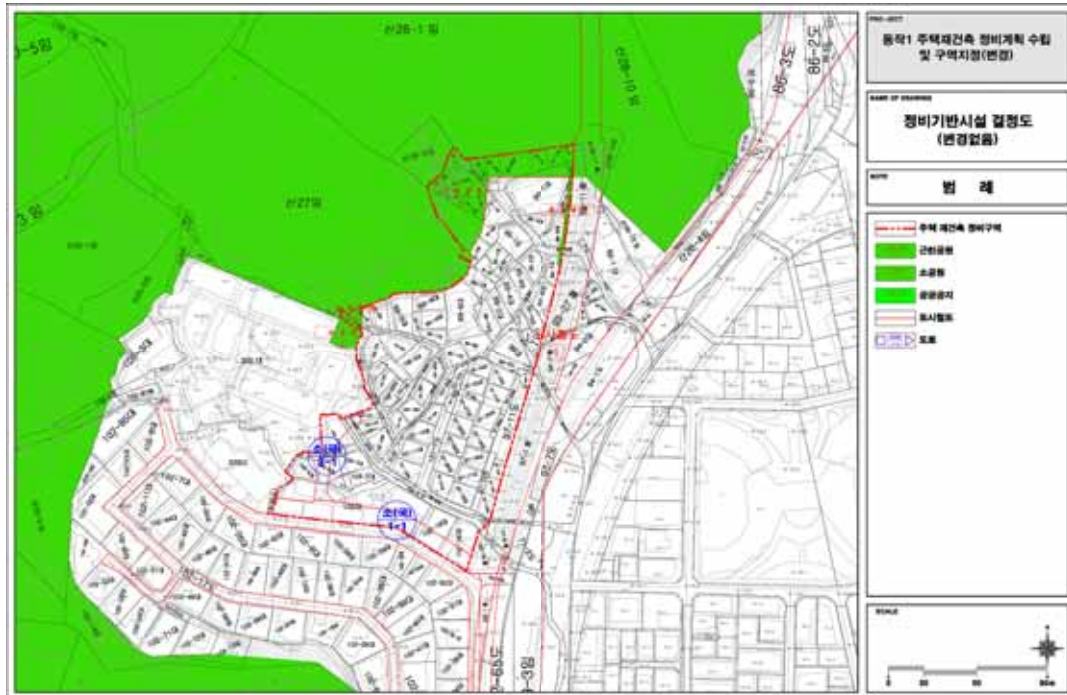
3. 관계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동작구 주택과(☎820-9776)에 관련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 정비기반시설 결정도(변경없음)



동작구고시 제2021-318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동작구 고시 제2017-77호(2017.9.28.)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동작구 고시 제2021-257호(2021.10.28.)로 실시계획(변경)인가된 상도동 159 - 250번지 일원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상도근린공원(일부) 및 소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변경인가를 위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공원녹지과(02 - 820 - 116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2월 30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명 칭 : 상도근린공원(일부) · 소공원 조성사업

나.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시행지 : 상도근린공원(일부) - 동작구 상도동 산 65-116번지 일대
소공원 - 동작구 상도동 204-192번지 일대 (변경없음)
- 면 적 : 상도근린공원(일부) - 4,746㎡
소공원 - 1,390㎡ (변경없음)
- 내 용 :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기반시설(공원) 조성 (설계도서 변경)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시 행 자 : 상도역지역주택조합 외1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 36길 4(상도동)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1. 12. 31.까지 (변경없음)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공공시설 준공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공원녹지과(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820-11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악구고시 제2021 - 189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369호(1980.11.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관악구고시 제 2019-66호(2019.06.20.)」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되고, 「관악구고시 제2020-51호(2020.04.09.)」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관악산도시자연공원(봉천동 245번지 일대)」에 대하여
2.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99조,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합니다.
3. 관계서류는 관악구청 공원녹지과(☎02-879-652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2월 30일

관 악 구 청 장

가. 사업위치 : 관악구 봉천동 245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명 칭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관악산도시자연공원(봉천동 245번지 일대)
- 3) 사업내용 :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등 공원조성
- 4) 면 적 : 12,556㎡

다. 사업시행자 : 관악구청장(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라.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마. 사업기간(변경)

- 기 정 : 2019. 06. 20.~2021. 12. 31.
- 변 경 : 2019. 06. 20.~2024. 06. 19.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변경) : 붙임참조

사. 공고방법 : 서울시보 및 서울시·관악구 홈페이지 게재

아. 열람기간 : 공고(시보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자.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관악구청 공원녹지과(☎02-879-6524)

차. 기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열람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조서

○ 사 업 명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관악산도시자연공원(봉천동 245번지 일대)

연번	소재지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면적	성 명	공유 지분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6필지		13,316	12,556							
1	봉천동 산40-2	임	9,476	9,476	서울특별시	단독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2	봉천동 246-1	전	579	579							
3	봉천동 246-0	전	860	860							
4	봉천동 245-0	전	1,183	1,183							
5	봉천동 256-0	전	914	지분 323/914							
6	봉천동 257-0	전	304	지분 135/304							

관악구고시 제2021 - 190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369호(1980.11.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관악구고시 제 2019-97호(2019.09.05.)」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되고, 「관악구고시 제2020-5호(2020.01.09.)」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악12)」에 대하여
2.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99조,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합니다.
3. 관계서류는 관악구청 공원녹지과(☎02-879-652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2월 30일

관 악 구 청 장

가. 사업위치 : 관악구 남현동 497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명 칭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악12)
- 3) 사업내용 :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등 공원조성
- 4) 면 적 : 13,347㎡

다. 사업시행자 : 관악구청장(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라.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마. 사업기간(변경)

- 기정 : 2019. 09. 05.~2021. 12. 31.
- 변경 : 2019. 09. 05.~2024. 09. 04.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변경) : 불임참조

사. 공고방법 : 서울시보 및 서울시·관악구 홈페이지 게재

아. 열람기간 : 공고(시보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자.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관악구청 공원녹지과(☎02-879-6524)

차. 기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열람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조서

○ 사 업 명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악12)

연번	소재지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면적	성 명	공유 지분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6필지		13,347	13,347							
1	남현동 497	임	116	116	서울특별시	단독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2	남현동 산57-53	임	530	530							
3	남현동 산57-52	임	4,141	4,141							
4	남현동 산57-54	임	8,560	8,560							
5	남부순환로260길 132-10	무허가 건물									
6	남부순환로 260길 132-8	무허가 건물									

관악구고시 제2021 - 191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369호(1980.11.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관악구고시 제 2019-99호(2019.09.05.)」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된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관악산도시자연공원(봉천동 247-2번지 일 대)」에 대하여
2.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99조,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합니다.
3. 관계서류는 관악구청 공원녹지과(☎02-879-652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2월 30일

관 악 구 청 장

가. 사업위치 : 관악구 봉천동 247-2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명 칭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관악산도시자연공원(봉천동 247-2번지 일대)
- 3) 사업내용 :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등 공원조성
- 4) 면 적 : 1,693㎡

다. 사업시행자 : 관악구청장(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라.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마. 사업기간(변경)

- 기정 : 2019. 09. 05.~2021. 12. 31.
- 변경 : 2019. 09. 05.~2024. 09. 04.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변경) : 불임참조

사. 공고방법 : 서울시보 및 서울시·관악구 홈페이지 게재

아. 열람기간 : 공고(시보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자.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관악구청 공원녹지과(☎02-879-6524)

차. 기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열람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조서

○ 사 업 명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관악산도시자연공원(봉천동 247-2번지 일대)

연번	소재지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면적	성 명	공유 지분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1,693	1,693							
1	봉천동 247-2	대	331	331	서울특별시	단독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2	봉천동 247-4	전	1,137	1,137							
3	봉천동 247-3	전	225	225							

관악구고시 제2021 - 192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369호(1980.11.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관악구고시 제 2019-108호(2019.10.04.)」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되고, 「관악구고시 제2019-142호(2019.12.26.)」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악11-10)」에 대하여
2.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99조,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합니다.
3. 관계서류는 관악구청 공원녹지과(☎02-879-652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2월 30일

관 악 구 청 장

가. 사업위치 : 관악구 봉천동 산24-30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명 칭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악11-10)
- 3) 사업내용 :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등 공원조성
- 4) 면 적 : 6,010㎡

다. 사업시행자 : 관악구청장(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라.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마. 사업기간(변경)

- 기 정 : 2019. 10. 04.~2021. 12. 31.
- 변 경 : 2019. 10. 04.~2024. 10. 03.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변경) : 붙임참조

사. 공고방법 : 서울시보 및 서울시·관악구 홈페이지 게재

아. 열람기간 : 공고(시보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자.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관악구청 공원녹지과(☎02-879-6524)

차. 기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열람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조서

○ 사 업 명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악11-10)

연번	소재지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면적	성 명	공유 지분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6필지		6,010	6,010							
1	봉천동 산24-30	임	258	258	서울특별시	단독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2	봉천동 산24-29	임	271	271							
3	봉천동 산24-35	임	218	218							
4	봉천동 산24-8	임	274	274							
5	봉천동 산24-39	임	4,893	4,893							
6	봉천동 산24-40	임	96	96							

관악구고시 제2021 - 193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369호(1980.11.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관악구고시 제 2019-107호(2019.10.04.)」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된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악11-9)」에 대하여
2.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99조,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합니다.
3. 관계서류는 관악구청 공원녹지과(☎02-879-652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2월 30일

관 악 구 청 장

가. 사업위치 : 관악구 봉천동 산46-1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명 칭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악11-9)
- 3) 사업내용 :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등 공원조성
- 4) 면 적 : 2,479㎡

다. 사업시행자 : 관악구청장(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라.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청(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마. 사업기간(변경)

- 기정 : 2019. 10. 04.~2021. 12. 31.
- 변경 : 2019. 10. 04.~2024. 10. 03.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변경) : 붙임참조

사. 공고방법 : 서울시보 및 서울시·관악구 홈페이지 게재

아. 열람기간 : 공고(시보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자.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관악구청 공원녹지과(☎02-879-6524)

차. 기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열람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조서

○ 사 업 명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악11-9)

연번	소재지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면적	성 명	공유 지분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5필지		2,479	2,479							
1	봉천동 산46-1	임	1,516	1,516	서울특별시	단독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2	봉천동 산24-34	임	192	192							
3	봉천동 산24-33	임	268	268							
4	봉천동 산24-32	임	248	248							
5	봉천동 산24-31	임	255	255							

관악구고시 제2021 - 194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369호(1980.11.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19-210호(2019.07.04.)」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변경)된 관악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2. 「관악구고시 제2019-73호(2019.06.27.)」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관악구고시 제2019-146호(2019.12.26.)」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업(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악11-11))』에 대해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관악구공고 제2021-2132호(2021.12.09.)」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를 완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3. 사업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할 예정이나, 이해관계인 및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4. 관계서류는 관악구청 공원녹지과(☎02-879-652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2월 30일

관 악 구 청 장

가. 사업위치 : 관악구 봉천동 산35-2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명 칭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악11-11)
- 3) 사업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및 공원조성
- 4) 면 적 : 5,182㎡

다. 사업시행자 : 관악구청장(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라.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마. 사업기간(변경)

- 기 정 : 2019. 06. 27.~2021. 12. 31.
- 변 경 : 2019. 06. 27.~2024. 06. 26.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불임참조

사. 공고방법 : 서울시보, 서울시·관악구 홈페이지 게재

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악구청 공원녹지과(☎02-879-65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사 업 명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악11-11)]

구 번	소재지	지 목	면 적(㎡)		실 이용 사항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면적		성 명	공유 지분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5,182	5,182								
1	봉천동 산24-15	임	76	76	임	신0호	단독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역14가길 ***-***	하* 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	근저당설정	
2	봉천동 산24-38	임	225	225	임	박0호	단독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				
3	봉천동 산24-36	임	91	91	임	영00산췌	단독	서울시 강서구 남부순환로19길 **				
4	봉천동 산35-2	임	3,031	3,031	임	현대000환췌	단독	서울 강남구 역삼동 ****-***				
5	봉천동 242-0	전	686	686	전	우0인	단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				
6	봉천동 산35-8	임	1,073	1,073	임	현대000환췌	단독	서울 강남구 역삼동 ****-***				

관악구고시 제2021 - 195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369호(1980.11.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19-210호(2019.07.04.)」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변경)된 관악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2. 「관악구고시 제2020-20호(2020.02.13.)」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업(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악11))』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관악구공고 제2021-2133호(2021.12.09.)」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를 완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3. 사업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할 예정이나, 이해관계인 및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4. 관계서류는 관악구청 공원녹지과(☎02-879-652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2월 30일

관 악 구 청 장

가. 사업위치 : 관악구 봉천동 산58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명 칭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악11)
- 3) 사업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및 공원조성
- 4) 면 적 : 8,950㎡

다. 사업시행자 : 관악구청장(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라.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마. 사업기간(변경)

- 기정 : 2020. 02. 13.~2021. 12. 31.
- 변경 : 2020. 02. 13.~2025. 02. 12.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불임참조

사. 공고방법 : 서울시보, 서울시·관악구 홈페이지 게재

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악구청 공원녹지과(☎02-879-65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사 업 명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악11)]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면적	성명	공유 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19필지		8,950	8,950							
	봉천동 산58-0	임	581	581	**이씨***파*** ****문중	단독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로 ** *****				
	봉천동 산58-3	임	2,791	2,791							
	봉천동 산58-1	임	396	396							
	봉천동 293-1	전	102	102	송*훈	단독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				
	봉천동 292-3	전	122	122	한*구	1/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30-12 *****				
					이*정	1/3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771-1 *****				
					임*용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97번길 56 *****				
	봉천동 282-1	전	66	66	김*국	단독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				
	봉천동 283-4	대	152	152	대한불교 조계종 참나선원	단독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로**				
		건축물	(108.24)	(108.24)							
	봉천동 283-2	잡	175	175	안*남	단독	경기도 평택시 이충로 16 *****				
	봉천동 283-3	잡	248	248	김 *	단독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현로 67 *****				
	봉천동 226-1	천	99	99	최현섭	단독	주소불명				
	봉천동 261-0	전	354	354	변*구	단독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1로 80 *****				

연번	소재지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면적	성 명	공유 지분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봉천동 262-1	답	443	443	김*봉	단독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				
	봉천동 254-0	전	1,091	1,091	양*희	단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2길 *****				
	봉천동 산43-3	임	145	145	유*영	단독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				
	봉천동 산43-4	임	307	307	권*정	1/3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땡끝해안로 *****				
					권*정	1/3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507번길 57 *****				
					권*준	1/3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507번길 57 *****				
	봉천동산43-5	임	202	202	김*규	단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				
	봉천동 산43-2	임	509	509	배*진	1/6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1196번길 *****				
					배*욱	1/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73번길 33 *****				
					배*열	1/6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32 *****				
					배*열	1/6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557번길 *****				
					배*열	1/6	전라남도 광양시 광영로 141 *****				
					배*열	1/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73번길 33 *****				
	봉천동 산43-6	임	126	126	배*진	1/6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1196번길 *****				

연번	소재지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면적	성 명	공유 지분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배*옥	1/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73번길 33 *****				
					배*열	1/6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32 *****				
					배*열	1/6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557번길 *****				
					배*열	1/6	전라남도 광양시 광영로 141 *****				
					배*열	1/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73번길 33 *****				
	봉천동 248-2	대	1,041	1,041	염*섭	단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				

관악구고시 제2021 - 197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369호(1980.11.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관악구고시 제 2020-19호(2020.2.6.)」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악8)]』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관악구공고 제2021-2128호(2021.12.9.)」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를 완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2. 사업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할 예정이나, 이해관계인 및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관악구청 공원녹지과(☎02-879-652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2월 30일

관 악 구 청 장

가. 사업위치 : 관악구 신림동 산24-8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명 칭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악8)]
- 3) 사업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보상
- 4) 면 적 : 6,035㎡

다. 사업시행자 : 관악구청장(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라.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청(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마. 사업기간(변경)

- 기정 : 2020. 2. 6. ~ 2021. 12. 31.
- 변경 : 2020. 2. 6. ~ 2024.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불임참조

사. 고시방법 : 서울시보, 서울시·관악구 홈페이지 게재

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악구청 공원녹지과(☎02-879-6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사 업 명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악8)]

연번	소재지	지목	면 적(㎡)		현황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면적		성 명	공유 지분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6,035	6,035								
1	신림동 산24-8	임	5,072	5,072	임	안동김씨 *****	단독	서울시 강북구 ***				
2	신림동 산24-5	임	572	572	임	안동김씨 *****	단독	서울시 강북구 ***				
3	신림동 244-185	임	98	98	임	홍*진	단독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4	신림동 244-184	임	92	92	임	전*진	단독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5	신림동 244-186	임	201	201	임	염*순	43/61	서울시 관악구 대학7길 ***				
						최*화	18/61	서울시 관악구 대학7길 ***				

관악구고시 제2021 - 198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369호(1980.11.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관악구고시 제 2019- 52호(2019.5.9.)」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관악구고시 제2020-39호(2020.3.26.)로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악9)]」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관악구공고 제 2021-2129호(2021.12.9.)」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를 완료하고,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고시 합니다.
2. 사업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할 예정이나, 이해관계인 및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관악구청 공원녹지과(☎02-879-652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2월 30일

관 악 구 청 장

가. 사업위치 : 관악구 신림동 211-2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명 칭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악9)]
- 3) 사업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
- 4) 면 적 : 26,872㎡

다. 사업시행자 : 관악구청장(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라.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마. 사업기간(변경)

- 기정 : 2019. 5. 9. ~ 2021. 12. 31.
- 변경 : 2019. 5. 9. ~ 2023.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변경) : 붙임참조

사. 고시방법 : 서울시보 및 서울시·관악구 홈페이지 게재

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악구청 공원녹지과(☎02-879-6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사 업 명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악9)]

연번	소재지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면적	성 명	공유 지분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26,872	26,872							
1	신림동 211-2	전	17	17	서울특별시	단독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2	신림동 211-1	전	4	4	정○옥	단독	서울 관악구 봉천동				
3	신림동 산32-26	임	6,250	6,250	임○원	단독	서울 서대문 홍제동	황○성	서울 양천구 신정동	근저당설정	
								곽○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근저당설정	
								오○자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근저당설정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구분지상권 설정	
4	신림동 산32-3	임	1,343	1,343	서울특별시	단독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5	신림동 산32-19	임	826	826							
6	신림동 산32-4	임	6,160	6,160							

연번	소재지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면적	성 명	공유 지분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7	신림동 산32-21	임	2,640	2,640							
8	신림동 산32-2	임	6,962	6,962	서울특별시	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이○준	1/5	서울 강남구 대치동				
9	신림동 205-12	임	14	14	김○성	단독	서울 관악구 신림동				
10	신림동 산30-10	임	102	102	서울특별시	15,011 /1674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박○섭	1729 /16740	미합중국 텍사스주				
11	신림동 산30-3	임	2,554	2,554	서울특별시	15,011 /1674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박○섭	1729 /16740	미합중국 텍사스주				

서초구고시 제2021 - 278호

도시계획시설사업(우면산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08.06)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74호(2021.10.21)로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산33-2번지 일대의 우면산근린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서초구 공고 제2021-2222(2021.12.16.)호로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위한 열람공고를 완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하며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82)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021년 12월 30일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산33-2번지 등 5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 2) 명 칭
 - 변 경 전: 우면산 도시자연공원 조성
 - 변 경 후: 우면산근린공원 조성
- 3) 사업내용
 - 변 경 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
 - 변 경 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다. 사업의 면적: 11,050㎡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시 행 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2)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번지

마. 시설관리청: 서울특별시청

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1) 변 경 전: 실시계획인가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2) 변 경 후: 실시계획인가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3) 변경사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별첨조서

아. 고시방법: 서울시보 및 서초구청 홈페이지 게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명: 2019년 도시계획시설(우면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 명	주 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계	5필지		11,050	11,050						
1	방배동 산33-2	임	9,980	9,980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1			
2	방배동 산31-1	임	520	520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1			
3	방배동 산32-2	임	200	200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1			
4	서초동 산139-6	임	130	130	이강*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74-2 세종빌라 *동 *호)	1/2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1/4			
					백제불교초전법 륜성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산***	1/4			
5	서초동 산141-13	임	220	220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1			

서초구고시 제2021 - 279호

도시계획시설사업(말죽거리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9)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21-396호(2021.7.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작성 고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산20-2번지 일대의 말죽거리근린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계획시설사업(말죽거리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보상사업을 시행하고자 서울시 서초구 고시 제2020-33(2020.2.27.)호로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70)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021년 12월 30일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 1) 변 경 전: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산20-2 등 14필지
- 2) 변 경 후: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산20-2 등 36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 2) 명 칭: 말죽거리근린공원 조성
- 3) 내 용
 - 변 경 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
 - 변 경 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다. 사업의 면적

- 1) 변 경 전: 21,808㎡(※도시계획시설공원내 사유토지 보상면적)
- 2) 변 경 후: 130,020.3㎡

[※서울시고시 제2020-254호(2021.6.29.)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도시계획시설공원)면적]

라. 주요 변경사유: 도시계획시설공원 부지내 사유토지 보상 완료에 따른 공원 조성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시 행 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2)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번지

바. 시설관리청: 서울특별시청

사.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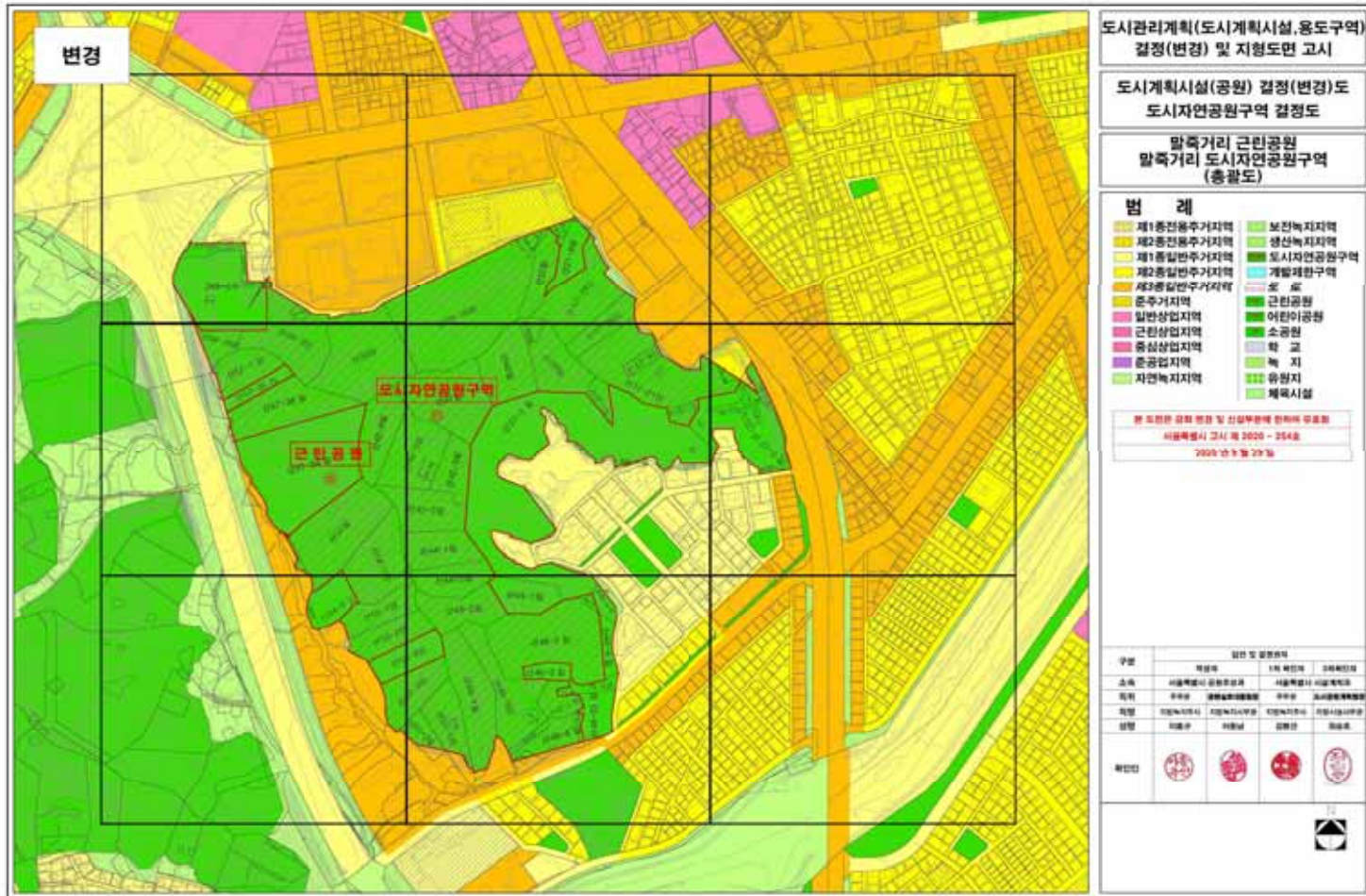
- 1) 변 경 전: 실시계획인가고시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2) 변 경 후: 실시계획인가고시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아. 고시방법: 서울시보 및 서초구청 홈페이지 게재

자.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서초구청 공원녹지과(☎2155-68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원토지 조서]

연번	위치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도시계획시설(공원)	소유자	비고
1	서초구 서초동	1180-10	수도용지	123.0	128.0	국	
2	서초구 서초동	257-2	전	281.0	281.0	시	
3	서초구 서초동	258-2	전	529.0	529.0	시	
4	서초구 서초동	269-1	전	5.0	6.0	시	
5	서초구 서초동	269-4	수도용지	13,884.0	13,884.0	시	
6	서초구 서초동	269-5	임야	190.0	190.0	시	
7	서초구 서초동	367-4	답	216.0	216.0	시	
8	서초구 서초동	380-1	하천	1,396.0	1,156.8	국	
9	서초구 서초동	산21-12	임야	34.0	34.0	국	
10	서초구 서초동	산21-6	임야	2,817.0	2,817.0	국	
11	서초구 서초동	산30-17	임야	303.0	303.0	시	
12	서초구 서초동	산30-22	임야	572.0	572.0	시	
13	서초구 서초동	산30-5	임야	22.0	22.0	시	
14	서초구 양재동	105-3	잡종지	1,331.3	1,331.3	시	
15	서초구 양재동	45-2	대	637.0	599.4	시	
16	서초구 양재동	45-3	대	127.0	127.0	시	
17	서초구 양재동	45-4	대	278.0	278.0	시	
18	서초구 양재동	45-5	대	651.0	651.0	시	
19	서초구 양재동	45-6	대	631.0	631.0	시	
20	서초구 양재동	46-5	공원	378.6	378.6	시	
21	서초구 양재동	75-5	전	1,226.0	1,226.0	시	
22	서초구 양재동	산20-2	임야	9,706.0	9,370.8	시	
23	서초구 양재동	산20-3	공원	47,186.0	47,186.0	시	
24	서초구 양재동	산23	묘지	69.0	69.0	국	
25	서초구 양재동	산24	묘지	83.0	83.0	국	
26	서초구 양재동	산45-1	임야	4,790.0	4,790.0	국	
27	서초구 양재동	산47-2	임야	248.0	248.0	시	
28	서초구 양재동	산46-1	임야	1,716.0	1,269.8	시	
29	서초구 양재동	산46-2	임야	21,430.5	3,567.8	시	
30	서초구 양재동	산47-1	임야	2,727.0	62.7	시	
31	서초구 양재동	산49-6	임야	6,947.0	3,460.8	시	
32	서초구 양재동	산53-3	임야	4,783.0	4,783.0	국	
33	서초구 양재동	산54-3	임야	4,220.0	4,141.8	시	
34	서초구 양재동	산54-4	임야	342.0	336.5	시	
35	서초구 양재동	산57-34	임야	25,000.0	25,000.0	국	
36	서초구 양재동	산57-35	임야	2,290.0	2,290.0	시	
계					132,020.3		



서초구고시 제2021 - 280호

도시계획시설사업(방배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08.06)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95호(2021.07.29.)로 방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산43-7번지 일대의 방배근린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서초구 공고 제2021-2185(2021.12.09)호로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위한 열람공고를 완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하며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83)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021년 12월 30일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산43-7번지 등 13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명 칭: 방배근린공원 조성
- 3) 내 용
 - 변 경 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보상
 - 변 경 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다. 사업의 면적: 20,933㎡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시 행 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2)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번지

마. 시설관리청: 서울특별시청

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1) 변 경 전: 실시계획인가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2) 변 경 후: 실시계획인가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 주요 변경사유: 도시계획시설(공원) 부지 내 공원 조성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별첨조서

자. 고시방법: 서울시보 및 서초구청 홈페이지 게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방배근린공원조성)사업

연 번	소 재 지	지 목	공부 면적 (㎡)	소 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계	13필지 (12필지)		20,933 (18,307)			
1	방배동 274-2	답	996	서울특별시		
2	방배동 273-2	대	301	학교법인 서울**학원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9길 **	
3	방배동 273-3	대	301	학교법인 서울**학원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9길 **	
4	방배동 275-2	대	180	학교법인 서울**학원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9길 **	
5	방배동 산43-7	임	6,522	서울특별시		
6	방배동 산43-8	임	836	서울특별시		
7	방배동 산43-9	임	297	서울특별시		
8	방배동 산84-26	임	940	서울특별시		
9	방배동 산84-25	임	845	서울특별시		
10	방배동 산84-7	임	1,488	서울특별시		
11	방배동 산84-24	임	(2,626)	학교법인 서울**학원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9길 **	부지사용계약
12	방배동 산86-3	임	2,721	서울특별시		
13	방배동 산40-6	임	2,880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1 - 281호

도시계획시설사업(서리풀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08.06)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94호(2021.07.29.)로 서리풀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산40-12번지 일대의 서리풀근린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서초구 공고 제2021-2184호(2021.12.09)로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위한 열람공고를 완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하며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83)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021년 12월 30일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산40-12번지 등 22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 2) 명 칭: 서리풀근린공원 조성
- 3) 내 용
 - 변 경 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보상
 - 변 경 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다. 사업의 면적: 85,967.5㎡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시 행 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2)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번지

마. 시설관리청: 서울특별시청

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1) 변 경 전: 실시계획인가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2) 변 경 후: 실시계획인가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3) 변경사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별첨조서

아. 고시방법: 서울시보 및 서초구청 홈페이지 게재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조서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서리풀근린공원조성)사업

연 번	소 재 지	지 목	공부 면적 (㎡)	소 유 자	비 고
계	22필지		85,967.5		
1	반포동 산40-12	임	10,090	서울특별시	
2	서초동 산183-12	임	7,628	서울특별시	
3	서초동 산185-24	임	4,744	서울특별시	
4	서초동 산185-1	임	4,337	서울특별시	
5	반포동 산85-2	임	20,015	서울특별시	
6	방배동 산17-46	임	19,654	서울특별시	
7	방배동 산17-40	임	200	서울특별시	
8	방배동 산17-42	임	1,292	서울특별시	
9	방배동 산18-6	임	443	서울특별시	
10	방배동 산17-48	임	262	서울특별시	
11	방배동 산 17-49	임	55	서울특별시	
12	방배동 산17-38	임	801	서울특별시	
13	방배동 산17-39	임	1,791	서울특별시	
14	방배동 산17-44	임	1,964	서울특별시	
15	서초동 산165-4	임	2,830	서울특별시	
16	서초동 1497-4	공원	410.5	서울특별시	
17	서초동 산161-2	임	264	서울특별시	
18	서초동 산160-52	임	89	서울특별시	
19	서초동 산160-15	임	172	서울특별시	
20	방배동 167-30	대	155	서울특별시	
21	방배동 167-31	대	142	서울특별시	
22	서초동 산156-58	임	8,629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21 - 230호

도시계획시설(철도: 도곡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 '1995-31호(' 95.2.11.)로 결정되고, 강남구고시 제2018-174호(' 18.12.6.)로 변경결정된 분당선 도시계획시설(철도) 도곡역(4번 출입구 엘리베이터 설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강 남 구 청 장

1. 변경결정 취지: 교통약자 등 지하철 이용객 편의 증진에 따른 분당선 도곡역 4번 출입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함
2.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조서
 - 1)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조서(안)
 - 가. 변경결정 조서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철 도	도시 철도 (분당선 도곡역)	강남구 도곡동 466-4 , 467-17 일원	5,353.0	증)24.2	5,377.2	서울시 고시 제1995-31호 (1995. 2. 11.)	경미한 변 경

나.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철 도 (분당선 도곡역)	●면적 변경 - 5,353.0㎡ → 5,377.2㎡ (증 24.2㎡) ●연장: 210m (변경없음)	분당선 도곡역 4번 출입구에 노약자, 장애인 등 이용승객의 편의성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에 따른 면적 변경(증가)

3. 관계도서: 붙임 참조 (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4. 열람장소: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강남구 도시계획과(☎02-3423-6104)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붙임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1부. 끝.

도시계획시설(철도: 분당선 도곡역 4 출입구) 변경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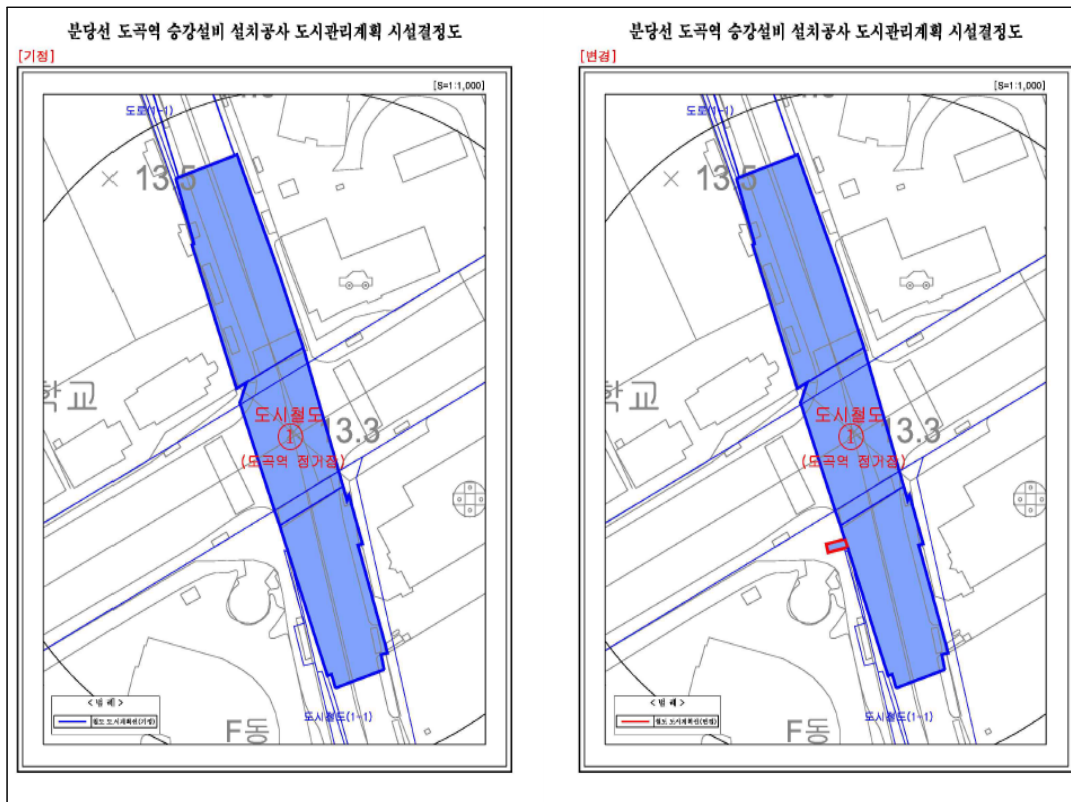
(위치: 도곡동 466-4호, 467-17호)

■ 기반시설의 규모와 배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기정)



■ 기반시설의 규모와 배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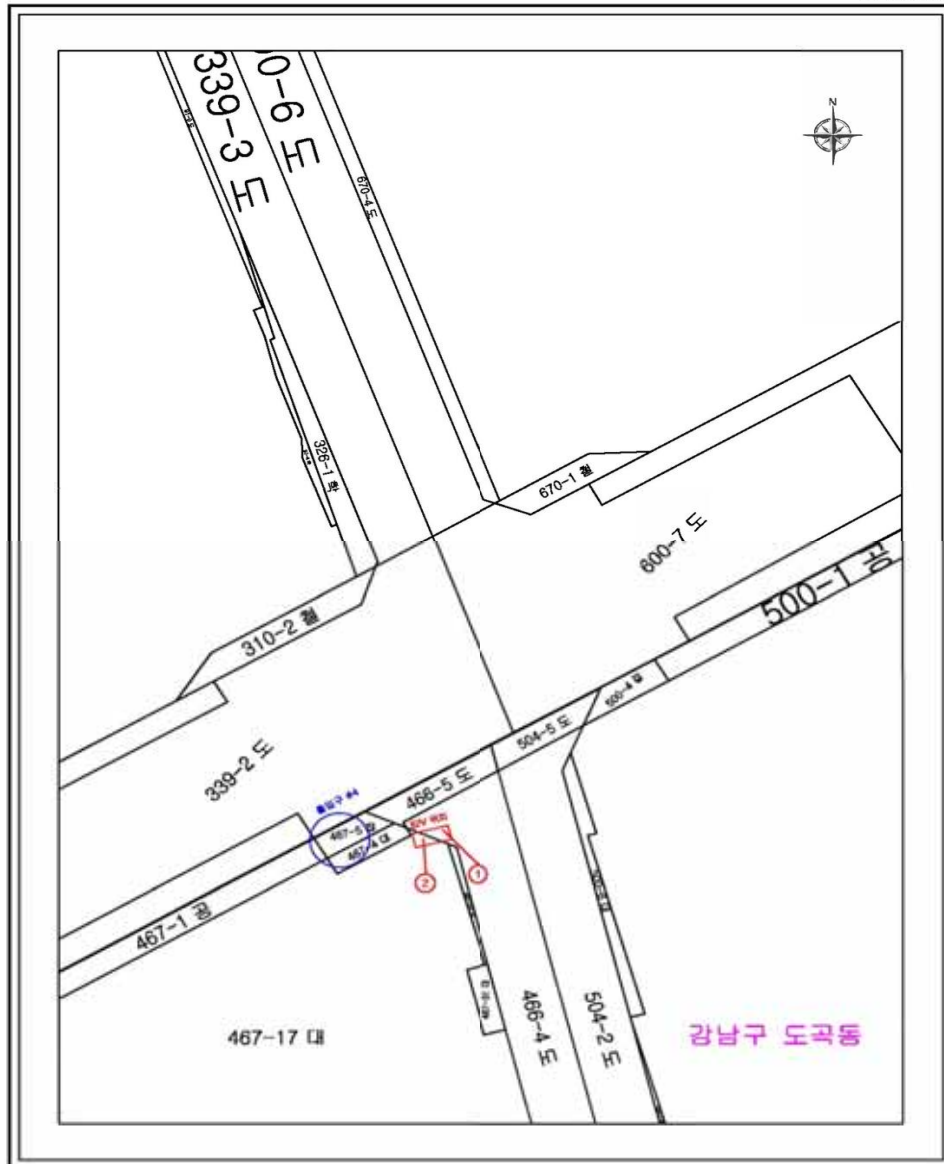


■ 토지세목조서 (출입구#4 엘리베이터)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소	성명	
합 계		2	필지	27,443.8	24.2			
1	강남구 도곡동	466-4	도	6,836.6	13.6	서울특별시	공	E/V
2	강남구 도곡동	467-17	대	20,607.2	10.6	대지권설정		E/V

분당선 도곡역 승강설비 설치공사 출입구#4 E/V 용지도

S=1:1000



송파구고시 제2021-261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고시 제2021-37호(2021.02.25.) 및 송파구고시 제2021-48호(2021.03.11.)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 고시된 도시철도 5호선 방이역과 도시철도 8호선 장지역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송 파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217-2번지 일대(방이역)
-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216-2번지 일대(장지역)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 명칭: 5호선 방이역 2번 출입구 외부 에스컬레이터 설치
8호선 장지역 1번 출입구 외부 에스컬레이터 설치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적: 5호선 방이역 205.1㎡(일시 151.8㎡)
8호선 장지역 197.1㎡(일시 252.2㎡)
- 규모: 외부 에스컬레이터 1200형 설치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서울교통공사
- 주소: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 고시일~2023.12.31일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방이역 2번 출입구 -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 권리의내용	비고
				지적	편입면적	일시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송파구 오금동	17-20	도	12,051.6	121.8	0.4	서울특별시					
2	송파구 오금동	43-2	도	14,200.8	83.3	151.4	서울특별시					

- 장지역 1번 출입구 -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 권리의내용	비고
				지적	편입면적	일시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송파구 장지동	839-6	도	232.4	27.2	10.1	서울특별시					
2	송파구 장지동	840-2	공	1,047.7	139.3	170.5	송파구					
3	송파구 장지동	217-8	도	1,134.0	1.1	13.9	송파구					
4	송파구 장지동	217-11	도	475.0	16.6	32.6	서울특별시					
5	송파구 장지동	201-5	도	12,030.0	12.9	25.1	송파구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아.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도시계획과(☎02-2147-2992), 서울교통공사 토목사업소(☎02-6110-526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구 공 고

종로구공고 제2021 - 1462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수립 공고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개발과(☎2148-266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2월 30일

종로구청장

가.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시설명	사업개요			계획기간 중 사업비(백만원)						비 고
	개소	사업규모 (㎡)	총 사업비 (백만원)	1단계			2단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이후	
총 계	187	902,356	408,051	44,264	12,900	32,804	226,117	8,343	83,623	-
도 로	172	357,974	99,345	29,164	6,000	21,035	19,768	8,343	15,035	-
주차장	7	24,397	91,041	15,100	6,900	-	453	-	68,588	-
공 원	7	515,065	213,881	-	-	7,985	205,896	-	-	-
녹 지	1	4,920	3,784	-	-	3,784	-	-	-	-

나.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

연번	사업 · 시설 부문	위치 (사업명)	규모			계획기간중사업비(백만원)												실효 시기	비고
						총계	국비	지방비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폭원(m)	연장(m)	면적(㎡)			계	시비	구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2	'23	'24	'25	'26		
1	도로	부암동 270-3 ~ 부암동 329-11	6	55	359	-	-	-	-	-	-	-	-	-	-	-	-	2031	부암동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2	도로	신영동 158-4 ~ 신영동 162-2	6~7	134	883	-	-	-	-	-	-	-	-	-	-	-	-	2029	신영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
3	도로	평창동 532 ~ 평창동 349-1	8	1,020 (181)	10,077	-	-	-	-	-	-	-	-	-	-	-	-	집행 간주	평창동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
4	도로	평창동 433 ~ 구기동 17-21	8	2,843 (2,684)	26,331	-	-	-	-	-	-	-	-	-	-	-	-	집행 간주	평창동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
5	도로	평창동 66-158 ~ 평창동 463	12	300(239)	3,884	-	-	-	-	-	-	-	-	-	-	-	-	집행 간주	평창동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지지구단위계획
6	도로	평창동 424 ~ 평창동 424	12	254(177)	3,839	-	-	-	-	-	-	-	-	-	-	-	-	집행 간주	평창동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지지구단위계획
7	도로	평창동 453-1 ~평창동 114-3	6	240(35)	2,487	-	-	-	-	-	-	-	-	-	-	-	-	집행 간주	평창동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지지구단위계획
8	도로	평창동 424 ~ 평창동 425-3	8	326(50)	2,539	3,157	-	3,157	1,579	1,579	-	-	3,157	-	-	-	-	집행 간주	평창동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지지구단위계획
9	도로	평창동 433 ~평창동 425-3	6	760(539)	4,971	1,530	-	1,530	765	765	-	-	1,530	-	-	-	-	집행 간주	평창동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지지구단위계획
10	도로	평창동 417-5 ~평창동 425-2	5	310(163)	1,735	931	-	931	466	466	-	-	931	-	-	-	-	집행 간주	평창동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지지구단위계획
11	도로	평창동 423 ~ 평창동 425-4	5	260(111)	1,761	1,556	-	1,556	778	778	-	-	1,556	-	-	-	-	집행 간주	평창동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지지구단위계획
12	도로	부암동 175 ~신영동 118	10	500(157)	4,309	-	-	-	-	-	-	-	-	-	-	-	-	집행 간주	신영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
13	도로	평창동 99-7 ~평창동 99-7	6	110	649	-	-	-	-	-	-	-	-	-	-	-	-	집행 간주	

연번	사업 · 시설 부문	위치 (사업명)	규모			계획기간중사업비(백만원)												실효 시기	비고
						총계	국비	지방비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폭원(m)	연장(m)	면적(㎡)			계	시비	구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2	'23	'24	'25	'26		
14	도로	평창동 103-1 ~ 평창동 99-18	8	85	998	-	-	-	-	-	-	-	-	-	-	-	-	집행 간주	
15	도로	평창동 206(207-1) ~ 평창동 38	6	170	1,087	-	-	-	-	-	-	-	-	-	-	-	-	집행 간주	
16	도로	신영동 34(구기동 216-1) ~ 구기동 184(120-1)	12	1,390 (541)	6,694	-	-	-	-	-	-	-	-	-	-	-	-	집행 간주	
17	도로	신영동 34(구기동 183-4) ~ 구기동 184(120-1)	12	1,390 (158)	3,238	-	-	-	-	-	-	-	-	-	-	-	-	집행 간주	
18	도로	구기동 139-8 ~구기동 139	8	103	815	-	-	-	-	-	-	-	-	-	-	-	-	집행 간주	
19	도로	구기동 146-2 ~구기동 139-16	10	88	1,144	-	-	-	-	-	-	-	-	-	-	-	-	집행 간주	
20	도로	구기동 160-4 ~ 구기동 139-31	7	45	314	-	-	-	-	-	-	-	-	-	-	-	-	집행 간주	
21	도로	부암동 175(134-2) ~ 신영동 118(151-2)	8	140	1,261	-	-	-	-	-	-	-	-	-	-	-	-	집행 간주	
22	도로	사직로(대로1-40) ~ 내자동길(중로1-202)	10	105	1,049	-	-	-	-	-	-	-	-	-	-	-	-	2031	내자동길 정비구역
23	도로	필운동 283-4 ~ 내자동길(중로1-202)	4	21	85	-	-	-	-	-	-	-	-	-	-	-	-	2031	내자동길 정비구역
24	도로	교남동 10 ~교남동 8-2	11	35	363	-	-	-	-	-	-	-	-	-	-	-	-	2026	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
25	도로	효자동 25 ~효자동 200	8	385	1,345	-	-	-	-	-	-	-	-	-	-	-	-	집행 간주	경북공사측지구단위계획
26	도로	옥인동 19-33 ~옥인동 34-1	8	615	1,834	-	-	-	-	-	-	-	-	-	-	-	-	집행 간주	경북공사측지구단위계획
27	도로	통의동 49-1 ~ 통의동 35-84	6	125	729	-	-	-	-	-	-	-	-	-	-	-	-	집행 간주	경북공사측지구단위계획

연번	사업 · 시설 부문	위치 (사업명)	규모			계획기간중사업비(백만원)												실효 시기	비고	
						총계	국비	지방비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폭원(m)	연장(m)	면적(㎡)			계	시비	구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2	'23	'24	'25	'26			'27이후
28	도로	누하동 221-2 ~누하동 220-1	6	20	140	-	-	-	-	-	-	-	-	-	-	-	-	-	집행 간주	경북공서측지구단위계획
29	도로	효자동 40 ~ 효자동 50-7	6	150	525	-	-	-	-	-	-	-	-	-	-	-	-	-	집행 간주	경북공서측지구단위계획
30	도로	통의동 35-53 ~통의동 53	4	30	125	-	-	-	-	-	-	-	-	-	-	-	-	-	집행 간주	경북공서측지구단위계획
31	도로	누상동 166-134 ~ 누상동 166-222	4	46	189	-	-	-	-	-	-	-	-	-	-	-	-	-	집행 간주	경북공서측 지구단위계획
32	도로	적선동 30 ~적선동 29-2	6	30	189	-	-	-	-	-	-	-	-	-	-	-	-	-	집행 간주	경북공서측지구단위계획
33	도로	가회동 65-2 ~ 삼청동 35-208	6	446	3,055	3,062	-	3,062	1,531	1,531	-	-	3,062	-	-	-	-	-	집행 간주	북촌 지구단위계획
34	도로	팔판동4-7 ~ 삼청동 150-1	4	10	37	-	-	-	-	-	-	-	-	-	-	-	-	-	집행 간주	북촌지구단위계획
35	도로	팔판동(삼청동125-6) ~ 삼청동 125-6	12	150	1,974	-	-	-	-	-	-	-	-	-	-	-	-	-	집행 간주	북촌지구단위계획
36	도로	신문로1가 23 ~ 도렴동 28-7	15	410	6,645	-	-	-	-	-	-	-	-	-	-	-	-	-	집행 간주	세종로지구단위계획, 도렴도시환경정비구역
37	도로	세종로 155-4 ~ 당주동 128-12	15	320	5,247	-	-	-	-	-	-	-	-	-	-	-	-	-	집행 간주	세종로지구단위계획
38	도로	신문로1가 57-2 ~ 내자동 214-1	15	400	6,160	-	-	-	-	-	-	-	-	-	-	-	-	-	집행 간주	도렴도시환경정비사업(4,5지구)
39	도로	신문로1가 33 ~ 당주동 145-3	6~8	136	1,080	-	-	-	-	-	-	-	-	-	-	-	-	-	집행 간주	도렴도시환경정비사업(4,5지구)
40	도로	사직동 311-2 ~ 신문로2가 1-59	6	220	917	-	-	-	-	-	-	-	-	-	-	-	-	-	집행 간주	사직2도시환경정비구역
41	도로	세종로동 204-1 ~ 당주동 23-5	10	76	835	-	-	-	-	-	-	-	-	-	-	-	-	-	집행 간주	세종로도시환경정비구역

연번	사업 · 시설 부문	위치 (사업명)	규모			계획기간중사업비(백만원)												실효 시기	비고
						총계	국비	지방비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폭원(m)	연장(m)	면적(㎡)			계	시비	구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2	'23	'24	'25	'26		
42	도로	당주동 15-8 ~ 당주동 23-5	10	72	693	-	-	-	-	-	-	-	-	-	-	-	-	집행 간주	세종로도시환경정비구역
43	도로	당주동 37-8 ~ 당주동 23-4	8	65	541	-	-	-	-	-	-	-	-	-	-	-	-	집행 간주	세종로도시환경정비구역
44	도로	무악동 46-1727 ~ 행촌동 171-1	4	100	442	-	-	-	-	-	-	-	-	-	-	-	-	집행 간주	
45	도로	청운동 73 ~ 청운동 52-2	5~8	250	2,254	-	-	-	-	-	-	-	-	-	-	-	-	집행 간주	
46	도로	신문로1가 155-4 ~ 신문로1가 158-1	8~12	98	915	-	-	-	-	-	-	-	-	-	-	-	-	집행 간주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47	도로	청운동 2-78 ~ 청운동 37-6	6~10	277	1,248	-	-	-	-	-	-	-	-	-	-	-	-	집행 간주	
48	도로	사직동 262-58 ~ 사직동 293-4	4	137	643	-	-	-	-	-	-	-	-	-	-	-	-	집행 간주	
49	도로	청운동 89-10 ~ 청운동 110-4	15	300	4,668	-	-	-	-	-	-	-	-	-	-	-	-	집행 간주	북촌 지구단위계획
50	도로	행촌동 1-152 ~ 행촌동 1-16	6	21	159	-	-	-	-	-	-	-	-	-	-	-	-	집행 간주	행촌권성곽마을 주거환경정비구역
51	도로	신문로2가 1-357 ~ 행촌동 1-16	4~5	17	89	-	-	-	-	-	-	-	-	-	-	-	-	집행 간주	행촌권 성곽마을 주거환경정비구역
52	도로	소격동 56 ~ 계동 1-1	15~20	1,140	18,107	-	-	-	-	-	-	-	-	-	-	-	-	집행 간주	북촌지구단위계획
53	도로	궁정동 43 ~ 청운동 89-30	7~8	180	1,647	-	-	-	-	-	-	-	-	-	-	-	-	집행 간주	
54	도로	사직동 209-4 ~ 신문로2가 1-34	11	360	4,435	-	-	-	-	-	-	-	-	-	-	-	-	집행 간주	사직1도시환경정비구역
55	도로	사직동 9 ~ 신문로2가 1-43	12~20	257	4,164	-	-	-	-	-	-	-	-	-	-	-	-	집행 간주	사직1,내수도시환경정비구역

연번	사업 · 시설 부문	위치 (사업명)	규모			계획기간중사업비(백만원)												실효 시기	비고	
						총계	국비	지방비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폭원(m)	연장(m)	면적(㎡)			계	시비	구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2	'23	'24	'25	'26			'27이후
56	도로	내수동 71-1 ~ 당주동 128-12	4~14	490	3,945	-	-	-	-	-	-	-	-	-	-	-	-	집행 간주	내수도시환경정비구역	
57	도로	신문로1가 5-4 ~ 신문로1가 115-2	12	52	684	-	-	-	-	-	-	-	-	-	-	-	-	집행 간주	신문로도시환경정비구역	
58	도로	적선동 109-2 ~ 내자동235-3	15	166	2,626	-	-	-	-	-	-	-	-	-	-	-	-	집행 간주		
59	도로	사직동 산1-54 ~ 사직동 산1-24	10	972	10,520	-	-	-	-	-	-	-	-	-	-	-	-	집행 간주		
60	도로	명륜 1가 15 ~ 명륜3가 1-1069	8	494	4,128	4,163	-	4,163	-	4,163	-	-	-	-	-	-	-	4,163	2029	해화 명륜동 지구단위계획
61	도로	효제동 273 ~ 효제동 233-2	6~8	207	1,278	-	-	-	-	-	-	-	-	-	-	-	-	-	2028	울곡로지구단위계획
62	도로	연건동 187-1 ~ 효제동 126-2	10~12	301	3,160	-	-	-	-	-	-	-	-	-	-	-	-	-	2028	울곡로지구단위계획
63	도로	효제동 122 ~ 효제동 117-1	6~8	60	400	-	-	-	-	-	-	-	-	-	-	-	-	-	2028	울곡로지구단위계획
64	도로	효제동 133-7 ~ 효제동 175-1	8~16	272	3,047	-	-	-	-	-	-	-	-	-	-	-	-	-	2028	울곡로지구단위계획
65	도로	소로2-동송1 ~ 소로3-동송2	6	287	1,767	-	-	-	-	-	-	-	-	-	-	-	-	-	2026	대학로지구단위계획
66	도로	소로2-A ~ 소로3-동송5	6	108	660	-	-	-	-	-	-	-	-	-	-	-	-	-	2026	대학로지구단위계획
67	도로	소로3-동송1 ~ 소로3-동송5	6	132	815	-	-	-	-	-	-	-	-	-	-	-	-	-	2026	대학로지구단위계획
68	도로	소로2-동송1 ~ 소로3-동송2	6	90	547	-	-	-	-	-	-	-	-	-	-	-	-	-	2026	대학로지구단위계획
69	도로	소로2-동송1 ~ 소로3-동송2	6	90	563	-	-	-	-	-	-	-	-	-	-	-	-	-	2026	대학로지구단위계획

연번	사업 · 시설 부문	위치 (사업명)	규모			계획기간중사업비(백만원)												실효 시기	비고	
						총계	국비	지방비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폭원(m)	연장(m)	면적(㎡)			계	시비	구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2	'23	'24	'25	'26			'27이후
70	도로	소로2-C ~ 소로3-동송11	6	200	1,257	-	-	-	-	-	-	-	-	-	-	-	-	-	2026	대 학로지구단위계획
71	도로	소로2-동송1 ~ 소로3-동송5	6	202	1,226	-	-	-	-	-	-	-	-	-	-	-	-	-	2026	대 학로지구단위계획
72	도로	소로2-동송1 ~ 동송동 1-111	6	27	170	-	-	-	-	-	-	-	-	-	-	-	-	-	2026	대 학로지구단위계획
73	도로	소로2-동송1 ~ 소로3-동송6	6	91	564	-	-	-	-	-	-	-	-	-	-	-	-	-	2026	대 학로지구단위계획
74	도로	소로2-A ~ 소로3-동송6	6	116	842	-	-	-	-	-	-	-	-	-	-	-	-	-	2026	대 학로지구단위계획
75	도로	낙원동 290-1 ~ 낙원동 213-2	6~12	100	594	-	-	-	-	-	-	-	-	-	-	-	-	-	2026	운현궁주변지구단위계획
76	도로	종로5가 503-24 ~ 종로5가 231-1	9	112	988	3,363	-	3,363	-	3,363	-	-	-	-	700	1,000	1,663	-	2026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77	도로	효제동 175-1 ~ 효제동 248-1	6	361	1,892	16,680	-	16,680	-	16,680	-	-	-	-	4,000	6,000	6,680	-	2026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78	도로	이화동 9-318 ~ 종로6가 1-44	6~10	730	5,703	5,737	-	5,737	-	5,737	-	-	-	-	2,295	3,442	-	-	2025	종로5,6가동(충신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79	도로	관철동 28-9 ~ 관철동 25	4	66	236	6,813	-	6,813	-	6,813	-	-	-	-	3,000	3,813	-	-	2025	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
80	도로	관수동134-1~관수동 119-1	4	133	546	5,743	-	5,743	-	5,743	-	-	-	-	2,000	3,743	-	-	2025	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
81	도로	관수동 159-2 ~ 관수동 157-1	4	66	241	2,770	-	2,770	-	2,770	-	-	-	-	1,000	1,770	-	-	2025	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
82	도로	묘동 38-2 ~ 와룡동 42	6	493	3,318	14,040	-	14,040	-	14,040	-	-	-	-	6,000	8,040	-	-	2024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83	도로	익선동 131-1 ~ 와룡동	8	158	1,307	-	-	-	-	-	-	-	-	-	-	-	-	-	2024	익선지구단위계획

연번	사업 · 시설 부문	위치 (사업명)	규모			계획기간중사업비(백만원)												실효 시기	비고
						총계	국비	지방비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폭원(m)	연장(m)	면적(㎡)			계	시비	구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2	'23	'24	'25	'26		
84	도로	광로2-A ~ 대로2-59	10	257	3,009	-	-	-	-	-	-	-	-	-	-	-	-	집행 간주	대 학로 지구단위계획
85	도로	소로2-C ~ 이화동 149-1	8	631	5,145	-	-	-	-	-	-	-	-	-	-	-	-	집행 간주	대 학로 지구단위계획
86	도로	연건동 209 ~연건동 128	10	250	740	-	-	-	-	-	-	-	-	-	-	-	-	집행 간주	대 학로 지구단위계획
87	도로	광로 2-A ~ 소로 2-B	8	180	1,473	-	-	-	-	-	-	-	-	-	-	-	-	집행 간주	대 학로 지구단위계획
88	도로	동송동 31-2 ~ 동송동 25-7	8	220	1,740	-	-	-	-	-	-	-	-	-	-	-	-	집행 간주	대 학로 지구단위계획
89	도로	이화동 4-14 ~ 이화동 12-2	6	237	1,569	695	-	695	348	348	-	-	695	-	-	-	-	집행 간주	대 학로 지구단위계획
90	도로	광로 2-A ~ 동송동 31-22	10	75	941	-	-	-	-	-	-	-	-	-	-	-	-	집행 간주	대 학로 지구단위계획
91	도로	권농동 120-2 ~ 권농동 170-3	6	176	1,130	-	-	-	-	-	-	-	-	-	-	-	-	집행 간주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92	도로	명륜3가 74-1 ~ 명륜4가 198-3	6	330	2,128	-	-	-	-	-	-	-	-	-	-	-	-	집행 간주	성균관대주변지구단위계획
93	도로	명륜3가 55-1 ~ 명륜2가 138-5	8	470	6,605	-	-	-	-	-	-	-	-	-	-	-	-	집행 간주	성균관대주변지구단위계획
94	도로	을지로 2가(낙원동 260-4) ~ 낙원동 175-1	15	224	3,457	-	-	-	-	-	-	-	-	-	-	-	-	집행 간주	운현궁주변지구단위계획
95	도로	익선동 5 ~익선동 34-8	4	160	314	-	-	-	-	-	-	-	-	-	-	-	-	집행 간주	운현궁주변지구단위계획
96	도로	연지동 168 ~ 종로5가 124-4	6~10	281	2,052	-	-	-	-	-	-	-	-	-	-	-	-	집행 간주	종로4,5가, 을곡로 지구단위계획

연번	사업 · 시설 부문	위치 (사업명)	규모			계획기간중사업비(백만원)												실효 시기	비고
						총계	국비	지방비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폭원(m)	연장(m)	면적(㎡)			계	시비	구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2	'23	'24	'25	'26		
97	도로	효제동 27-1 ~효제동 107	6	160	590	-	-	-	-	-	-	-	-	-	-	-	-	집행 간주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98	도로	충신동 136-11 ~ 충신동 179-4	10	163	1,595	-	-	-	-	-	-	-	-	-	-	-	-	집행 간주	대학로 지구단위계획
99	도로	이화동 107-1 ~충신동120	8	188	1,387	-	-	-	-	-	-	-	-	-	-	-	-	집행 간주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100	도로	연지동 246 ~ 연지동 270	6	193	416	-	-	-	-	-	-	-	-	-	-	-	-	집행 간주	종로4,5가,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101	도로	이화동 10-3 ~ 충신동 27-36	6	385	1,871	-	-	-	-	-	-	-	-	-	-	-	-	집행 간주	이화동 지구단위계획
102	도로	인사동 72 ~ 관훈동 74-1	10~12	690	8,222	-	-	-	-	-	-	-	-	-	-	-	-	집행 간주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103	도로	관수동 104-2 ~ 관수동 120	6	93	161	-	-	-	-	-	-	-	-	-	-	-	-	집행 간주	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
104	도로	을지로 2가(낙원동 260-4) ~ 낙원운동장(관수동 91-4)	15	371	2,958	-	-	-	-	-	-	-	-	-	-	-	-	집행 간주	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
105	도로	종로5가 8-5 ~ 종로5가 7-3	4	16	67	-	-	-	-	-	-	-	-	-	-	-	-	집행 간주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106	도로	종로5가 120-2 ~ 종로5가 120-2	6	35	197	-	-	-	-	-	-	-	-	-	-	-	-	집행 간주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107	도로	해화동 10-19 ~해화동 13-10	6	121	657	-	-	-	-	-	-	-	-	-	-	-	-	집행 간주	해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
108	도로	명륜2가 (231) ~ 명륜1가 31-3	12	968	8,553	-	-	-	-	-	-	-	-	-	-	-	-	집행 간주	해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
109	도로	명륜1가 101-1 ~ 명륜1가 46-18	8	330	1,012	-	-	-	-	-	-	-	-	-	-	-	-	집행 간주	해화명륜동지구단위계획

연번	사업 · 시설 부문	위치 (사업명)	규모			계획기간중사업비(백만원)												실효 시기	비고	
						총계	국비	지방비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폭원(m)	연장(m)	면적(㎡)			계	시비	구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2	'23	'24	'25	'26			'27이후
110	도로	명륜2가 115-2 ~ 명륜2가 8-1	6	258	560	-	-	-	-	-	-	-	-	-	-	-	-	-	집행 간주	해화명륜동지구단위계획
111	도로	해화동광장(111-1) ~ 성북동고개(5-137)	15	930	11,769	-	-	-	-	-	-	-	-	-	-	-	-	-	집행 간주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112	도로	명륜1가 33-19 ~ 명륜1가 88	6	225	323	-	-	-	-	-	-	-	-	-	-	-	-	-	집행 간주	해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
113	도로	해화동 15-121 ~ 해화동 15-15	6	365	2,187	-	-	-	-	-	-	-	-	-	-	-	-	-	집행 간주	해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
114	도로	인사동 247 ~ 인사동 219-1	12	162	2,045	-	-	-	-	-	-	-	-	-	-	-	-	-	집행 간주	공평도시환경정비구역
115	도로	공평동 66 ~ 인사동 232	15	221	3,324	-	-	-	-	-	-	-	-	-	-	-	-	-	집행 간주	공평도시환경정비구역
116	도로	인사동 231 ~ 종로2가 10	12	86	1,062	-	-	-	-	-	-	-	-	-	-	-	-	-	집행 간주	공평도시환경정비구역
117	도로	청진동 48-5 ~ 청진동 54-3	8	192	1,641	-	-	-	-	-	-	-	-	-	-	-	-	-	집행 간주	청진도시환경정비구역
118	도로	청진동 19 ~ 청진동 59-1	12	108	1,215	-	-	-	-	-	-	-	-	-	-	-	-	-	집행 간주	청진도시환경정비구역
119	도로	청진동 246-4 ~ 청진동 191-1	12	93	1,135	-	-	-	-	-	-	-	-	-	-	-	-	-	집행 간주	청진도시환경정비구역
120	도로	종로1가 39-4 ~ 청진동 208-1	15~17	234	4,158	-	-	-	-	-	-	-	-	-	-	-	-	-	집행 간주	청진도시환경정비구역
121	도로	종로1가 23-1 ~ 청진동 203-3	15	216	3,621	-	-	-	-	-	-	-	-	-	-	-	-	-	집행 간주	청진도시환경정비구역
122	도로	청진동 258-1 ~ 청진동 138-1	15	111	1,746	-	-	-	-	-	-	-	-	-	-	-	-	-	집행 간주	청진도시환경정비구역

연번	사업 · 시설 부분	위치 (사업명)	규모			계획기간중사업비(백만원)													실효 시기	비고
						총계	국비	지방비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폭원(m)	연장(m)	면적(㎡)			계	시비	구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2	'23	'24	'25	'26	'27이후		
123	도로	수송동 80-6 ~ 견지동 110-62	20	240	5,282	2,300	-	2,300	2,300	-	-	-	2,300	-	-	-	-	-	집행 간주	해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
124	도로	중학동 19-2 ~ 수송동 147	11~15	194	2,494	-	-	-	-	-	-	-	-	-	-	-	-	-	집행 간주	
125	도로	청진동 215-4 ~ 청진동 188	4	24	78	-	-	-	-	-	-	-	-	-	-	-	-	-	집행 간주	청진도시환경정비구역
126	도로	서린동 82 ~ 서린동 42-8	7	112	919	-	-	-	-	-	-	-	-	-	-	-	-	-	집행 간주	서린도시환경정비구역
127	도로	공평동 194-9 ~ 인사동 195	8	72	561	-	-	-	-	-	-	-	-	-	-	-	-	-	집행 간주	공평도시환경정비구역
128	도로	공평동 9 ~ 관훈동 198-55	11~20	173	2,586	-	-	-	-	-	-	-	-	-	-	-	-	-	집행 간주	공평도시환경정비구역
129	도로	와룡동 94-2 ~ 관농동 171-9	6~7	56	356	-	-	-	-	-	-	-	-	-	-	-	-	-	집행 간주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130	도로	명륜3가 1-1317 ~ 명륜3가 1-1317	4~6	142	661	-	-	-	-	-	-	-	-	-	-	-	-	-	집행 간주	
131	도로	송인동 248 ~ 송인동 296-19	6	112	698	3,463	-	3,463	-	3,463	-	-	-	-	-	-	-	3,463	2027	송인 지구단위계획
132	도로	송인동 211-9 ~송인동 211-3	6	99	658	2,403	-	2,403	-	2,403	-	-	-	-	-	-	-	2,403	2027	송인 지구단위계획
133	도로	송인동 200-10 ~ 송인동 228-5	6	250	1,655	940	-	940	-	940	-	-	-	-	-	-	-	940	2027	송인 지구단위계획
134	도로	송인동 217-10 ~ 송인동 217-1	6	88	514	1,608	-	1,608	-	1,608	-	-	-	-	-	-	-	1,608	2027	송인 지구단위계획
135	도로	송인동 1383-2 ~ 송인동 206-2	6~8	257	1,722	620	-	620	-	620	-	-	-	-	-	-	-	620	2027	송인 지구단위계획
136	도로	송인동 297 ~ 송인동 242-7	6	73	480	1,838	-	1,838	-	1,838	-	-	-	-	-	-	-	1,838	2027	송인 지구단위계획

연번	사업 · 시설 부문	위치 (사업명)	규모			계획기간중사업비(백만원)												실효 시기	비고	
						총계	국비	지방비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폭원(m)	연장(m)	면적(㎡)			계	시비	구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2	'23	'24	'25	'26			'27이후
137	도로	송인동 72-185 ~ 송인동 178-53	2~4	14	61	340	-	340	-	340	-	-	340	-	-	-	-	-	2022	송인2 지구단위계획
138	도로	창신동 458-5 ~ 창신동 418-1	4	135	592	10,418	-	10,418	-	10,418	-	-	10,418	-	-	-	-	-	2022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139	도로	창신동 438-78 ~ 창신동 436-14	6	68	400	5,175	-	5,175	-	5,175	-	-	5,175	-	-	-	-	-	2022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140	도로	송인동 81-15 ~ 송인동 76-2	13.5	51	692	-	-	-	-	-	-	-	-	-	-	-	-	-	집행 간주	송인2 지구단위계획
141	도로	송인동 102-1 ~ 송인동 96-2	5~6	53	304	-	-	-	-	-	-	-	-	-	-	-	-	-	집행 간주	동대문 지구단위계획
142	도로	송인동 107-1 ~ 송인동 72-61	6~8	130	964	-	-	-	-	-	-	-	-	-	-	-	-	-	집행 간주	동대문 지구단위계획
143	도로	창신동 701-3 ~ 창신동 674-3	6	53	324	-	-	-	-	-	-	-	-	-	-	-	-	-	집행 간주	동대문 지구단위계획
144	도로	창신동 74-1 ~ 창신동 247	12	78	1,096	-	-	-	-	-	-	-	-	-	-	-	-	-	집행 간주	동대문 지구단위계획
145	도로	송인2동 1433 ~ 송인2동 206-20	4	205	744	-	-	-	-	-	-	-	-	-	-	-	-	-	집행 간주	송인 지구단위계획
146	도로	송인동(송인동 102-8) ~ 신당동(송인동 234-7)	10~18	270	4,118	-	-	-	-	-	-	-	-	-	-	-	-	-	집행 간주	송인 지구단위계획
147	도로	송인동 1499 ~ 송인동 206-13	8	28	188	-	-	-	-	-	-	-	-	-	-	-	-	-	집행 간주	송인 지구단위계획
148	도로	송인동 288-1 ~ 송인동 316-2	5~6	220	1,536	-	-	-	-	-	-	-	-	-	-	-	-	-	집행 간주	송인 지구단위계획
149	도로	송인동 1050 ~ 송인동 435	8~12	437	5,160	-	-	-	-	-	-	-	-	-	-	-	-	-	집행 간주	
150	도로	송인동 190-2 ~ 송인동 547(181-11)	6~8	140	1,165	-	-	-	-	-	-	-	-	-	-	-	-	-	집행 간주	송인2 지구단위계획

연번	사업 · 시설 부문	위치 (사업명)	규모			계획기간중사업비(백만원)													실효 시기	비고
						총계	국비	지방비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폭원(m)	연장(m)	면적(㎡)			계	시비	구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2	'23	'24	'25	'26	'27이후		
151	도로	송인동 759 ~송인동 742-1	8	66	530	-	-	-	-	-	-	-	-	-	-	-	-	-	집행 간주	송인2 지구단위계획
152	도로	창신동 595-327 ~ 창신동 595-327	6~8	100	615	-	-	-	-	-	-	-	-	-	-	-	-	-	집행 간주	
153	도로	송인동 16-1 ~ 송인동 7-41	3~5	120	394	-	-	-	-	-	-	-	-	-	-	-	-	-	집행 간주	
154	도로	창신동 615-45 ~ 창신동 23-735	6	348	2,252	-	-	-	-	-	-	-	-	-	-	-	-	-	집행 간주	
155	도로	창신동 17-49 ~ 창신동 20-38	6	94	564	-	-	-	-	-	-	-	-	-	-	-	-	-	집행 간주	
156	도로	창신동 627-49 ~ 창신동 627-85	6	515	2,758	-	-	-	-	-	-	-	-	-	-	-	-	-	집행 간주	
157	도로	창신동 615-263 ~ 창신동 570-4	8	725(296)	6,011	-	-	-	-	-	-	-	-	-	-	-	-	-	집행 간주	창신1 주거환경정비구역
158	도로	창신동 639-55 ~ 창신동 635-1	4	114(84)	375	-	-	-	-	-	-	-	-	-	-	-	-	-	집행 간주	창신1 주거환경정비구역
159	도로	송인동 546 ~송인동 852-1	6	150	511	-	-	-	-	-	-	-	-	-	-	-	-	-	집행 간주	
160	도로	송인동 435-4 ~ 송인동 559-1	5	115(80)	331	-	-	-	-	-	-	-	-	-	-	-	-	-	집행 간주	
161	도로	창신동 427-3 ~ 창신동 455-7	4	115	474	-	-	-	-	-	-	-	-	-	-	-	-	-	집행 간주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162	도로	창신동 601-2 ~ 창신동 601-9	4~6	138	699	-	-	-	-	-	-	-	-	-	-	-	-	-	집행 간주	
163	도로	송인동 20-61 ~ 송인동 5-27	6	140	908	-	-	-	-	-	-	-	-	-	-	-	-	-	집행 간주	
164	도로	송인동 20-136 ~ 송인동 20-126	6	48	286	-	-	-	-	-	-	-	-	-	-	-	-	-	집행 간주	

연번	사업 · 시설 부문	위치 (사업명)	규모			계획기간중사업비(백만원)													실효 시기	비고
						총계	국비	지방비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폭원(m)	연장(m)	면적(㎡)			계	시비	구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2	'23	'24	'25	'26	'27이후		
165	도로	창신동 17-47 ~ 창신동 20-31	4	95	439	-	-	-	-	-	-	-	-	-	-	-	-	집행 간주		
166	도로	창신동 23-818 ~ 창신동 23-825	5~7	81	451	-	-	-	-	-	-	-	-	-	-	-	-	집행 간주		
167	도로	송인동 55-17 ~ 송인동 53-23	6	24	149	-	-	-	-	-	-	-	-	-	-	-	-	집행 간주		
168	도로	송인동 56-232 ~ 송인동 56-229	4	87	373	-	-	-	-	-	-	-	-	-	-	-	-	집행 간주		
169	도로	송인동 446 ~송인동 839	4~6	370	2,715	-	-	-	-	-	-	-	-	-	-	-	-	집행 간주		
170	도로	송인동 872 ~ 송인동 58-593	4	296	1,276	-	-	-	-	-	-	-	-	-	-	-	-	집행 간주		
171	도로	송인동 58-593 ~ 송인동 765	6	297	1,886	-	-	-	-	-	-	-	-	-	-	-	-	집행 간주		
172	도로	송인동 181-8 ~ 송인동 178-57	4	61	267	-	-	-	-	-	-	-	-	-	-	-	-	집행 간주		
173	주차장	경운동 64-17 일원			1,874	-	-	-	-	-	-	-	-	-	-	-	-	2022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174	주차장	부암동 251-7 외 7필지			471	453	-	453	-	453		-	-	-	-	453	-	-	2024	부암동 지구단위계획구역
175	주차장	종로5가 413 일원			2,328	35,788	-	-	-	-	35,788	-	-	-	-	-	-	35,788	2026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구역
176	주차장	부암동 370-12			598	2,800	-	2,800	1,400	1,400	-	-	-	-	-	-	-	2,800	2029	부암동 지구단위계획구역
177	주차장	삼청동 25-1			8,000	22,000	5,000	17,000	7,000	10,000	-	-	15,100	6,900	-	-	-	-	2030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
178	주차장	가회동 210 일대			5,000	15,000	-	15,000	7,500	7,500	-	-	-	-	-	-	-	15,000	2030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

연번	사업 · 시설 부문	위치 (사업명)	규모			계획기간중사업비(백만원)												실효 시기	비고
						총계	국비	지방비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폭원(m)	연장(m)	면적(㎡)			계	시비	구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2	'23	'24	'25	'26		
179	주차장	화동 2 일대			8,000	15,000	-	15,000	7,500	7,500	-	-	-	-	-	-	15,000	2030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
180	공원	와룡동 2-71 (창덕근린공원)			496,997	2,409	1,686	723	723	-	-	-	-	2,409	-	-	-	집행 간주	
181	공원	부암동 251-8 (부암1소공원)			1,448	2,054	-	2,054	-	2,054	-	-	-	2,054	-	-	-	2024	부암동 지구단위계획구역
182	공원	부암동 336-2 (부암2소공원)			2,763	885	-	885	-	885	-	-	-	885	-	-	-	2024	부암동 지구단위계획구역
183	공원	부암동 303-1 (부암동어린이공원)			1,122	1,733	-	1,733	-	1,733	-	-	-	1,733	-	-	-	2024	부암동 지구단위계획구역
184	공원	창신동 400-4 (송인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근린공원2)			3,515	88,367	-	88,367	-	88,367	-	-	-	-	88,367	-	-	2024	송인 지구단위계획구역
185	공원	송인동 1435 (송인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근린공원3)			4,485	117,529	-	117,529	-	117,529	-	-	-	-	117,529	-	-	2024	송인 지구단위계획구역
186	공원	관철동 45-5 (보신각 근린공원)			4,735	904	-	904	-	904	-	-	-	904	-	-	-	2025	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구역
187	녹지	창신 완충녹지			4,920	3,784	-	3,784	-	3,784	-	-	-	3,784	-	-	-	집행 간주	

※ 집행간주: 사업시행인가 및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로써 실효대상 제외된 시설

다. 관련도서 : 생략. 끝.

중랑구공고 제2021-1646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252-8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관련도서를 열람합니다.
2. 본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30일

중랑구청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중랑구청 도시계획과(☎2094-2183)

다. 입안취지 : 교육환경을 개선을 위한 실내체육관 건립 및 기존 운동장부지 학교 편입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라. 열람내용

○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건축물 범위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	학교	고등학교	중랑구 망우동 252-8번지	14,169	증 10,962	25,131	40 이하	40 이하	120 이하	200 이하	5층 이하	6층 이하	서울시고시 제313호 (1982.8.12.)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20 이하	-	50 이하	-	3층 이하		자연녹지지역

- 변경 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변경	학교	◦ 면 적 - 14,169㎡ → 25,131㎡ (증) 10,962㎡	◦ 교육환경을 개선을 위한 실내체육관 건립 및 기존 운동장부지 학교 편입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건축물 범위	◦ 현행 건축물 규모 반영 - 규 모 : 지하1층~지상6층, 연면적27,036.15㎡, 건폐율 33.9%,

구분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용적률 : 120% → 200%이하 - 높이(층수) : 5층 → 6층이하	용적률 190.7% - 준공일자 : 1974.9.13. (송곡여고, 송곡관광고) 2002.10.10.(송곡여중) ◦ 자연녹지지역의 건축범위 및 체육관 건축계획(안) 반영
		자연녹지지역	- 건폐율 : 20%이하 - 용적률 : 50%이하 - 높이(층수) : 3층이하	

마.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바. 본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도시계획과(☎ 2094-21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도

(위치 : 중랑구 망우동 252-8번지 일원, 축척 : 1/1,000)

○ 기정



○ 변경



도봉구공고 제2021 - 1836호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179-5호 일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30일

도 봉 구 청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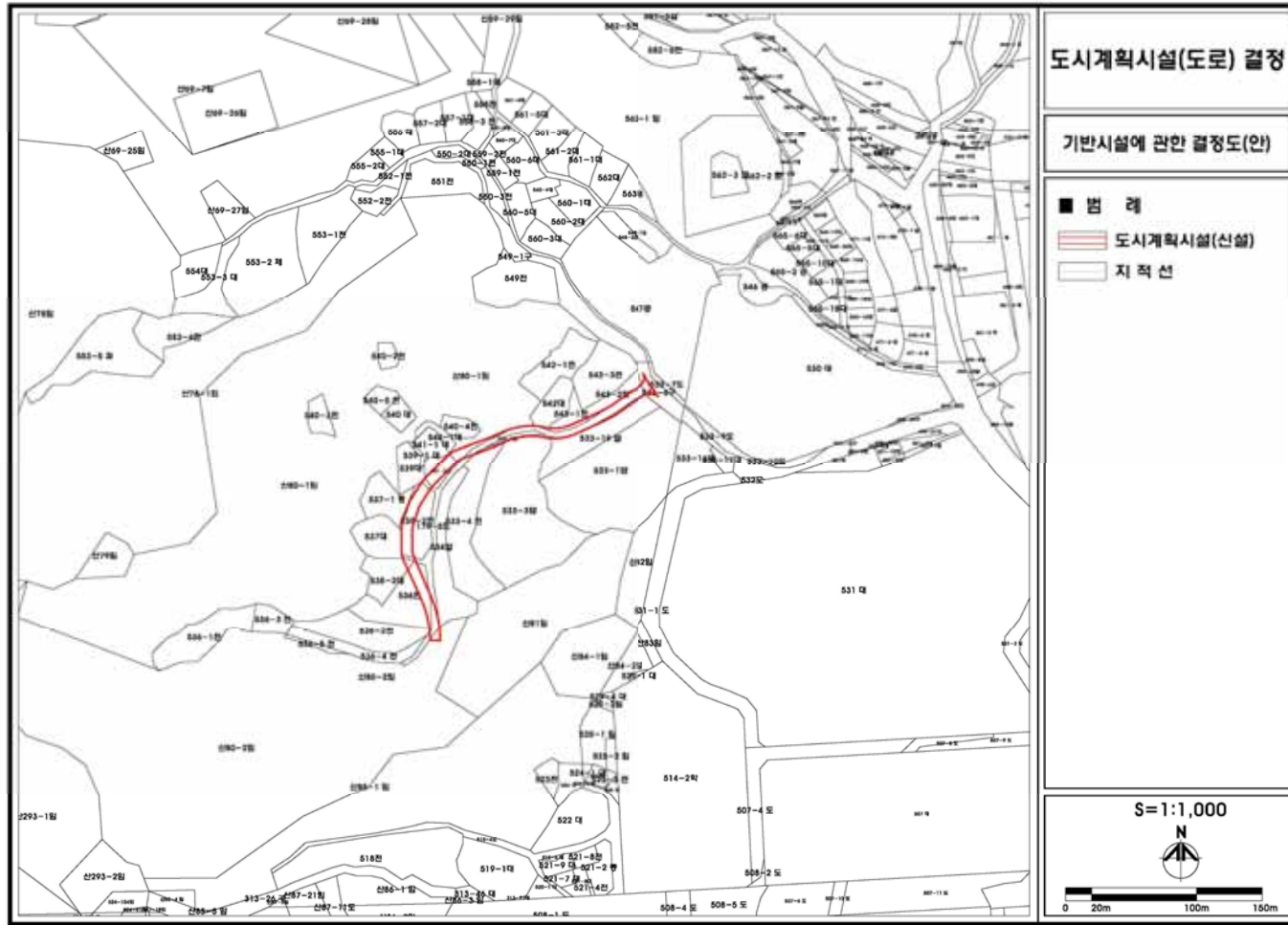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529	6	집산도로	251	방학동 533-6	방학동 산80-2	일반도로	-	-	해등로 34길

나.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다. 관계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라.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도시계획과(☎ 2091-3555)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도봉구공고 제2021 - 1847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공고

1.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9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계획과(☎ 2091-3554), 도로과(☎ 2091-4054), 공원녹지과(☎ 2091-3754), 문화관광과(☎ 2091-22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2월 30일

도 봉 구 청 장

가.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시설별	시행기간												비고
	계			1단계(1~3년차)			2-1단계(4~5년차)			2-2단계(6년차 이후)			
	건수	면적 (㎡)	사업비 (단위:백만원)	건수	면적 (㎡)	사업비 (단위:백만원)	건수	면적 (㎡)	사업비 (단위:백만원)	건수	면적 (㎡)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10	7,414	124,334	5	3,533	69,274	2	1,585	51,460	3	2,296	3,600	
도로	5	2,720	3,560	2	542	1,000	1	332	460	2	1,846	2,100	
공원	1	450	1,500							1	450	1,500	
공공 공지	2	1,705	71,000	1	452	20,000	1	1,253	51,000				
문화 시설	2	2,539	48,274	2	2,539	48,274							

나.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

시설	우선 순위	사업개요				계획 기간중 사업비(2022~2027) (백만원)										실효 시기
		위 치	사업 기간	기 타 주요내용	결정일자	총계	지방비			1 단계			2-1 단계		2-2 단계	
							계	시비	구비	' 22	' 23	' 24	' 25	' 26	' 27년 이후	
도로	1	도봉동341-31 ~ 343-2	2022 ~2023	B= 6m L= 17m A= 102㎡	2009-12-17	300	300		300	220	80					2029
도로	2	창동269-4 ~ 271	2023 ~2024	B= 4m L= 110m A= 440㎡	2004-06-05	700	700		700		700					2024
도로	3	도봉동626-115 ~ 626-87	2025 ~2026	B= 4m L= 83m A= 332㎡	2007-08-23	460	460		460				460			2027
도로	4	도봉동625-32 ~ 625-58	2027 ~2028	B= 4 ~ 6.5m L= 132m A= 566㎡	2007-08-23	1,800	1,800		1,800						1,800	2027
도로	5	도봉동 288-1 ~ 281	2028 ~2029	B= 8m L= 160m A= 1,280㎡	2009-12-31	300									300	2029
공원	1	도봉동 630-2 일원	2027	A= 450㎡	2007-08-23	1,500	1,500		1,500						1,500	2027
공공 공지	1	방학동 705-19, 706-1 일대	2024 ~2025	A= 1,581㎡	2006-04-27	70,000	70,000	35,000	35,000			20,000	50,000			2026
공공 공지	2	방학동 446-2	2025	A= 124㎡	2010-06-03	1,000	1,000		1,000				1,000			2030
문화 시설	1	창동 643-5 일대	2023	A= 1,854㎡	2006-05-04	40,000	40,000		40,000		40,000					2026
문화 시설	2	쌍문동 103-66 일대	2023	A= 685㎡	2006-05-04	8,274	8,274		8,274		8,274					2026

도봉구공고 제2021 - 187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을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1. 도봉구고시 제2009-81호(2009.12.17.)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최초 결정된 「도봉동 341-31 ~ 343-2간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를 합니다.
2. 토지(건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도로과(☎02-2091-4056)에 비치하여 토지 및 물건 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2월 30일

도 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도봉구 도봉동 341-31 ~ 343-2간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 도봉동 341-31 ~ 343-2간 도로(소로 3-524)개설공사

다. 사업규모 및 내용

- 도로개설 : 폭 6m, 길이 17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 시행자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720번지)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지정 고시일부터 2년

바. 열람공고 기간 : 공보게재일 익일로부터 14일간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자·이해관계인의 성명·주소 : 별첨

토 지 조 서

사 업 명 : 도봉동 341-31 ~ 343-2 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지적 (㎡)	편입면적 (㎡)	성 명	주 소	지 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도봉동 341-31	답	98	48	서울특별시						
2	도봉동 342-5	전	1307	26	이0옥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000길 00-0(도봉동)		000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000(쌍문동) (000)	근저당권	
3	도봉동 343-2	대	340	34	이0옥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000길 00-0(도봉동)		000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000(쌍문동) (000)	근저당권	

물 건 조 서

사 업 명 : 도봉동 341-31 ~ 343-2 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수량	단위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도봉동 343-2	판넬	샌드위치판넬	5.7	m	이0옥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000길 00-0(도봉동)					
		물탱크		1	조							
		정화조		1	조							

구로구공고 제2021 - 2375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9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고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구로구청장

가.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단위 : 건, m², 백만원)

시설명	사업개요			단계별집행계획					
	건수	규모	사업비	1단계 (' 22~ '24)		2-1단계 (' 25~ '26)		2-2단계 (' 27~)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계	48	236,299	208,400	6	12,617	12	104,286	30	91,497
도 로	30	68,983	41,027	6	12,617	9	25,330	15	3,080
공 원	8	134,994	37,675	-	-	-	-	8	37,675
공공공지	3	8,466	49,346	-	-	-	-	3	49,346
사회복지시설	2	2,946	1,396	-	-	-	-	2	1,396
공공청사	1	3,286	13,604	-	-	1	13,604	-	-
녹 지	2	9,865	미정	-	-	-	-	2	미정
광 장	1	5,370	65,352	-	-	1	65,352	-	-
주 차 장	1	2,389	미정	-	-	1	미정	-	-

나.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 붙임 참조

다. 관계도면: 생략

라. 관계서류는 구로구청 도시계획과(☎ 860-228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연번	시설 구분	사업명(위치)	사업 기간	사업규모			총사업비 (백만원)	집행방식별 사업비(백만원)					단계별 사업비(백만원)						실효시기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폭원 (m)	연장 (m)	면적 (㎡)		총계	국비	계	시비	구비	민간	'22	'23	'24	'25	'26	
		총 계	48건			236,299	208,400	2,248	137,117	-	137,117	69,035	3,617	4,200	4,800	-	104,286	91,497	
		도로 소계	30건			68,983	41,027	1,064	22,207	-	22,207	17,756	3,617	4,200	4,800	-	25,330	3,080	
		도로1단계	6건			4,770	12,617	-	12,617	-	12,617	-	3,617	4,200	4,800	-	-	-	
1	도로	오류동 13-224 ~ 오류동 317-1	'22	6	95	570	1,337		1,337		1,337		1,337						
2	도로	구로동 570 ~ 구로동 551	'22	8	260	2,080	150		150		150		150						
3	도로	고척동 76-321 ~ 고척동 76-232	'22	8	85	680	930		930		930		930						
4	도로	고척동 229-1 ~ 고척동 산 8-1	'22	6	100	600	1,200		1,200		1,200		1,200						
5	도로	오류동 36-8 ~ 오류동 6-2	'23	6	90	540	5,760		5,760		5,760			2,730	3,030				
6	도로	오류동 25-41 ~ 오류동38-29	'23	6	50	300	3,240		3,240		3,240			1,470	1,770				
		도로2단계	24건			64,213	28,410	1,064	9,590	-	9,590	17,756	-	-	-	-	25,330	3,080	
7	도로	개봉동171-18 ~ 개봉동170-54	'26~	6	71	425	2,132		-			2,132					2,132		
8	도로	운수동 44-6 ~ 운수동109-17	'26~	12	311	3,732	미정					미정					미정		2028.05.29

연번	시설 구분	사업명(위치)	사업 기간	사업규모			총사업비 (백만원)	집행방식별 사업비(백만원)					단계별 사업비(백만원)						실효시기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폭원 (m)	연장 (m)	면적 (㎡)	총계	국비	계	시비	구비	민간	'22	'23	'24	'25	'26	'27년이후	
9	도로	온수동 59-18 ~ 온수동 118-10	'26~	12	86	1,410	1,469		1,469		1,469						1,469		2028.05.29
10	도로	온수동 115-9 ~ 오류동114	'26~	12	186	2,232	7,855		7,855		7,855						7,855		2028.05.29
11	도로	천왕동 10-43 ~ 천왕동 6-1	'26~	6~8	288	1,838	1,249	999	250		250						1,249		2031.12.04
12	도로	천왕동 6-5 ~ 천왕동 7-7	'26~	4	21	84	81	65	16		16						81		2034.12.04
13	도로	구로동 572-10 ~ 구로동 572-8	'26~	8	190	1,520	12,544		-			12,544					12,544		2028.12.04
14	도로	고척동 318-14 ~ 고척동 271-71	'27~	12	95	1,140	220		-			220						220	2030.5.13
15	도로	개봉동 463 ~ 개봉동 466	'27~	8	70	560	100		-			100						100	2030.5.13
16	도로	고척동 164-133 ~ 고척동 316	'27~	8	95	760	140		-			140						140	2030.5.13
17	도로	고척동 268-1 ~ 개봉동 153-55	'27~	20	655	13,100	2,620		-			2,620						2,620	2030.5.13
18	도로	고척동 60-14 ~ 고척동 57-7	'27~	10	349	3,490	미정		-			미정						미정	2036.11.10
19	도로	구로동 448-118 ~ 구로동 424-13	'26~	8	133	1,064	미정		-			미정					미정		2036.3.31
20	도로	구로동 65 ~ 구로동 440	'26~	8	27	216	미정		-			미정					미정		2036.3.31

연번	시설 구분	사업명(위치)	사업 기간	사업규모			총사업비 (백만원)	집행방식별 사업비(백만원)					단계별 사업비(백만원)						실효시기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폭원 (m)	연장 (m)	면적 (㎡)	총계	국비	계	시비	구비	민간	'22	'23	'24	'25	'26	'27년이후	
21	도로	신도림동 419 ~ 신도림동 281-132	'27~	35	301	10,535	미정		-			미정						미정	2032.10.25
22	도로	신도림동416-40 ~ 신도림동394-1	'27~	23	39	897	미정		-			미정						미정	2032.10.25
23	도로	신도림동 287-7 ~ 신도림동276-57	'27~	12	680	8,160	미정		-			미정						미정	2032.10.25
24	도로	신도림동396-22 ~ 신도림동296-90	'27~	12	431	5,172	미정		-			미정						미정	2032.10.25
25	도로	신도림동396-277 ~신도림동286-3	'27~	10	241	2,410	미정		-			미정						미정	2032.10.25
26	도로	신도림동397-24 ~신도림동396-248	'27~	10	110	1,100	미정		-			미정						미정	2032.10.25
27	도로	신도림동299-3 ~신도림동271-8	'27~	10	236	2,360	미정		-			미정						미정	2032.10.25
28	도로	신도림동 296-113 ~신도림동 387-5	'27~	8	23	184	미정		-			미정						미정	2032.10.25
29	도로	신도림동 300-1 ~신도림동 324-4	'27~	8	68	544	미정		-			미정						미정	2032.10.25
30	도로	신도림동 643-1 ~ 신도림동 643-1	'27~	8	160	1,280	미정		-			미정						미정	2032.10.25
		공원 소계	8건			134,994	37,675					37,675	-	-	-	-	-	37,675	
31	근린공 원	교척동 266-1일대	'27~			108,120	32,436					32,436						32,436	2030.05.14

연번	시설 구분	사업명(위치)	사업 기간	사업규모			총사업비 (백만원)	집행방식별 사업비(백만원)					단계별 사업비(백만원)						실효시기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폭원 (m)	연장 (m)	면적 (㎡)	총계	국비	계	시비	구비	민간	'22	'23	'24	'25	'26	'27년이후	
32	근린공 원	고척동 316-17일대	'27~			17,464	5,239					5,239						5,239	2030.05.14
33	소공원	고척동 57-65 일대	'27~			852	미정					미정						미정	2036.11.11
34	소공원	구로동 440번지 일대	'27~			1,651	미정					미정					미정		2036.04.15
35	문화공 원	오류동 156-15	'27~			1,561	미정					미정					미정		2032.10.26
36	소공원	신도림동 396-4 일대	'27~			2,595	미정					미정						미정	2032.10.26
37	소공원	신도림동 416-13 일대	'27~			1,667	미정					미정						미정	2032.10.26
38	소공원	신도림동 300-5 일대	'27~			1,084	미정					미정						미정	2032.10.26
		공공공지	3건			8,466	49,346	67	49,279	-	49,279	-	-	-	-	-	-	49,346	
39	공공공 지	오류동 331-25일원	'27~			6,892	39,575		39,575		39,575							39,575	2028.05.30
40	공공공 지	오류동 326-13일원	'27~			1,487	9,688		9,688		9,688							9,688	2028.05.30
41	공공공 지	천왕동 6-1번지	'27~			87	83	67	16		16							83	2034.12.05
		사회복지시설	2건			2,946	1,396	1,117	279	-	279	-	-	-	-	-	-	1,396	

연번	시설 구분	사업명(위치)	사업 기간	사업규모			총사업비 (백만원)	집행방식별 사업비(백만원)					단계별 사업비(백만원)						실효시기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폭원 (m)	연장 (m)	면적 (㎡)		총계	국비	계	시비	구비	민간	'22	'23	'24	'25	'26	
42	사회복 지시설	천왕동 6-7일대	'27~			696	1,396	1,117	279		279							1,396	2034.12.05
43	사회복 지시설	신도림동 396-40일대	'27~			2,250	미정					미정						미정	2032.10.26
		공공청사	1건			3,286	13,604	-	-	-	-	13,604	-	-	-	-	13,604	-	
44	공공청 사	개봉동 465-9일대	'26~			3,286	13,604		-			13,604					13,604		2030.05.14
		녹지	2건			9,865	미정	-	-	-	-	-	-	-	-	-	-	-	
45	연결녹 지	신도림동 293-4 일대	'27~			3,635	미정		-			미정						미정	2032.10.26
46	연결녹 지	신도림동 285 일대	'27~			6,230	미정		-			미정						미정	2032.10.26
		광장	1건			5,370	65,352	-	65,352	-	65,352	-	-	-	-	-	65,352	-	
47	교통광 장	온수동 51-8	'26~			5,370	65,352		65,352		65,352						65,352		2028.05.30
		주차장	1건			2,389	미정	-	-	-	-	-	-	-	-	-	-	-	
48	주차장	구로동 548 일대	'25~			2,389	미정					미정				미정		-	

동작구공고 제2021-213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4-114호(2014.11.27.) 동작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 실시계획인가 의제 처리 및 동작구고시 제2019-52호(2019.7.4.)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동작구 동작동 10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소로1-1호선 및 소로3-1호선) 개설공사] 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를 열람공고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주택과에 비치하여 공고일(시보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본 열람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은 열람기간 내에 동작구 주택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30일

동 작 구 청 장

□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의 요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소로1-1호선, 소로3-1호선(동작구 동작동 10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다. 사업의 명칭 : 동작동 102번지 일대 도로 개설공사

라. 사업시행자 : 동작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병례

마.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비고
		기 정	변 경	
소로 1-1호선	연장 : 705(122)m 폭원 : 6~17.4m	연장 : 705(122)m 폭원 : 6~17.4m	연장 : 705(122)m 폭원 : 6~17.4m(9.3~11.1m)	국지도로
소로 3-1호선	연장 : 55.6m 폭원 : 6~7m	연장 : 55.6m 폭원 : 6~7m	연장 : 55.6m 폭원 : 6~7m	국지도로
도로 면적	소로 1-1호선 : 1,200 ㎡ 소로 3-1호선 : 505 ㎡	소로 1-1호선 : 1,200 ㎡ 소로 3-1호선 : 505 ㎡	소로 1-1호선 : 1,200 ㎡ 소로 3-1호선 : 505 ㎡	

※ ()는 구역내 연장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2018.11.22.)로부터 60개월

사. 열람공고기간 : 시보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아.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주택과 (☎02-820-9776). 끝.

동작구공고 제2021-2163호
상도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안) 열람공고

총독부 고시 제208호(1940.3.1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최초),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254호(2020.6.29.)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변경 결정(최종)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401호(2021.7.29.)로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최종)된 상도근린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제16조의2에 의거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동 작 구 청 장

가. 공원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산75-1 일대

나. 공원면적 : 432,518.8㎡(동작구지역: 245,080.5㎡)

다. 변경내용 : 기본계획(변경) 작성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세부시설 변경

- 기반시설 : 22,727㎡ → 23,487㎡ (증 760㎡)
 - 도로 및 광장 면적 증감, 광장 폐지 2개소
- 조경시설 : 5,240㎡ → 5,599㎡ (증 359㎡)
 - 계류 신설
- 휴양시설 : 7,480㎡ → 9,660㎡ (증 2,180㎡)
 - 쉼터 2개소, 산림욕쉼터 등 신설
- 유희시설 : 1,139㎡ → 1,693㎡ (증 554㎡)
 - 어린이놀이터 신설
- 운동시설 : 10,991㎡ → 12,704㎡ (증 1,713㎡)
 -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장, 실버운동시설 등 신설·변경
- 편익시설 : 669㎡ → 803㎡ (증 134㎡)
 - 전망데크 신설
- 녹지 및 기타 : 359,402.8㎡ → 353,702.8㎡ (감 5,700㎡)

라. 관계서류 : 열람장소에 비치

마. 열람기간 : 열람공고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바. 열람장소 : 동작구 공원녹지과(☎02-820-9846)

사. 본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동작구 상도동 산75번지 일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432,518.8	53,926.0	4	2,357.56	3,030.66	477	432,518.8	59,626.0	4	2,357.56	3,030.66	503	시설면적 증가 5,700.0㎡ (증 26기)
기 반 시 설	소 계	25,085.0	22,727.0	-	-	-	-	25,845.0	23,487.0	-	-	-	-	증 760.0㎡
	도 로	22,535.0	20,177.0 (2,358.0)	-	-	-	-	23,607.0	21,249.0 (2,358.0)	-	-	-	-	증 1,072.0㎡
	광 장	1,686.0	1,686.0	-	-	-	-	1,374.0	1,374.0	-	-	-	-	감 312.0㎡
	생태육교	864.0	864.0	-	-	-	-	864.0	864.0	-	-	-	-	
조 경 시 설		5,240.0	5,240.0	-	-	-	31	5,599.0	5,599.0	-	-	-	32	증 359.0㎡ (증 1기)
휴 양 시 설		7,480.0	7,480.0	-	-	-	299	9,660.0	9,660.0	-	-	-	300	증 2,180.0㎡ (증 1기)
유 희 시 설		1,139.0	1,139.0	-	-	-	7	1,693.0	1,693.0	-	-	-	9	증 554.0㎡ (증 2기)
운 동 시 설		10,991.0	10,991.0	1	1,996.73	1,996.73	124	12,704.0	12,704.0	1	1,996.73	1,996.73	147	증 1,713.0㎡ (증 23기)
교 양 시 설		22,294.0	5,462.0	1	206.30	759.40	7	22,294.0	5,462.0	1	206.30	759.40	7	
편 익 시 설		669.0	669.0	1	34.53	34.53	-	803.0	803.0	1	34.53	34.53	-	증 134.0㎡
관 리 시 설		218.0	218.0	1	120.00	240.00	9	218.0	218.0	1	120.00	240.00	8	(감 1기)
녹지 및 기타		359,402.8	-	-	-	-	-	353,702.8	-	-	-	-	-	감 5,700.0㎡
시 설 율 (법정 40%)		53,926.0 / 432,518.8 × 100(%) = 12.47%						59,626.0 / 432,518.8 × 100 = 13.79%						
건 폐 율 (법정 10%)		2,357.56 / 432,518.8 × 100(%) = 0.55%						2,357.56 / 432,518.8 × 100 = 0.55%						

2. 시설조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432,518.8	53,926			2,357.56	3,030.66	477			432,518.8	59,626			2,357.56	3,030.66	503	증 5,700㎡ (증 26기)
기 반 시 설	소 계			25,085	22,727								25,845	23,487						증 760㎡
	도 로		전지역	22,535	20,177 (2,358)							전지역	23,607	21,249 (2,358)						증 1,072㎡
	광 장	가	9개소	1,686	1,686						가	7개소	1,374	1,374						감 312㎡
		가-2	상도동 산65-240	142	142						가-2	상도동 산65-240	142	142						
		가-3	상도동 533-30	10	10						가-3	상도동 533-30	10	10						
		가-4	상도동 124-193	785	785						가-4	상도동 124-193	785	785						
		가-5	봉천동 산103-52	39	39						가-5	봉천동 산103-52	39	39						
		가-8	봉천동 1718-9	252	252						가-8	봉천동 1718-9	252	252						
		가-10	상도동 533-3	243	243														감 243㎡	
		가-11	상도동 산58	54	54						가-11	상도동 산58	54	54						
		가-12	상도동 산57-64	153	153						가-12	상도동 산57-64	92	92						감 61㎡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생태육교	가-13	상도동 533-3	8	8															감 8㎡
		2	2개소	864	864						2	2개소	864	864						
		2-1	상도동 산65-196	240	240						2-1	상도동 산65-196	240	240						
		2-2	상도동 531-15	624	624						2-2	상도동 531-15	624	624						
조경시 설	소 계			5,240	5,240					31			5,599	5,599					32	증 359㎡ (증 1기)
	야생 초화원	나	2개소	501	501						나	2개소	501	501						
		나-1	상도동 산57-64	297	297						나-1	상도동 산57-64	297	297						
		나-2	상도동 산65-116	204	204						나-2	상도동 산65-116	204	204						
	암석원	하	봉천동 산104-9	4,050	4,050						하	봉천동 산104-9	4,050	4,050						
	화계식 옹벽	①	광장 (가-4내)	-	-					1	①	광장 (가-4내)	-	-					1	
조경시 설	팔각정	②	휴게소 (라-8내) 상도동 531-15	-	-					2	②	휴게소 (라-8내) 상도동 531-15	-	-					2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파고라	③	9개소	-	-					12	③	15개소	-	-						18	(증 6기)
	③-3	배드민턴장 (바-1내)	-	-					1	③-3	배드민턴장 (바-1내)	-	-						1	
	③-4	체력단련장 (아-1내)	-	-					1	③-4	체력단련장 (아-1내)	-	-						1	
	③-7	체력단련장 (아-2내)	-	-					2	③-7	체력단련장 (아-2내)	-	-						2	
	③-9	배드민턴장 (바-6내)	-	-					2	③-9	배드민턴장 (바-6내)	-	-						2	
	③-11	유아숲체험원 (라-2내)	-	-					1	③-11	유아숲체험원 (라-2내)	-	-						1	
	③-12	배드민턴장 (바-3내)	-	-					1	③-12	배드민턴장 (바-3내)	-	-						1	
	③-15	약수터 (타-1내)	-	-					1	③-15	약수터 (타-1내)	-	-						1	
	③-18	놀이터 (마-4내)	-	-					1	③-18	놀이터 (마-4내)	-	-						1	
	③-20	배드민턴장 (바-5내)	-	-					1	③-20	배드민턴장 (바-5내)	-	-						1	
	③-21	휴게소 (라-20내)	-	-					1	③-21	휴게소 (라-20내)	-	-						1	
										③-22	휴게소 (서-1 내)	-	-						1	(증 1기)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㉓-23	산림욕쉼터 (여 내)	-	-					1	(증 1기)		
										㉓-24	체력단련장 (아-21내)	-	-					1	(증 1기)		
										㉓-25	배드민턴장 (바-8내)	-	-					1	(증 1기)		
										㉓-26	실버운동시설 (처 내)	-	-					2	(증 2기)		
	목재데크	④	유아숲체험원 (러-2내)	-	-				1	④	유아숲체험원 (러-2내)	-	-					1			
	볼라드	⑤	전지역						14	⑤	전지역							8	(감 6기)		
	앉음벽	⑥	체력단련장 (아-9내)						1	⑥	체력단련장 (아-9내)							1			
	정자									㉔	휴게소 (서-2 내)							1	(증 1기)		
	잔디마당	거	봉천동 1718-9	625	625					거	봉천동 1718-9	625	625								
	생태연못	더	상도동 산65-2174	64	64					더	상도동 산65-2174	64	64								
조경 시설	계류								저	상도동 산57-117	359	359						증 359㎡			
휴양 시설	소 계		7,480	7,480				299			9,660	9,660					300	증 2,180㎡ (증 1기)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설	피크닉장	다	상도동 283-226	409	409						다	상도동 283-226	409	409						
	휴게소	라	32개소	7,071	7,071						라	32개소	7,071	7,071						
		라-1	상도동 산76-3	81	81						라-1	상도동 산76-3	81	81						
		라-4	상도동 산65-246	69	69						라-4	상도동 산65-246	69	69						
		라-5	상도동 산65-217	54	54						라-5	상도동 산65-217	54	54						
		라-6	상도동 산65-217	653	653						라-6	상도동 산65-217	653	653						
		라-7	상도동 산65-217	3	3						라-7	상도동 산65-217	3	3						
		라-8	상도동 산533-3	429	429						라-8	상도동 산533-3	429	429						
		라-9	상도동 산57-58	195	195						라-9	상도동 산57-58	195	195						
		라-10	상도동 124-193	269	269						라-10	상도동 124-193	269	269						
		라-11	상도동 123-91	594	594						라-11	상도동 123-91	594	594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라-12	봉천동 산115	187	187						라-12	봉천동 산115	187	187							
		라-13	봉천동 1712-6	57	57						라-13	봉천동 1712-6	57	57							
		라-14	봉천동 산117	98	98						라-14	봉천동 산117	98	98							
		라-15	봉천동 산117	224	224						라-15	봉천동 산117	224	224							
		라-16	봉천동 산116-5	161	161						라-16	봉천동 산116-5	161	161							
		라-17	봉천동 산103-3	140	140						라-17	봉천동 산103-3	140	140							
		라-18	봉천동 산103-84	176	176						라-18	봉천동 산103-84	176	176							
		라-19	봉천동 1712-3	73	73						라-19	봉천동 1712-3	73	73							
		라-20	상도동 산65-116	120	120						라-20	상도동 산65-116	120	120							
		휴 양 시 설		라-21	봉천동 1718-9	117	117					라-21	봉천동 1718-9	117	117						
라-22	상도동 산65-196			58	58					라-22	상도동 산65-196	58	58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라-23	상도동 524-1	16	16						라-23	상도동 524-1	16	16							
	라-24	봉천동 1718-9	95	95						라-24	봉천동 1718-9	95	95							
	라-25	봉천동 산133-10	383	383						라-25	봉천동 산133-10	383	383							
	라-26	봉천동 산113-48	140	140						라-26	봉천동 산113-48	140	140							
	라-27	봉천동 산104-1	117	117						라-27	봉천동 산104-1	117	117							
	라-28	봉천동 산104-1	82	82						라-28	봉천동 산104-1	82	82							
	라-29	봉천동 산104-1	436	436						라-29	봉천동 산104-1	436	436							
	라-30	봉천동 산103-3	937	937						라-30	봉천동 산103-3	937	937							
	라-31	상도동 산75-1	557	557						라-31	상도동 산75-1	557	557							
	라-32	봉천동 1712-6	271	271						라-32	봉천동 1712-6	271	271							
	라-33	봉천동 1712-6	270	270						라-33	봉천동 1712-6	270	270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라-34	상도동 산65-116	9	9						라-34	상도동 산65-116	9	9						
	쉼터										서	2개소	1,434	1,434						증 1,434㎡
											서-1	상도동 산65-248	605	605						증 605㎡
											서-2	상도동 산57-117	829	829						증 829㎡
	산림욕 쉼터										어	상도동 531-11	746	746						증 746㎡
	등벤치	⑨	전지역						196	⑨	전지역								196	
	평벤치	⑩	전지역						67	⑩	전지역								64	(감 3기)
	통나무 의자	⑫	전지역						30	⑫	전지역								30	
	쉼돌	⑬	전지역						6	⑬	전지역								6	
	야외테이블										⑭	실버운동시설 (처 내)							4	(증 4기)
	유 회 시 설	소 계			1,139	1,139				7			1,693	1,693					9	증 554㎡ (증 2기)
놀이터		마	5개소	1,139	1,139						마	6개소	1,693	1,693						증 554㎡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아파트	주택	마-1	상도동 산80-9	131	131						마-1	상도동 산80-9	131	131							
		마-3	상도동 산57-103	283	283						마-3	상도동 산57-103	283	283							
		마-4	봉천동 산103-61	264	264						마-4	봉천동 산103-61	264	264							
		마-5	봉천동 647-175	163	163						마-5	봉천동 647-175	163	163							
		마-6	봉천동 635-429	298	298						마-6	봉천동 635-429	298	298							
											마-7	상도동 산27-119	554	554					(2)	증 554㎡	
	놀이시설물	㉔	전지역						7	㉔	전지역							9	증 2기		
스포츠	소 계			10,991	10,991			1,996.73	1,996.73	124			12,704	12,704			1,996.73	1,996.73	147	증 1,713㎡ (증 23기)	
	배드민턴장	바	7개소	4,454	4,454			1,996.73	1,996.73		바	8개소	4,893	4,893			1,996.73	1,996.73		증 439㎡	
		바-1	상도동 산65-150임	439	439						바-1	상도동 산65-150임	439	439							
		바-2	상도동 산65-217	643	643						바-2	상도동 산65-217	643	643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바-3	상도동 산57-103	352	352						바-3	상도동 산57-103	352	352							
		바-4	봉천동 산117	340	340						바-4	봉천동 산117	340	340							
		바-5	상도동 산65-149	439	439						바-5	상도동 산65-149	439	439							
		바-6	상도동 533-3	244	244						바-6	상도동 533-3	244	244							
		바-7	봉천동 산103-52	1,997	1,997			1,996.73	1,996.73		바-7	봉천동 산103-52	1,997	1,997			1,996.73	1,996.73			
											바-8	상도동 산65-196	439	439							증 439㎡ (기 설치)
	운동공간	사	2개소	741	741						사	2개소	741	741							
		사-1	상도동 산58	272	272						사-1	상도동 산58	272	272							
		사-2	상도동 533-19	469	469						사-2	상도동 533-19	469	469							
야외시설	체력 단련장	아	20개소	5,796	5,796						아	23개소	6,211	6,211							증 415㎡
		아-1	상도동 산65-149	610	610						아-1	상도동 산65-149	610	610							
		아-2	상도동 산65-217	396	396						아-2	상도동 산65-217	396	396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아-3	상도동 산65-161	89	89						아-3	상도동 산65-161	89	89							
	아-4	상도동 산65-116	28	28						아-4	상도동 산65-116	28	28							
	아-5	상도동 산57-64	226	226						아-5	상도동 산57-64	226	226							
	아-6	봉천동 산117	148	148						아-6	봉천동 산117	148	148							
	아-7	봉천동 산103-3	982	982						아-7	봉천동 산103-3	982	982							
	아-8	봉천동 산103-3	569	569						아-8	봉천동 산103-3	569	569							
	아-9	상도동 533-3	54	54						아-9	상도동 533-3	54	54							
	아-10	상도동 533-3	54	54						아-10	상도동 533-3	54	54							
	아-11	상도동 533-25	56	56						아-11	상도동 533-25	56	56							
	아-12	상도동 533-3	61	61						아-12	상도동 533-3	102	102							증 41㎡
	아-13	상도동 533-3	52	52						아-13	상도동 533-3	87	87							증 35㎡
	아-14	상도동 산65-116	22	22						아-14	상도동 산65-116	22	22							
	아-15	봉천동 산103-3	625	625						아-15	봉천동 산103-3	625	625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아-16	봉천동 산103-3	666	666						아-16	봉천동 산103-3	666	666						
		아-17	봉천동 1704-1	646	646						아-17	봉천동 1704-1	646	646						
		아-18	봉천동 산103-3	56	56						아-18	봉천동 산103-3	56	56						
		아-19	봉천동 산117	221	221						아-19	봉천동 산117	221	221						
		아-20	봉천동 산116-2	235	235						아-20	봉천동 산116-2	235	235						
											아-21	상도동 산75-1임	172	172						증 172㎡
											아-22	상도동 533-3임	107	107						증 107㎡
											아-23	상도동 533-3임	60	60						증 60㎡
야외 시설	실버운동시설										처	상도동 산65-254	859	859						증 859㎡
	체력단련시설	㉞	전지역						34종 124	㉞	전지역							34종 135	(증 11기)	
										㉟	실버운동시설 (처 안)							12종 12	(증 12기)	
교양 시설	소계			22,294	5,462			206.30	759.40	7			22,294	5,462			206.30	759.40	7	
	야외공연장	자	상도동 533-3	1,101	1,101						자	상도동 533-3	1,101	1,101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어린이집	차	봉천동 산103-66	816	816			206.30	759.40	7	차	봉천동 산103-66	816	816			206.30	759.40	7		
	유아숲 체험원	러	3개소	20,000	3,168						러	3개소	20,000	3,168							
		러-1	봉천동 산133-20	10,000	537						러-1	봉천동 산133-20	10,000	537							
		러-2	상도동 533-3	10,000	2,631						러-2	상도동 533-3	10,000	2,631							
	생태놀이터	머	2개소	377	377						머	2개소	377	377							
		머-1	봉천동 산117	64	64						머-1	봉천동 산117	64	64							
		머-2	상도동 산65-149	313	313						머-2	상도동 산65-149	313	313							
	편의시설	소 계			669	669			34.53	34.53				803	803			34.53	34.53		증 134.0㎡
		주차장	카	상도동 281-2	18	18						카	상도동 281-2	18	18						
약수터		타	1개소	278	278						타	1개소	278	278							
		타-1	봉천동 산117	278	278						타-1	봉천동 산117	278	278							
화장실		1	4개소	78	78			34.53	34.53		1	4개소	78	78			34.53	34.53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1-1	봉천동 산103-61	35	35			34.53	34.53		1-1	봉천동 산103-61	35	35			34.53	34.53		
		1-2	상도동 533-3	10	10						1-2	상도동 533-3	10	10						
		1-3	상도동 산65-149	17	17						1-3	상도동 산65-149	17	17						
		1-4	상도동 산65-217	16	16						1-4	상도동 산65-217	16	16						
	전망데크	버	2개소	295	295						버	3개소	429	429						증 134.0㎡
		버-1	상도동 533-8	241	241						버-1	상도동 533-8	241	241						
		버-2	상도동 533-24	54	54						버-2	상도동 533-24	54	54						
											버-3	상도동 산67-13	134	134						증 134.0㎡
관 리 시 설	소 계			218	218			120.0	240.0	9			218	218			120.0	240.0	8	(감 1기)
	관리 사무소	3	1개소	218	218			120.0	240.0		3	1개소	218	218			120.0	240.0		
		3-1	상도동 산77-13	218	218	R.C조	지상1층, 지하1층	120.0	240.0		3-1	상도동 산77-13	218	218	R.C조	지상1층, 지하1층	120.0	240.0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표석	㉞	전지역							4	㉞	전지역								3	(감 1기)
	표지판	㉟	전지역							5	㉟	전지역								5	
녹지 및 기타	소 계			359,402.8									353,702.8								감 5,700㎡
	녹지			359,402.8									353,702.8								감 5,700㎡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9,462	20,177 (2,358)				
변경					10,060	21,249 (2,358)				
당초	소로	소 계			588	1,587 (2,358)				도시계획 도로 시설면적 미포함
변경					667	1,890 (2,358)				
당초		3	1	8.0	39	(340)		상도동 459-1공	소로 3-5	도시계획도로
당초		3	2	6.0	57	340		상도동 283-226임	상도동 280종	
당초		3	3	6.0	57	341		봉천동 산103-61임	산책로 25	
당초		3	4	6.0	38	245		광장 가-5	산책로 28	
당초		3	5	6.0	95	(569)		봉천동 산103-20공	상도동 산76-4임	도시계획도로
당초		3	6	4.0	111	445		상도동 산64-104임	광장 가-10	
변경		3	6	4.0	130	524		상도동 산64-104임	산책로 136	
당초		3	7	10.0	144	(1,449)		상도동 533-2도	상도동 533-2도	도시계획도로
당초		3	8	5.0	47	216		봉천동 1718-9공	광장 가-8	
신설		3	9	3.5~ 5.0	60	224		상도동 산57-35임	산책로 89	
당초	산책로	소 계			8,874	18,590				
변경					9,393	19,359				
당초		-	1	1.5	13	19		상도동 산80-9임	놀이터 마-1	
당초		-	2	1.5	25	39		놀이터 마-1	상도동 산80-30도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	3	1.5	2	3		산책로 110	상도동 산80-32임	
당초		-	5	2.0	62	127		유아숲체험원 라-1	산책로 8	
당초		-	6	1.5	6	27		상도동 281전	소로 3-2	
당초		-	8	2.5	190	454		소로 3-5	체력단련장 아-6	
당초	산책로	-	9	1.5	34	61		봉천동 산115임	약수터 타-1	
당초		-	10	1.5	8	13		봉천동 산115임	약수터 타-1	
당초		-	11	1.5	116	175		약수터 타-1	산책로 17	
당초		-	12	1.5	2	4		봉천동 산115임	산책로 13	
당초		-	13	1.5	44	66		산책로 14	휴게소 라-12	
당초		-	14	1.5	94	141		봉천동 산113-48임	산책로 13	
당초		-	15	1.5	121	181		봉천동 산113-49임	산책로 13	
당초		-	16	1.5	140	212		휴게소 라-12	휴게소 라-16	
당초		-	17	1.5	60	95		산책로 30	휴게소 타-15	
당초		-	18	1.5	62	95		휴게소 라-15	휴게소 라-16	
당초		-	19	1.5	84	127		휴게소 라-15	휴게소 라-17	
당초		-	20	1.5	37	57		휴게소 라-16	휴게소 라-17	
당초		-	21	1.5	83	126		휴게소 라-17	산책로 30	
당초		-	22	1.5	33	51		산책로 24	휴게소 라-17	
당초		-	23	1.5	82	124		휴게소 라-18	휴게소 라-16	
당초		-	24	1.5	235	353		산책로 23	봉천동 산103-3공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	25	2.0	41	82		소로 3-3	휴게소 라-18	
당초		-	26	1.5	113	170		봉천동 산635-434공	휴게소 라-18	
당초		-	27	1.5	99	160		배드민턴장 바-7	산책로 24	
당초		-	28	3.0	103	309		소로 3-3	소로 3-4	
당초		-	29	1.5	87	131		산책로 24	산책로 49	
당초		-	30	3.0	9	448		상도동 산76-1임	휴게소 (라-30)	
변경		-	30	3.0	149	448		상도동 산76-1임	휴게소 라-30	
당초			31	1.5	48	77		상도동 281-2구	산책로 32	
폐지										
당초	산책로		32	3.0	414	1,227		소로 3-2	상도동 산65-149임	
변경			32	3.0	306	918		소로 3-2	산책로 39	
당초			33	1.5	85	131		상도동 산75-1임	산책로 32	
폐지										
당초			34	1.5	95	144		산책로 32	상도동 산76-1임	
당초			35	1.5	169	257		산책로 32	휴게소 라-4	
당초			36	1.5	33	51		산책로 32	상도동 산75-1임	
당초			37	1.5	119	178		상도동 산75-4임	산책로 32	
당초			38	2.0	26	53		휴게소 라-4	상도동 산65-223공	
당초			39	2.0	157	317		산책로 32	휴게소 (라-4)	
변경			39	2.0	213	427		산책로 41	휴게소 라-4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40	2.0	54	111		산책로 41	산책로 32	
폐지										
당초			41	2.0	32	56		산책로 43	산책로 40	
변경			41	2.0	32	56		산책로 43	산책로 39	
당초			42	2.0	31	65		산책로 43	산책로 41	
당초			43	2.0	185	362		상도동 산65-150임	체력단련장 아-1	
당초			44	1.5	81	130		상도동 산65-151임	산책로 43	
변경			44	1.5	42	68		산책로 127	산책로 43	
당초			45	3.0	8	24		상도동 산65-41임	상도동 산65-41임	
당초			46	1.5	4	6		상도동 산65-41임	휴게소 라-6	
당초			47	3.0	29	87		휴게소 라-6	체력단련장 아-2	
당초			48	1.5	71	107		휴게소 라-6	상도동 산65-229임	
당초			49	3.0	44	119		상도동 산65-229임	휴게소 라-30	
당초		산책로	50	3.0	73	254		광장 가-2	상도동 산65-217공	
당초			51	2.0	75	140		휴게소 라-7	상도동 산65-229임	
당초			52	1.5	48	71		체력단련장 아-2	상도동 산65-233임	
당초			53	3.0	142	412		광장 가-2	체력단련장 아-2	
당초			55	3.0	236	712		휴게소 라-24	산책로 65	
당초			56	2.0	53	106		산책로 112	휴게소 라-22	
당초			57	1.5	40	60		봉천동 1712-3공	봉천동 1712-3공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58	2.0	14	31		산책로 65	휴게소 라-8	
당초			59	2.0	14	30		산책로 65	휴게소 라-8	
당초			60	1.5	30	45		상도동 산65-159임	산책로 65	
당초			61	1.5	32	49		산책로 65	산책로 65	
당초			62	1.5	275	414		산책로 65	산책로 65	
폐지										
당초			63	1.5	17	29		산책로 62	산책로 65	
변경			63	1.5	62	95		상도동 533-3공	산책로 65	
당초			64	1.5	43	69		상도동 533-3공	산책로 62	
폐지										
당초			65	3	782	2,368		소로 3-7	광장 (가-10)	
변경			65	3.0	748	2,280		소로 3-7	산책로 136	
당초			67	1.5	123	186		산책로 65	산책로 65	
폐지										
당초			68	1.5	22	34		산책로 67	진입광장 (가-13)	
폐지										
당초	산책로		69	2.0	65	130		소로 3-6	산책로 70	
당초			70	2.0	146	292		상도동 산65-161임	광장 가-10	
당초			71	1.5	55	83		유아숲체험원 러-2	산책로 65	
당초			72	1.5	49	72		상도동 533-3공	산책로 118	
당초			73	1.5	12	20		산책로 72	산책로 118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74	1.5	12	19		산책로 71	산책로 118	
당초			75	3.0	88	264		상도동 531-15공	생태육교 2-2	
당초			78	1.5	43	68		상도동 531-15공	놀이터 마-3	
당초			79	1.5	215	311		광장 가-11	산책로 76	
당초			80	3.0	205	591		광장 가-12	봉천동 1712-6공	
당초			81	1.5	44	60		놀이터 마-13	산책로 80	
당초			82	2.0	23	45		산책로 80	휴게소 라-9	
당초			83	2	28	57		광장(가-12)	휴게소(라-9)	
폐지										
당초			84	2.0	19	39		야생초화원 나	광장 가-12	
당초			85	1.5	13	20		체력단련장 아-5	야생초화원 나	
당초			86	2.0	21	43		산책로 89	야생초화원 나	
당초			87	3	57	175		상도동산57-35임	산책로 89	
폐지										
당초			88	1.5	26	40		산책로 89	체력단련장 아-5	
당초			89	3.0	241	759		광장 가-4	광장 가-12	
당초			90	1.5	62	92		광장 가-4	광장 가-10	
당초			91	2.0	90	182		봉천동 1712-6공	산책로 80	
당초			92	1.5	11	16		상도동 123-91대	휴게소 라-11	
당초			93	3.0	6	19		상도동 123-91대	휴게소 라-11	
당초			94	1.5	31	47		상도동 123-91대	휴게소 라-11	
당초			95	2.0	30	67		산책로 28	산책로 28	
당초			96	2.0	28	56		산책로 28	산책로 28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97	2.0	73	147		산책로 28	소로 3-4	
당초			98	1.5	18	31		산책로 97	산책로 28	
당초			99	2.0	10	21		휴게소 라-22	휴게소 라-23	
당초	산책로		100	2.0	33	66		휴게소 라-23	휴게소 라-24	
당초			101	2.0	35	70		휴게소 라-21	산책로 55	
당초			102	2.0	65	130		휴게소 라-21	생태육교 2-1	
당초			104	1.5	132	198		암석원 하	봉천동 산104-1임	
당초			105	1.5	29	44		산책로 104	휴게소 라-28	
당초			106	1.5	224	335		휴게소 라-27	휴게소 라-29	
당초			107	1.5	18	27		휴게소 라-12	휴게소 라-27	
당초			108	1.5	68	102		산책로 106	휴게소 라-29	
당초			109	1.5	69	103		휴게소 라-18	휴게소 라-29	
당초			110	2.0	17	34		소로 3-5	유아숲체험원 라-1	
당초			111	1.5	29	44		상도동 산75-1임	산책로 31	
변경			111	1.5	42	65		상도동 산75-1임	산책로 32	
당초			112	2.0	45	90		봉천동 1718-9공	봉천동 1718-9공	
당초			113	1.5	22	33		상도동 산65-159임	산책로 65	
당초			114	1.5	28	42		산책로 65	상도동 산65-159임	
당초			115	1.5	176	264		상도동 531-15공	상도동 산64-34임	
당초			116	1.5	36	55		상도동 531-14공	산책로 115	
변경			116	1.5	36	55		산책로 134	산책로 115	
당초			117	1.5	64	96		상도동 산64-34임	산책로 115	
당초			118	3.0	43	130		유아숲체험원 라-2	산책로 65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119	1.5	42	63		산책로 65	산책로 75	
당초			120	1.5	29	44		상도동 산57-64공	산책로 90	
당초			121	2.0	13	28		산책로 5	상도동 산76-1임	
당초			122	1.5	38	52		상도동 산65-41임	휴게소 라-6	
당초			123	1.5	22	32		유아숲체험원 러-1	약수터 타-1	
당초			124	1.5	22	33		휴게소 라-30	휴게소 라-30	
당초			125	2.0	132	264		운동공간 사-2	상도동 533-11공	
당초			126	2.5	33	83		산책로 69	산책로 70	
산설	산책로		127	1.5	116	181		산책로 43	산책로 128	
산설			128	1.5	68	103		상도동 산65-41임	상도동 산65-149임	
산설			129	1.5	121	182		산책로 36	휴게소 라-4	
산설			130	2.0	46	93		생태육교 2-1	상도동 산65-149임	
산설			131	2.0	6	12		산책로 130	상도동 산65-208임	
산설			132	1.5	71	106		산책로 65	상도동 533-3공	
산설			133	1.5	260	390		산책로 65	산책로 119	
산설			134	2.0	170	340		상도동 531-15공	상도동 531-15공	
산설			135	3.0	82	217		체력단련장 아-1	상도동 산65-149임	
산설			136	2.0~3.8	212	598		산책로 65	산책로 65	
산설			137	2.0	29	63		산책로 136	산책로 136	

관악구공고 제2021-2268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1. 건설부 고시 제369호(1980.11.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2018-56호(2018.03.02.)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관악산공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9-47호('19.05.09.)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악19)]을 완료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 하고자 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2월 30일

관 악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산3-9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 명칭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악19)

다. 사업면적 및 내용

○ 면적 : 1,392m²

○ 내용 :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관악구청장

○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 ~ 2021.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구분	소재지	지목	면 적(㎡)		실 이용 사항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면적		성 명	공유 지분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1,392	1,392								
1	봉천동 산3-9	전	1,392	1,392	공원	서울특별시	단독 지분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	-	-

사. 관계도서 : 생략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공원녹지과 비치 ☎02-879-6524)

서초구공고 제2021 - 2296호

도시계획시설(방배동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43호(2000.3.6)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 서초구고시 제2015-272호(2015.9.17.)로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작성 고시, 서초구고시 제2019-87(2019.5.14.)로 실시계획인가고시(토지보상) 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산102-20번지 일대의 방배동근린공원에 대하여,
2.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관계 서류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6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본 실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30일

서 초 구 청 장

가. 실시계획의 주요내용

-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산102-20번지 등 3필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사업
 - 나) 사업의 명칭: 방배동근린공원 조성 사업
-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가) 면 적: 7,003.0㎡
 - 나) 내 용: 공원조성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나)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번지
-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4.5.13. 까지
- 6) 수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따로붙임

나. 열람기간: 열람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열람시간 09:00 ~ 18:00)

다. 열람장소: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61)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명: 도시계획시설(방배동근린공원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서초구청장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성명	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방배동 산102-20	임야	2,846	2,846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체	서울특별시 남부순환로2584	한국전력공사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산*	지상권설정
2	방배동 산102-21	임야	3,120	3,120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체	서울특별시 남부순환로2584	한국전력공사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산*	
3	방배동 산102-22	임야	1,037	1,037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체	서울특별시 남부순환로2584	한국전력공사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산*	

서초구공고 제2021 - 2297호

도시계획시설(도구머리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72호(1977.7.9)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되고, 서초구고시 제 2003-391호(2003.12.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작성 고시, 서초구고시 제2020-240(2020.12.17.)호, 제2020-210호(2020.10.22.)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토지보상)된 서초구 방배동 산73-2번지 일대의 도구머리근린공원에 대하여,
2. 실시계획인가(변경)하여 공원을 조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관계 서류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3.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공고로 갈음합니다.
4.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6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 이고 있으니 본 실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 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30일

서 초 구 청 장

가. 실시계획의 주요내용

-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변경)
 - 가) 당 초: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산73-2번지, 산73-139번지
 - 나) 변 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산73-2번지, 산73-139번지 등 7필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나) 사업의 명칭: 도구머리근린공원 조성사업
- 3) 사업의 면적 및 내용 (변경)
 - 가) 면 적: (당초) 5,322.2㎡ (변경) 24,725㎡
 - 나) 내 용: (당초) 토지보상 (변경) 토지 및 무허가건물보상, 공원조성
- 4) 변경사유: 공원용지 보상완료에 따른 공원조성
-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나)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번지
- 6)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4.5.13. 까지
- 7) 수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별첨조서

나. 열람기간: 열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열람시간 09:00 ~ 18:00)

다. 열람장소: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61)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당초)

☐ 사 업 명: 2020년 도시계획시설(도구머리근린공원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서초구청장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성 명	지분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방배동 산73-2	임야	13,880	4,522	김○○	4027.4551188761/38 037	경기도 의왕시 독정이길 **	국민건강 보험공단 의왕지사	강원도원 주시건강 로32	압 류
					김○○	4337.2593587896/38 0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34 양지마을 ***-****			
					방○○	4027.4551188761/38 037	경기도 의왕시 독정이길 **			
2	방배동 산73-139	임야	3,468	800.2	김○○	2852.3911202422/38 037	경기도 의왕시 독정이길 **			
					김○○	3071.8058217993/38 0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34 양지마을 ***-****			
					방○○	2852.3911202422/38 037	경기도 의왕시 독정이길 **			

※ 위 토지조서는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기준이며 향후 보상 시 권리관계 및 물건(건물 등) 등을 확인하여 시행할 예정임

※ 위 소유자 3명(김00, 김00, 방00)의 소유지분 전부이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변경)

☐ 사 업 명: 2020년 도시계획시설(도구머리근린공원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서초구청장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성 명	지분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방배동 산73-2	임야	13,880	13,880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체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2	방배동 산73-139	임야	3,468	3,468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체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3	방배동 산73-145	임야	1,961	1,961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체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4	방배동 산73-147	임야	2,988	2,988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체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5	방배동 산73-148	임야	597	597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체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6	방배도 산73-149	임야	602	602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체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7	방배동 산73-150	임야	1,229	1,229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체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 위 토지조서는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기준이며 향후 물건(무허가 건물 등) 등을 확인하여 사업을 시행할 예정임

서초구공고 제2021-2298호

도시계획시설(능안어린이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153호(2005.5.19)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서초구고시 제2005-81호(2005.9.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작성 고시, 서초구 고시 제2019-208(2019.10.31.), 제2020-81(2020.5.7.)호로 실시계획인가고시(토지보상) 된 서초구 내곡동 168-10번지 일대의 능안어린이공원에 대하여
2. 실시계획인가(변경)하여 공원을 조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관계 서류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6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본 실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30일

서 초 구 청 장

가. 실시계획의 주요내용

-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변경)
 - 가) 당 초: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168-10번지
 - 나) 변 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168-10번지 일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나) 사업의 명칭: 능안어린이공원 조성사업
 - 3) 사업의 면적 및 내용 (변경)
 - 가) 면 적: (당초) 504㎡ (변경) 1,156㎡
 - 나) 내 용: (당초) 토지보상 (변경)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 4) 변경사유: 공원용지 보상완료에 따른 공원조성
 -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나)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번지
 - 6)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4.5.13. 까지
 - 7) 수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별첨조서
- 나. 열람기간: 열람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열람시간 09:00 ~ 18:00)
- 다. 열람장소: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61)
-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조서 (당초)

☐ 사 업 명: 2020년 도시계획시설(능안어린이공원조성)사업

☐ 사업 시행자: 서초구청장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성 명	지분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내곡동 168-10	답	504	504	김○○	504/504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1**-**			

※ 위 토지조서는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기준이며 향후 보상 시 권리관계 및 물건(건물 등) 등을 확인하여 시행할 예정임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조서 (변경)

☐ 사 업 명: 2020년 도시계획시설(능안어린이공원조성)사업

☐ 사업 시행자: 서초구청장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성 명	지분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내곡동 168-10	답	504	504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체	서울특별시 남부순환로 2584			
2	내곡동 168-13	답	269	269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체	서울특별시 남부순환로 2584			
3	내곡동 183-4	답	121	121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체	서울특별시 남부순환로 2584			
4	184-11	공	145	145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체	서울특별시 남부순환로 2584			
5	164-8	공	117	117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체	서울특별시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공고 제2021-2299호

도시계획시설(원지어린이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1977-41호(1977.03.16)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최초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5-141호(1995.5.20.)로 최종 결정이 되었으며,
2. 서초구고시 제2015-109호(2015.9.10)로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 도면작성 고시, 서초구고시 제2019-207(2019.10.31.)호, 제2020-82(2020.5.7.)호로 실시계획인가고시(토지보상)된 서초구 원지동 368-1번지 일대의 원지어린이공원에 대하여
3. 실시계획인가(변경)하여 공원을 조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관계 서류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4.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공고로 갈음합니다.
5.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6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본 실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30일

서 초 구 청 장

가. 실시계획의 주요내용

-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변경)
 - 가) 당 초: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 368-1번지
 - 나) 변 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 368-1번지 일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나) 사업의 명칭: 원지어린이공원 조성사업
 - 3) 사업의 면적 및 내용 (변경)
 - 가) 면 적: (당초) 620㎡ (변경) 1,938㎡
 - 나) 내 용: (당초) 토지보상 (변경)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 4) 변경사유: 공원용지 보상완료에 따른 공원조성
 -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나)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번지
 - 6)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3.12.31. 까지
 - 7) 수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별첨조서
- 나. 열람기간: 열람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열람시간 09:00 ~ 18:00)
- 다. 열람장소: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61)
-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당초)

☐ 사 업 명: 2020년 도시계획시설(원지어린이공원조성)사업

☐ 사업 시행자: 서초구청장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성 명	지분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원지동 368-1	전	620	620	조○○	620/620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01, ***동 ****호			

※ 위 토지조서는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기준이며 향후 보상 시 권리관계 및 물건(건물 등) 등을 확인하여 시행할 예정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변경)

☐ 사 업 명: 2020년 도시계획시설(원지어린이공원조성)사업

☐ 사업 시행자: 서초구청장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성 명	지분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원지동 368-1	전	620	620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체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2	원지동 368-6	전	354	354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체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3	원지동 366	답	384	384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체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4	원지동 367	도	236	236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체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5	원지동 591-3	대	14	14	기획 재정부	전체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6	원지동 591-1	대	330	330	기획 재정부	전체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강남구공고 제2021-2732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을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534호(1983.9.7.)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1호(2012.1.19.)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강남구 고시 제2021-200호(2021.11.25.)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 고시한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개포로 403 일대 달터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변경)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시민열람 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를 강남구청 공동주택과(02-3423-6986)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5일간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30일

강 남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개포로 403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달터근린공원 조성

다. 사업의 규모 및 내용

○ 기정 : 13,195㎡(무허가 116가옥)

○ 변경 : 13,373㎡(무허가 118가옥)

※ 증 무허가 2가옥(증 178㎡)

라. 사업시행자(변경 없음)

○ 성명 : 강남구청장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마. 사업기간(변경없음)

바.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지장물) 조서(추가)

연번	위치	성명	구조	면적	용도	관계인
1	강남구 선릉로18길15	임서현	스레트/목재	118㎡	주택	
2	강남구 선릉로18길15	임재균	스레트/목재	60㎡	주택	

사.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09:00 ~ 18:00)

아. 열람 및 이의신청장소 : 강남구청 공동주택과(02-3423-6986)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공고 제2021-2617호

도시계획시설(둔촌 제1,2호 근린공원, 제1호 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을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20-52호(2020.02.06.)로 정비구역 변경 결정/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된 정비구역의 기부채납되는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2. 주변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문화를 제공하는 생산적인 공원프로그램과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으로,
3.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강 동 구 청 장

가. 공 원 명: 둔촌 제1,2호 근린공원, 제1호 어린이공원

나. 위 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

다. 면 적: 제1호 근린공원(17,875.8㎡), 제2호 근린공원(13,580.4㎡)
제1호 어린이공원(4,640.0㎡)

라. 공원조성계획(안): 붙임참조

마. 관계도서: 열람장소에 비치

바. 열람기간: 열람공고일로부터 14일

사. 열람장소: 강동구 푸른도시과(☎02-3425-6443)

아. 본 조성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둔촌 제1,2호 근린공원, 제1호 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조서 및 조성계획도(최초) 각 1부. 끝.

제1호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조서

1. 총괄표 (위치 : 서울시 강동구 둔촌1동 172-1번지 일대)

구분	부지면적 (m ²)	시설면적 (m ²)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 고
			동수 (동)	건축면적 (m ²)	연면적 (m ²)		
총 계	17,875.80	7,095.96	1	1,407.72	11,707.13	1	
기반시 설	소계	4,339.38					
	도로	3,230.05					
	광장	1,109.33					
조경시설	502.75	502.75					
휴양시설	418.19	418.19				1	
교양시설	1,835.64	1,835.64	1	1,407.72	11,707.13		
녹지 및 기타	10,779.84	-					녹지율 60.30%
시설율 (40%이내)	$(7,095.96 / 17,875.80) \times 100 = 39.70\%$						
건폐율 (20%이내)	$(1,407.72 / 17,875.80) \times 100 = 7.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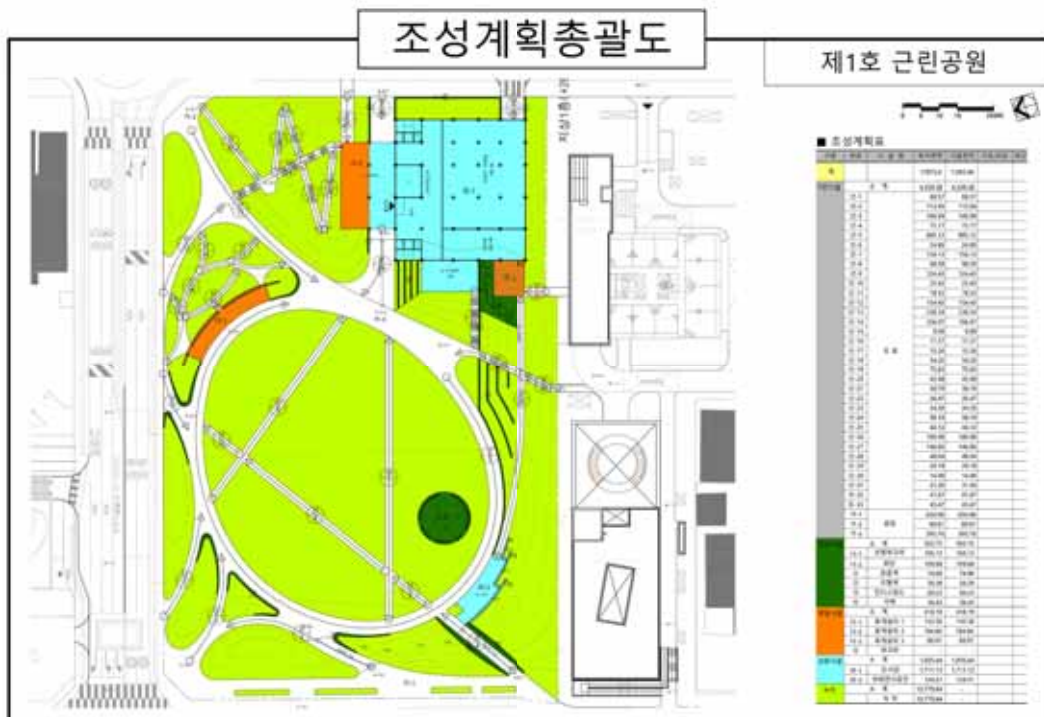
2. 시설조서

시설구분	부호	위 치	부지면적 (m ²)	시설면적 (m ²)	구조	규모	건축물(m ²)		공작물 (기)	비 고
							건축 면적	연면적		
합 계			17,875.8	7,095.96			1,407.72	11,707.13	1	
기반시설	소계		4,339.38	4,339.38						
	도로		둔촌1동172-1번지 일대	3,230.05	3,230.05					
	광장	가-1	둔촌1동172-1번지 일대	634.96	634.96					
		가-2	둔촌1동172-1번지 일대	80.61	80.61					
		가-3	둔촌1동172-1번지 일대	393.76	393.76					
조경시설	소계		502.75	502.75						
	조형파고라	나-1	둔촌1동172-1번지 일대	165.13	165.13					
	화단	나-2	둔촌1동172-1번지 일대	109.68	109.68					
	앉음벽	①	둔촌1동172-1번지 일대	74.90	74.90					
	조형벽	②	둔촌1동172-1번지 일대	56.38	56.38					
	잔디스탠드	③	둔촌1동172-1번지 일대	60.23	60.23					
	가벽	④	둔촌1동172-1번지 일대	36.43	36.43					
휴양시설	소계		418.19	418.19						
	휴게쉼터1	다-1	둔촌1동172-1번지 일대	143.36	143.36					
	휴게쉼터2	다-2	둔촌1동172-1번지 일대	184.86	184.86					
	휴게쉼터3	다-3	둔촌1동172-1번지 일대	89.97	89.97					
	파고라	⑤	둔촌1동172-1번지 일대	-	-				1	
교양시설	소계		1,835.64	1,835.64			1,407.72	11,707.13		
	도서관	라-1	둔촌1동172-1번지 일대	1,711.13	1,711.13		1,407.72	11,707.13		
	야외전시 공간	라-2	둔촌1동172-1번지 일대	124.51	124.51					
녹지 및 기타	소계		10,779.84							
	녹지			10,779.84						

3.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m)	면적(m 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도로	총 계				1,076.0	3,230.05				
	소로	3	1	2.0	30.0	88.57	산책로	부지외곽	산5	
	소로	3	2	2.0	32.0	113.94	산책로	광1	산5	
	소로	3	3	2.0	43.0	160.99	산책로	광1	산2	
	소로	3	4	3.0	25.0	75.17	산책로	광1	산5	
	소로	3	5	4.0	221.0	885.12	산책로	광3	광3	
	소로	3	6	2.0	12.0	24.86	산책로	산5	산7	
	소로	3	7	2.0	78.0	156.13	산책로	산5	광3	
	소로	3	8	2.0	49.0	98.59	산책로	산7	산9	
	소로	3	9	2.0	62.0	124.43	산책로	산5	광3	
	소로	3	10	2.0	13.0	25.45	산책로	산9	산5	
	소로	3	11	4.0	17.0	78.52	산책로	부지외곽	산5	
	소로	3	12	3.0	30.0	154.45	산책로	부지외곽	산13	
	소로	3	13	4.0	55.0	238.34	산책로	광2	광3	
	소로	3	14	1.0	52.0	106.07	산책로	산11	산13	
	소로	3	15	1.0	10.0	9.99	산책로	산14	산12	
	소로	3	16	1.0	11.0	17.37	산책로	산14	산12	
	소로	3	17	1.0	10.0	15.26	산책로	산14	산13	
	소로	3	18	1.0	20.0	34.26	산책로	산14	산14	
	소로	3	19	2.0	32.0	75.63	산책로	산13	휴게쉼터2	
	소로	3	20	2.0	26.0	45.98	산책로	산13	산19	
	소로	3	21	2.0	18.0	30.79	산책로	산19	산22	
	소로	3	22	2.0	15.0	26.47	산책로	산21	산19	
	소로	3	23	2.0	19.0	34.26	산책로	산19	산24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 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도로	소로	3	24	2.0	21.0	38.10	산책로	산23	산19	
	소로	3	25	4.0	13.0	44.12	산책로	부지외곽	휴게쉼터2	
	소로	3	26	7.0	20.0	180.98	산책로	도서관	광3	
	소로	3	27	2.0	73.0	146.86	산책로	전시벽	휴게쉼터3	
	소로	3	28	2.0	19.0	48.04	산책로	산27	광3	
	소로	3	29	2.0	10.0	20.18	산책로	부지외곽	산27	
	소로	3	30	3.0	6.0	14.49	산책로	부지외곽	휴게쉼터3	
	소로	3	31	2.0	12.0	31.50	산책로	도서관	산28	
	소로	3	32	7.0	16.0	41.67	산책로	부지외곽	도서관	
	소로	3	33	6.0	6.0	43.47	도로	부지외곽	도서관	



제2호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조서

1. 총괄표 (위치 : 서울시 강동구 둔촌1동 180-1번지 일대)

구분	부지면적 (m ²)	시설면적 (m ²)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 고
			동수 (동)	건축면적 (m ²)	연면적 (m ²)		
총 계	13,580.40	4,779.03	1	168.00	168.00	3	
기 반 시 설	소계	2,492.98					
	도로	2,232.39					
	광장	260.59					
조 경 시 설	572.59	572.59					
휴 양 시 설	377.80	377.80				1	
유 희 시 설	763.27	763.27				1	
교 양 시 설	-	-					
운 동 시 설	362.27	362.17				1	
편 익 시 설	42.22	42.22					주차 3대
관 리 시 설	168.00	168.00	1	168.00	168.00		
녹지 및 기타	8,801.37						녹지율64. 81%
시설율 (40%이내)	$(4,779.03/13,580.40) \times 100 \% = 35.19 \%$						
건폐율 (20%이내)	$(168/13,580.40) \times 100 \% = 1.24 \%$						

2. 시설조서

시설구분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비고
							건축 면적	연면적		
합 계			13,580.40	4,779.03			168.00	168.00	3	
기반 시설	소 계		2,492.98	2,492.98						
	도로		둔촌1동 180-1번지일대	2,232.39	2,232.39					
	광장	가	둔촌1동 180-1번지일대	260.59	260.59					
조경 시설	소 계		572.59	572.59						
	빈티지정원	나	둔촌1동 180-1번지일대	572.59	572.59					
휴양 시설	소 계		377.80	377.80					1	
	건강마루	다-1	둔촌1동 180-1번지일대	357.77	357.77					
	정자	①	둔촌1동 180-1번지일대	-	-				1	
	휴게쉼터1	다-2	둔촌1동 180-1번지일대	9.92	9.92					
	휴게쉼터2	다-3	둔촌1동 180-1번지일대	10.11	10.11					
유희 시설	소 계		763.27	763.27					1	
	놀이터	라	둔촌1동 180-1번지일대	763.27	763.27					
	파고라1	②	둔촌1동 180-1번지일대	-	-				1	
운동 시설	소 계		362.17	362.17					1	
	운동공간1	마-1	둔촌1동 180-1번지일대	169.34	169.34					
	파고라2	③	둔촌1동 180-1번지일대	-	-				1	
	운동공간2	마-2	둔촌1동 180-1번지일대	192.83	192.83					
편익 시설	소 계		42.22	42.22						
	주차장	바	둔촌1동 180-1번지일대	42.22	42.22					3대 주차
관리 시설	소 계		168.00	168.00			168.00	168.00		
	관리사무소	사	둔촌1동 180-1번지일대	168.00	168.00		168.00	168.00		
녹지 및 기타	소 계		8,801.37	8,801.37						
	녹 지		둔촌1동 180-1번지일대	8,801.37	8,801.37					

3.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m)	면적(m 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도로	총 계				712.6	2,232.39				
	소로	3	1	4.0	13.34	53.36	진입로	남측입구	산책로2	
	산책로	—	1	2.0	3.50	7.00	진입로	서측입구	관리사무소	
	산책로	—	2	4.0	47.24	188.94	보행로	진입광장	산책로4	
	산책로	—	3	3.0	14.46	43.39	보행로	산책로2	관리사무소	
	산책로	—	4	3.0	10.42	31.27	진입로	산책로2	남측입구	
	산책로	—	5	4.0	114.54	458.15	보행로	진입광장	산책로17	
	산책로	—	6	4.0	51.56	206.25	보행로	산책로5	산책로8,9	
	산책로	—	7	3.0	10.26	30.77	보행로	산책로6	놀이터	
	산책로	—	8	6.0 ~20.0	15.44	200.71	보행로	산책로6	산책로11,13	
	산책로	—	9	4.0	34.62	138.49	보행로	산책로6	산책로2	
	산책로	—	10	2.0	6.15	12.29	보행로	산책로8	산책로14	
	산책로	—	11	3.0	7.16	21.48	보행로	산책로8	놀이터	
	산책로	—	12	2.0	31.97	63.93	보행로	산책로9	산책로16	
	산책로	—	13	3.0	62.14	186.42	보행로	산책로8	산책로17	
	산책로	—	14	1.8	148.18	266.73	보행로	산책로12	산책로15	
	산책로	—	15	2.0	26.51	53.02	진입로	남측입구	건강마루	
	산책로	—	16	1.8	47.06	84.70	보행로	산책로15	건강마루	
	산책로	—	17	2.0 ~4.0	61.80	185.49	진입로	북측입구	산책로14	

A scale bar at the bottom left indicates distances in kilometers (0, 5, 10, 20). A north arrow is located at the bottom right.



年份	地区	人口(万)	耕地面积(万亩)	粮食产量(万吨)	人均粮食(公斤)
1952	全国	5.74	14.68	1.42	24.7
1957	全国	6.59	15.21	1.82	27.6
1962	全国	7.05	15.21	1.82	27.6
1967	全国	7.42	15.21	1.82	27.6
1972	全国	7.89	15.21	1.82	27.6
1977	全国	8.36	15.21	1.82	27.6
1982	全国	8.83	15.21	1.82	27.6
1987	全国	9.30	15.21	1.82	27.6
1992	全国	9.77	15.21	1.82	27.6
1997	全国	10.24	15.21	1.82	27.6
2002	全国	10.71	15.21	1.82	27.6
2007	全国	11.18	15.21	1.82	27.6
2012	全国	11.65	15.21	1.82	27.6
2017	全国	12.12	15.21	1.82	27.6
2022	全国	12.59	15.21	1.82	27.6
2027	全国	13.06	15.21	1.82	27.6
2032	全国	13.53	15.21	1.82	27.6
2037	全国	14.00	15.21	1.82	27.6
2042	全国	14.47	15.21	1.82	27.6
2047	全国	14.94	15.21	1.82	27.6
2052	全国	15.41	15.21	1.82	27.6
2057	全国	15.88	15.21	1.82	27.6
2062	全国	16.35	15.21	1.82	27.6
2067	全国	16.82	15.21	1.82	27.6
2072	全国	17.29	15.21	1.82	27.6
2077	全国	17.76	15.21	1.82	27.6
2082	全国	18.23	15.21	1.82	27.6
2087	全国	18.70	15.21	1.82	27.6
2092	全国	19.17	15.21	1.82	27.6
2097	全国	19.64	15.21	1.82	27.6
2102	全国	20.11	15.21	1.82	27.6
2107	全国	20.58	15.21	1.82	27.6
2112	全国	21.05	15.21	1.82	27.6
2117	全国	21.52	15.21	1.82	27.6
2122	全国	21.99	15.21	1.82	27.6
2127	全国	22.46	15.21	1.82	27.6
2132	全国	22.93	15.21	1.82	27.6
2137	全国	23.40	15.21	1.82	27.6
2142	全国	23.87	15.21	1.82	27.6
2147	全国	24.34	15.21	1.82	27.6
2152	全国	24.81	15.21	1.82	27.6
2157	全国	25.28	15.21	1.82	27.6
2162	全国	25.75	15.21	1.82	27.6
2167	全国	26.22	15.21	1.82	27.6
2172	全国	26.69	15.21	1.82	27.6
2177	全国	27.16	15.21	1.82	27.6
2182	全国	27.63	15.21	1.82	27.6
2187	全国	28.10	15.21	1.82	27.6
2192	全国	28.57	15.21	1.82	27.6
2197	全国	29.04	15.21	1.82	27.6
2202	全国	29.51	15.21	1.82	27.6
2207	全国	29.98	15.21	1.82	27.6
2212	全国	30.45	15.21	1.82	27.6
2217	全国	30.92	15.21	1.82	27.6
2222	全国	31.39	15.21	1.82	27.6
2227	全国	31.86	15.21	1.82	27.6
2232	全国	32.33	15.21	1.82	27.6
2237	全国	32.80	15.21	1.82	27.6
2242	全国	33.27	15.21	1.82	27.6
2247	全国	33.74	15.21	1.82	27.6
2252	全国	34.21	15.21	1.82	27.6
2257	全国	34.68	15.21	1.82	27.6
2262	全国	35.15	15.21	1.82	27.6
2267	全国	35.62	15.21	1.82	27.6
2272	全国	36.09	15.21	1.82	27.6
2277	全国	36.56	15.21	1.82	27.6
2282	全国	37.03	15.21	1.82	27.6
2287	全国	37.50	15.21	1.82	27.6
2292	全国	37.97	15.21	1.82	27.6
2297	全国	38.44	15.21	1.82	27.6
2302	全国	38.91	15.21	1.82	27.6
2307	全国	39.38	15.21	1.82	27.6
2312	全国	39.85	15.21	1.82	27.6
2317	全国	40.32	15.21	1.82	27.6
2322	全国	40.79	15.21	1.82	27.6
2327	全国	41.26	15.21	1.82	27.6
2332	全国	41.73	15.21	1.82	27.6
2337	全国	42.20	15.21	1.82	27.6
2342	全国	42.67	15.21	1.82	27.6
2347	全国	43.14	15.21	1.82	27.6
2352	全国	43.61	15.21	1.82	27.6
2357	全国	44.08	15.21	1.82	27.6
2362	全国	44.55	15.21	1.82	27.6
2367	全国	45.02	15.21	1.82	27.6
2372	全国	45.49	15.21	1.82	27.6
2377	全国	45.96	15.21	1.82	27.6
2382	全国	46.43	15.21	1.82	27.6
2387	全国	46.90	15.21	1.82	27.6
2392	全国	47.37	15.21	1.82	27.6
2397	全国	47.84	15.21	1.82	27.6
2402	全国	48.31	15.21	1.82	27.6
2407	全国	48.78	15.21	1.82	27.6
2412	全国	49.25	15.21	1.82	27.6
2417	全国	49.72	15.21	1.82	27.6
2422	全国	50.19	15.21	1.82	27.6
2427	全国	50.66	15.21	1.82	27.6
2432	全国	51.13	15.21	1.82	27.6
2437	全国	51.60	15.21	1.82	27.6
2442	全国	52.07	15.21	1.82	27.6
2447	全国	52.54	15.21	1.82	27.6
2452	全国	53.01	15.21	1.82	27.6
2457	全国	53.48	15.21	1.82	27.6
2462	全国	53.95	15.21	1.82	27.6
2467	全国	54.42	15.21	1.82	27.6
2472	全国	54.89	15.21	1.82	27.6
2477	全国	55.36	15.21	1.82	27.6
2482	全国	55.83	15.21	1.82	27.6
2487	全国	56.30	15.21	1.82	27.6
2492	全国	56.77	15.21	1.82	27.6
2497	全国	57.24	15.21	1.82	27.6
2502	全国	57.71	15.21	1.82	27.6
2507	全国	58.18	15.21	1.82	27.6
2512	全国	58.65	15.21	1.82	27.6
2517	全国	59.12	15.21	1.82	27.6
2522	全国	59.59	15.21	1.82	27.6
2527	全国	60.06	15.21	1.82	27.6
2532	全国	60.53	15.21	1.82	27.6
2537	全国	61.00	15.21	1.82	27.6
2542	全国	61.47	15.21	1.82	27.6
2547	全国	61.94	15.21	1.82	27.6
2552	全国	62.41	15.21	1.82	27.6
2557	全国	62.88	15.21	1.82	27.6
2562	全国	63.35	15.21	1.82	27.6
2567	全国	63.82	15.21	1.82	27.6
2572	全国	64.29	15.21	1.82	27.6
2577	全国	64.76	15.21	1.82	27.6
2582	全国	65.23	15.21	1.82	27.6
2587	全国	65.70	15.21	1.82	27.6
2592	全国	66.17	15.21	1.82	27.6
2597	全国	66.64	15.21	1.82	27.6
2602	全国	67.11	15.21	1.82	27.6
2607	全国	67.58	15.21	1.82	27.6
2612	全国	68.05	15.21	1.82	27.6
2617	全国	68.52	15.21	1.82	27.6
2622	全国	68.99	15.21	1.82	27.6
2627	全国	69.46	15.21	1.82	27.6
2632	全国	69.93	15.21	1.82	27.6
2637	全国	70.40	15.21	1.82	27.6
2642	全国	70.87	15.21	1.82	27.6
2647	全国	71.34	15.21	1.82	27.6
2652	全国	71.81	15.21	1.82	27.6
2657	全国	72.28	15.21	1.82	27.6
2662	全国	72.75	15.21	1.82	27.6
2667	全国	73.22	15.21	1.82	27.6
2672	全国	73.69	15.21	1.82	27.6
2677	全国	74.16	15.21	1.82	27.6
2682	全国	74.63	15.21	1.82	27.6
2687	全国	75.10	15.21	1.82	27.6
2692	全国	75.57	15.21	1.82	27.6
2697	全国	76.04	15.21	1.82	27.6
2702	全国	76.51	15.21	1.82	27.6
2707	全国	76.98	15.21	1.82	27.6
2712	全国	77.45	15.21	1.82	27.6
2717	全国	77.92	15.21	1.82	27.6
2722	全国	78.39	15.21	1.82	27.6
2727	全国	78.86	15.21	1.82	27.6
2732	全国	79.33	15.21	1.82	27.6
2737	全国	79.80	15.21	1.82	27.6
2742	全国	80.27	15.21	1.82	27.6
2747	全国	80.74	15.21	1.82	27.6
2752	全国	81.21	15.21	1.82	27.6
2757	全国	81.68	15.21	1.82	27.6
2762	全国	82.15	15.21	1.82	27.6
2767	全国	82.62	15.21	1.82	27.6
2772	全国	83.09	15.21	1.82	27.6
2777	全国	83.56	15.21	1.82	27.6
2782	全国	84.03	15.21	1.82	27.6
2787	全国	84.50	15.21	1.82	27.6
2792	全国	84.97	15.21	1.82	27.6
2797	全国	85.44	15.21	1.82	27.6
2802	全国	85.91	15.21	1.82	27.6
2807	全国	86.38	15.21	1.82	27.6
2812	全国	86.85	15.21	1.82	27.6
2817	全国	87.32	15.21	1.82	27.6
2822	全国	87.79	15.21	1.82	27.6
2827	全国	88.26	15.21	1.82	27.6
2832	全国	88.73	15.21	1.82	27.6
2837	全国	89.20	15.21	1.82	27.6
2842	全国	89.67	15.21	1.82	27.6
2847	全国	90.14	15.21	1.82	27.6
2852	全国	90.61	15.21	1.82	27.6
2857	全国	91.08	15.21	1.82	27.6
2862	全国	91.55	15.21	1.82	27.6
2867	全国	92.02	15.21	1.82	27.6
2872	全国	92.49	15.21	1.82	27.6
2877	全国	92.96	15.21	1.82	27.6
2882	全国	93.43	15.21	1.82	27.6
2887	全国	93.90	15.21	1.82	27.6
2892	全国	94.37	15.21	1.82	27.6
2897	全国	94.84	15.21	1.82	27.6
2902	全国	95.31	15.21	1.82	27.6
2907	全国	95.78	15.21	1.82	27.6
2912	全国	96.25	15.21	1.82	27.6
2917	全国	96.72	15.21	1.82	27.6
2922	全国	97.19	15.21	1.82	27.6
2927	全国	97.66	15.21	1.82	27.6
2932	全国	98.13	15.21	1.82	27.6
2937	全国	98.60	15.21	1.82	27.6
2942	全国	99.07	15.21	1.82	27.6
2947	全国	99.54	15.21	1.82	27.6
2952	全国	100.01	15.21	1.82	27.6
2957	全国	100.48	15.21	1.82	27.6
2962	全国	100.95	15.21	1.82	27.6
2967	全国	101.42	15.21	1.82	27.6
2972	全国	101.89	15.21	1.82	27.6
2977	全国	102.36	15.21	1.82	27.6
2982	全国	102.83	15.21	1.82	27.6
2987	全国	103.30	15.21	1.82	27.6
2992	全国	103.77	15.21	1.82	27.6
2997	全国	104.24	15.21	1.82	27.6
3002	全国	104.71	15.21	1.82	27.6
3007	全国	105.18	15.21	1.82	27.6
3012	全国	105.65	15.21	1.82	27.6
3017	全国	106.12	15.21	1.82	27.6
3022	全国	106.59	15.21	1.82	27.6
3027	全国	107.06	15.21	1.82	27.6
3032					

제1호 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조서

1. 총괄표 (위치 : 서울시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

구분		부지면적 (m ²)	시설면적 (m ²)	건축물			공작물 (기)	비 고
				동수 (동)	건축면적 (m ²)	연면적 (m ²)		
총 계		4,640.00	2,254.57					
기반시설	소계	1,272.01	1,272.01					
	도로	887.81	887.81					
	광장	384.20	384.20					
조경시설		72.78	72.78					
휴양시설		112.00	112.00					
유희시설		797.78	797.78					
녹지 및 기타		2,385.43						녹지율 51.41%
시설율 (60%이내)		$(2,254.57 / 4,640.00) \times 100 = 48.59\%$						
건폐율 (5%이내)		-						

2. 시설조서

시설구분		부호	위 치	부지면적 (m ²)	시설면적 (m ²)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합 계				4,640.00	2,254.57						
기반시설	소계			1,272.01	1,272.01						
	도 로		둔촌1동170-1번지 일대	887.81	887.81						
	광 장	가	둔촌1동170-1번지 일대	384.20	384.20						
조경 시설	소계			72.78	72.78						
	가벽	①	둔촌1동170-1번지 일대	46.17	46.17					1	
	플랜터	②	둔촌1동170-1번지 일대	26.61	26.61					1	
휴양 시설	소계			112.00	112.00						
	휴게쉼터 1	다-1	둔촌1동170-1번지 일대	80.00	80.00						
	휴게쉼터 2	다-2	둔촌1동170-1번지 일대	32.00	32.00						
	파고라1	③	둔촌1동170-1번지 일대	-	-					1	
	파고라2	④	둔촌1동170-1번지 일대	-	-					1	
유희 시설	소계			797.78	797.78						
	어린이놀이터	라	둔촌1동170-1번지 일대	797.78	797.78						
	조합놀이대	⑤	둔촌1동170-1번지 일대	-	-					1	
	그네	⑥	둔촌1동170-1번지 일대	-	-					1	
	회전놀이	⑦	둔촌1동170-1번지 일대	-	-					1	
	해먹	⑧	둔촌1동170-1번지 일대	-	-					1	
	징검다리	⑨	둔촌1동170-1번지 일대	-	-					1	
녹 지 및 기 타	소계			2,385.43							
	녹 지		둔촌1동170-1번지 일대	2,385.43							

3.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m)	면적(m 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도로	총 계				219.0	1,272.01				
	산책로	3	1	3.0	7.3	21.90	산책로	진입광장	산3	
	산책로	3	2	3.0	7.3	21.90	산책로	진입광장	산3	
	산책로	3	3	3.5	70.3	361.14	산책로	부지외곽	부지외곽	
	산책로	3	4	3.5	9.4	32.92	산책로	부지외곽	산7	
	산책로	3	5	3.0	74.3	222.90	산책로	산6	산3	
	산책로	3	6	3.5	50.4	227.05	산책로	부지외곽	산3	



사업소고시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1 - 32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미래조선기술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86번길 47, 10동 309호	서울시계 내 한강 (강서구 개화동~ 마포구 상암동)	선박 2척	통합레포츠 센터 설치	2021.12.23.~ 2022.03.22.	2021. 12. 23.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1 - 32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위치/ 운항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현대요트 (대표 ***) 서울시 서초구 동작대로 ***		서울시 서초구 동작대로 350	1,462 m ²	유선사업	2022.1.1. ~ 2022.12.31.	2021. 12.23.
			130 m ²	상·하수도 관로		
		잠실대교 ~ 행주대교	동력선 5척	유선 및 수상레저사업		

기 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 - 532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강동구청장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길 27(성내동 540번지)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257-7번지 일원
 - 면 적: 4,202.9㎡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가로공원 조성
 - 내 역: 육각정자1EA, 등의자3EA, 앉음벽11m, 자전거보관대2EA, 생태계류1식, 고무썰포장206㎡, 우레탄포장70㎡, 녹지경계석357m, 재료분리석30m, 조경1식 등
5. 점용기간: (당초) 2016.12.07. ~ 2021.12.06.
(변경) 2021.12.07 ~ 2026.12.3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 - 533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중랑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11-1번지
 - 면 적: 61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하수BOX설치
 - 내 역: 하수BOX(2.5*2.5)설치, 호안블록(620㎡)
5. 점용기간: (당초) 2016.10.04. ~ 2021.10.03.
(변경) 2021.10.04 ~ 2026.12.3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 - 534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
 -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화로 3142-33(대치동)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80-19
 - 면 적: 10m²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를 위한 전기 전선관 매설
 - 내 역: 전선관 매설 20*0.5m
5. 점용기간: (당초) 2016.11.07. ~ 2021.11.06.
(변경) 2021.11.07 ~ 2026.12.3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 - 535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주 소: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255-2번지 일원
 - 면 적: 영구44,863㎡, 일시46,39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연결램프 신설, 지하매설물 이설
 - 내 역: 연결램프(교량)설치3개소,
지하매설물 이설 (송수관D2,200mm,하수관로 2.0*2.0m)
5. 점용기간: (당초) 2016.11.14. ~ 2021.12.31.
(변경) 2021.11.14 ~ 2026.12.31.
6. 공사기간: (당초) 2016.11.14. ~ 2021.12.31.
(변경) 2016.11.14. ~ 2022.12.3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 - 538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에스지레일 (주)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98길 3, KCC IT빌딩 5층(GTX-A 6공구)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373-1
 - 면 적 : (당초) 26㎡ → (변경) 17㎡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6공구)현장 계측기 설치
 - 내 역 : (당초) 계측기 3개소 → (변경) 계측기 2개소
5. 점용기간 : 2021.07.05. ~ 2024.07.04.
6. 공사기간 : (당초) 2021.07.05. ~ 2021.09.04.
(변경) 2021.07.05. ~ 2021.12.3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 - 539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중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에너지공사
 - 주 소 :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70길 99(상계동)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일원
 - 면 적 : (당초) 11,553.8㎡ → (변경) 11,605.8㎡(일시 518㎡)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기허가 받은 열수송관의 추가 시설
 - 내 역 : (당초) 이중보온관(강관매설 L=7,701m) →
(변경) 이중보온관(강관매설 L=7,746m)
5. 점용기간 : 2018.09.18. ~ 2023.09.17.
6. 공사기간 : (당초) 2000.08.13. ~ 2000.09.30. →
(변경) 2000.08.13. ~ 2000.09.30.
변경허가일. ~ 2022.06.03.

정 정

강남구고시 제2021-226호

도시계획시설(하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강남구고시 제2021-163호(2021. 9. 23.)로 결정(변경)된 세곡동 507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하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에 착오가 있어 이를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강 남 구 청 장

1. 정정사유

강남구고시 제2021-163호(2021. 9. 23.)로 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하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 중 ‘등록사항(경계) 정정’ 내용 미반영에 따른 정정

※ 이 외의 내용(면적 등)은 정정 사항 없음

2. 관계도면: 도시계획시설(하천) 결정(변경)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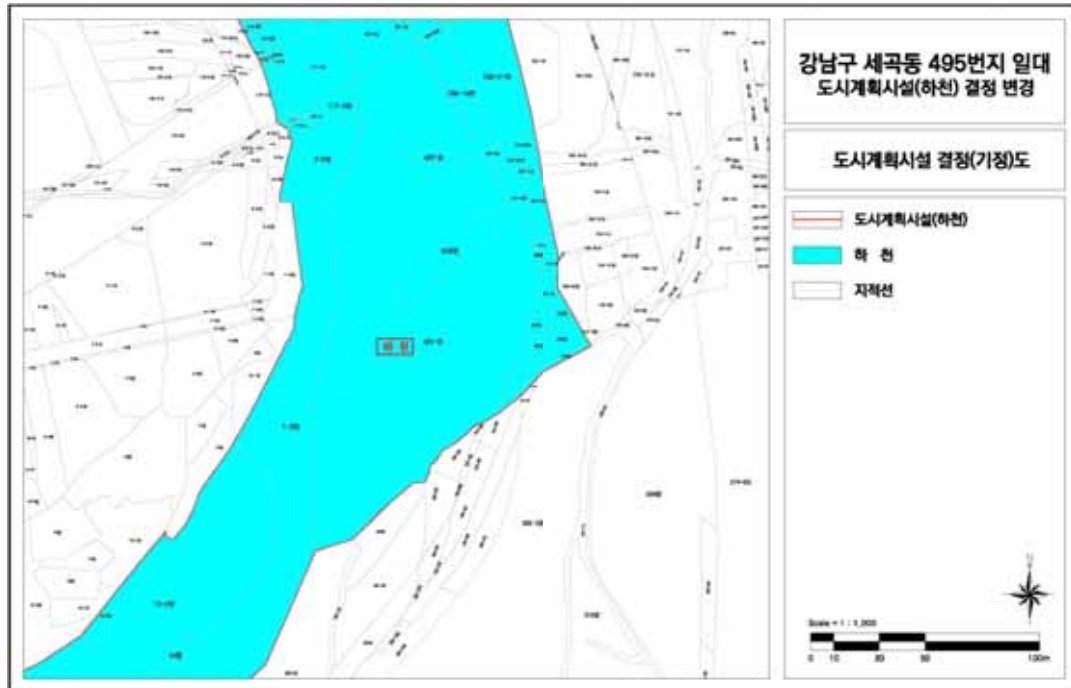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열람장소: 강남구 도시계획과(☎ 02- 3423-6105)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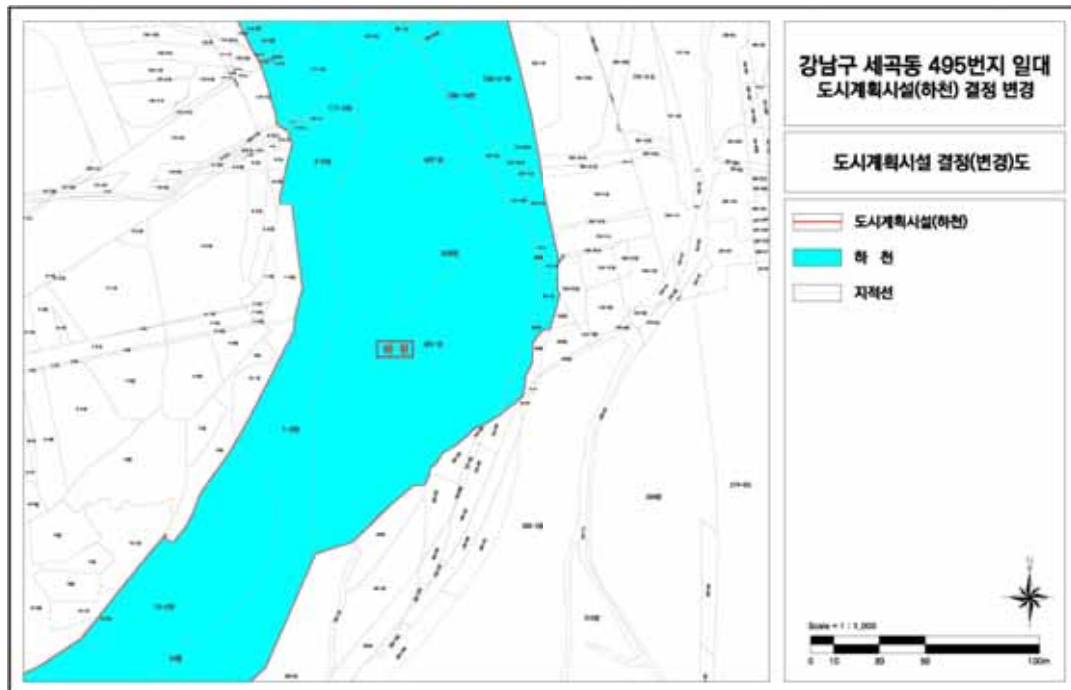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계획열람-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정 전]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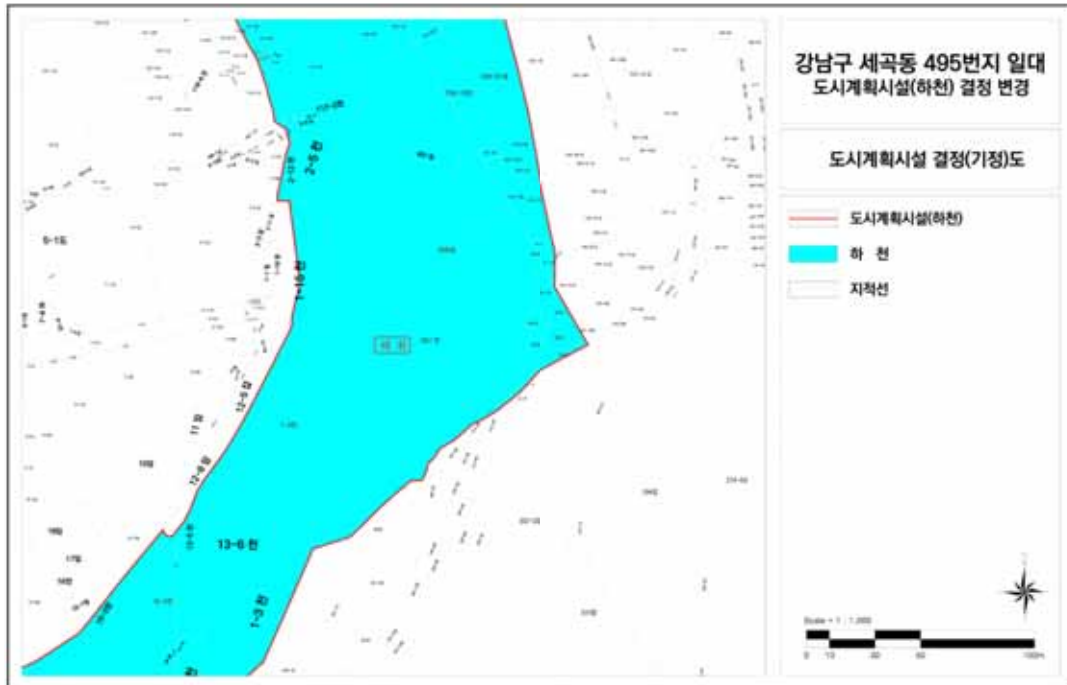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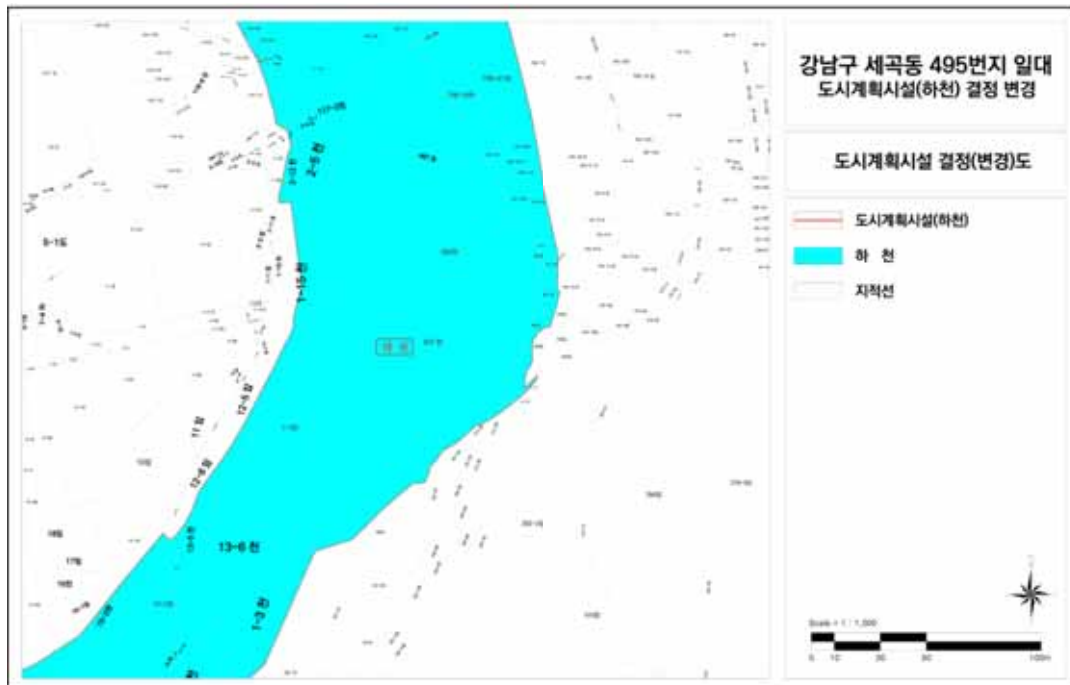


[정정 후]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